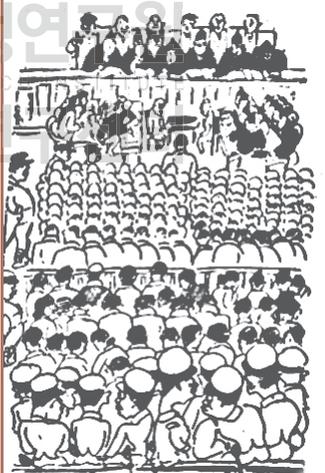


한말 수원 민사판결문 I

1895~19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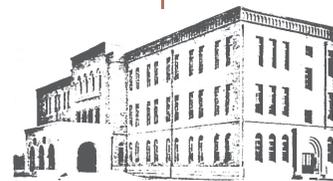
원고의 주장은 대원판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의 자금 행원이 적도 없이 매우 거대한 민중을 위하여 공적인 뒤에 출몰하여 하고 피고가 이미 영연회 강행하고 지복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피고 원어선부族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보충을 전 노점(兩井) 중 1,000원짜리 물어주고, 원고는 조형제(曹亨)를 건양(建陽)을 때의 신문기(新文基)와 한강중서(漢江中書)를 시행하지 않아 한다.

피고는 원고의 가게(茶房)를 빌려서 일본인에게 배를 인고, 해당 돈을 기원이 재나도록 감겨 없이 원고로 하여금 끝내 가족을 빼앗기게 만든 것은 정당한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대원판정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함께 백전(白田)을 동영하여 이자와 본전을 제하면 도인이 추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정부해 준 청산장기(淸山長基)에는 남은 돈을 기록해 두었다. 또 청산한 뒤에 원고에게 남긴 뒷(뒷)이 많다고 하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한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피고 원어선부族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보충을 전 노점(兩井) 중 1,000원짜리 물어주고, 원고는 조형제(曹亨)를 건양(建陽)을 때의 신문기(新文基)와 한강중서(漢江中書)를 시행하지 않아 한다.

피고는 원고의 가게(茶房)를 빌려서 일본인에게 배를 인고, 해당 돈을 기원이 재나도록 감겨 없이 원고로 하여금 끝내 가족을 빼앗기게 만든 것은 정당한이라고 할 수 없다.

수원학 자료총서

5 한말 수원 민사판결문 I

1895 ~ 1907



이 책의 특징은 대한제국인의 일상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각종 분쟁이 새로운 사법체계 하에서 어떻게 규율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판결문들은 전통적인 소송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합숙(合宿)에 새롭게 공포된 법령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신식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말 수원
민사판결문 I

SRI 수원시정연구원
1895~1907 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차례

근대 민사재판제도의 도입 08

001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895년 9월 21일 수원-한성	24
002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896년 7월 4일 수원-한성	26
003 집세[家賃錢]에 관한 건 1896년 9월 7일 수원-한성	29
004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6년 12월 17일 남양-한성	32
005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897년 4월 23일 한성-수원	34
006 논값[畝價]에 관한 건 1897년 4월 29일 수원-한성	37
007 가옥[家舍] 원림園林 소송에 관한 건 1897년 5월 21일 수원-수원	39
008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897년 6월 15일 남양-남양	41
009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7년 7월 2일 한성-남양	43
010 위토位土 소송에 관한 건 1897년 7월 29일 평강-수원	45
011 부비전浮費錢에 관한 건 1897년 12월 25일 무주-수원	47
012 소금[鹽] 소송에 관한 건 1898년 4월 7일 한성-수원	50
013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898년 4월 7일 남양-서산	53
014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898년 4월 30일 한성-수원	56
015 논 소송[畝訟]에 관한 건 1898년 8월 11일 한성-수원	58
016 논 소송[畝訟]에 관한 건 1898년 8월 22일 수원-한성	61
017 논문서[畝券] 반환에 관한 건 1898년 9월 26일 수원-한성	64
018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898년 10월 15일 해주-수원	66
019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899년 1월 12일 한성-남양	69
020 산관山坂 소송에 관한 건 1899년 3월 7일 한성-남양	72
021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5월 31일 수원-남양	75
022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7월 11일 남양-남양	77

023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7월 13일 남양-수원	80
024 둔감屯監 환퇴還退에 관한 건 1899년 8월 21일 수원-한성	83
025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8월 26일 남양-남양	86
026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8월 28일 남양-수원	90
027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899년 10월 2일 한성-남양	94
028 밥값[食價]에 관한 건 1899년 10월 2일 한성-수원	96
029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899년 10월 17일 한성-수원	98
030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11월 29일 남양-한성	101
031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11월 30일 남양-한성	103
032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0년 1월 12일 용인-수원	105
033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0년 3월 14일 수원-용인	108
034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900년 9월 20일 남양-한성	112
035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0년 11월 20일 수원-한성	115
036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0년 12월 5일 수원-한성	118
037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901년 4월 18일 남양-한성	122
038 논 소송[畝訟]에 관한 건 1901년 9월 24일 수원-한성	125
039 논 소송[畝訟]에 관한 건 1901년 10월 5일 한성-한성	128
040 장작값[燒木價]에 관한 건 1901년 10월 24일 남양-남양	132
041 가옥[家舍] 소송에 관한 건 1901년 12월 13일 시흥-수원	135
042 논 소송[畝訟]에 관한 건 1902년 10월 22일 남양-수원	138
043 논문서[畝券]에 관한 건 1902년 4월 9일 남양-한성	140
044 매장 무덤[葬塚] 이장[塋移]에 관한 건 1902년 6월 21일 수원-진성	143

차례

045 경비전經費錢 추납推納에 관한 건 1902년 7월 1일 수원-미상	146	069 분묘 소송에 관한 건 1906년 6월 12일 양주-수원	222
046 어음 소송[於音訟]에 관한 건 1903년 11월 24일 남양-한성	150	070 어장漁場 반환에 관한 건 1906년 6월 27일 아산-수원	225
047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3년 12월 1일 수원-한성	153	071 분묘 소송[墳墓訟]에 관한 건 1906년 6월 30일 수원-죽산	228
048 논 소송[畝訟]에 관한 건 1904년 4월 21일 수원-남양	156	072 어음전於音錢 반환 추심에 관한 건 1906년 6월 30일 시흥-수원	232
049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904년 5월 30일 수원-한성	159	073 소값 및 도세賸稅에 관한 건 1906년 7월 2일 수원-수원	237
050 집세[家賃錢]에 관한 건 1904년 6월 3일 수원-한성	162	074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6년 7월 6일 미상-미상	240
051 논문서[番券] 및 수표手票 소송에 관한 건 1905년 1월 31일 남양-한성	165	075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6년 7월 21일 한성-남양	243
052 논 소송[畝訟]에 관한 건 1905년 3월 23일 수원-한성	168	076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6년 8월 10일 강화-개성	248
053 가권家券 반환에 관한 건 1905년 4월 27일 한성-수원	171	077 물건값[物件價]에 관한 건 1906년 9월 21일 수원-한성	251
054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5년 6월 13일 한성-수원	173	078 폐업 손해 및 피촉被捉 부비浮費에 관한 건 1906년 9월 23일 광주-남양	254
055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5년 6월 26일 한성-수원	175	079 소금값[鹽價] 등에 관한 건 1906년 9월 25일 직산-인천	257
056 논문서[番券] 소송에 관한 건 1905년 6월 28일 한성-남양	177	080 물방아[水春] 기지세基址稅에 관한 건 1906년 10월 6일 한성-수원	260
057 쌀값[米價]에 관한 건 1905년 10월 2일 수원-한성	181	081 소금값[鹽價] 등에 관한 건 1906년 10월 8일 인천-수원	263
058 분묘 소송에 관한 건 1906년 3월 29일 죽산-수원	183	082 논문서[番券] 소송에 관한 건 1906년 10월 19일 남양-한성	267
059 가권家券 반환返還에 관한 건 1906년 4월 25일 한성-수원	187	083 소금값[白鹽]에 관한 건 1906년 10월 22일 직산-수원	269
060 동업 손해금에 관한 건 1906년 5월 10일 수원-수원	191	084 조기[石魚] 채권·채무 잔액에 관한 건 1906년 10월 23일 수원-수원	271
061 전답 및 산록山麓 소송에 관한 건 1906년 5월 19일 한성-수원	196	085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6년 10월 27일 수원-영흥	275
062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6년 5월 23일 수원-한성	201	086 생강 도조[薑賸] 소송에 관한 건 1906년 11월 6일 한성-남양	283
063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6년 5월 29일 수원-양성	204	087 임치전任置錢에 관한 건 1906년 11월 7일 수원-수원	288
064 매장 무덤 굴이堀移에 관한 건 1906년 5월 29일 수원-남양	209	088 누룩값[麴子價]에 관한 건 1906년 11월 28일 보령-남양	290
065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6년 5월 31일 한성-수원	211	089 매장 무덤 굴이堀移에 관한 건 1906년 12월 1일 남양-수원	293
066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6년 6월 4일 수원-수원	214	090 매장 무덤 굴이堀移에 관한 건 1906년 12월 4일 용인-수원	296
067 매장 무덤 굴이堀移에 관한 건 1906년 6월 4일 수원-양성	217	091 가옥·집물 및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906년 12월 12일 한성-수원	299
068 매장 무덤 굴이堀移에 관한 건 1906년 6월 11일 수원-수원	219	092 보증금[居保錢]에 관한 건 1907년 1월 14일 횡성-수원	309

차례

093	밭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1월 16일 수원·수원	313	117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7년 6월 24일 수원·수원	394
094	매장 무덤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7년 1월 19일 수원·남양	317	118	무덤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7년 6월 25일 수원·수원	398
095	장토庄土 대금代金에 관한 건 1907년 1월 25일 수원·한성	320	119	능장묘[勒葬塚]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7년 6월 27일 남양·남양	401
096	물에 잠긴 보리 및 보리종자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2월 1일 진위·수원	323	120	타인무덤 사성莎城 훼손 입장入葬에 관한 건 1907년 6월 30일 남양·남양	404
097	솔가지값[松枝價]에 관한 건 1907년 2월 5일 수원·한성	326	121	매장 무덤塚塚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7월 2일 남양·고양	407
098	쌀값[米價]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2월 6일 남양·한성	329	122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7년 7월 11일 경성·남양	410
099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7년 3월 14일 남양·한성	332	123	분묘 소송[墳墓訟]에 관한 건 1907년 7월 19일 수원·수원	413
100	가권家券 반환에 관한 건 1907년 3월 18일 수원·한성	335	124	분묘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7월 29일 수원·수원	416
101	금장禁葬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3월 26일 수원·수원	339	125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7년 7월 30일 수원·수원	420
102	종답宗畜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4월 3일 수원·수원	343	126	분묘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8월 6일 남양·남양	424
103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7년 4월 15일 수원·수원	347	127	담배값[葉草價]에 관한 건 1907년 9월 13일 경성·남양	427
104	매장 무덤[葬塚]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7년 4월 19일 수원·수원	350	128	분묘 소송[墳墓訟]에 관한 건 1907년 9월 17일 수원·수원	430
105	매장 무덤[葬塚]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7년 4월 19일 수원·수원	354	129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7년 10월 15일 수원·수원	434
106	전답 소송[田畜訟]에 관한 건 1907년 5월 9일 수원·한성	358	130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7년 10월 29일 수원·수원	437
107	송추값[松楸價]에 관한 건 1907년 5월 10일 춘천·수원	361	131	논 소송[畚訟]에 관한 건 1907년 11월 20일 수원·수원	440
108	매장 금지[禁葬]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5월 17일 수원·수원	364	132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7년 12월 10일 남양·남양	443
109	전당물[典物] 환퇴還退에 관한 건 1907년 10월 23일 수원·수원	367	133	보름·방죽[堰] 및 수용水春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12월 18일 남양·한성	446
110	문서[文券] 반환에 관한 건 1907년 5월 24일 한성·수원	371	134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7년 12월 28일 남양·남양	449
111	매장 무덤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7년 5월 25일 수원·수원	375	135	병든 소[牛] 사기 판매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12월 28일 수원·용인	452
112	가권家券의 전당 채무에 관한 건 1907년 5월 30일 한성·남양	378			
113	금장禁葬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6월 10일 수원·수원	382			
114	분묘 소송[墳墓訟]에 관한 건 1907년 6월 12일 수원·수원	385			
115	부모 묘 굴이掘移에 관한 건 1907년 6월 19일 남양·남양	389			
116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7년 6월 19일 수원·진위	392			



근대 민사재판제도의 도입

1. 「재판소구성법」과 각급 재판소 설치

1) 재판소구성법의 제정

현재, 대법원 산하 법원기록보존소에는 갑오·대한제국기의 민사판결문이 약 400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 판결문들은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새롭게 설치된 재판소에 의해서 생산된 것으로, 전답, 가옥, 채권채무, 산송, 어음 및 수표, 소작 등 개인 상호간에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분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전답 및 가옥의 매매가격, 입차료^{賃金}, 이자율, 전당 등 사회경제적 정보까지 풍부하게 알려줌으로써 근대 이행기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록사료이다. 이 자료를 통하여 대한제국인의 일상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각종 분쟁이 새로운 사법체계 하에서 어떻게 규율되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판결문들은 전통적인 소송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갑오개혁기에 새롭게 공포된 법령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 판결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신식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갑오개혁을 거치면서 한국정부는 각급 재판소에서 소송을 통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재판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였다. 1895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재판소구성법」, 「민형소송규정」, 「집행처분규칙」, 「정리규칙」 등의 새로운 법령들이 잇달아 제정되었는데, 신식 소송제도는 전통 소송과는 다른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도들은 첫째, 「재판소구성법」은 한국 사법사상 최

초로 행정기관과 재판기관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였다. 1894년 군국기무처는 각급 행정기관의 사법권을 몰수, 폐지하는데 그쳤다면, 「재판소구성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고 재판소를 중심으로 각급 재판소를 지역별, 심급별로 구분하고 모든 소송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형벌의 종류에 따라서 재판기관을 달리하던 조선시대의 재판제도는 폐지되었다.

둘째,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판사무만을 전담하는 사법관 제도를 창설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수령, 관찰사 등의 행정 관료가 사법사무를 겸행^{兼行}하였으나, 「재판소구성법」은 각급 재판소에 판사와 검사를 별도로 배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특히, 판사와 검사는 사법관 시험에 합격한 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 전문가의 자격을 법정^{法定}화하였다.

셋째, 신속히 재판할 수 있도록 소송의 개시 요건과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승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통 소송에서는 피고를 소환하는 책임이 원고에게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개시되지 못하거나 지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정리규칙」에서 원고와 피고 등의 소환 책임이 국가기관에 있다는 점이 선언되었고, 더 나아가 재판소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만을 수용하여 판결하는 결석판결제도가 시행되었다.

넷째, 개인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권리를 국가가 대신 실현하여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민형소송규정」에서는 확정판결, 심급제도, 강제집행제도 등이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들은 승소자의 권리를 신속히 확정하고 확정된 권리를 국가가 대신 변제하여 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권리자 본위의 소송제도였다.

다섯째,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분리함으로써 소송 관계인들의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다. 조선시대 소송에서는 민사와 형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민사소송에서도 고신과 구금이 동반되는 사례가 많았다. 「민형소송규정」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여 소송 관계인들의 자유, 생명,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비록 고신과 구금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고신절차, 고신의 도구 및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과거에

비해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공개재판을 선언함으로써, 소송 관계인 및 일반인들이 재판을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조선시대의 재판에서는 인민이 방청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서 피고인들이 가혹한 고문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였는데, 공개재판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소송과정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부당한 대우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곱째, 사법 사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서기와 정리延吏의 배치를 명문화하였다. 재판소 서기와 정리는 재판의 개시, 진행, 판결, 집행 등 소송의 전 국면에서 재판사무를 보조함으로써 재판이 원활히 진행,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재판소의 구성

「재판소구성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우선 각급 재판소의 관할 및 권한을 각각 규정하였다. 즉, 재판소를 지방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 5종으로 구분하고 각급 재판소가 소관 사무에 관해서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지방재판소는 제1심 재판기관으로서,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민사 및 형사사건을 관장하였다. 이 규정은 형벌의 경중에 따라서 재판기관(직수아문, 비직수아문)을 달리 한 조선왕조의 사법체계와는 달리 심급에 따라서 재판의 관할이 구획되었음을 보여 준다.

지방재판소는 단독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2인 이상의 판사가 있을 때는 판사는 단독 혹은 합석하여 사건을 심리한다. 만약 2인 이상의 판사가 동석하는 경우에는 수반판사가 재판을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판사 간에 서로 의견을 달리할 때는 수반판사의 의견에 따라서 판결한다. 지방재판소의 판사가 신병身病이나 특별한 사정으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때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법무대신의 지휘

를 받도록 하였다. 지방재판소에는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延吏를 두었으나 이들의 자격과 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법무대신은 지방의 형편에 따라서 지방재판소 지청을 설치할 수 있었다.¹

한성 및 개항장재판소(인천, 부산, 원산)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민사 및 형사재판과 외국인과 조선인 사이의 민·형사 사건을 관장하였다. 해당 재판소에는 지방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판사, 검사, 서기, 정리延吏를 두되 판사와 검사는 「사법관시험규칙」에 의하여 시험을 거친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법무대신이 추천奏薦하고 국왕이 임명하였다. 한성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지방재판소와는 다르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관을 임용하려고 하였다. 이는 한성재판소와 개항장재판소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판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전문 법학 지식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임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순회재판소는 부산재판소, 원산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체의 민사 및 형사의 상소를 담당하였다. 순회재판소는 상설재판소가 아니라 매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법무대신이 지칭하는 장소에서 개청하는 임시 기관이었다. 순회재판소의 재판권은 단석판사가 행사하되, 2인 이상의 판사를 두는 경우에는 단석 또는 합석으로 심리하였다. 순회재판소에는 판사, 검사, 서기, 정리를 두고, 판사는 법무대신의 추천에 의해서 고등재판소 판사, 한성재판소 판사, 법무 칙·주임관 및 별정한 사법관시험규칙에 의해서 판사가 된 자 중에서 국왕이 임시로 임명하였다. 검사는 한성재판소 검사, 법무 칙·주임관, 별정한 사법관시험규칙에 의해서 검사가 된 자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시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순회재판소는 관할하는 하급심 재판소에 대해서 직무상 특별한 권한이 있다. 순회재판소는 재판 및 검찰사무에 대해서 관할 재판소의 법률 해석 및 적용상의 오해와 착오를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각 재판소의 판사, 검사 및 기타 관리가 직무상 비위가 있을 때는 그 실상을 조사하여 법무대신에게 보고할 수 있었다.

고등재판소는 한성재판소와 인천재판소에서 행한 판결에 불복한 상소

1 「裁判所構成法(법률 제1호, 1895.3.25.)」, 『구한국관보』, 1895년 3월 25일.

를 담당하였다. 고등재판소 직원으로는 재판장 1인, 판사 2인, 검사 2인, 서기 3인과 정리廷吏를 두었으며 합의재판을 하였다. 그러나 순회재판소가 언제 설치될지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재판소를 개설할 때까지는 당분간 감영, 유수영 및 기타 지방(각 개항장재판소 및 각 지방재판소)에서 행한 판결에 대한 상소심도 고등재판소가 관할하는 등 최고 재판소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² 그러나 고등재판소의 재판장을 법무대신 또는 법무협관이 겸임하였기 때문에 고등재판소가 법부와 분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고등재판소 판사는 법부의 칙·주임관 또는 한성재판소 판사 중에서 국왕이 직접 임명하였다. 다만, 협관 이하는 내각총리대신을 거쳐서 법무대신이 추천奏薦하였으며 검사는 법부 검사국장 및 검사국 소속 검사 중에서 법무대신이 임명하였다. 이와 함께 1895년 5월 20일에는 칙·주임관의 범죄는 당분간 고등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하도록 하였다.³

특별법원은 왕족의 범죄에 관한 형사사건만을 관할하는 특별기구였다. 특별법원은 법무대신이 추천한 후에 국왕의 재가를 거쳐서 임시로 개정하였다. 특별법원은 합의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재판장 1인과 판사 4인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장은 법무대신으로 총원하고 판사 중에서 1인은 중추원 의관議官으로 임명하며, 3인은 고등재판소 판사, 한성재판소 판사 또는 법부 칙·주임관 중에서 법무대신의 추천奏薦에 의하여 국왕이 임시로 임명하였다. 특별법원의 검사의 직무는 고등재판소 검사 또는 법무대신이 지명[命持]하는 검사가 행하고 서기의 직무는 고등재판소의 서기가, 정리는 고등재판소의 정리가 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법원은 단심제로, 재판에 불복하여 상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⁴

2 監營·留守營及其他地方裁判의 上訴를 高等裁判所에서 受理 審判하는 件(법률 제7호, 1895.4.29.) 『구한국관보』, 1895년 5월 2일; 『監營·留守營及其他地方裁判의 上訴를 高等裁判所에서 受理 審判하는 件 改正(법률 제8호, 1896.8.15.)』 『구한국관보』, 1896년 8월 18일.
 3 「勅·奏任官의 犯罪를 受理審判하는 件(법률 제8호, 1895.5.20.)」 『구한국관보』, 1895년 5월 22일. 고등재판소는 1896년 4월 4일에 반포된 「형률명례」에 의하여 국사범에 관한 재판도 담당하였다. 이는 고등재판소가 최고재판소이면서 구제도 하의 의금부가 담당했던 국왕재판소로서의 기능까지 겸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면회, 『한국근대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170쪽)
 4 1895년 4월 14일에 법부고시 제2호로 특별법원이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 특별법원은 법부 소속의 前 권설재판소로 하여금 이준용 등의 형사 피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特別法院을 臨時로 開廷하는 件(법부고시 제2호, 1895.4.14.)」 『구한국관보』, 1895년 4월 15일.

이상으로, 「재판소구성법」에 의해서 재판 기구가 새롭게 창설되었다.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비롯한 유관 법령들은 전통 소송에서 탈피하여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다만, 신식 소송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주체는 고등재판소가 아니라 법부였다. 고등재판소는 직제, 인력, 권한 등의 한계로 인하여 독자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었다. 그 역할은 법부가 맡았다. 1895년 「법부관제」에 따르면, 법무대신은 사법행정, 은사 및 복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검찰사무를 지휘하였다. 특히, 법무대신은 특별법원을 비롯하여 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⁵ 이 시기 고등재판소는 법부의 소속기관에 불과하였고 법부는 사법개혁의 총괄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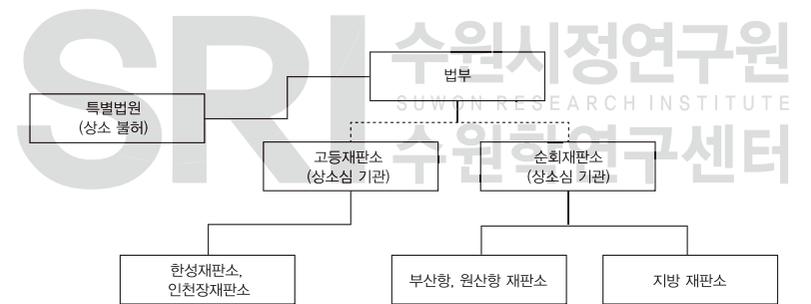


그림 1 1895년 재판소구성법 및 법부관제에 의한 재판 체계
 순회재판소는 개설된 적이 없기 때문에 각급 재판소의 상소심은 고등재판소가 맡았다.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소송제도는 사법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당시 한국에는 사법개혁을 주도할 만한 법률가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고, 각급 재판소에 재판실무에 능숙한 전문가가 배치되지도 않았다. 한국정부는 당분간 법부를 감독 기관으로 유지하면서, 각급 재판소에 일일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는 과도적인

5 法部官制(칙령 제45호, 1895.3.25.) 『구한국관보』, 1895년 3월 25일.

조치였으며 향후 재판의 독립을 위한 제도개혁도 병행하여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재판소구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급 재판소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당시까지 군수와 관찰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대한 인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았는데 이 같은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속히 지방관을 대신할 재판기관이 만들어져야 하였다. 지방관들은 일반 행정권뿐만 아니라 징세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관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은 지방 통치의 자의성을 초래할 수 있었다.

둘째, 각급 재판소의 인력을 점진적으로 법률가들로 교체하여야 하였다. 「재판소구성법」 제56조는 지방재판소의 직원은 당분간은 지방관이 겸임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사법관시험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사와 검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이 조치는 법률가들이 아직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였으나, 향후 능력이 있고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그 졸업생들로 하여금 사법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는 한국 사법개혁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능자였다.

셋째, 각급 재판소의 판·검사가 재판사무를 공정히 처리하는데 필요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절차법규를 더욱 세밀하게 제정하는 법제개혁이 동반되어야 했다. 1895년도에 「민형소송규정」, 「집행처분규칙」, 「정리규칙」 등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제도상으로 미흡한 측면이 많이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판결에 필요한 민법과 형법을 제정하는 등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넷째, 고등재판소의 조직, 인력, 권한을 더 확대하고 직제상으로도 법부로부터 분리해야 했다. 「재판소구성법」은 고등재판소를 상설 기관이 아닌 임시 기관으로 규정하였고 인력도 재판장 1인, 판사 2인, 검사 2인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고등재판소 재판장을 법부대신이나 협관이 겸직하였고, 판사도 법부 칙·주임관 또는 한성재판소 판·검사 중에서 임명하는 등 법부와 고등재판소가 구분되지도 않았다. 사법의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고등재판소의 인력, 기능과 권한이 더 강해져야 했다.

3. 각급 재판소의 설치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된 독립 재판소가 개설되기 위해서는 판사, 검사, 서기, 정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와 관계된 각종 직제의 제정, 예산의 편성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였다. 한국정부는 이 같은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으나 신속히 후속 조치를 단행하였다. 우선, 1895년 4월 15일에 한성재판소를 설치하고,⁶ 한성부에서 접수한 민사, 형사소송으로서 아직 판결하지 못한 사건들을 모두 한성재판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⁷ 한국 역사상 최초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된 재판기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1895년 윤5월 15일부터 인천, 부산, 원산을 비롯해 모두 22곳에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를 점차 개설하도록 규정하였다.⁸ 그리고 종래 감영, 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던 재판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재판소가 접수·심판하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지방에도 독립 재판관을 설치하여 지방관의 재판권을 폐지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각급 재판소에 파견할 법률가들을 양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의 지방관들에게 재판권을 위임하는 유예 조치가 취해졌다. 즉, 법부는 1895년 6월 1일에 훈령 제2호를 발훈하여 각부의 관찰사가 판사 직무를, 참서관은 검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⁹ 그리고 지방재판소 지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해당 군수가 관내의 소송을 심리하되, 군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관찰사에게 상소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각급 재판소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려는 제도적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1895년 6월 25일에 각급 재판소에 판사시보 및 검사시보를 배치할 수 있도록

6 1895년 4월 15일에 한성부 중부(中部) 등천방(登天坊) 혜정교변에 설치되었다.

7 「漢城裁判所의 設置에 관한 件(법부령 제1호, 1895.4.15.)」, 『구한국관보』, 1895년 4월 16일.

8 「開港場裁判所 地方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칙령 제114호, 1895. 윤5.10.)」, 『구한국관보』, 1895년 윤5월 12일.; 「開港場裁判所 및 地方裁判所의 管轄區域에 관한 件(법부령 제5호, 1895. 윤5.12.)」, 『구한국관보』, 1895년 5월 13일.

9 「各部觀察使·參書官·郡守가 判檢事務를 執行하는 件(법부훈령 제2호, 1895.6.1.)」, 『구한국관보』, 1895년 6월 11일.

하였다.¹⁰ 판사시보 및 검사시보의 인원 및 배치는 사무의 번한(繁閑), 경중(輕重)에 따라서 범부대신이 정하였다. 8월 10일에는 각 관찰부에도 판·검사 시보를 두도록 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이로써 관찰부에도 전임직 사법관이 배치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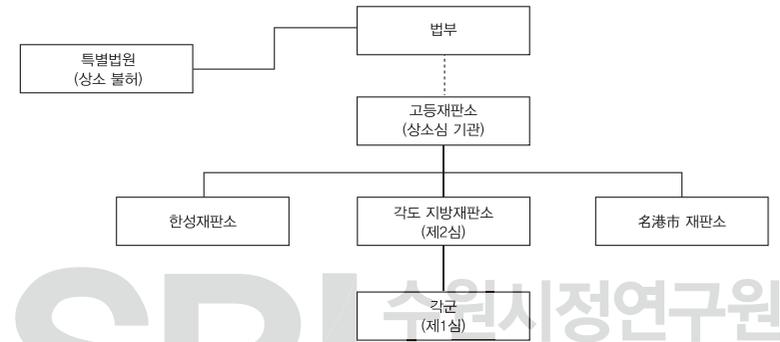


그림 2 재판기관의 정비

한편, 중요 소송을 처리하는 절차도 보완하였다. 1895년 윤5월 28일에 한성재판소, 개항장재판소, 지방재판소는 ① 심리한 형사사건에서 유종신, 징역종신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심리한 형사사건에서 범죄의 정상(正狀)이 작량(作量)감경할 만하다고 판단될 때, ③ 민사, 형사를 막론하고 법률과 법례의 적용상 의문점이 생길 때는 일체의 문서를 첨부하여 범부에 지령을 청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다.¹¹ 「재판소구성법」에서는 각급 재판소가 관할 내의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범부령 제6호는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재판소가 사전에 범부에 보고한 후에 그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조치는 각 재판소에 법률 전문가가 아직 배치되지 않았고 신식 법령

10 「裁判所에 判事試補 檢事試補를 置하는 件(법률 제12호, 1895.6.25.)」, 『구한국관보』, 1895년 6월 27일. 판사시보와 검사시보는 판사 및 검사를 보조하고 또 그 사무를 서리(署理)할 수 있었다.

11 「漢城·開港場·地方裁判所의 民刑事事件 審理中 指令을 請하여 行하는 件(범부령 제6호, 1895년 윤 5.28)」, 『구한국관보』, 1895년 6월 1일.

과 구래의 법령이 뒤섞여 법령의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였다. 다만, 고등재판소가 최고 재판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판권과 법률에 대한 해석권이 보장되어야 했으나 범부령 제6호는 고등재판소를 배제하였다. 당시 고등재판소는 직제상으로는 임시기관이었고 배치인력도 소수였기 때문에 각 재판소에서 제기되는 각종 법률적 문제들을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896년 1월 11일에는 칙령 제5호를 제정하여 상소절차를 정비하였다. 이 칙령은 '당분간' 지방의 편의에 따라서 각 군수로 하여금 관할 내의 일체의 소송을 청리(聽理)하게 하되, 군수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개항장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상소하고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 판결에 불복하는 자는 순회재판소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고등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² 이에 따라 민·형사 소송은 각 군 → 각 개항장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 → 고등재판소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갑오정부는 1896년 1월 20일에 범부고시 제2호를 제정하여 "개항장 및 지방재판소를 오늘부터 30일 이내에 점차로 개설"하기로 공표하였다. 이 고시는 전국 23곳에 달하는 독립 재판소의 개설을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전진이었다.

표 1 개설이 확정된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

구분	재판소(위치)
개항장재판소(3곳)	인천재판소(인천), 부산재판소(동래), 원산재판소(원산)
지방재판소(20곳)	충주재판소(충주), 홍주재판소(홍주), 공주재판소(공주), 전주재판소(전주), 남원재판소(남원), 나주재판소(나주), 제주재판소(제주), 진주재판소(진주), 대구재판소(대구), 안동재판소(안동), 강릉재판소(강릉), 춘천재판소(춘천), 개성재판소(개성), 해주재판소(해주), 평양재판소(평양), 의주재판소(의주), 강계재판소(강계), 함흥재판소(함흥), 갑산재판소(갑산), 鏡城재판소(鏡城)

출처 : 「開港場·地方裁判所를 開設하는 件(범부고시 제2호, 1896. 1. 20.)」, 『구한국관보』, 1896년 1월 22일. 「咸興裁判所設置에 관한 件(칙령 제4호, 1896. 1. 11.)」, 『구한국관보』, 1896년 1월 15일.

12 「各郡都守로 該官內訴訟을 聽理케 하는 件(칙령 제5호, 1896. 1. 11.)」, 『구한국관보』, 1896년 1월 15일.

그러나 법무고시가 공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1896년 2월 11일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이 발생하였다. 아관파천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던 친일 성향의 갑오정권을 붕괴시켜 버렸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직후에 조희연, 권형진, 이두황 등 을미사변 관계자들을 참수하라는 조칙을 내리고 김홍집, 어윤중, 김윤식, 유길준, 장박, 정병하, 이재면 등 김홍집 내각의 주요 대신들을 모두 면직시켰다. 김홍집·어윤중·정병하는 분노한 인민들에게 의해서 살해되었고, 내부 대신 유길준(俞吉濬)을 비롯한 10여 명의 고관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고종은 친일정권을 붕괴시키고 그동안 은신 중이었던 친러·친미파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여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 결과 법무대신과 경무사를 겸임하게 된 이범진을 비롯하여 이완용, 이윤용, 박정양, 조병직, 윤용구, 이재정, 안경수, 권재형, 윤치호, 고영희 등이 요직에 임명되었다.

이 같은 권력 구조의 변화를 계기로 사법제도 개혁의 방향도 변화하였다. 전국 23곳에 독립 지방재판소를 개설할 것을 선언한 법무고시가 사실상 무효화되었고, 이에 따라서 군수와 관찰사의 재판권도 계속 유지되었다. 특히, 제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소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회재판소는 끝내 설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종은 지방제도도 전국 23부를 13도로 다시 복구(復舊)하고 각도에 관찰사를 두었다. 한성에는 특별히 1부(府)를 설치하고 판윤이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광주, 개성, 강화, 인천, 동래, 덕원, 경흥에는 부윤을, 제주에는 목사를, 13도 아래에는 등급에 따라서 군수를 두었다. 이에 따라서 경기 38군, 충북 17군, 충남 37군, 전북 26군, 전남 33군, 경북 41군, 경남 30군, 황해 23군, 평남 23군, 평북 21군, 강원 26군, 함남 14군, 함북 10군 등이 설치되었다.¹³

1896년 8월 15일에는 23부제를 기초로 하여 설치한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를 폐지하고 새로 개장재판소, 지방재판소를 설치하여 기존 재판소에서 수리하던 문부 및 죄수와 일체의 기구를 부근의 신설 재판소로 이

속시키도록 하였다.¹⁴ 곧이어 8월 27일에 각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위치와 그 관할구역을 <표 2>와 같이 정하였다. 지방재판소 설치를 선언한 법무고시 제2호가 사실상 폐기되었다.

표 2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재판소명	위치	관할구역
인천항재판소	인천	인천
부산항재판소	부산	동래
원산항재판소	원산	덕원
경흥항재판소	경흥	경흥
한성재판소	한성	한성, 광주, 개성, 강화, 수원, 여주, 양주, 장단, 통진, 파주, 이천, 부평, 남양, 풍덕, 포천, 죽산, 양근, 삭녕, 안성, 고양, 김포, 영평, 마천, 교하, 가평, 용인, 음죽, 진위, 양천, 시흥, 지평, 적성, 과천, 연천, 양지, 양성, 교동(4부 34군)
충청북도재판소	충주	충주, 청주, 옥천, 진천, 청풍, 괴산, 보은, 단양, 제천, 회인, 청안, 영춘, 영동, 황간, 청산, 영평, 음성(17군)
충청남도재판소	공주	공주, 홍주, 한산, 서천, 면천, 서산, 덕산, 임천, 홍산, 은진, 태안, 온양, 대흥, 평택, 정산, 청양, 회덕, 진잠, 연산, 노성, 부여, 석성, 비인, 남포, 결성, 보령, 해미, 당진, 신창, 예산, 전의, 연기, 아산, 직산, 천안, 문의, 목천(37군)
전라북도재판소	전주	전주, 남원, 고부, 김제, 태인, 여산, 익산, 금산, 임피, 금구, 함열, 부안, 무주, 소창, 임실, 진안, 진산, 만경, 용안, 고산, 옥구, 정읍, 용담, 운봉, 장수, 구례(26군)
전라남도재판소	광주	광주, 순천, 나주, 영암, 영광, 보성, 흥양, 장흥, 함평, 강진, 해남, 무장, 담양, 능주, 낙안, 무안, 남평, 진도, 흥덕, 장성, 창평, 광양, 동복, 화순, 고창, 옥과, 곡성 완도, 지도, 돌산(30군)
경상북도재판소	대구	대구, 상주, 경주, 성주, 의성, 영천, 안동, 예천, 금산, 선산, 청도, 청송, 인동, 영해, 순흥, 칠곡, 풍기, 영덕, 용궁, 하양, 영천, 봉화, 청하, 진보, 군위, 의흥, 신녕, 연일, 예안, 개령, 문경, 지례, 함창, 영향, 흥해, 경산, 자인, 비안, 현풍, 고령, 장기(41군)
경상남도재판소	진주	진주, 김해, 밀양, 울산, 의령, 창령, 창원, 거창, 하동, 합천, 함안, 함양, 고성, 양산, 언양, 영산, 기장, 거제, 초계, 곤양, 삼가, 칠원, 진해, 안의, 산청, 단성, 남해, 사천, 웅천(29군)
황해도재판소	해주	해주, 황주, 안악, 평산, 봉산,延安, 곡산, 서흥, 장연, 재령, 수안, 백천, 신천, 금천, 문화, 풍천, 신계, 장연, 송화, 은율, 토산, 웅진, 강령(23군)

13 「地方官吏職制(칙령 제37호, 1896.8.4.)」, 『구한국관보』, 1896년 8월 6일; 「地方制度官制俸給經費改正(칙령 제36호, 1896.8.4.)」, 『구한국관보』, 1896년 8월 6일.

14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개정 개설에 관한 건(칙령 제55호, 1896.8.15.)」, 『구한국관보』, 1896년 8월 18일;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건(법부령 제5호, 1896.5.25.)」, 『구한국관보』, 1896년 8월 27일.

재판소명	위치	관할구역
평안남도재판소	평양	평양, 중화, 용강, 성천, 함중, 삼화, 순천, 상원, 영유, 강서, 안주, 자산, 속천, 개천, 덕천, 영원, 은산, 양덕, 강동, 맹산, 삼등, 증산, 순안(23군)
평안북도재판소	정주	이주, 강계, 정주, 영변, 선천, 초산, 창성, 구성, 용천, 철산, 삭주, 위원, 벽동, 가산, 광산, 희천, 운산, 박천, 태천, 자성, 후창(21군)
강원도재판소	춘천	춘천, 원주, 강릉, 회양, 양양, 철원, 이천, 삼척, 영월, 평해, 통천, 정선, 고성, 간성, 평창, 금성, 울진, 흙곡(歙谷), 평강, 김화(金化), 화천, 홍천, 양구, 인제, 횡성, 안협(安峽)(26군)
함경남도재판소	함흥	함흥, 서천, 영흥, 북청, 안변, 정평, 삼수, 갑산, 장진, 이원, 문천, 고원, 홍원(13군)
함경북도재판소	鏡城	길주, 회령, 종성, 경성(鏡城), 경원, 온성(穩城), 부령, 명천, 무산(9군)
제주목재판소	제주	제주, 대정, 정의(3군)

출처 : 『開港場裁判所 및 地方裁判所의 位置를 改正하는 件(법부령 제4호, 1896. 8. 27.)』, 『開港場裁判所 및 地方裁判所의 管轄區域을 改正하는 件(법부령 제5호, 1896. 8. 27.)』, 『구한국관보(1896. 8. 27.)』.

한성재판소에서 관할하던 경기도 3부 34군의 상급재판은 1897년 9월 경기재판소를 설치하면서 한성재판소에서는 한성 5서의 재판사무를 담당하고, 경기재판소에서 경기 일원 각 군의 상소심을 맡는 것으로 관할구역을 개정하였다. 이때 설치된 경기재판소의 위치는 한성부 중서 평시서(平市署) 자리였다.¹⁵

이후 개항장이 늘어남에 따라 1897년 10월 5일에 칙령 제36호로 무안과 삼화에 개항장 재판소를 설치하였고 1899년 5월 22일 칙령 제21호로 창원, 성진, 옥구항 재판소와 평양시 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같은 해 5월 25일 법부령 제3호 및 제4호로 이들 신설 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 무안군, 삼화군, 창원군, 성진군, 옥구군에서 관장하던 각종 기록 및 죄수를 해당 재판소로 이속하였다.¹⁶ 이로써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따른 재판체계는 정비되었다.

그러다가 1898년 2월에는 법무대신 이유인이 주도하여 한성재판소를 아예 폐지하고 한성부에 합설해 버렸고, 경기재판소¹⁷는 설치되자마자 폐지되

15 칙령 제37호, 「경기재판소 설치에 관한 건」, 1897년 9월 12일, 『법령집』 II; 법부령 제6호, 「한성·경기 재판정소 위치를 하는 건」, 1897년 11월 1일, 『법령집』 II; 법부령 제7호, 「한성·경기재판소의 관할구역을 정하는 건」, 1897년 11월 1일, 『법령집』 II.

16 법원사편찬위원회, 『법원사』, 법원행정처, 1995.

어 경기관찰부로 합설하였다. 이후 한성부를 제외하면 1907년까지 독립 지방재판소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는 법무대신을 비롯한 사법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서구 사법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한국정부는 1898년 2월 9일 칙령 제4호로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를 폐지하였다.¹⁸ 그리고 같은 날 칙령 제5호를 발령하여 한성부 재판소가 한성 5서 내의 모든 민사형사소송을 수리하도록 하였다.¹⁹ 칙령 제6호에서는 경기도관찰부에 경기도재판소를 설치하고 판사는 관찰사가 겸임하며, 관할구역은 인천부를 제외한 경기도 3부, 34개군에서 불복한 상소를 심리케 하였다.²⁰ 이 조치에 의하여 독립 재판소들이 모두 폐지되고 말았다. 그런데 1899년 4월 경기관찰사 김영덕(金永惠)이 사직소를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아 경기재판소의 소송안 판결이 적체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참다못한 도민들이 고등재판소에 직소(直訴)하였는데 고등재판소에서 도결(道決)이 없는 소장은 받을 수 없다며 퇴각하는 바람에 민원이 자자하자, 법무에서 고등재판소에 지시하여 경기도의 민소(民訴)는 도의 판결이 없어도 접수하도록 하였다.²¹

사법권과 행정권이 분리되고 재판 절차가 체계화된 것은 통감부가 ‘시정 개선’의 미명하에 재판제도를 정비하면서부터이다. 통감부는 1907년 12월 23일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여 구(舊)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을 설치하고, 각급 재판소의 직제와 업무분장을 구체화하였다. 제1심 재판을 관할하는 구(舊)재판소에서는 민사에 관해 ① 200환 이하의 금액 및 가액(價額)을 목적으로 한 소송, ② 건물의 사용이나 수선을 목적으로 한 임

17 1897년 9월 12일에 경기재판소가 설치되었고 경기도의 각 부군(3부 34개군)에서 불복하는 상소안건을 청리(聽理)하였다. 이로써 한성부가 관할하던 경기도의 각군의 소송에 대하여 경기재판소가 상소심 재판소로서 가능하게 되었다. 한성재판소에 이어서 독립 재판소가 또 하나 설치된 것이다. 경기재판소는 11월 1일 한성부 중서 전 평시서에 설치되었는데 광주 개성 등 38개군을 관할하였다. 경기재판소의 직원으로는 수판판사 1인(민사), 판사 1인(형사), 서기 4인으로 구성되었다. 『京畿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칙령 제37호, 1897.9.12.)』, 『구한국관보』, 1897년 11월 1일; 『漢城京畿裁判所位置를定하는件(법부령 제6호, 1897.11.1.)』, 『구한국관보』, 1897년 11월 20일; 『漢城京畿裁判所의 管轄區域을 定하는件(법부령 제7호, 1897.11.1.)』, 『구한국관보』, 1897년 11월 20일.

18 『구한국관보』, 1898년 2월 11일.

19 『漢城府裁判所의 官制와 規程에 關한 件(칙령 제5호, 1898.2.9.)』, 『구한국관보』, 1898년 2월 11일.

20 『京畿裁判所를 京畿觀察府에 設置하는件(칙령 제6호, 1898.2.9.)』, 『구한국관보』, 1898년 2월 12일.

21 『황성신문』, 1899년 4월 17일, 잡보.

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 ③ 토지의 경계를 목적으로 한 소송, ④ 점유에 관한 소송, ⑤ 고용계약에 관한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소송, ⑥ 객과 여점(客店) 혹은 음식점 간의 숙박료나 음식료를 목적으로 한 소송 및 객으로부터 여점이나 음식점에 임치한 금전이나 기타 물품에 관한 소송, ⑦ 여객과 운수인 간의 운임료를 목적으로 한 소송을 담당하고, 형사로는 금옥(禁獄), 태형(笞刑)이나 벌금에 상당한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구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는 각기 재판소나 검사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직무 범위 내에서 서기과를 지휘 감독하며, 검사 직무는 경찰관이나 서기가 담당할 수 있었다. 지방재판소에서는 제1심으로 구재판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민형사 소송 및 대심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형사 소송, 제2심으로 구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민형사 공소 및 항고심을 담당하였고, 황족에 대한 민사 소송의 제1심 재판은 경성지방법판소에서 관할하였다.²²

재판소 설치의 최고 심급기관으로 대심원을 한성부에 두고, 그 산하에 공소원 3개소, 지방재판소 8개소, 구재판소 113개소를 분속하였다. 경성지방법판소에는 경성구재판소를 비롯하여 경기도 수원·과주·개성·연천·포천·김포·인천·강화·안성·광주·이천·여주 등 12개 구재판소와 강원도의 8개 구재판소를 설치하고, 구재판소별 관할 범위를 확정하였다. 수원구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은 수원군과 안산·남양·과천·시흥·진위군 등이었다.²³ 그리고 이들 각급 재판소가 개청할 때까지 민형사 소송은 종래 재판소 및 군수가 종전 규정대로 처리하고, 재판소를 개청하는 대로 관할 재판소로 이관하도록 하였다. 재판소 개청 전에 군수가 담당하던 재판도 해당 관할 구재판소에서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²⁴

1908년 8월 1일자로 대심원과 3개 공소원, 8개 지방재판소, 16개 구재판소가 문을 열고 소관 업무를 개시하였다.²⁵ 그러나 전국 113개 구재판소 가운데 16개소만 개청되는 등 구재판소의 개청이 늦어지자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여 구재판소가 담당하는 형사 재판권을 10개월 이하의 징

22 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 1907년 12월 23일, 『법령집』 VI.
 23 법률 제10호, 「재판소설치법」, 1907년 12월 23일, 『법령집』 VI.
 24 법률 제9호, 「재판소구성법시행법」, 1907년 12월 23일, 『법령집』 VI.

역, 금옥, 태형,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범죄로 변경하고, 미개청 구재판소의 사무 처리를 관할지방재판소나 관할구역 내 다른 구재판소에서 전부 혹은 일부를 담당하도록 하였다.²⁶ 이에 따라 경성지방법판소 관할 미개청 구재판소의 사무는 1908년 8월 1일 개청한 경성구재판소와 인천구재판소에서 분담하였다. 경성구재판소에서는 아직 개청하지 못한 수원구재판소를 비롯하여 과주·개성·연천·포천·안성·광주·이천(利川)·춘천·이천(伊川)·통천·금성구 재판소의 형사재판을 관할하였다.²⁷ 이 무렵 『대한매일신보』에는 “8월 각 재판소 개청식에 이어 9·10월에 제2회 개청식이 있을 예정이며, 이때 경기도 수원구재판소와 개성구재판소가 설치될 것”이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는데,²⁸ 신문 보도대로 1908년 10월 30일 수원구재판소가 개청하여 관할구역 재판업무 외에 미개청 구재판소인 안성·이천·여주 구재판소의 재판사무를 담당하였다.²⁹

한편 통감부는 1909년 7월 24일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를 일본국정부에 위탁하는 건에 관한 각서」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온 사법 및 재판 관련법 일체를 폐지하고, 동년 10월 16일 「통감부재판소령」을 공포하여 한국 민·형사 재판을 장악하였다. 통감부재판소는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및 고등법원으로 구성되며, 구재판소에서는 한국인이 범한 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벌금·태형 또는 구류형에 해당하는 죄, 한국형법대전 제592조, 595조, 596조, 601조, 603조, 161조, 617조의 죄와 이 죄에 해당하는 장물을 나누거나 매득·수기(受賄)한 죄, 한국형법대전 제644조의 죄에 해당하는 재판을 집행하였다.³⁰ 통감부재판소의 위치와 관할구역도 변경되어 경성지방법판소 산하 수원구재판소에서는 수원군과 시흥군·과천군·광주군·용인군·진위군·남양군·안산군의 관할 재판사무를 담당하게 되었다.³¹

25 법부령 제11호, 「각재판소 개청기일」, 1908년 7월 20일, 『법령집』 VII.
 26 법률 제17호, 「재판소구성법 개정」, 1908년 7월 23일, 『법령집』 VII; 법률 제18호, 「미개청구(未開廳區) 재판소사무처리에 관한 건」, 1908년 7월 24일, 『법령집』 VII.
 27 법부령 제13호, 「미개청구재판소사무처리에 관한 건」, 1908년 7월 24일, 『법령집』 VII.
 28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4일, 잡보.
 29 법부령 제17호, 「미개청구재판소사무처리에 관한 건 개정」, 1908년 10월 31일, 『법령집』 VII.
 30 칙령 제236호, 「통감부재판소령」, 1909년 10월 16일, 『통감부법령자료집』 하.
 31 통감부령 제28호, 「통감부재판소의 명칭 위치 급 관할구역표」, 1909년 10월 21일, 『통감부법령자료집』 하.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895년 9월 21일 수원-한성

역문

제147호

판결서

수원水源 용주사龍珠寺 주승住僧
원고 상순尙淳중부中部 개성동開成洞 전前 수문장守門將
피고 김종우金鍾佑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어음전於音錢 엽전 233냥兩 6전錢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남의 돈을 맡고서 시일을 끌며 갚지 않고 공연히 어음을 주며 책임 떠넘기기만을 일삼고 있으니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5년 9월 21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최준식崔俊植

서기 목원성睦源晟

원문

第一百四十七號

判決書

水原 龍珠寺 住僧

原告 尙淳

中部 開成洞 前守門將
被告 金鍾佑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於音錢 葉貳佰參拾參兩陸錢을 辦償하미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하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하 줄을 認흠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
供은 任人之錢하야 延拖不報하고 空給於音하야 專事推諉하 故로 正當이
라고 하미 可치 아니하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理由가 有하

開國五百四年 九月 二十一日

漢城裁判所

判事 崔俊植

書記 睦源晟



1896년 7월 4일 수원-한성

역문

제133호

판결서

수원군水原郡 팔탄면八灘面 발안리發安里 농민農民

원고 임성태林聖泰

서부西部 남정동藍井洞 가궤家儉

피고 이대근李大根

서부西部 도동桃洞 평민平民

피고 정계환鄭季煥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 원문은 '賈告'이나 문맥상 '原告'로 번역하였다.

원고의 진술[陳供]은, “약정한 집값 당오전當五錢 1,176냥兩은 전혀 마련해 주지 아니하고 그 증서[票紙]를 억지로 빼앗아 찢어 버렸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집주인 김면제金冕濟가 독약을 먹고 자살한 후에 그 집을 유족[屍親]과 이웃들[隣里]이 서로 의논하여 팔아 버리고 장사를 지냈으니 집을 팔아 값을 받으려고 증표를 작성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억지로 돈을 받아내려고 끊임없이 소송을 일삼으니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896년 7월 4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윤경규尹庚圭

서기 윤성보尹性普

원문

第三百三十三號

判決書

水原郡 八灘面 發安里 農民

原告 林聖泰

西部 藍井洞 家儉

被告 李大根

西部 桃洞 平民

被告 鄭季煥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함 訴訟費用 費告의 擔當함

理由

被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을 認흞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
供은 約定한 家舍價 當五錢 一千一百七十六兩을 全不拈据하고 票紙을 勒
奪扯裂이라 하나 家主 金冕濟가 飲藥自斃한 後에 該家을 屍親과 隣里가
共議斥賣하야 葬事을 經紀하얏스니 賣家越價홀줄노 成票한거슨 自歸勿論
이어늘 强要推錢하야 健訟不已한 然故로 正當이라고 흞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被告의 訴答은 其理由가 有흞

建陽元年 七月 四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書記 尹性普



003



집세[家貴錢]에 관한 건

1896년 9월 7일 수원-한성

역문

제387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과부[寡女]

원고 김조이[金召史]

서부西部 포동布洞 전 감찰監察

피고 유원성柳遠聲

남부南部 남산동南山洞 전 진사進士

피고 어윤홍魚允興

판결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유원오柳元五에게 받을 빚이 있어서 그 가옥[家舍]을 빼앗았더니, 피고 둘이 서로 짜고 세를 들었다고 핑계 대고 저에게 돌

려주지 않아, 그러면 장차 모든 것을 잃게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정소로訴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원고와 피고 그리고 증인을 대질심문하고 검토해 보니, 피고 어윤홍이 유원오에게 세를 받고 유원성은 어윤홍에게 세를 얻어서 원고와 피고가 무관한 적이 없음은 적확하여 의심할 것이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896년 9월 7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윤경규尹庚圭

서기 윤성보尹性普



京畿 水原郡 居 寡女

原告 金召史

西部 布洞 前監察

被告 柳遠聲

南部 南山洞 前進士

被告 魚允興

判決의 要旨

被告等은 原告 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흔

理由

被告等の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흔 줄을 認흔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有所捧債於柳元五하야 奪其家舍하엿더니 被告等이 兩相和應하야 稱謂貫入하고 不還矣如則將爲白失키로 有此呈訴터라하나 今此三造下質에 訂하니 被告 魚允興이 受貫於柳元五하고 柳遠聲은 得貫於魚允興하고 原被가 未嘗無關흔은 的確無疑흔 然故로 正當이라고 흔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被告等の 訴答은 其理由가 有흔

建陽元年 九月 七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書記 尹性普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6년 12월 17일 남양-한성

역문

제1024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南陽 무두리無斗里 상민商民

원고 김덕순金德淳

한성漢城 서부西部 서빙고西氷庫 평민平民

피고 서희엽徐熙燁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소금값 당오전當五錢 2,645냥兩 5전錢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갚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6년 12월 17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윤경규尹庚圭

서기 김정목金正穆

원문

第一千二十四號

判決書

京畿 南陽 無斗里 商民

原告 金德淳

漢城 西部 西氷庫 平民

被告 徐熙燁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鹽價 當五錢 二千六百四十五兩五錢을 辦償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을 認함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商業이 未旺하야 尙此未報라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함

建陽元年 十二月 十七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書記 金正穆



1897년 4월 23일 한성-수원

역문

민제335호

판결서

남서南署 필동筆洞 일본 상인[日商]

원고 천엽창운千葉昌胤

경기京畿 수원水原 평민平民

피고 김용기金溶驥

남서南署 필동筆洞 상민商民

피고 문용안文龍安

판결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가권家券을 전당잡히고 빌려 쓴 돈 600냥
兩에 관官에서 정한 이자를 합쳐서 720냥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여력이 없어 갚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고 외국인의 돈을 얻어 쓰고 기한이 지
나도록 갚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7년 4월 23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윤경규尹庚圭

주사 김정목金正穆

원문

民第三百三十五號

判決書

南署 筆洞 日商

原告 千葉昌胤

京畿 水原 平民

被告 金溶驥

南署 筆洞 商民

被告 文龍安

判決의 要旨

被告等은 原告 訴求에 應하야 典質家券하고 價用錢 六百兩 具官邊 合
七百二十兩을 辦償함이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흠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을 認흠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

供은 力綿未報라하나 使人으로 立保하고 外國人의 錢을 得用하고 過限不
報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여 原告의 訴求는 其理
由가 有함

建陽二年 四月 二十三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主事 金正穆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897년 4월 29일 수원-한성

역문

민제399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부水原府 영통리靈通里 오위장五衛將

원고 오석선吳奭善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한성漢城 남서南署 장동長洞 상민商民

피고 서인화徐仁化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논값[番價]의 잔금 2,00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환퇴還退한 논값을 미루고 갚지 않았다고 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7년 4월 29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윤경규尹庚圭
주사 목원성睦源晟

원문

民第三百九十九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府 靈通里 五衛將
原告 吳奭善

漢城 南署 長洞 商民
被告 徐仁化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畚價 零條 二千兩을 辦償함이 可호 訴訟費用
은 被告의 擔當함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을 認호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
供은 還退호 畚價를 延拖不報호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建陽二年 四月 二十九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主事 睦源晟

007



가옥[家舍] 원림園林 소송에 관한 건

1897년 5월 21일 수원-수원

역문

민제513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포내면浦內面 농민農民

원고 이승서李承緒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포내면浦內面 전前 선전宣傳

피고 이유진李儒珍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증거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
고의 진술陳供은 “종족宗族의 우의를 빌미로 가옥과 원림園林을 늑탈하여
사려고 관정官庭에 터무니없이 소송하여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증거는 종중회의宗中會議의 첩보
牒報와 해당 군의 판결斷案로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원고는) 경향京鄕에
분소奔訴하여 다시 소송을 일삼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897년 5월 21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윤경규尹庚圭
주사 이희정李喜楨

원문

民第五百十三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浦內面 農民

原告 李承緒

京畿道 水原郡 浦內面 前宣傳

被告 李儒珍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함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함

理由

被告의 主張은 證據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을 認함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
供은 宗族之誼에 勒奪圖買之家舍園林하라고 官庭에 誣訴하야 流離之境
이라하나 被告의 證據는 宗中會議牒報와 該郡斷案이 的確이거늘 京鄉奔
訴하야 更爲健訟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가치 아니하니 因하야 被告
의 訴答은 其理由가 有함

建陽二年 五月 二十一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主事 李喜楨

008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897년 6월 15일 남양-남양

역문

민제615호

판결서

남양군南陽郡 천등리天登里 사과司果

원고 이찬규李瓚奎

남양군南陽郡 천등리天登里 평민平民

피고 김원철金元七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빚진 돈(債錢)의 잔금 2,868냥兩 3전錢을 갚
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자연히 기한이 지나 갚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
연히 갚아야 할 돈을 갚지 않으려고 아무 이유도 없이 시끄럽게 하며 갚지
않은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7년 6월 15일

원문

民第六百十五號

判決書

南陽郡 天登里 司果

原告 李瓚奎

南陽郡 天登里 平民

被告 金元七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債錢 零條 二千八百六十八兩三錢을 辦償함이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흔 殊를 認흠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自然過限不報라하나 當報할 錢을 不報하라고 無端鬧起하고 不報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흠

建陽二年 六月 十五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主事 金正穆



1897년 7월 2일 한성-남양

역문

민제765호

판결서

서서西署 창동倉洞 유학幼學

원고 이수준李秀俊

경기京畿 남양南陽 유학幼學

피고 안순거安順舉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미리 지급한 소금값[鹽錢] 2,000냥兩을 수기手記에 따라서 3,500냥으로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述은 여력이 없어 갚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금값 2,000냥을 쓸 때 소금으로 올려 보내겠다고 약조하고 돈이든 소금이든 간에 갚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7년 7월 2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윤경규尹庚圭

주사 김정목金正穆

원문

民第六百十五號

判決書

南陽郡 天登里 司果

原告 李瓚奎

南陽郡 天登里 平民

被告 金元七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債錢 零條 二千八百六十八兩三錢을 辦償함이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흠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흔 殊를 認흠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自然過限不報라하나 當報할 錢을 不報하라고 無端鬧起하고 不報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흠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흠

建陽二年 六月 十五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主事 金正穆

010



위토位土 소송에 관한 건

1897년 7월 29일 평강-수원

역문

민제 호*

판결서

강원도江原道 평강平康 농민農民

원고 이관형李寬亨

수원水原 토진土津 평민平民

피고 서은숙徐殷淑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피고가) 위토位土를 도매盜賣했다고 사촌형 형수를 대신하여 이치에 어긋나게 소송을 일삼아 관계가 없는 사람無事시을 경향京鄕에 거짓으로 꾸며 소송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辨論]은 이유가 있다.

* 원문에 판결서 번호의 숫자가 없다.

1897년 7월 29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판사 윤경규尹庚圭
주사 김정목金正穆

원문

民第 號
判決書

江原道 平康 農民

原告 李寬亨

水原 土津 平民

被告 徐殷淑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함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함

理由

被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노 認함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位土를 盜賣라고 從嫂의 代로 非理로 健訟하야 無事人을 京鄉誣訴한 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被告의 訴答은 其理由가 有함

建陽二年 七月 二十九日

漢城裁判所

判事 尹庚圭

主事 金正穆

011



부비전浮費錢에 관한 건

1897년 12월 25일 무주-수원

역문

민제139호

판결서

무주군茂朱郡 서기書記

원고 김재형金在亨

수원군水原郡 서울[京] 공동公洞 거류[留] 상민商民

피고 김원근金元根

판결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부비전浮費錢* 엽전 20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객지에서 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비浮費를 지급하기로 서로 약속하고는 시일을 끌며 주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 부비전(浮費錢) : 무슨 일을 하는 데 써서 없어지는 돈으로, 각종 비용 또는 부대비용이다.

1897년 12월 25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윤이병尹履炳
민사판사 장석운張錫運
주사 임병응林炳應

首班判事 尹履炳
民事判事 張錫運
主事 林炳應

원문

民第一百三十九號
判決書

茂朱郡 書記
原告 金在亨
水原郡 留京 公洞 商民
被告 金元根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浮費錢 葉二百兩을 辦償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한 주를 認함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客地에 無辦出之道라하느 浮費를 當給之意로 相約하고 延拖不給하느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함

光武元年 十二月 二十五日
漢城裁判所





1898년 4월 7일 한성-수원

역문

제59호

판결서

한성漢城 남문南門 밖 상민商民

원고 이성윤李聖允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상민商民

원고 김윤명金允明

한성漢城 한강漢江 상민商民

피고 이인순李仁淳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하여, 빼앗은 소금 80석石 4통筩을 돌려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변론[答]은, “원고가 가지고 있는 소금을 관찰부觀察府에 정소로訴

하고 순검巡檢*을 보내 거두어 갔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8년 4월 7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대리 판사 이계필李啓弼

판사 태명식太明軾

주사 정명섭丁明燮

원문

第五十九號

判決書

漢城 南門外 商民

原告 李聖允

京畿 水原郡 商民

原告 金允明

漢城 漢江 商民

被告 李仁淳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等 訴求에 應하야 勒奪한 鹽 八十石 四筩을 還給함이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 순검(巡檢) : 갑오개혁 때 신식 경찰제도가 실시되면서 설치된 경찰관직이다. 1894년(고종 31) 7월 경무청 관계직장 및 행정경찰장정에 의해 종전의 좌·우 포도청을 폐지하고 경무청을 신설함에 따라 설치되었다.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로 認흞 此에 對하야 被告의 答
供은 原告의 執任한 鹽을 觀察府에 呈하야 發巡檢收取라 然故로 正當이
라고 흞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흞

光武二年 四月 七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代辦判事 李啓弼
判事 太明軾
主事 丁明燮



1898년 4월 7일 남양-서산

역문

제60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평민平民
원고 정방헌鄭邦憲

충청남도忠淸南道 서산군瑞山郡, 현 거주지 京城 鍾峴 商民
피고 김준원金俊元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빌려 쓴 돈 당오전[當五] 합계 6,000냥兩 가
운데 3,000냥만 먼저 즉시 갚고 나머지는 문서와 장부를 자세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변론[答供]은, “원 · 피고의 문서와 장부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야 정
확히 가려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갚을 돈이 3,000여 냥만 되
는 줄로 어림잡아 헤아린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8년 4월 7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대리 판사 이계필李啓弼

판사 태명식太明軾

주사 정명섭丁明燮

首班判事 代辦判事 李啓弼

判事 太明軾

主事 丁明燮

원문

第六十號

判決書

京畿 南陽郡 平民

原告 鄭邦憲

忠清南道 瑞山郡 現居 鍾峴 商民

被告 金俊元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債用錢 當五 計六千兩內 三千兩만 先即辦償호고 其餘는 文簿覓考를 待호야 歸正함이 可호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호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로 認호 此에 對호야 被告의 答供은 兩隻文簿를 詳考然後에야 可以指的이라 호나 所報條가 三千餘兩만 되는줄을 臆量度호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호이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光武二年 四月 七日

漢城府裁判所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898년 4월 30일 한성-수원

역문

제107호

판결서

한성漢城 부친富泉 평민平民

원고 이범호李範虎

한성漢城 피마동避馬洞 현 거주지 수원군水原郡 포인庖人

피고 홍문홍洪文弘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어음전於音錢 당오전(當五) 합계 560냥
兩을 장사하여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의 지
금 형편이 집도 없이 매우 가난하니 밀천을 얻어 장사한 뒤에 추심해야 하고,
피고가 이미 당연히 갚겠다고 자복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8년 4월 30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태명식太明軾

주사 정명섭丁明燮

원문

第百七號

判決書

漢城 富泉 平民

原告 李範虎

漢城 避馬洞 今居 水原郡 庖人

被告 洪文弘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於音錢 當五 計五百六十兩을 待興販辦償함이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흠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其正直헌 줄로 認하나 被告의 現今事勢가 赤立無家
헛엇스즉 得資興販흠을 待하야 推捧흠이 可하고 被告가 既以當報로 自服
헛엇스즉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흠

光武二年 四月 三十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太明軾

主事 丁明燮



논 소송[審訟]에 관한 건

1898년 8월 11일 한성-수원

역문

{광2민517호}

제264호

판결서

한성부漢城府 내정동內井洞 찬정贊政
원고 이윤용李允用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현 거주지 재동齋洞 진사進士

피고 최봉균崔鳳均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현 거주지 명동明洞 진사進士

피고 최용균崔龍均

판결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수원군水原郡 검두리鎌頭里 소재 논 4석石 4두락斗落을 권매權賣 증서의 약정대로 내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과 증서의 약정(標約) 및 논문서[審券]에 비추어 정

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변론[答供]은, “그 숙모에게 분재分財^{*}한 논[審土]을 봉균鳳均이 몰래 전당잡혔으니 내어 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논^{*}의 문권과 깃기[稭記]^{**}를 상세히 조사하니, 최봉균의 명의로 기록되어 있고 양안量案에 배탈背脫^{***}한 것도 없어 분재한 증빙이 하나도 없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8년 8월 11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이계필李啓弼

주사 정명섭丁明燮

원문

{光二民五一七號}

第二百六十四號

判決書

漢城府 內井洞 贊政

原告 李允用

京畿 水原郡 現住 齋洞 進士

被告 崔鳳均

* 분재(分財) : 재산을 아들딸이나 친척에게 나누어 준다.

** 깃기[稭記] : ① 자손이 상속받을 재산의 묶을 정한 기록이다. '깃급문기의 준말로, '분급문기(分給文記)'라고도 한다. ② 지주의 이름과 조세의 액수를 기록한 장부이다.

*** 배탈(背脫) : 문서에 수록된 재산 중의 일부만을 매매할 때, 문서 자체를 구매자에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매물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말소하고 그 문서의 뒷면에 말소 사유를 기록하는 것이다. 동의어는 배탈(背頭)이다.

京畿 水原郡 現住 明洞 進士
被告 崔龍均

判決要旨

被告等은 原告 訴求에 應호야 水原郡 鎌頭里 所在 畓 四石四斗落을 權賣標約되로 出給함이 可호 訴訟費用은 被告等의 擔當호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標約과 畓券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로 認호 此에 對호야 被告等의 答供은 其叔母에게 分財호였든 畓土를 鳳均이가 偷典호였스니 不可出給이라 호나 該土文券과 衿記를 詳査호미 鳳均名號로 載錄호고 量案에 背脫호도 無호야 分財호 證憑이 一無호 然故로 被告等은 正當이라고 호미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光武二年 八月 十一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李啓弼

主事 丁明燮



1898년 8월 22일 수원-한성

역문

판결서 제15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남곡면南谷面 오곡梧谷 거주 전前 참봉參奉

원고 崔龍均

한성부漢城府 서서西署 황화방皇華坊 내정동內井洞 거주 전前 찬정贊政

피고 이윤용李允用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수원군水原郡 검두리鎌頭里 소재 논 4석 4두락斗落을 본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에 의거하여 원고의 구권舊券과 피고의 소위 양안量案을 상세히 조사하니, 구권에 실린 자호字號가 전당잡힌 양안에는 애초에 없다. 그런데도 피고는 4석 4두락을 함께 전당잡혔다고 하므로 정당하다고

* 자호(字號) :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등에 토지 지번(地番)의 순서를 숫자 대신에 천자문의 글자를 이용하여 붙인 번호이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8년 8월 22일

고등재판소高等裁判所

재판장 신기선申箕善

판사 이인우李寅祐

판사 이기동李基東

예비판사 김택金澤

예비판사 박경양朴慶陽

주사 정석규鄭錫圭

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여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함

光武二年 八月 二十二日

高等裁判所

裁判長 申箕善

判事 李寅祐

判事 李基東

豫備判事 金澤

豫備判事 朴慶陽

主事 鄭錫圭

원문
判決書 第十五號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京畿 水原郡 南谷面 梧谷 居 前參奉
原告 崔龍均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漢城府 西署 皇華坊 內井洞 居 前贊政

被告 李允用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여 水原郡 鎌頭里 所在畓 四石 四斗落을 還歸本
主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하여 其正直한 줄로 認함 此에 對하여 原告의 陳
供을 據하여 原告의 舊券과 被告 所謂 量案을 詳查한즉 舊券所載 字號가
典執한 量案에 初無한거늘 被告는 四石 四斗落을 并典이라함은 然故로 正



논문서[畚券] 반환에 관한 건

1898년 9월 26일 수원-한성

역문

제327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농민農民

원고 신영균申泳均

한성漢城 청파靑坡 무직[無業]

피고 어덕중魚德中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원고에게 방매放賣한 논[畚土]의 구문 권舊文券을 찾아 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변론[答供]은 “어리석어서 비록 논을 팔았으나 문권은 아직 찾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8년 9월 26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윤필尹泌

주사 정명섭丁明燮

원문

第三百二十七號

判決書

京畿 水原郡 農民

原告 申泳均

漢城 靑坡 無業

被告 魚德中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原告의게 放賣한 畚土舊文券을 覓給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로 認함 此에 對하야 被告의 答
供은 蒙駭所致로 雖賣畚土나 券則未及覓給이라함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
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함

光武二年 九月 二十六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尹泌

主事 丁明燮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898년 10월 15일 해주-수원

역문

제360호

판결서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 농업農業

원고 이희룡李羲龍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상업商業

피고 이종문李鍾文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어음於音으로 준 돈 엽전 2,00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돈으로 마련해 내줘야 할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에 송신규宋信圭에게 지급 요청한 어음의 돈 지급기한이 조금 늦추어짐에 따라 해당 어음을 이종문李鍾文에게 허급許給하고 급전急錢을 기한보다 먼저 얻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이종문은 이덕기李德基에게 (어음을) 다시 주고, 이덕기는 바로 손완근孫完根에게 (어음을) 넘겨주었더니, 손완근은 송신규[宋家]에게 가서 어음을 왕답往

踏*하고 돈을 내주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원고는 피고가 돈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줄로 생각하여 어음을 다시 찾아서 송신규에게 돈을 추심하고자 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손완근, 이덕기 두 사람의 변론[來去]은 이유가 있다.

1898년 10월 15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윤필尹泌

주사 김중응金鍾應

원문

第三百六十號

判決書

黃海道 海州郡 農業

原告 李羲龍

京畿道 水原郡 商業

被告 李鍾文

判決要旨

被告은 原告 訴求에 應하야 於音으로 給與한 錢 葉貳仟兩을 辦償함이 可
 尙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함

* 왕답(往踏) : '가서 다지다'라는 뜻이다.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발행인을 찾아가 어음을 제시하고 해당 어음이 진정하게 발행·교부된 것인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짐'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어음의 양도 및 전당(典當)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관습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가옥, 토지 등의 경우도, 전당할 때 채권자가 그 대상의 소재여부 및 규모, 채무자의 전당 의사 등을 '다지는'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왕답(往答), 답음(踏音), 답험(踏驗), 내답(來踏)이라고도 한다.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錢으로 辦出홀 줄로 認 此에 對하야 原告는 當初에 宋信圭에게 來付흔 於音이 出錢홀 期限이 少緩홀을 因하야 該於音을 李鍾文에게 許給하고 急錢을 先此得給하라고 委託하야 李鍾文은 李德基에게 轉付하고 李即 孫完根에게 移給하미 孫也는 宋家에 往踏於音하고 給錢흔지라 到今 原告는 被告가 勢無辦錢홀 줄로 思量하야 於音으로 還覓하야 宋也에게 推錢코자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孫李 兩人的 來下함이 其理由가 有함

光武二年 十月 十五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尹泌

主事 金鍾應



1899년 1월 12일 한성-남양

역문

제11호

판결서

남서南署 장동長洞 상민商民

원고 강만영姜萬英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현 거류지 장동長洞 농민農民

피고 박준필朴準弼

경기京畿 광주군廣州郡 농민農民

피고 조중교趙仲教

판결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빌려간 가권家券과 빌린 돈 엽전 30냥兩을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빌린 가권과 돈을 기한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9년 1월 12일

光武三年 一月 十二日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한영李漢英

首班判事 李漢英

판사 이풍의李豐儀

判事 李豐儀

주사 김중응金鍾應

主事 金鍾應

원문

第十一號

判決書

南署 長洞 商民

原告 姜萬英

京畿 南陽郡 現留 長洞 農民

被告 朴準弼

京畿 廣州郡 農民

被告 趙仲教

判決要旨

被告等は 原告 訴求에 應하야 借去호 家券과 貸錢 葉參拾兩을 還完함이
可호 訴訟費用은 被告等の 擔當호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其正直호 줄로 認호 此에 對하야 被告等은
借貸호 家券與錢을 過限不還호 然故로 正當이라고 호이 可치 아니호니 因
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1899년 3월 7일 한성-남양

역문

제85호

판결서

북서北署 장동壯洞 전前 판관判官
원고 조희덕趙義德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현 거류지 필동筆洞 농민農民
피고 박영문朴永文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전에 이미 척매斥賣한 남양군南陽郡 소재 산판山坂을 문기文記에 따라 넘겨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문기文記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자기 집안의 종손으로 해당 산판을 방매放賣하였으므로 계약대로 넘겨주어야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촌형제들이 함부로 소란을 일으킨다고 하며 지금까지 책임을 미루고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9년 3월 7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판판사대리 판사 이계필李啓弼

판사 이풍의李豐儀

주사 김종응金鍾應

원문

第八十五號

判決書

北署 壯洞 前判官
原告 趙義德

京畿 南陽郡 現留 筆洞 農民
被告 朴永文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曾已斥賣한 南陽郡所在 山坂을 依文記하야 給付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理由

原告의 主張은 文記와 質下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로 認함 此에 對하야 被告는 既以渠家宗孫으로 該山坂을 放賣하얏스즉 依約決給할거시어늘 其從叔이 橫出作拏한다 하야 到今推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함

光武三年 三月 七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代辦 判事 李啓弼
判事 李豐儀
主事 金鍾應



1899년 5월 31일 수원-남양

역문

제1호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김동우金東佑

남양군南陽郡 거주 상민商民

피고 홍예중洪禮中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그 잘못이 스스로 드러났음을 인정한다. 무릇 원고가 피고에게 소금 60석石을 맡겨 두고 임치표任置標를 받아 가서 김덕로金德老에게 전급轉給하였는데, 김덕로가 일찍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었으므로 이 소금표[鹽標]를 가지고 이익을 내서 예전 빚을 갚을 생각으로 마련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김덕로가 이 증서[票]를 홍 위원洪委員에게 전급하여 역시 예전 빚을 갚고자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바야흐로 그 일을 알고 피고에게 말하기를, “이 증서를 시행하지 말라.”고 하고, 즉시 관정官廷에 정소呈訴하여 피고에게 적치積置한 소금을 되찾아갔다. 따라서 홍 위원은 자신이 마땅히 김덕로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데도 어찌서 피고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는 홍 위원에게 요구하며, 홍

위원은 김덕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원고가 원통함을 호소하는 바는 이유가 있다.

1899년 5월 31일

남양군수南陽郡守 서상학徐相鶴

원문

第一號

水原郡 居 商民

原告 金東佑

南陽郡 居 商民

被告 洪禮中

理由

被告에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曲이 自露흔 줄 認흔 大抵 原告가 被告에 게 鹽六十石을 任置하고 任置標授去하야 轉給于 金德老處인바 金德老가 曾有所報條於原告 故로 持此鹽標하야 興利以報舊債之意로 拮給矣러니 不此之爲하고 金哥가 以此票轉給洪委員하야 亦報前債즉 原告가 訪知其事하고 言及被告하야 此票을 勿施하라하고 卽呈官廷하야 被告에게 積置 鹽을 卽爲推覓하얏스즉 洪委員은 自當責徵於 金德老이거늘 奈何侵責於被告乎아 以故로 原告는 被告에게 徵推하고 被告는 徵推於洪委員하고 洪委員은 徵推於 金德老함이 可하기 因하야 原告에 呼冤이 其理由가 有흔

光武三年 五月 三十一日

南陽郡守 徐相鶴



1899년 7월 11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남양군南陽郡 음덕리면陰德里面 중동中洞 거주 평민平民

원고 홍예중洪禮仲 나이 37세

남양군南陽郡 마도면麻道面 고모동古毛洞 거주 평민平民

피고 유귀범柳貴凡

수원군水原郡 남리南里 거주 평민平民

피고 김동우金東佑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소금 60석石을 맡겨 두고 임치표任置票를 받아 가서 김덕로金德老에게 전해 주었다. 그런데 해당 김덕로가 피고에게 진 빚이 있는데 추심推尋할 길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피고가 장차 이 소금포대鹽包를 김덕로에게 대신 주고서 이익이 나면 자신의 예전 빚을 갚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김덕로가 이렇게 하지 않고 홍석후洪奭厚 위원에게 전달해 갚았다. 이에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말하기를 “이 증서[票]를 시행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원고가 홍석후의 위협을 참아내기 어려워서 해당 소금을 내 주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시행하지 말라는 증서[票]를 사사로이 시

행하였으므로 그 잘못[曲]이 원고에게 있다. 그래서 피고가 이미 관^官에 소
를 제기하여 추징해 갔는데 이 소송의 귀결이 원고는 하나의 증서[-票]로
두 번 물게 되었으니 매우 억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홍석후
에게 추징하고 홍석후는 김덕로에게 다시 추징하는 것이 송사의 이치상
당연하므로 이에 소송을 마무리하니 이대로 시행할 일이다.

1899년 7월 11일

남양군수南陽郡守 서상학徐相鶴*

원문
判決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本郡 陰德里面 中洞 居 平民
原告 洪禮仲 年三十七

本郡 麻道面 古毛洞 居 平民
被告 柳貴凡

水原郡 南里 居 平民
被告 金東佑

原告는 被告를 對^對하야 確據^{確據}한 理由가 無^無홈 被告가 原告에게 鹽六十石을
任置^{任置}하고 任置票을 受去^{受去}하야 轉給^{轉給}於 金德老處인바 該金德老가 有所負於
被告^{被告}하야 萬無推尋之道^{萬無推尋之道}즉 被告가 將此鹽包^{將此鹽包}하야 移給^{移給}金德老는 爲其興利
報我舊債之計^{報我舊債之計}矣^矣터니 該金이 不此之爲^{不此之爲}하고 又爲轉報^{又爲轉報}於 洪委員^{洪委員}爽厚^{爽厚}한^한 즉 被

* 원문에는 '徐'라고만 기재되었지만, '상학(相鶴)'을 보충하였다.

告가 訪知其事^{訪知其事}하고 原告에게 言及^{言及}하야 此票를 勿施^{勿施}하라 亨^亨엇더니 原告가
難耐^{難耐}洪爽厚之威脅^{洪爽厚之威脅}하야 出給該鹽^{出給該鹽}이라^{이라}하나 被告가 勿施^{勿施}하라는 票를 私施^{私施}
하^하얏스^스즉 其曲이 在於原告而被告가 既爲呈官推去^{既爲呈官推去}한^한 즉 此訟歸竟^{此訟歸竟}이 原告
는 一票再徵^{一票再徵}이 似極冤枉^{似極冤枉}하나 原告^{原告}즉 更推於洪爽厚^{更推於洪爽厚}하고 洪^洪즉 轉推於金德
老^老라야 訟體當然^{訟體當然}이기 茲^茲에 妥訟^{妥訟}하^하니 依此施行^{依此施行}할 事

光武三年 七月 十一日

南陽郡守 徐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7월 13일 남양-수원

역문

판결서

남양군南陽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홍예중洪禮仲*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피고 김동우金東佑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남양군南陽郡에 거주하는 김치덕金致德에게 받아야 할 돈이 3,300냥兩인데 같은 군에 거주하는 홍예중洪禮仲이 김치덕과 무슨 계산할 것이 있었는지 자신이 갚겠다는 뜻으로 떠맡은 후에 소금 60석을 추심할 수 있는 증서[票紙]를 써 주었다고 하였다. 피고가 같은 군에 거주하는 김덕로金德老에게 또한 받아야 할 돈이 있었는데 김덕로가 가난하여 갚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피고가 다시 얼마의 자본금을 주어서 장사를 시키면

* 원문에는 '洪爽厚'로 되어 있으나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면 '洪禮仲'의 오키로 판단된다.

신구新舊 빚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홍예중에게서 받은 소금 60석 증서[票紙]를 김덕로에게 내주어 장사를 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김덕로가 이렇게 하지 않고 홍석후洪奭厚에게 갚을 예전 빚에 대해 이 소금증서[鹽票]로 넘겨주었다. 피고가 이 소식을 추후에 듣고서 즉시 동업자 유귀범柳貴凡을 시켜서 홍예중에게만 즉시 가서 해당 소금 60석을 바로 유치留置해서 일절 내주지 말라는 뜻으로 그 이유를 말하며 거듭 설명하였다. 그런데 홍예중이 수긍하지 않는 저의底意가 있어 기어이 홍석후에게 내주려고 할 것 같았다. 부득이 남양군에 호소하여 대질對質해서 바로 잡으니 홍예중이 감히 대꾸할 말이 없어 2월 안으로 갚아 주겠다는 뜻으로 증서를 고쳐서 주었다. 그런데 또다시 미루었으므로 피고가 올 4월에 다시 본 재판소에 제소하여 액수대로 받았으니 전후 사실과 증거에 비추어 (피고는) 정직한 것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述은, 피고에게 갚아야 할 소금 60석을 홍석후에게 먼저 다 갚았는데 피고에게 지금 또 거듭 갚았다고[荐鞫] 하였다. 그러나 그 속내[裡誨]를 궁구하면 일이 이치에 닿지 않는다. 홍석후가 설혹 이전의 증서를 빙자하고 와서 독촉하기를 그치지 않더라도, 이미 남양군의 판결이 있고 또한 2월 안으로 갚아 주겠다는 것으로 다시 그 증서[票]를 썼으니 어찌 이 갚아야 할 것을 버리고 저 관계없는 것을 갚았는가. 이에 비추어 홍예중의 행위[所爲]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899년 7월 13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원문

判決書

南陽郡 居 商民

原告 洪奭厚

水原郡 居 商民

被告 金東佑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의 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흔

理由

被告의 主張은 南陽郡 居 金致德의게 有當捧錢 三千三百兩이온디 同郡 居 洪禮仲이가 與金致德으로 有何細音條이던지 渠自備報之意로 擔當後 鹽 六十石推尋票紙書給ᄃᆞᆫ지라 被告가 同郡 居 金德老의게 亦有當捧錢 條인디 德老之貧에 報償無路ᄃᆞᆫ지라 被告思量에 更給資本錢幾許ᄃᆞᆫ야 使之 商業則新舊條를 可以竝捧故로 洪禮仲處 所捧鹽六十石票紙를 出給金德老 ᄃᆞᆫ야 使之興業矣러니 金德老가 不此之爲ᄃᆞᆫ고 洪奭厚處의 所報前債를 以此鹽票越給ᄃᆞᆫ지라 被告가 這箇消息을 追後得聞ᄃᆞᆫ고 即使同商柳貴凡 으로 專往洪禮仲處ᄃᆞᆫ야 該鹽六十石을 始爲留置ᄃᆞᆫ고 切勿出給之意로 具言所由ᄃᆞᆫ고 申申說明則洪禮仲이가 似有不肯底意에 期欲出給洪奭厚矣라 不得已呼訴南陽郡ᄃᆞᆫ야 對質歸正에 洪禮仲이가 無辭可答ᄃᆞᆫ야 以二月內準報之意로 更票以給ᄃᆞᆫ고 且又延拖則 被告가 今四月分에 又訴本所ᄃᆞᆫ야 準數徵捧ᄃᆞᆫ스니 前後事實과 證據에 照ᄃᆞᆫ야 其正直ᄃᆞᆫ 줄노 認흔 此에 對ᄃᆞᆫ야 原告의 陳供은 被告에게 當報ᄃᆞᆫ 鹽六十石을 洪奭厚에게 先已畢報ᄃᆞᆫ고 被告에게 今又荐報ᄃᆞᆫ야다ᄃᆞᆫ나 그 裡許를 究ᄃᆞᆫ면 事不近理라 洪奭厚가 設或憑藉前票ᄃᆞᆫ고 來督不已라도 既有南陽郡裁決ᄃᆞᆫ고 且有二月內報給事 更書渠票則 何乃捨此當報ᄃᆞᆫ고 報彼不當乎아 此에 照ᄃᆞᆫ야 洪禮仲의 所爲 가 正當이라ᄃᆞᆫ미 可치 아니ᄃᆞᆫ니 因ᄃᆞᆫ야 被告의 訴答은 理由가 有흔

光武三年 七月 十三日

京畿裁判所 判事



역문

제380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申 參奉參奉

원고 김춘원金春元

남서南署 장동長洞 申 參奉參奉

피고 송완宋完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둔감屯監 환퇴還退錢 1,20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표手標 상에 해당 토지의 소출所出이 만약 10,000냥을 채우지 못하면 헤아려 갚아 주겠다고 말을 만들어 (수표를) 작성하여 주고서, 지금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갚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9년 8월 21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김영준金永準

판사 김택金澤

주사 황진국黃鎭菊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金永準

判事 金澤

主事 黃鎭菊

원문

第三百八十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居 前參奉

原告 金春元

南署 長洞 前參奉

被告 宋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屯監 還退錢 一千二百兩을 辦償하미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흠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하야 其正直흔 줄로 認흠 此에 對하야 被告는手 標上에 該土所出에 若不滿萬兩즉 量宜報給이라 措語成給하고 今에 推諉 不報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하미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 理由가 有흠

光武三年 八月 二十一日





1899년 8월 26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제27호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홍예중洪禮仲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상민商民

피고 홍석후洪奭厚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소금값[鹽價] 당오전 3,69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김덕로金德老에게 받을 것이 있어 작년 12월에 가서 독촉하니 원고에게 유치留置한 소금 60석 證書[票]를 주기에 그 증서를 받아 원고에게 왕답往踏^{*}하였습니다. 그러니 원고가 말하기를, ‘이 증서는 유

* 왕답(往踏) : ‘가서 다지다’라는 뜻이다.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발행인을 찾아가 어음을 제시하고 해당 어음이 진정하게 발행·교부된 것인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짐’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어음의 양도 및 전당(典當)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관습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가옥, 토지 등의 경우도, 전당할 때 채권자가 그 대상의 소개어부 및 규모, 채무자의 전당 의사 등을 ‘다지’는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왕답(往答), 답음(踏音), 답험(踏驗), 내답(來踏)이라고도 한다.

귀범柳貴凡과 김동우金東佑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의 증서를 가지고 와서 추정하니 당연히 증서에 의거하여 내주어야 하지만, 소금을 굽는 동안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여 고친 증서를 주기에 그것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 2월에 원고를 만나 해당 소금을 내줄 것을 독촉하니 원고의 대답이, ‘이 일로 유귀범과 김동우 두 사람에게 소송을 당하여 위세威勢를 건디기 어려워 소금 20석을 우선 주었으므로 삼조三造^{**}의 결송決訟 전에는 내주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위經緯 상 불가한 것으로 크게 잘못을 꾸짖고 즉시 고친 증서를 받아서 경제京價를 마련해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당초에도 해당 소금증서가 김동우의 소금으로 김덕로에게 빌려주어 전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후에도 원고의 말이, 해당 증서로 말미암아 유귀범과 김동우 두 사람과 원고와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했다. 그러니 결말이 나오기 전에 단지 원고의 증서라고 추궁하여 먼저 강제로 받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9년 8월 26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백성기白性基

판사 윤필尹泌

판사 김정목金正穆

판사 김기조金基肇

판사 이휘선李徽善

주사 김상필金相秘

** 삼조(三造) : 재판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그리고 증인 세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홍예중, 유귀범, 김동우 세 사람을 말한다.

원문

判決書 第二十七號

京畿 南陽郡 居 商民
原告 洪禮仲

京畿 南陽郡 居 商民
被告 洪爽厚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鹽價 當五錢 三千六百九十兩을 辦償함이 可호
訴訟費用은 被告에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노 認호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
供은 金德老에게 所捧이 有호야 昨年十二月分에 往督호즉 原告에게 留置
호 鹽六十石票를 給호기에 其票를 受호야 原告에게 往踏호즉 原告가 言호
기를 此票는 柳貴凡 金東佑處에 成給호 거시나 無論知不知호고 持我票來
推즉 固當依票出給이로되 煮鹽間展限호기를 要求호야 更票以給호기 受票
以來라가 今二月分에 原告를 逢호야 該鹽을 督推호즉 原告의 所答이 此事
로 柳金 兩人에게 被訴호야 難耐威勢호야 鹽二十石을 姑爲先給인즉 三造
決訟前에는 不能出給이라호기 矣身이 經緯上에 不可호 줄노 大段詰責호
고 卽捧更票호야 拮据京債라호나 當初에도 該鹽票가 金東佑의 鹽으로 貸
給金德老호야 轉至함을 稔知호얏고 其後에도 原告의 言이 該票로 由호야
柳金 兩人과 原告와 起訟되야 出末호기 前에 但責原告의 票라호야 先爲勒
捧호 然故로 正當이라고 호미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
가 有호 事

光武三年 八月 二十六日

平理院
裁判長 白性基
判事 尹泌
判事 金正穆
判事 金基肇
判事 李徽善
主事 金相秘





1899년 8월 28일 남양-수원

역문

판결서 제27호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홍석후洪奭厚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피고 김동우金東佑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김덕로金德老에게 받을 것이 있어 가서 독촉하니 홍예중洪禮仲에게 임치任置한 소금 60석 증서[票]를 내주기에 홍예중에게 왕답往踏*하였습니다. 홍예중이 말하기를, ‘증서는 유귀범柳貴凡과 김동우金

* 왕답(往踏) : ‘가서 다지다’라는 뜻이다.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발행인을 찾아가 어음을 제시하고 해당 어음이 진정하게 발행·교부된 것인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질’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어음의 양도 및 전당(典當)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관습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가옥, 토지 등의 경우도, 전당할 때 채권자가 그 대상의 소재여부 및 규모, 채무자의 전당 의사 등을 ‘다지’는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왕답(往答), 답음(踏音), 답험(踏驗), 내답(來踏)이라고도 한다.

東佑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그러나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의 증서를 가지고 와서 추심하니 즉시 당연히 증서에 의거해 내주어야 하는데, 소금을 굽는 동안 기한을 늘리기 위하여 고친 증서를 주겠다.’고 하므로 그 말대로 증서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경에 다시 가서 추심을 독촉했지만 즉시 추심하지 못하고 2월경 홍예중을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 그 소금의 추심을 요구하였습니다. 홍예중이 대답하기를, ‘이 뉘스로 김동우와 유귀범 두 사람에게 갚아 주겠다.’는 뜻으로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經緯로써 크게 잘못을 꾸짖고 옆에서 지켜보던 여러 사람들도 옳고 그름을 변론하니 돈을 마련해 주기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홍예중을 정소呈訴하여 (홍예중이) 수원府水原府에 간혀 해당 소금값을 다시 추심당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군府郡의 판결에 이르기를, ‘홍예중은 저에게 도로 추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홍예중이 와서 해당 돈을 독촉하니 저는 홍예중의 증서로 홍예중에게 돈을 추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홍예중과 저는 과연 갚아야 할 것을 갚았고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고, 피고는 김덕로에게 도로 추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피고가 홍예중을 함부로 침범하므로 (제가) 홍예중에게 소송을 당한 것이 억울합니다. 그러니 김동우가 홍예중에게 함부로 추심한 돈을 도로 추심하여 홍예중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 소금이 피고의 소금인 줄 분명히 알았고, 해당 소금으로 인하여 피고와 홍예중 간에 시비是非를 가리기 전에, 홍예중에게 곧바로 먼저 억지로 추심하였다. 그리고 법정法庭에서 곡직曲直을 판결하여 법으로 추심해 가게 한 피고에게 도로 추심하여 홍예중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진술은 이유가 있다.

1899년 8월 28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백성기白性基

판사 윤필尹泌

판사 김정목金正穆

판사 김기조 金基肇
판사 이휘선 李徽善
주사 김상필 金相秘

원문

判決書 第二十八號

京畿 南陽郡 居 商民
原告 洪奭厚

京畿 水原郡 居 商民
被告 金東佑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訴訟費用은 各自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하야 其正直흔 줄노 認흔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
供은 金德老處에게 所捧이 有하야 往督흔즉 洪禮仲處에 任置흔 鹽六十石
票를 出給하기 洪禮仲處에 往踏흔즉 洪禮仲言內에 票是柳貴凡金東佑에
게 成給흔 거시나 知不知는 無論하고 持我票來推즉 卽當依票出給이나 煮
鹽間展限하기를 爲하야 更票以給故로 依其言受票라가 今年正月分에 更
往督推하되 未卽推尋하고 二月分에 洪禮仲을 京城에 逢着하야 責推其鹽
흔즉 禮仲이 答하기를 此條로써 金柳 兩人에게 報給할 意로 背却하기 經
緯로써 大段詰責하고 傍觀諸人도 卞論曲直흔즉 以錢辦給故로 推捧하얏더
니 被告가 洪禮仲을 呈訴하야 捉囚水原府하고 該鹽價를 再徵흔을 抑鬱타
홀췌더러 府郡判決에 하기를 洪禮仲은 矣身에게 還推하라흔 故로 洪禮仲
이가 來督該錢흔즉 矣身은 洪禮仲에 票로 洪禮仲에게 推錢하얏흔즉 洪禮

仲과 矣身은 可謂當報當捧이요 被告는 金德老에게 還推흔이 可하거늘 被
告가 橫侵禮仲흔으로 禮仲에게 被訴흔이 抑鬱흔즉 金東佑가 禮仲處橫推
흔 錢을 還推하야 禮仲에게 還給흔이 可하하나 該鹽이 被告의 鹽인 줄 明
知하고 該鹽으로 因하야 被告와 洪禮仲과 是非歸決하기 前에 洪禮仲에게
逕先勒推하고 法庭으로 曲直判決하야 以法推去흔 被告에게 還推하야 出
給洪禮仲흔이 可하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흔이 可치 아니하니 被告의 陳
供은 理由가 有흔 事

光武三年 八月 二十八日

平理院

裁判長 白性基

判事 尹泌

判事 金正穆

判事 金基肇

判事 李徽善

主事 金相秘



1899년 10월 2일 한성-남양

역문

제443호

판결서

동서東署 동학동東學洞 거주 상민商民

원고 유승원劉承源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상민商民

피고 김여선金汝善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빚진 돈[債錢] 엽전 함께 94냥兩에 관官에서 정한 이자를 더해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對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갚아야 할 것을 진작 갚아 주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9년 10월 2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김택金澤

주사 황진국黃鎭菊

원문

第四百四十三號

判決書

東署 東學洞 居 商民

原告 劉承源

京畿道 南陽郡 商民

被告 金汝善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債錢 葉計九十四兩을 俱官邊 辦償호미 可호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호

理由

原告의 主張은 對質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노 認호 此에 對호야 被告는 當
報를 趁不報償호 然故로 正當이라고 호미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
求는 其理由가 有호

光武三年 十月 二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金澤

主事 黃鎭菊



밥값[食價]에 관한 건

1899년 10월 2일 한성-수원

역문

제442호

판결서

서서西署 도화동桃花洞 거주 상민商民

원고 서경삼徐景三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피고 김대규金大奎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밥값[食價] 102냥兩 8전錢 4푼[分]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밥값[食價]을 이미 담보하겠다고 하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갚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9년 10월 2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김택金澤

주사 황진국黃鎭菊

원문

第四百四十二號

判決書

西署 桃花洞 居 商民

原告 徐景三

京畿道 水原郡 居 農民

被告 金大奎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食價 一百二兩八錢四分을 辦償하미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하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하야 其正直하 줄로 認하 此에 對하야 被告는 食價를 既爲 擔保하고 推諉不報하 然故로 正當이라고 하미 可치 아니하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하

光武三年 十月 二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金澤

主事 黃鎭菊



1899년 10월 17일 한성-수원

역문

제466호

판결서

서서西署 오궁동五宮洞 거주 평민平民

원고 차영철車永哲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능군陵軍*

피고 김대규金大奎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수표手標錢 44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수표手標를 작성하고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갚지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 능군(陵軍) : 왕과 왕실의 능에 딸려 수릉관(守陵官) 밑에서 잡일을 맡아 보는 사람이다.

1899년 10월 17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김의제金義濟

주사 황진국黃鎭菊

원문

第四百六十六號

判決書

西署 五宮洞 居 平民

原告 車永哲

京畿道 水原郡 居 陵軍

被告 金大奎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手標錢 四百四十兩을 辦償하미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하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하야 其正直흔 줄로 認흠 此에 對하야 被告는 旣成手標하고 推諉不報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하미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흠

光武三年 十月 十七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金義濟
主事 黃鎮菊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899년 11월 29일 남양-서울

역문

제505호

판결서

경기 남양군南陽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이규양李奎陽

서서西署 현호玄湖 거주 상민商民
피고 장영완張永完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소금값[鹽價] 38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객주客主된 몸으로 물건값을 마땅히 내주어야 하는데도, 받기 어
렵다고 핑계 대고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시일을 끌며 미루고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9년 11월 29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김의제金義濟
주사 황진국黃鎭菊

원문

第五百五號
判決書

京畿 南陽郡 居 商民
原告 李奎陽

西署 玄湖 居 商民
被告 張永完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鹽價 三百八十兩을 辦償호미 可호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호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로 認호 此에 對호야 被告는 身 爲客主호야 物價를 宜卽出給이거늘 稱以難捧推諉延拖호는 然故로 正當이 라고 호미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光武三年 十一月 二十九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金義濟
主事 黃鎭菊

031



소금값[鹽價]에 관한 건

1899년 11월 30일 남양-한성

역문

제509호
판결서

경기京畿 南陽군南陽郡 거주 전 주사主事
원고 최성대崔成大

서서西署 公덕리孔德里 거주 상민商民
피고 이순좌李舜佐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소금값[鹽價] 74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탁한 소금을 사적으로 방매放賣하고 값을 마련해 줄 생각이 없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899년 11월 30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김의제金義濟
주사 황진국黃鎭菊

원문

第五百九號
判決書

京畿 南陽郡 居 前主事
原告 崔成大

西署 孔德里 居 商民
被告 李舜佐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鹽價 七百四十兩을 辦償하미 可흠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흠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하야 其正直흔 줄로 認흠 此에 對하야 被告 受寄 흔 鹽을 私自放賣하고 價本을 不思備給하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흠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흠

光武三年 十一月 三十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金義濟
主事 黃鎭菊

032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0년 1월 12일 용인-수원

역문

{광4민29호}

제7호

판결서

경기京畿 용인군龍仁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김태원金台遠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피고 김희경金希景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환전換錢으로 추심하지 못한 돈 1,00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되환退換 하면 즉시 사람을 보내 회시回示하라고 하였 더니, 14일이 지나서야 도로 물렸습니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저에게 징구

* 되환(退換) : 요즘의 환어음에 해당하는 환간[換簡/換欄]의 당사자인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중 지급인이 환간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대개 환간 상에 '퇴(退)'자를 써 주었다.

徵求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집환執換**하여 줄 때에 만약 실환實換으로 받았으면 어찌 14일에 이르도록 차퇴差退***하였으며, 원고의 경우로 논하더라도 환처換處****에서 400냥을 먼저 주고 1,000냥은 1파수—派數***** 동안의 기한을 청하는 마당에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피고는 즉시 회시하지 않은 것으로 흠을 잡고 갚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0년 1월 12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채연李采淵

판사 김의제金義濟

주사 황진국黃鎭菊

원문

{光四民二九號}

第七號

判決書

京畿 龍仁郡 居 商民

原告 金台遠

京畿 水原郡 居 商民

** 집환(執換) : 상대방에게 환전(換錢) 거래로 금전차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 차퇴(差退) : 퇴환(退換) 즉 지급거절의사를 미루는 것이다.

**** 환처(換處) : 환(換)을 받고 환전(換錢) 금액을 지급하던 곳이다. 환전처(換錢處)라고도 하였다.

***** 파수(派數) : 장날에서 다음 장날까지의 기간으로, 보통 1파수는 5일을 의미한다. 동의어는 파수(把數·把守·派手)이다.

被告 金希景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換錢 未推條 一千兩을 辦償호미 可호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호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로 認호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若退換즉 卽爲專人回示호라 호야더니 乃至十四個日而退還호얏스즉 此不可責徵於矣身이라호나 當初執換以給時에 若以實換으로 受給호얏스 즉 豈至十四個日之差退며 以原告境遇로 論호야도 換處에서 四百兩을 先給호고 一千兩은 一派數間請限호는 玆에 許施가 無怪호거늘 今에 被告는 以不卽回示로 執疵不償호는 然故로 正當이라 호미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光武四年 一月 十二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采淵

判事 金義濟

主事 黃鎭菊



1900년 3월 14일 수원-용인

역문

판결서 제9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상민商民

원고 김희경金喜慶

경기京畿 용인군龍仁郡 전前 주사主事

피고 김태원金台遠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어음^{於音錢} 당오전^{當五} 5,000냥^兩을 줄 필요가 없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상인들의 논변^{商辦}에 의거하여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訴}은 “작년(1899) 9월에 당오전^{當五錢} 13,000냥을 경환^{京換}으로 얻고자 하여 친한 이성여^{李成汝}를 방문하여 상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여가 ‘여기에 사는 김희경^{金喜慶}에게 경환을 얻어 써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해당 돈을 김희경에게 운반해서

* 원문에는 ‘피고’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원고’의 오기로 판단된다.

주고 경환^{京換}을 얻어 상경하였습니다. 6,000냥은 남문^{南門} 밖에서 즉시 찾고 잔금 7,000냥은 광고^{廣橋} 진영^{秦永根}에게 가서 물어보았더니 2,000냥은 즉시 추심하고 나머지 돈 5,000냥은 1과수^{把數}**를 연장해 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허락하였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 다시 물었더니 또 한번만 더 연장해 달라고 하여 어음을 가지고 본처^{本處}로 내려가서 김희경을 만나 그 이유를 다 말하니 김희경이 ‘날짜가 이미 14일이나 지났고 또 진영근이 파산^{出板}***하여 도망했다고 들은 마당에 지금 갑자기 와서 말하는 것은 본래 경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억지를 쓰며 갚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陳訴}은 “해당 돈을 환^換으로 줄 때 이성여와 김태원^{金台遠}이 모두 ‘이 어음이 만약 미루어지는 폐단이 있으면 처음부터 가져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약 즉시 내주지 않는 폐단이 생기면 즉시 양쪽에 사람을 보낼 것이니 부비^{浮費}를 거둬 줄 뿐만 아니라 원금^{原錢}의 2배로 준다는 뜻으로 계약하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14일이나 지나 다시 내려와서 ‘5,000냥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 너는 반드시 다른 돈^{他錢}으로 바꿔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단지 어음의 경위만 어긋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계약이 이미 있었을뿐더러, 게다가 그 (계약) 날짜가 진영근이 파산한 뒤였으니 어땠겠습니까. 오직 상민^{商民}을 불러다가 모여서 판별하여 타결하기를 바랄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에 근거하여 입전^{立廳}의 삼소임^{三所任}****들 및 백목전^{白木廩}의 삼소임들을 불러서 회동하여 논판^{論辦}하였더니 ‘원고가 옳고 피고가 잘못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1900년 3월 14일

평리원^{平理院}

** 과수^{把數}: 장날에서 다음 장날까지의 기간으로, 보통 1과수는 5일을 의미한다. 동의어는 파수^{派數}·把守·派手)이다.

*** 출판^{出板}: 계산을 탕진하여 결판이 났다는 뜻의 “출판^{出判}”과 같다. 유의어는 거판^{擧板}이다.

**** 삼소임^{三所任}: 도중^{都中}의 임원인 대행수^{大行首}, 상공원^{上公員}, 하공원^{下公員}을 말한다. ‘도중^{都中}’ 참조.

재판장 조윤승 曹潤承
판사 이인영 李寅榮
판사 이휘선 李徽善
판사 김기조 金基肇
판사 박경양 朴慶陽
주사 이칭익 李稱翼

원문

判決書 第九號

京畿 水原郡 商民
原告 金喜慶
京畿 龍仁郡 前主事
被告 金台遠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하야 於音錢 當五 五千兩을 不可徵給할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商辦에 證하야 其正直한 줄로 認함 此에 對하야 被告에 陳供은 昨年九月分에 當五錢壹萬三千兩을 京換을 得고조하야 所親李成汝을 往見相議한즉 李曰此居金喜慶處에 得換用之하라 하기 矣身이 該錢을 輸給金也하고 京換을 討得上京하야 六千兩은 南門外에서 卽推하고 其零錢七千兩은 廣橋秦永根處에 往叩한즉 二千兩은 卽地推尋하고 餘錢五千兩은 一把數를 退限하는 故로 不得已許施하얏더니 趁限更叩한즉 又請一限하는지라 仍持於音하고 下往本處하야 見金喜慶하고 俱言其由하니

金曰日子가 已至十四日之久하고 且聞秦哥가 出板逃하地에 今忽來言이 原非經緯라하고 生臆不報라하며 原告의 陳供은 該錢換給할 時에 李成汝與金台遠이 俱曰此於音이 若有延拖之端이면 初不持去云故로 矣身이 答曰如有不卽出給之弊면 卽送雙足專則不但徵給浮費라 原錢을 加倍辦給之意로 爲約矣러니 被告가 乃至十四日之久하야 還爲下來曰五千兩을 姑未推覓則汝須他錢으로 換給하라하니 非但於音經緯之有違라 當初契約이 既有홀뿐더러 況其日子가 在於秦哥出板之後乎아 惟願招致商民하야 會辦安決云故로 據此하야 立塵三所任等及白木塵三所任等を 招致하야 會同論辦한즉 原是被非라하는 然故로 被告을 正當이라고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原告에 訴求는 其理由가 有함

光武四年 三月 十四日

平理院
裁判長 曹潤承
判事 李寅榮
判事 李徽善
判事 金基肇
判事 朴慶陽
主事 李稱翼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1900년 9월 20일 남양-한성

역문

{광4민580호}

제195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거주 前前 監察監察
원고 정진하鄭鎭夏

북서北署 재동齋洞 거주 前前 학관學官

피고 심의신沈宜善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피고와 어음 등의 일에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피고에게 따지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900년 9월 20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봉래李鳳來

판사 김의제金義濟

주사 황진국黃鎭菊

원문

{光四民五八〇號}

第一百九十五號

判決書

京畿道南陽郡居 前前 監察

原告 鄭鎭夏

北署 齋洞居 前前 學官

被告 沈宜善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함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함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하야 其正直한 줄로 認함 此에 對하야 原告는 當初被告와 於音等事에 相關이 無하거늘 今에 猝然突出하야 被告와 相詰하
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被告의 訴答은 其理由
가 有함

光武四年 九月 二十九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鳳來
判事 金義濟
主事 黃鎮菊



1900년 11월 20일 수원-한성

역문

{광4민429호}

제240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전前 監察監察
원고 한용우韓用雨

동서東署 황교黃橋 거주 전前 승지承旨

피고 신필희申弼熙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수원군 水原郡에서는 마련해서 납부하겠다는 뜻으로 다짐을 바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족징[族徵]했다는 것으로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擧罷]하였으므로 정당

* 족징(族徵) : 조선 후기 삼정문란의 한 사례이다. 군역(軍役)의 대상자가 도망·사망 등으로 군포세(軍布稅)를 내지 못한 경우, 그 친척에게 군포(軍布)를 대신 물리던 일이다. 여기서는 친족에게 빚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900년 11월 20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봉래李鳳來

판사 김의제金義濟

주사 황진국黃鎭菊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鳳來

判事 金義濟

主事 黃鎭菊

원문

{光四民七二九號}

第二百四十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居 前監察

原告 韓用雨

東署 黃橋 居 前承旨

被告 申弼熙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흔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하야 明흔 此에 對하야 原告는 水原郡에서는 以 備納之意로 納俵하고 今忽以族徵事로 被告를 舉모흔 然故로 正當이라고 ㅎ미 可치 아니하니 因하야 被告의 訴答은 其理由가 有흔

光武四年 十一月 二十日





1900년 12월 5일 수원-한성

역문

판결서 제44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前前 監察監察

원고 韓用雨 韓用雨

한성漢城 동서東署 호동壺洞 거주 前前 비서승秘書丞

피고 申弼熙 申弼熙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적당하지 않은 돈을 함부로 징수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卮]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저는) 원고의 7촌 조카 한택리[韓澤履]와 평소에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권[家券]을 전당잡혀 (돈을) 빌려 쓰고자 하여 (저에게 가권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약간 의심스런 부분이 있어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원고 韓用雨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니, 걱정할 것 없다고 하기에 가권을 의심 없이 내어 주어 전당에 사용하게 하였는데 끝내 착복하고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

고가 당초 보증을 서겠다고 한 말을 빌미로 수원군[本郡]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때 해당 돈을 물어주겠다는 뜻으로 직접 나서서 다짐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진술은 “피고가 한택리에게 가권을 빌려 줄 때에 애초에 담보擔保한다는 한마디 말도 없었는데, 한택리가 해당 돈을 떼어먹은 뒤에 피고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 ‘당신의 친족인 한택리 사건은 남의 재산을 속여 빼앗은 데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소. 비록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길 만한데 당신 문중이야 오죽하겠소이까? 당신 집안의 여러분들이 충분히 넓은 마음으로 따로 변통하여 처리하시기를 도모하시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두 진술을 서로 참고해 보면 이미 보증한 증서[票記]가 없고 단지 말로만 담보한다고 말한 것은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다. 또한 실령 책임을 요구하는 단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편지를 검토하면 당연히 징수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는데도 피고가 기필코 함부로 징수하고자 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0년 12월 5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김영준金永準

판사 오상규吳相奎

판사 이휘선李徽善

판사 김기조金基肇

판사 박경양朴慶陽

주사 김재승金在升

원문

判決書 第四十四號

京畿 水原郡居 前監察
原告 韓用雨

漢城 東署 壺洞居 前秘書丞
被告 申弼熙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호야 不當호 錢을 橫徵치 못호 事 訴訟費用은 各自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노 認호 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原告七寸姪韓澤履로 素有親分인바 矣身之家券을 典執價用次로 要借호는지라 少有疑端호야 方趨趨之際에 原告用雨가 來訪故로 議及此事 호는 答曰無妨이라호기 家券을 無疑出給호야 使之典用矣리니 仍爲乾沒不 報호기 原告之當初言保를 竄호야 舉訴本郡時에 該錢을 徵納호 意로 至有 自願納俵라 호는 原告의 陳供은 被告가 澤履處借券時에 初無一言擔保이 온바 澤履가 該錢을 乾沒後에 被告가 致書矣身曰 貴族澤履事는 難免騙財 之律雖行路之人可矜況貴門中乎아 貴門內僉君子十分海諒另圖區處云호오 니 以此로 足以明證이라호기 兩供을 參互호는 既無保證票記호고 只以言 辭擔保云者가 無足爲證이요 設若有侵責之端이라도 考閱札辭호니 其所不 當徵을 確認호지어는 被告期欲橫徵코저호는 然故로 正當이라고 호이 可 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四年 十二月 五日
平理院

裁判長 金永準
判事 吳相奎
判事 李徽善
判事 金基肇
判事 朴慶陽
主事 金在升





1901년 4월 18일 남양-한성

역문

제 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출신出身

원고 조영선趙永善

서서西署 용산龍山 거주 상민商民

피고 박성근朴聖根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동업한 소금값 중에서 1,634냥兩 4전錢 8푼 [分]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辨]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함께 백염白鹽을 동업하여 이자와 본전을 제하면 도리어 추심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첨부해 준 정산장기[細音掌記]에는 남은 돈을 기록해 두었다. 또 정산한 뒤에 원고에게 넘어간 몫[條]이 많다고 하나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1년 4월 18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서리 판사 한동리韓東履

판사 조경구趙經九

주사 안식安植

원문

第 號

判決書

京畿 南陽郡 居 出身

原告 趙永善

西署 龍山 居 商民

被告 朴聖根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하야 同事ᄃᆞᆫ 鹽價中 一千六百三十四兩四錢八分을 辦償ᄃᆞᆫ 可ᄃᆞᆫ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ᄃᆞᆫ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辨에 照하야 其正直ᄃᆞᆫ 줄로 認ᄃᆞᆫ 此에 對하야 被告는 原告로 白鹽同事에 利本을 計除ᄃᆞᆫ 反有所推라ᄃᆞᆫ나 原告의 付給ᄃᆞᆫ 細音掌記에는 在錢을 懸錄ᄃᆞᆫ 細音後에 原告에게 越去ᄃᆞᆫ 條가 夥多라ᄃᆞᆫ나 無他明証ᄃᆞᆫ 然故로 正當이라고 ᄃᆞᆫ 可치 아니ᄃᆞᆫ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ᄃᆞᆫ

光武五年 四月 十八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署理 判事 韓東履
判事 趙經九
主事 安植



1901년 9월 24일 수원-한성

역문

{광5민94호}

제61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조이[召史] 원고 허조이[許姓]

서서西署 반석방盤石坊 연지동蓮池洞 거주 상민商民

피고 남창선南昌先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집행[執行]한 공적公蹟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은 “집행에 들어간 논[審土]은 이미 지난해 11월경에 지사[知事] 이한용李漢鎔의 집에 방매放賣한 장토庄土입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수원부水原府에서 조동식趙東植의 논을 적간摘奸하여 집행하였으니, 해당 논이 팔리지 않은 증적證跡이 명확한 것은 다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설사 팔렸더라도 팔고 거둬들인 논값을 매수인[買主]에게

돌려주어 송사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미 집행하여 지급한 공적公蹟을 피고에게 환수하고자 하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은 이유가 있다.

1901년 9월 24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엄준원嚴俊源

판사 한동리韓東履

판사 조경구趙經九

주사 이중혁李重赫

원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光五民九四號}
第六十一號
判決書

京畿 水原郡 居 召史

原告 許姓

西署 盤石坊 蓮池洞 居 商民

被告 南昌先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執行公蹟에 照하야 其正直흔 줄노 認흔 事 此에 對

하야 原告所供은 執行에 入흔 畚土가 已於上年十一月分에 李知事漢鎔家에 放賣흔 庄土라하나 水原府에서 趙東植의 畚土를 摘奸執行하얏스니 該畚이 見賣치아니흔 證跡이 明確흔은 無容更疑이요 設若見賣라도 賣收하얏든 畚價를 還歸買主하야 以爲妥訟이거늘 被告에게 已爲執給흔 公蹟을 還收코즈하는 然故로 正當이라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被告下供은 其理由가 有흔 事

光武五年 九月 二十四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嚴俊源

判事 韓東履

判事 趙經九

主事 李重赫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1년 10월 5일 한성-한성

역문

판결서 제70호

한성漢城 북서北署 니동泥洞 거주 조이[召史]

원고 허조이[許姓]

한성漢城 남대문南大門 밖 거주 평민平民

피고 남창선南昌先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수원군水原郡에서 함부로 집행한 논 4석石 2두락斗落과 시장柴場 1곳[處]을 원고에게 도로 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은 “지난해 음력 7월에 수원水原에 거주하는 조동식趙東植이 저의 아저씨뻘 되는 허순경許順景과 같이 와서 저의 가권家券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동식의 진위군振威郡 소재 논문서[審券]를 전달받고 저의 가권을 내어 주었습니다. 조동식과 허순경 두 사람이 해당 가권을 일본인에게 전달잡히고 당오전[當錢] 12,500냥兩의 빚을 얻어 썼습니

다. 작년 9월에 명동明洞에 사는 사용司勇* 함씨咸氏라는 자가 조동식의 빚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저를 위협하기에, 저의 가권과 진위군의 논문서를 모두 박일근朴一根에게 전달잡혀 28,000냥을 빚내어 조동식의 빚을 마감 처리하였습니다. 추후에 저의 집을 방매放賣하여 38,500냥을 역시 박일근에게 갚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동식의 논과 가옥 및 시장 2곳을 집행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은 “제 아들이 시사촌婣四寸에게 양자로 갔으나 후사가 없어서 족인族人 조동식을 후사로 삼았습니다. (조동식은) 저에게는 손자지만 양갓집[養家]으로는 재종손이 됩니다. 조동식의 빚진 돈에 대해서는 조동식의 논과 가옥을 마땅히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에 이미 지사知事 이한용李漢容 집에 관 논 4석 2두락과 시부모와 죽은 남편의 묘山墓山이 집행 대상에 섞여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논과 시장 1곳은 확실히 원고의 소유[物]이며 조동식과 관련이 없다. 피고의 집행이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1년 10월 5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근택李根澤

판사 오상규吳相奎

판사 김기조金基肇

판사 박경양朴慶陽

판사 신경균申慶均

주사 이원국李源國

* 사용(司勇)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있던 정9품 무관직이다.

원문

判決書 第七十號

漢城 北署 泥洞 居 召史

原告 許姓

漢城 南大門外 居 平民

被告 南昌先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水原郡에서 橫執호 畚四石二斗落과 柴場一處
를 還歸原告가 可호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其正直호 줄노 認호 事 此에 對호야 被告
의 陳供은 上年陰曆 七月에 水原居趙東植에 矣身戚叔 許順景으로 同來
호야 矣身家券을 要借이옴기 典執趙民之振威郡所在畚券호고 矣身家券
을 出給이옴디니 趙許兩民이 該家券을 典給於日本人호고 得債當錢 一萬
二千五百兩而用之이옴고 上年九月에 明洞居咸司勇者가 謂以趙債未捧
호고 威脅矣身이옴기 矣家券與振威郡畚券을 并典於朴一根處而出債二萬
八千兩호야 了勤趙債而追後에 放賣矣家호야 三萬八千五百兩을 亦報于朴
民許이옴고 矣身이 舉訴漢裁호야 執行趙民之畚土與家舍及柴場二處라호
고 原告의 陳供은 矣女之子가 出繼于媳四寸而無后호야 以族人趙東植으
로 爲后즉 於矣女에 雖曰孫子나 以養家로 爲再從孫也오 趙東植之債錢이
東植之畚土家舍는 宜爲執行이오되 矣女之上年에 已賣於李知事漢容家호
畚四石二斗落과 媳父母與亡夫之墓山이 渾入於執行中이라호마 該畚과 柴
場一處가 確是原告之物이오 不關於趙東植이거늘 被告之執行이 非理故로
正當이라호미 可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五年 十月 五日

平理院

裁判長 李根澤

判事 吳相奎

判事 金基肇

判事 朴慶陽

判事 申慶均

主事 李源國





1901년 10월 24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원고 서여제면西如堤面 송교동松橋洞 거주 정덕운鄭德雲

피고 서여제면西如堤面 상림동尙林洞 거주 이경목李敬穆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당초에 빌려준 장작값[燒木價] 17,900냥兩을 다달이 이자를 계산해서 도로 받아내야 한다. 송사訟事는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유

원고에게 피고가 대질한 것에 비추어, 피고의 진술은 “올해 3월경에 돈 17,900냥을 장작값으로 원고에게 가지고 와서, 5월경에 연달아 운반해 와서 송교포松橋浦에 쌓아 두었고, 상등급 1묶음[把]마다 400여 냥씩으로 값을 정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꾼과 염민鹽民이 시가時價와 맞지 않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끌며 미루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염민을 불러다가 당초에 값을 논의한 대로 바르게 결정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은 “올해 3월경에 피고가 와서 말하기를, ‘자염煮鹽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장작을 필요한 대로 대주겠다.’라고 하고 돈 얼마를 빌려 달

라고 하므로 그 말대로 돈 17,900냥을 허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5~6월경에 운반해 온 장작도 역시 빌려준 돈의 절반을 넘지 않았고, 가격도 결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으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피고를 잡아다가 앞에서 말한 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아울러 모두 찾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양측의 진술을 참고해 보면 모두 ‘내가 옳다.’고 하여 잡자기 시비를 가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진술에 따라 송교포 염민들을 원고와 피고에게 데리고 오게 하여 함께 법정에서 대질하였다. 염민 김덕유金德有 등이 아뢰기를 “올해 5월경에 장작 값이 1묶음에 250냥을 넘지 않았는데 (피고가) 300~400냥으로 터무니없이 값을 불렀습니다. 이 말대로 값을 치러 준다면 그 피해가 적지 않아 실로 버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흉년에 백성의 사정이 어찌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시가에 맞게 값을 정해 주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대체로 피고가 애초에 염민에게 강제로 팔고자 하였고, 감히 또 관정官庭에 무소誣訴한 것은 모두 이치에 어긋난 것이다. 게다가 또 시가가 분명하여 여러 의견이 하나로 귀결되므로 피고를 패소시킨다. 그리고 장작 값은 올해 5월의 시가에 의거하여 상등급 1묶음에 250냥씩으로 값을 결정하여 (소금을) 굶도록 한다. 만약 장작 상인[柴商]이 사리를 어기고 따르지 않으면 남은 돈은 계산하여 추심해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에 판결서를 작성하여 준다.

1901년 10월 24일

남양군수南陽郡守 민순호閔舜鎬

원문

判決書

原告 西如堤面 松橋洞 居 鄭德雲 年

被告 西如堤面 尙林洞 居 李敬穆 年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의 對하야 當初에 貸給한 燒木價 一萬七千九百兩을 逐朔計邊 하야 還爲推捧하고 其訟直한 줄노 認함

理由

原告에게 被告가 對質에 照하야 被告에 陳供은 今三月分에 錢一萬七千九百兩을 燒木價로 原告處에 持來하야 五月分에 連續運來하야 積置於松橋浦하고 上等每把에 四百餘兩式決價하라고되 商賈와 鹽民이 時價에 相不稱當하다고 至于今延拖하다가 已至於舉訴하온즉 豈不至冤乎잇가 招致鹽民하야 當初論價하되로 歸正以給이라하고原告에 所供은 今三月分에 被告가 來言曰煮鹽燒木을 隨所用酬應하마하고 錢幾許을 請貸故로 依其言하야 錢一萬七千九百兩을 許給하와답더니 始於五六月分에 輸來燒木이 亦不過錢之半而價錢도 決定치 안이하고 至于今推托하니 豈不抑鬱乎잇가 捉囚被告하옵서 上項錢을 并本利沒數推給이라인바 參互兩訴하면 俱曰予聖에 遽難分晰故로 被告에 所供을 從하야 本浦鹽民等를 使原被告로 率來同庭頭質則鹽民金德有等所告에 今五月分에 燒木價가 每把에 價不過二百五十兩이온데 以三四百兩으로 臆說呼價하니 其若依此言徵給즉 其害가 不少에 實難支保하니 歉歲民情이 豈非冤枉乎잇가 以相當時價로 決定以給하야 無至餓死之境이라하니 大抵被告가 初欲勒賣於鹽民하고 敢又誣告於官庭이 俱係非理요 況又時價 自在에 衆論이 歸一故로 被告는 置之落科하고 燒木價는 今五月時價를 依하야 上等每把에 二百五十兩式 決價煮炊이되 柴商이 若不逆理應從이거든 計餘錢는 推給之意로 茲에 判決書를 成給함

光武五年 十月 二十四日

南陽郡守 閔舜鎬



1901년 12월 13일 시흥-수원

역문

제189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시흥군始興郡 거주 유학幼學 수원시정연구원 원고 오인환吳仁煥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전前 시어侍御 피고 이종윤李鍾潤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빌려서 들어간 가옥을 비워 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은 “해당 가옥에 첩을 얻어서 살다가 첩과 헤어지고 해당 가옥을 원고에게 비워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여자가 비우고 나가지 않았습니.”라고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1년 12월 13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한영李漢英

판사 한동리韓東履

판사 조경구趙經九

주사 김우균金雨均

光武五年 十二月 十三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漢英

判事 韓東履

判事 趙經九

主事 金雨均

원문

第一百八十九號

判決書

京畿道 始興郡 居 幼學

原告 吳仁煥

京畿道 水原郡 居 前侍御

被告 李鍾潤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借入호얏든 家舍를 虛給함이 可호는 事 訴訟費用
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에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其正直호는 證호는 事 此에 對호야 被告所
供은 該家에 得妾居生다가 與妾離異호고 該家를 虛給原告코호는 該女
가 不爲虛出이라호는 然故로 正當이라고함이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訴求
는 其理由가 有호는 事





1902년 10월 22일 남양-수원

역문

판결서

남양군南陽郡 분양면分陽面 거주 원고 김학렬金學烈

수원군水原郡 오타면五朶面 거주 피고 김택현金宅鉉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사실

원고의 주장은, 자기의 종조부從祖父가 매입한 논 7두락을 종가宗家の 제사를 받들기 위해 원고에게 허급許給한 문기文記가 분명하므로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위의 논 7두락을 ‘종전宗錢으로 매득買得했습니다.’고 하였고, 또 “전해 내려오는 종답宗番 3두락이 있으니 원고와 분깃[分衿]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측의 진술을 상호 참고하면, 원고와 피고가 12촌 조부와 손자 뻘이 되니, 원고의 종조從祖父가 매입한 논을 피고가 빼앗고자 하는 것은 이치상 온당하지 않다. 또한 문권文券을 살펴보면, 이른바 ‘종답 3두락’은 종전宗錢으로 매입했다는 말이 있고 7두락의 문권에는 애초에 이런 말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또 근거할 만한 문기가 없다. 따라서

이치상 정직하지 않으므로 오로지 해당 자字* 중 1897년 분깃[分衿]한 문서[蹟]에 의해 피고를 패소시키고 이에 판결한다.

1902년 10월 22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원문

判決書

南陽郡 分陽面 居 原告 金學烈

水原郡 五朶面 居 被告 金宅鉉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有한 事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事

事實

原告의 主張은 渠之從祖父가 所買番七斗落을 爲其宗家香火之奉호야 原告에게 許給한 文記가 昭然호니 正直호 줄노 認흠 此에 對호야 被告에 陳供은 右番七斗落을 謂以宗錢買得호고 又有傳來宗番三斗落호니 與原告分衿이 爲可라호나 參互兩供則 原被告가 爲十二寸祖孫호니 原告從祖之所買番을 被告之欲奪이 於理不當이요 且閱文券 則所謂宗番三斗落은 有宗錢買得之說호고 七斗落券은 初無是說호니 被告則 又無可據文記호니 理不正直키로 一依該字中丁酉分衿之蹟호야 被告를 置之落科後 茲에 判決事

光武六年 一月 二十二日

京畿裁判所 判事

* 자호(字號): 토지대장인 양안(量案) 등에 토지 지번(地番)의 순서를 숫자 대신에 친자문의 글자를 이용하여 붙인 번호이다.



1902년 4월 9일 남양-한성

역문

제123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유학幼學

원고 이병기李秉夔

서서西署 용산龍山 형제정동兄弟井洞 거주 평민平民

피고 박익서朴益瑞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논[番土]의 신문기[新文記] 1장을 원고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所供]은, “원고의 가대[家臺]는 전당잡고 논[番土]은 영매永買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가 (전당잡힌) 가대는 도로 찾아가고, 논 또한 사사로운 사정을 이야기하며 환퇴還退를 요청하기에 알고 지낸 정에 얽매어 간

*가대(家臺) : 집터와 그에 딸린 원림(園林) 및 전토(田土) 등을 통틀어 일컫는다.

청에 따라 물려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논을 물려 줄 때 자기 물건으로 하면 물려 줄 수 있고, 다른 곳에 판다면 물려 줄 수 없다고 이미 만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들으니, 원고가 약속을 어기고 다른 곳에 판다고 하기에 사려는 사람[願買人]에게 이러한 까닭으로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신문기 1장을 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영매永買한 논을 이미 후의厚意로 원고에게 물려 주었으므로, 원고가 그대로 자신의 소유로 하든 다른 사람에게 팔든 간섭할 필요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2년 4월 9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이한영李漢英

판사 한동리韓東履

판사 윤방현尹邦鉉

주사 김우균金雨均

원문

第一百二十三號

判決書

京畿 南陽郡 居 幼學

原告 李秉夔

西署 龍山 兄弟井洞 居 平民

被告 朴益瑞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番土新文記 一張을 原告에게 還交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 所供은 原告의 家垵는 典執하고 畚土는 永買하마 厥後 原告가 家垵는 退典以去하고 畚土도 亦陳情私하야 要其還退이옵기 拘於顏誼하야 依懇退給이오나 退給 該畚時에 若作己物하면 可以退給이오 若賣他處하면 不可退給한다 既有面 約이온디 追聞原告가 背約賣他하옵기로 願買人處에 故不許買하고 新文一 張을 仍不出給이다하나 永賣畚土를 既以厚意로 退給原告인즉 原告의 仍 作己物과 賣渡他人을 不必干涉인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 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하 事

光武六年 四月 九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李漢英
判事 韓東履
判事 尹邦鉉
主事 金雨均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044



매장 무덤[葬塚] 굴이[堀移]에 관한 건

1902년 6월 21일 수원-진성

역문

판결서

수원군水原郡 숙성宿城 대죽동大竹洞 거주

원고 조성유趙成柔

진성振盛 남면南面 거주

피고 이종국李鍾國

수원시정연구원
S 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선산先山 뇌후腦後* 32보步 안에 원고가 밤에 투장偷葬하므 로 소송하였더니, 관에서 파내기를 독촉하였고 원고가 스스로 이치가 어 곳남을 알고 그 몰래 한 무덤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또 6대조의 무덤 37보 안에 투장하니 이 역시 마땅히 금지하는 땅입니다. 관에 고하여 파가기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작년 겨울에 윤석尹奭의 딸나무터 안에 부

* 뇌후(腦後) : 무덤의 뒤쪽이다.

친을 장사지냈습니다. 뒤이어 피고가 소송해서, 패소한 후에 윤석의 선산 너후의 피 구덩이 터 하나를 1,500냥兩 값을 주고 사들여 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간에 거리가 37보로, 앉으나 서나 볼 수 없는데도 피고가 자기 산에서 너무 가깝다고 하며 또 소송한 것입니다. 윤석이 산을 판문적文蹟이 분명하게 있으니 피고가 송사를 자꾸 일으킴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대질에서 원고가 처음 매장했던 땅은 피고의 산이고 땀나뭇감을 배도록 윤석에게 허락한 땅이요, 추후에 매장한 땅도 역시 피고의 산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 32보 안의 무덤을 파내어서 37보안에 매장하였으므로, 마땅히 파내고 마땅히 금지하는 것이 의심할 것 없이 확실하다. 따라서 산값(山價) 1,500냥은 윤석에게 가서 받아내어 조씨(趙氏)에게 되돌려 주고, 조씨의 무덤은 파내어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2년 6월 21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원문

判決書

水原郡 宿城 大竹洞 居

原告 趙成柔

振盛 南面 居

被告 李鍾國

** 원문에는 “裁判所”로만 되어 있으나 판심을 확인하여 부기하였다.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할 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先山腦後 三十二步之內에 原告가 冒夜偷葬 故로 卽爲舉訟하야 自官督掘則 原告自知理屈하고 移其偷塚하야 又爲偷葬於六代組塚 三十七步之內하니 此亦當禁之地라 告官請掘함이 正當흔 줄노 認흔 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主張은 昨冬에 葬親於尹奭柴場之內矣러니 追因被告之舉訟하야 至於落科後에 尹奭之先山腦後一壙之地를 給價 一千五百兩 買得移葬 而於被塚에 相距爲三十七步 坐立不見이거늘 被告가 爲以逼近於渠山이라하고 又爲舉訟이오니 尹奭之賣山文蹟이 昭然自在則 被告之健訟이 未知其正當이라하나 今此三造對質則 原告 初葬之地는 則被告之山 而許柴刈草於尹奭之處也요 追葬之地로 亦係被告之山뿐더러 且掘其三十二步之塚하야 旋葬於三十七步之內중 當禁當掘이 的係無意 故로 山價 一千五百兩은 往出於尹奭하야 還給趙民하고 趙民之塚은 卽爲掘移함이 妥當하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六年 六月 二十一日

裁判所 判事



1902년 7월 1일 수원-미상

역문

판결서

수원군水原郡 부내府內 거주 원고 홍형순洪亨順

피고 이성하李盛夏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도장 자국의 구별이 분명하므로 그것을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述은 “지난 1897년경에 수원군水原郡의 수석서기首席書記로 근무했다가 1898년 2월에 이르러 파면된 이후에 포흠^{*}으로 간혀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가 신임 수석서기로 임명되어 저의 가옥家舍과 세간살이를 척매斥賣하여 엽전 9,000여 냥兩을 (관부에) 상납하기 위해 받아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가서 영수증[尺丈]을 받아 오려고 독촉하니 곧 피고가 답하길 ‘네가 납부할 것을 다 청산한다면 내가 받아 온 뭇도 곧 마땅히 상납하겠다.’ 운운하였습니다. 그

* 포흠(逋欠) :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소비하거나, 국가의 조세(租稅)를 납부하지 않는 것 혹은 이러한 미납으로 인한 결손액.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발생한 부채 체납 행위를 일컫는 경우도 있다.

러더니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내가 받아 온 돈은 1899년에 경비로 소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군 경비를 결전結錢에서 털어 쓰는 것은 곧 전해 내려오는 정식定式입니다. 그러니 피고가 제 소관인 앞의 돈 가운데 이거조移去條로 빙자하여 경용^{**}하였다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바로 독촉하여 받아 주셔서 (피고가) 포흠한 것에 대해 납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문적文蹟을 가져다 열람해 보고 양쪽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며 살펴보니, 원고가 수석서기에서 파면된 것은 확실히 1899년 2월이니 지금 1898년 2월이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근거가 없다. 또 본군 경비는 수석서기가 의례히 세무소稅務所로부터 매년 거두어야 할 새로운 결세를 창고를 열어 정해진 액수대로 찾아와서 조금씩 나누어 사용하는 것으로 다년간 행해왔다. 그러나 원고가 수석서기에서 파면된 것은 1899년 음력 2월 말일이었고, 1898년 새로운 결세를 받기 위해 창고를 연 것은 당해 음력 10월 1일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1899년에 경비전經費錢을 그해 세금 담당아전稅色 이철재李哲宰에게 한 푼도 찾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 양력 1월 이후 3~4개월간 경비는 결국 어디에 사용한 것인가? 1899년 경비전 중에 원고가 수석서기로 근무할 때인 3개월간 사용한 뭇은 제외하고 남아 있는 9개월 뭇을 원고에게 찾아갔다는 증거의 도장 자국이 피고에게 분명히 존재하므로 원고의 말은 기만으로 귀결된다. 과연 마땅히 받아야 할 뭇이 있다면 공전公錢을 포흠한 일로 수감된 날에 어찌 정소呈訴하여 바로잡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4년이나 지난 후에 행여 그 세금 담당 관리 이철재가 도망가고 없는 상황에서 찾아 쓴 경비를 찾지 않았다고 핑계 대며 이렇게 분소奔訴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간사한 사람을 임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해임하니 모두 허사가 되었다. 또한 원고가 이철재에게서 경비전을 찾아 썼는지 아닌지는 반드시 상고할 필요가 있어서 원고와 피고로 하여금 이철재에게 함께 가서 마감한 문적 소재처에 따라 사실을 조사해 왔다. 그런데 원고가 무슨 불명확한 일이 있는지 변론하러 가지 않으려 하고, 다만

** 경용(經用) : 날마다 일정하게 쓰이는 비용이다.

도장을 찍은 대로 시행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다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이치가 어긋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에 원고를 소송을 일삼은 것으로 하여 이에 판결한다.

1902년 7월 1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원문

判決書

水原郡 府內 居 原告 洪亨順

被告 李盛夏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호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호는 事

理由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호야 區別印蹟이 分明호는 其正直호는 줄노 認호는 事 此에 對호야 原告의 陳供은 去丁酉年分에 水原郡 首書記舉行이라가 至於戊戌二月 見汰後 以所逋在囚時 被告以新差首書記로 斥賣原告之家舍什物호야 葉九千餘兩을 上納次 捧去後 原告往督 其受尺以來 則被告答以爲汝之所納을 盡爲淸帳이면 吾之捧來條도 卽當上納云云矣러니 今忽變辭曰 吾所捧來之錢은 入用於己亥經費云이오니 本郡經費之除減於結錢은 卽流來定式이어늘 被告以原告所管右錢中 移去條로 藉稱經用之說이 於理不當이 오니 卽爲督捧호야 以納所逋라호나 取閱文蹟호고 參互兩供 則原告首書記

*** 원문에는 “裁判所”로만 되어 있으나 판심을 확인하여 부기하였다.

之見汰가 的은 己亥二月이거늘 今以戊戌二月云者 事甚無據요 且本郡經費를 首書記가 例自稅務所로 每年新結開倉後 準數推來호고 流伊入用은 行之多年이거늘 原告首書記之見汰은 在於己亥陰曆二月晦日호고 戊戌新結稅之開倉은 在於當年陰曆十月一日인디 原告曰 光武三年度 經費錢을 當年稅色李哲宰處 一分未推라호니 然則陽曆一月以後 三四朔經費를 從何入用인지 三年度經費錢中 原告首書記舉行時 三朔所用條 除호고 餘在九朔條를 原告處推去호는 區別印蹟이 分明自在於被告호니 原告之說이 自歸誣妄이고 果有當捧條이면 以公錢所逋事 被囚之日에 何不呈訴歸正호고 乃於四年之後에 幸其稅色李哲宰之逃躲不在호야 所推經費를 諉以未推호고 有此奔訴가 抑何意諦인지 舉枉錯直에 節節落空뿐더러 原告之於李哲宰處 經費錢之推不推가 必有可考이기 使原被告로 偕往于李哲宰 應勘文蹟所在處호야 查實以來 則原告가 有何不明之端인지 不欲往호고 只願印蹟施行云 而納條 則原告之理屈은 更無餘蘊이기로 原告는 置之健訟호고 茲에 判決事

光武六年 七月 一日

裁判所 判事



어음 소송[於音訟]에 관한 건

1903년 11월 24일 남양-한성

역문

제200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南陽 거주 상민商民
원고 김우범金禹範

서서西署 한림동翰林洞 거주 염상鹽商
피고 서상섭徐相燮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올해 6월경에 남양군南陽郡에 거주하는 객주 홍주명洪柱明의 부탁으로 인하여 당오전[當錢] 6,000냥兩을 직접 홍주명에게 주고

어음을 흥가洪哥를 대면하고 받은 뒤에 피고에게 왕답往踏^{*}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돈을 마련해 줄 때에 일찍이 피고가 알지 못했고 어음상 도장이 또한 피고가 날인捺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피고에게 강제로 징수하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所答]은 이유가 있다.

1903년 11월 24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반판사 길영수吉永洙

판사 하규일河圭一

주사 노중식盧中植

원문

第二百號

判決書

京畿 南陽 居 商民

原告 金禹範

西署 翰林洞 居 鹽商

被告 徐相燮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 왕답(往踏) : '가서 다지다.'라는 뜻이다.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발행인을 찾아가 어음을 제시하고 해당 어음이 진정하게 발행·교부된 것인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질'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어음의 양도 및 전당(典當)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관습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가옥, 토지 등의 경우도, 전당할 때 채권자가 그 대상의 소재여부 및 규모, 채무자의 전당 의사 등을 '다지'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왕답(往答), 답음(踏音), 답험(踏驗), 내답(來踏)이라고도 한다.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 陳供은 本年 六月分에 本郡居 客主 洪柱明에 所托을 因하야 當錢 六千兩을 直給洪柱 明하고 於音을 面受於洪哥後에 往踏於被告處이다하나 該錢拮据時에 被告가 曾不見知하고 於音上圖章이 亦非被告所捺이거날 今欲橫徵於被告는 於理不當은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被告의 所答은 其理由가 有은 事

光武七年 十一月 二十四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吉永洙

判事 河圭一

主事 盧中植



역문

제203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상민商民

원고 김한성金漢成

서서西署 용산龍山 거주 차부車夫

피고 김용운金龍云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피고에게 밥값[食價] 500냥兩과 시변조市邊條* 150냥의 받을 돈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수원철도회사水原鐵道會社의 짐물什物을 실어 나르기 위해 둔포屯浦 등지로 내려갈 때에 그곳

* 시변(市邊) : 장날에 장에서 푸는 돈의 이자이다. 다음 장날까지의 기간 곧 닷새 동안의 이자가 붙는다. 장변(場邊), 장변리(場邊利), 파변(派邊)이라고도 한다.

에 머물며 생긴 밥값을 회사에서 부담해 준다는 뜻으로 양쪽이 서로 약속하였다. 원고가 이미 회사가 부담하겠다는 약속을 허락하고도 지금 갑자기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고, 시면市邊 150냥을 밥값에 보태어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903년 12월 1일
한성부재판소漢城府裁判所
수판판사 길영수吉永洙
판사 하규일河圭一
주사 노중식盧中植



京畿 水原 居 商民
原告 金漢成

西署 龍山 居 車夫
被告 金龍云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卞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 陳供은 被告 處에 食價五百兩과 市邊條一百五十兩 所捧條이 有하다하나 被告가 水原

鐵道會社什物輸來次로 下往屯浦等地時에 留連食價을 自會社擔給之意로 彼此相約하엿는디 原告가 既許會社之擔約하고 今忽還責於被告가 甚不穩當하고 市邊一百五十兩을 欲爲添徵於食價함은 於理不當흔 然故로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被告의 訴答은 其理由가 有흔 事

光武七年 十二月 一日
漢城府裁判所
首班判事 吉永洙
判事 河圭一
主事 盧中植





1904년 4월 21일 수원-남양

역문

판결서 제7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김택현金宅鉉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농민

피고 김희천金熙天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종가산판宗家山坂을 본래의 가격을 받고 물러 주고, 팔아 썼던 위답位畓 2두락은 매득買得하여 본래대로 채워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집안의 종손宗孫인데, 피고가 종손이 영락零落할 때에 그 산판山坂을 종중宗中에게 매득하였다가 종손이 물리기를 청하는 마당에 한결 같이 버티는 것은 매우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격 250냥兩을 받고 환퇴還退하고, 원고의 8대조 위답 4두락 중에 피고가 2두락을 다른 소송비용 때문에 팔아 썼으므로 이치상 당연히 사서 채워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4년 4월 21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박제순朴齊純

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태명식太明軾

판사 송인회宋寅會

주사 정인복鄭寅福

원문

판決書 第七號

京畿 水原郡 居 農民

原告 金宅鉉

京畿 南陽郡 居 農民

被告 金熙天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宗家山坂을 捧本價退給호고 賣用호얏던 位畓 二斗落 買得充本홀 事

理由

原告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호야 原告는 被告家宗孫인 바 被告가 宗孫零落之時에 其山坂을 買得於宗中호얏다가 宗孫請退之地에 一直靳持홀은 殊乖事理호즉 俾則捧本價二百五十兩還退호고 原告의 八代祖位畓 四斗落中에 被告가 二斗落을 因他訟費賣用호얏스즉 理當買充홀 故로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八年 四月 二十一日
平理院
裁判長 朴齊純
判事 李秉和
判事 太明軾
判事 宋寅會
主事 鄭寅福



1904년 5월 30일 수원-한성

역문

제315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농민農民

원고 김정태金正泰

서서西署 서강西江 거주 소금장수[鹽商]

피고 조영순趙永順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供]은 “제가 분급分給한 염한[鹽漢]* 몫 8,000여 냥兩을 피고가 자의로 받아먹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산문서[細音記]를 자세히 살펴보니 본래 증거할 만한 표적票跡이 없고 증인 진술[證供]이 또한 명확한데도 지금 이렇게 소송을 일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 염한(鹽漢) : 염전(鹽田)에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이다.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904년 5월 30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윤시영尹始永

판사 하규일河圭一

주사 구건서具健書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尹始永

判事 河圭一

主事 具健書

원문

第三百十五號

判決書

京畿 水原 居 農民

原告 金正泰

西署 西江 居 鹽商

被告 趙永順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各自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 所供은 渠之 分給鹽漢條八千餘兩을 被告가 自意捧喫이다하나 考閱細音記則 本無可據 之票跡하고 證供이 亦爲明確이거늘 今此健訟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 니 因하야 被告의 訴答은 其理由가 有흔 事

光武八年 五月 三十日





집세[家貰錢]에 관한 건

1904년 6월 3일 수원-한성

역문

제337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농민農民
원고 서재인徐在仁

북서北署 송현松峴 거주 객주客主
피고 김만석金萬石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집세[家貰錢] 600냥兩을 도로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작년 음력 5월에 원고에게 당오전[當坪] 600냥을 받고 집 1칸[間]을 세 주었고, 원고가 올해 10월에 이미 고향으로 돌아갔는데도 해당 집세[貰錢]를 아직 도로 갚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4년 6월 3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김연식金璉植

판사 하규일河圭一

주사 구건서具健書

원문

第三百三十七號

判決書

京畿 水原 居 農民

原告 徐在仁

北署 松峴 居 客主

被告 金萬石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家貰錢 六百兩을 還償함이 可흔 事 訴訟費用
은被告에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는 昨年 陰曆
五月에 原告處에 捧錢 當坪 六百兩하고 家一間을 貰給하마 原告가 本年
十月에 既已還鄉하얏는데 該貰錢을 尙不還償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
하니 因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흔 事

光武八年 六月 三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金璉植
判事 河圭一
主事 具健書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논문서[番券] 및 수표手票 소송에 관한 건

051



1905년 1월 31일 남양-한성

역문

제459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南陽 거주 조이[召史]

원고 이조이[李姓女]

북서北署 계동桂洞 거주 평민平民

피고 유덕준俞德濬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속아서 전당잡은 논문서[番券]와 수표手票를 내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준배金俊培가 위조한 논문서와 수표를 속아서 전당잡은 후 모두 왕답往踏^{*}하지 않고, 원고 남편이 죽은 뒤에 논문서와 수표가 있다는 구실

* 왕답(往踏) : '가서 다지다라'는 뜻이다. 어음의 경우, 어음양수인이 어음발행인을 찾아가 어음을 제시하고 해당 어음이 진정하게 발행·교부된 것인지, 어음금을 지급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다짐'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어음의 양도 및 전당(典當)할 때는 이 절차를 거쳐야 관습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가옥, 토지 등의 경우도, 전당할 때 채권자가 그 대상의 소재어부 및 규모, 채무자의 전당 의사 등을 '다지는' 즉 확인을 받는 절차이다. 왕답(往答), 답음(踏音), 답험(踏驗), 내답(來踏)이라고도 한다.

로 강제로 물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5년 1월 31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상천李相天

판사 이종림李鍾林

판사 이경구李庚九

주사 노중식盧中植

原告 訴求是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九年 一月 三十一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相天

判事 李鍾林

判事 李庚九

主事 盧中植

원문

第四百五十九號

判決書

京畿 南陽 居 召史

原告 李姓女

北署 桂洞 居 平民

被告 俞德濬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見欺典執호 番券과 手票을 出給호미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호 金俊培에 僞造
호 番券과 手票을 見欺典執호 後 該票與券을 并不往踏호고 原告夫死後에
憑藉有票有券호고 欲爲勒徵코져호은 正當이라고 호미 不可호니 因호야





1905년 3월 23일 수원-한성

역문

제178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농민農民
원고 이명구李鳴九

남서南署 초동草洞 거주 평민平民
피고 조형재趙亨載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농민農民
피고 편여선片汝善

판결요지

피고 편여선片汝善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보증을 선 논값[畝價] 중 1,000냥兩만 물어주고, 원고는 조형재趙亨載 논을 전당잡을 때의 신문기新文記와 한글증서[謄票]를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이유

피고들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供]은 “작년 5월경에 피고의 동생 조홍재의 8두락 논을

전당잡아 2,000냥을 빌려주었는데, 같은 해 10월경에 피고의 동생이 영매永買하라고 요구한 까닭에 피고 서모庶母의 한글증서를 받고 이택기李澤基에게 사줄 때 또 1,550냥을 주었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동생 조홍재가 가사를 주관하는데 어찌 부인의 한글문서를 받았으며, 해당 논을 매수한 광주廣州의 구연달具然達이 해당 군에 정소로訴하여 대질할 때 나와서 변론하지 않고 피해 숨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무슨 곡절인가? 조홍재가 이미 부채하니 돈을 꾸어 줬다는 근본 이유가 매우 모호하고, 제출한 문권[文軸]들 중에도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없는데도, 지금 와서 번거롭게 소송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905년 3월 23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상천李相天
판사 이경구李庚九
주사 구건서具健書

원문

第一百七十八號
判決書

京畿 水原 居 農民
原告 李鳴九

南署 草洞 居 平民
被告 趙亨載

京畿 水原 居 農民

被告 片汝善

判決要旨

被告 片汝善은 原告 訴求에 應호야 立保호 畚價中 一千兩만 徵報호고 原告는 趙畚典執時 新文記及諺票는 勿施호미 可호 事

理由

被告等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原告所供은 昨年 五月分에 被告弟 弘載處에 八斗落畚을 典執給債二千兩 而同年十月分에 被告弟가 又要永買故로 受其被告庶母之諺票호고 買給李澤基時 又給 一千五百五十兩이다호나 被告弟 弘載가 主張家事而何受婦人之諺蹟이며 該畚買收호 廣州居 具然達이 呈訴該郡對質時 不爲出下호고 隱避不現은 是何委折인지 弘載가 旣爲不在則 給債根由가 甚是模糊이고 所納文冊中 亦無確據之事이거날 今來煩訴호은 正當이라고 호미 不可호니 因호야 被告 訴答은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九年 三月 二十三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相天

判事 李庚九

主事 具健書



1905년 4월 27일 한성-수원

역문

제307호

판결서

서서西署 아동冶洞 거주 전前 교관敎官

원고 김인환金寅煥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농민農民

피고 유흥종柳興鍾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빌려서 전당잡힌 가권家券을 찾아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가계家契를 빌려서 일본인에게 전당잡혀 20,000냥兩의 빚을 얻고, 해당 돈을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끝내 가옥을 빼앗기게 만든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5년 4월 27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근홍李根洪
판사 이경구李庚九
주사 구건서具健書

원문

第三百七號

判決書

西署 治洞 居 前教官

原告 金寅煥

京畿 水原 居 農民

被告 柳興鍾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借典호 家券을 推給호미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는 原告家契를 借典於 日人處호고 得債二萬兩 而該錢을 過限不報호야 使原告로 竟至奪家 契 호은 正當이라고 호미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九年 四月 二十七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根洪

判事 李庚九

主事 具健書

054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5년 6월 13일 한성-수원

역문

제367호

판결서

서서西署 사직동社稷洞 거주 平民平民

원고 서정억徐廷億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前前 의관議官

피고 김윤근金胤根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빚진 돈[債錢] 당오전[當坪] 42,80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많은 돈을 얻어 쓰고 기일을 미루며 갚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5년 6월 13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근홍李根洪
판사 이경구李庚九
주사 구건서具健書

원문

第三百六十七號
判決書

西署 社稷洞 居 平民
原告 徐廷億

京畿 水原 居 前議官
被告 金齋根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債錢 當坪 四萬二千八百兩을 辦償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는 夥數한 錢을 得用하고 延拖不報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하 事

光武九年 六月 十三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根洪

判事 李庚九

主事 具健書

055



채권·채무 소송[債訟]에 관한 건

1905년 6월 26일 한성-수원

역문

제388호
판결서

북서北署 재동齋洞 거주 평민平民
원고 안경완安慶完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前前 주사主事
피고 이원근李元根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빚진 돈[債錢] 당오전[當坪]에다 관官에서 정한 이자를 합하여 6,048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01년에 많은 빚을 얻어 쓰고 5년이나 미루고 청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5년 6월 26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근홍李根洪

판사 이경구李庚九
주사 구건서具健書

원문

第三百八十八號
判決書

北署 齋洞 居 平民
原告 安慶完

京畿 水原 居 前主事
被告 李元根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債錢當坪 具官邊호야 六千四十八兩을 辦償함이 可호는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는 辛丑年分에 夥數호는 債錢을 得用호고 拖至五載에 不爲淸勸호는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는 事

光武九年 六月 二十六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根洪

判事 李庚九

主事 具健書

056



논문서[審券] 소송에 관한 건

1905년 6월 28일 한성-남양

역문

제393호

판결서

서서西署 운교雲橋 거주 협판協辦

원고 이봉래李鳳來

서서西署 용산龍山 거주 상민商民

피고 박춘호朴春浩

서서西署 용산龍山 거주 고용雇傭

피고 김형식金亨植

경기京畿 남양南陽 거주 농민農民

피고 김준모金俊模

판결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속여서 전당잡힌, 당진唐津 채운평彩雲坪 소재 20여 석락石落의 논 위조문서 및 양안量案을 찾아 주어야 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인진술[證供]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김준모金俊模의 아버지 김태빈金泰斌은 해당 논을 애초 위조문서로 이유태李有泰에게 몰래 팔았다가 간상奸狀이 탄로 나자 이유태 집에서 원래의 논주인 노승수盧昇洙와 김석제金錫濟에게서 다시 매득하여 원고에게 전매轉賣하였다. 그런데 또 문서를 위조하여 박춘호朴春浩에게 주었고 박춘호는 김형식金亨植에게 주어 박하동朴河東 집에 전당잡혀서 일본인 삼산풍三山豊에게 다시 전당잡혔다. 하나의 땅에 두 문서로 이리저리 팔고 전당잡혔으니 그 심보가 불량한 것은 형언할 수 없다.

박춘호는 김태빈에게 속아서 해당 위조문서를 김형식에게 전급轉給하여 그로 하여금 박하동에게 빚을 언도록 하여 많은 돈을 멋대로 나눠 썼으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김형식은 해당 위조문서를 처음에 박하동에게 전당잡히고 박하동은 삼산풍三山豊에게 다시 전당잡혔는데, 나중에 김태찬金泰贊이 팔아넘기려는(越賣) 흉계를 알고 그의 돈을 받기 위해 간사한 마음을 숨기고 관정官廳을 기망하였으니 매우 교활하고 간악하다.

김준모는 해당 논내의 내력을 이미 알았고 자기 아버지가 대령하지 않은 탓에 안건이 여러 달 지체되었는데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박춘호와 김형식 두 사람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비로소 상경하여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려 하다가 간악한 짓이 탄로 났으니 포악질을 돕는 것이 어찌 이렇게 극심할까. 이로써 논하면 피고들이 전후에 저지른 간악한 짓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5년 6월 28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근홍李根洪

판사 이경구李庚九

주사 구건서具健書

원문

第三百九十三號

判決書

西署 雲橋 居 協辦

原告 李鳳來

西署 龍山 居 商民

被告 朴春浩

西署 龍山 居 雇傭

被告 金亨植

京畿 南陽 居 農民

被告 金俊模

判決要旨

被告等은 原告 訴求에 應호야 欺典호 唐津 彩雲坪 所在 二十餘石 落畝土 僞券及量案을 推給함이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等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供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金俊模父泰斌은 該畝을 初以僞券으로 暗賣於李有泰라가 奸狀現露호야 李家에서 更爲買得於原畝主盧昇洙金錫濟호야 李家로 轉賣於原告處호야 又造僞券호야 給付朴春浩호고 朴給金亨植호야 典執於朴河東家호야 移典於日人三山豊處호야 一土兩券으로 左賣右典호야 其宅心不良은 無以形言이고 朴春浩는 見欺於金泰斌호야 該僞券을 轉給金亨植호야 使之得價於朴哥處호야 多數호 錢을 恣意分用호야 痛駭莫甚이고 金亨植은 該僞券을 初典於朴民處 而自朴處로 移典於三山豊호야 其後에 知其金

泰賚越賣之凶意호고 爲捧渠債호야 掩護奸情에 欺罔官庭호니 極涉狡惡이
고 金俊模는 已知該番之來歷 而渠父不待之致로 多月滯案에 藏頭不現타
가 朴金兩人所唆를 因호야 始爲上京호야 從中舞弄코져호다가 奸狀이 現
露호얏스니 何其助虐之太甚가 以此論之면 被告等之前後售奸은 正當이라
고 함이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는 事

光武九年 六月 二十八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根洪

判事 李庚九

主事 具健書



057



쌀값[米價]에 관한 건

1905년 10월 2일 수원-한성

역문

제49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상민商民

원고 송준명宋俊明

서서西署 사동社洞 거주 미상米商

피고 김석현金錫賢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쌀값 당오전[當坪] 1,60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백미白米를 외상으로 가지고 가서 진작 청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5년 10월 2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종성李種聖
판사 김상직金商直
주사 구건서具健書

원문

第四十九號
判決書

京畿 水原 居 商民
原告 宋俊明

西署 社洞 居 米商
被告 金錫賢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하야 米價 當坪 一千六百兩을 辦報함이 可하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는 白米을 以外上으로 持去하고 趁不淸勘함은 正當이라가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原告訴求는 其理由가 有하 事

光武九年 十月 二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種聖
判事 金商直
主事 具健書



1906년 3월 29일 죽산-수원

역문

판결서

원고 죽산군竹山郡 거주 한문회韓文會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김정구金正球

판결요지

원고의 산판山坂에 투장偷葬한 피고의 조모祖母 무덤을 즉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선산先山이 수원군水原郡 태촌면台村面 마통곡馬通谷에 있어서 100여 년 동안 아무 폐단 없이 수호해 왔습니다. 그동안 충청도忠淸道 단양군丹陽郡에 우거寓居했다가 10여 년 후에 죽산군竹山郡으로 이사하고 비로소 성묘省墓를 갔더니, 묘지기[墓直] 김정구金正球가 저의 5대조 무덤의 19보步의 땅에 자신의 조모祖母를 투장偷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꾸짖으며 무덤을 파낼 것을 독촉하니, 제5대조 무덤을 가리켜 ‘이는 산 아래 사는 한성오韓成五의 종조從祖 무덤이고, 한성오에게 뒤편 한 곳을 빌려 얻었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에 정소모訴하여 도형圖形을 작성할

*도형(圖形) : 분묘 소송이 발생하면 관아에서 실제 현지로 나가서 그 산세와 무덤의 위치 및 묘 사이의 거리 등을 조사·측량하여 그린 것을 말한다. 분묘 소송 재판에서 판결의 중요 근거 자료로 인용된다.

때 한성오의 아들 한여래韓汝來를 불러들여 물으니, ‘나의 종조從祖 무덤이 동쪽 산기슭에 있는데, 내 자부婦夫 양반 권씨가 이러한 말로 일찍이 은밀하게 부탁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농간을 부리는 습성을 먼저 엄히 다스리고, 투장한 무덤을 바로 관에서 파내게 하여야 조상의 무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원고의 이른바 5대조 무덤이라는 것은 실제 모호합니다. 진실로 그 조상의 무덤이라면 수십여 년 동안 어찌 한 번도 와서 성묘하지 않고, 지금 갑자기 송사를 일으키는 것입니까. 반드시 확실한 증거가 있는 연후에 다른 곳으로 무덤을 옮길 수 있으며, 한성오에게 뒷자리 한 곳을 빌려 얻어 장사를 지낸 지도 또한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 한성오의 산판山坂으로 알고서 아직까지 금양禁讓^{**}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참고하면, 원고가 오랫동안 성묘하지 않은 것과 피고가 묘를 쓴 햇수年條는 지금 확실한 증거로 증빙할 수 없지만, 이른바 양반 권씨가 한여래에게 거간하여 몰래 부탁해 선조의 무덤祖塚이라고 사칭하게 하였다.’는 등의 말은 이미 군郡에서 도형圖形할 때 관교官校와 동민洞民이 모두 들어 아는 바이다. 또 관정官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 집안의 족보를 제출하게 하여 상세히 살펴보니, 책은 판각본板刻本으로 선산山이 있는 동명洞名과 묘지의 위치坐所가 소상하게 실려 있었다. 그러자 피고가 변명할 말이 없어서 바로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스스로 납고納尙^{***}하였다. 하지만 전후로 행한 간악한 습성이 매우 통탄스럽고 또 주산主山의 경계界限 내에 투장偷葬한 것과 관련되므로, 피고를 소송에게 패소하게 하고, 지금 바로 잡아 가두어 무덤을 파내게 하는 것으로서 판결서를 작성해 준다.

** 금양禁讓 : 주로 분묘가 있는 곳의 산림에서 수목의 벌채, 분묘의 설치, 농지의 개간, 토석의 채취 등을 금지하고, 특히 소나무의 재식(栽植)과 육성에 힘쓰는 것이다. 금양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나 땀 나무 등을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배타적 산림 이용권이 인정되었다.

*** 납고(納尙) : 관청에 다짐(拷辭)을 바치는 것이다. 다짐은 어떤 사실의 옳음을 확인하거나 그 사실대로 실행할 것을 맹서하는 문서이다. 특히 재판에서 패소한 자가 판결 내용의 실행을 다짐하며 바치는 문서를 말한다.

1906년 3월 29일

원고와 피고의 양측에 각각 1건을 지급하였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관사서리 수원군수水原郡守

원문

判決書

原告 竹山郡 居 韓文會
年

被告 水原郡 居 金正球
年

判決要旨

原告 山坂에 偷葬호 被告 祖母塚을 卽爲掘移호미 可호 事

理由

原告에 主張은 先山이 在於水原郡台村面馬通谷호야 百餘年無弊守護而間有寓居於忠淸道丹陽郡이옵다가 乃於十餘年之後에 搬移於竹山郡而始爲省墓則墓直金正球偷葬其祖母於原告五代祖塚十九步之地故로 詰責督掘則指原告五代祖塚曰 此是山下居韓班成五之從祖塚而借得一壙於韓成五處이다 生臆不已이기 以至呈訴而圖形之時의 招致韓成五之子汝來質問則我之從祖塚이 在於東麓而吾之婦夫權班이 以此等之說노 曾有密囑이다즉 被告容奸之習을 先爲嚴治호고 偷葬塚을 俾卽官掘이라야 可保先權이라 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 陳供은 原告 所謂 五代祖塚云者實爲模糊라 眞若其祖塚則數十餘年에 胡無一次來省而今忽起訟乎아 必有確據然後의 可以掘移而韓班成五處에 借得一壙호야 入葬者亦爲年久라 認以韓成五之山坂而尙此禁讓이다인마 參以兩供의 原告之久不來省과 被告之入葬年條는 今無

確證之可據나 所謂權班이 居間暗囑於韓班汝來하야 使之冒稱從祖塚等說
은 已於自郡圖形之時의 官校與洞民이 共所聞知者而且於查庭의 原告之家
譜를 現納詳考則冊是板刻에 山在洞名與墓之坐原이 消詳載錄인즉 被告가
無辭發明하야 卽爲掘移次渠自納俵나 前後奸惡之習이 極爲痛駭이며 亦係
有主山界限內偷葬이기 被告을 實之落科而現方捉囚督掘하며 茲에 判決書
成給事

光武十年 三月 二十九日

原被兩隻各給一件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水原郡守



1906년 4월 25일 수원-한성

역문

{광10민68호}

제135호

판결서

서서西署 창동倉洞 거주 상민商民

원고 김흥식金興植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한성리韓聖履

충청도忠淸道 문의군文義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장진태張鎭泰

남서南署 다동茶洞 거주 전前 주사主事

피고 김은식金殷植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하여, 전당잡았던 김흥식金興植의 가계家契를
내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03년 3월경에 원고 장진태(張鎭泰)의 간청에 따라 원고 김흥식의 가권(家券)을 전당잡았고 빌려준 돈 엽전 3,000냥(兩) 중 1,000냥은 그가 받을 물건값으로 빼고 2,000냥만 장진태에게 내주었다. 그러므로 1903년 4월부터 9월까지 윤달(閏朔)이 있으므로 7개월 이자를 합치면 당오전(當五錢) 합계(當計) 4,725냥이 되고, 또한 이전에 빚진 돈 1,090냥이 있어 합쳐도 당오전(當五錢) 합계(當計) 20,815냥에 불과하다. 1903년 10월에 피고가 설령 다시 전당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액수대로 빚내었다면 혹 그럴 수도 있으므로 이상할 것이 없지만, 24,500냥으로 액수를 늘려 빚을 얻은 것은 이 어떠한 경위인가. 피고가 당초 빌려준 돈의 원금 및 물건값(物價)이 합쳐서 17,100냥인데 원고가 갚을 돈이 31,080냥이 되었으니,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것은 법이 허가하지 않는 바이나 이미 사사(私私)로 서로 셈한 것이니 따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가 이치에 벗어난 이자를 받고자 하여 가권을 내주지 않아서 이처럼 분소(奔訴)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4월 25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휘(李秉輝)

판사 홍재기(洪在祺)

주사 홍면희(洪冕憲)

원문

{光十民六八號}

第一百三十五號

判決書

西署 倉洞 居 商民

原告 金興植

京畿 水原郡 居 農民

原告 韓聖履

忠清道 文義郡 居 農民

原告 張鎭泰

南署 茶洞 居 前主事

被告 金殷植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等 訴求에 應호야 典執호 金興植 家契를 出給함이 可호 事 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等の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는 癸卯三月分에 原告 張鎭泰 所懇을 因호야 原告 金興植 家券을 典執호고 給債葉錢 三千兩中 一千兩은 渠之所推物價條로 除之호고 二千兩은 出給張哥인바 自癸卯四月로 九月至間 有閏朔호야 合七朔邊이 爲當計四千七百二十五兩이고 亦有曾前所負條 一千九十兩호야 并不過當計二萬八百十五兩矣라 癸卯十月에 被告가 設有移典之事라도 以此數出債는 容或無怪나 以二萬四千五百兩 加數出債는 是何涇渭인지 被告之當初給債之本錢及物價가 合爲一萬七千一百兩而原告之所報가 爲三萬一千八十兩則 利過於本錢에 法不可許로되 既爲私相細音者則 不必追究이나 被告가 欲捧理外之利호야 不給家券호야 至此奔訴케호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等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十年 四月 二十五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輝
判事 洪在祺
主事 洪冕憲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6년 5월 10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3호

원고 수원부내水原府內 거주 임봉렬任鳳烈

피고 수원부내水原府內 거주 송병태宋秉泰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동업(同傭)하여 취리(取利)할 때에 원고의 가입전(加入錢) 당오전(當坪) 2,438냥兩 7전錢 5푼分은 반으로 나누어 물어 주고, 각 사람에게 받지 못한 몫은 받는 대로 나누어 써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지난해 2월경에 피고와 더불어 각자 자본을 내어서 안성시(安城市)에서 이익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도로 장사도 하고 있었는데 다만 무식하여 서울과 지방을 오고 갈 때에 돈의 거래와 물건의 출입에 대한 장부의 처리를 피고에게 위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7~8개월 동안에 물건의 부족분이 과다하였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피고가 나누어 계산하자고 말하기에 식리책자(殖利冊子)를 조사해 보니 분명하지 않고 어지러운 부분이 많은 가운데 1,000냥의 돈을 거

것으로 기록하고 실제로는 빼낸 후에 그 간사한 상황을 숨기고자 하여 그의 5촌에게 작성하게 한 것을 제가 증거로 잡았습니다. 피고의 친척인 송치상宋致尙, 송건칠宋建七 등 여러 사람과 회동하여 물건책자를 엿일을 거슬러 상고해 보니 빠진 것이 40,000여 냥의 가치였습니다. 피고의 친척인 송건칠이 말하길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입이 있어도 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오전(當坪) 10,000냥을 먼저 물어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증서를 작성해 주고 수없이 애걸하였으므로 그 증서를 받았습니다. 기한이 다 되어 찾고자 했더니 시간을 끌며 지급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취리(取利)의 자본금으로 찾지 않은 몫과 이자를 합친 7,500냥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강제로 10,000냥의 증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정소(正訴)하였습니다. 그러나 취리(取利)한 액수 가운데 각 사람에게 받지 못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치부(置簿) 안에 피고가 벌인 간사한 계획이 분명하오니 증서로 작성한 10,000냥을 거두어서 출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동업하여 취리(取利)할 때 원고의 물건 대차 거래를 간혹 장부에 기록하였지만 이해와는 무관합니다. 1,000냥도 거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말의 요지를 잡았고, 물건의 부족액을 거두고자 하면서 저의 5촌에게 10,000냥의 증서를 강제로 받아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치부를 상고하고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입씨의 주장이 근거가 없었기에 강제로 작성한 증서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동업할 때에 남은 자본과 이익은 시간을 끌며 지급하지 않고서 10,000냥의 증서를 작성하고 한결같이 저의 5촌에게 강제로 거두고자 하고 있으니 이것이 합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0냥의 돈은 당초에 운반해 주는 사람이 나중에 찾아 간 것이 비록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와서 질문할 때에 대답이 잘못 었나갔기 때문에 편지가 오고 가는 것에 이르러 결국 모호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단서로 잡고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것을 주지 않고서 도리어 거짓으로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다툼을 끊이지 않게 하고 있으니 이치에 따라 판결해 주십시오. 또한 그 거짓 증서를 시행하게 않게 해 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돈 7,100여 냥을 찾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1,000냥의 입출을 조사해 보니 비록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도 10,000냥의 증서를 영수했다는 것은 이미 실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물화의 거래 장부를 피고가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본래 동업한 것이 아니라면 이해는 무관한 것이다. 매매와 입출의 이익과 손실을 일수와 달수로 계산하여 일찍이 반드시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다가 명확하지 않은 단서라고 변명하면서 장부를 관리한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는 것이 이치상 말이 되지 않는다. 증서가 강제성을 지니고 있음은 논할 것이 없으며, 법에 있어서도 책임지워 물어줄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증서 안에 처음부터 수결(手決)과 도장으로 증빙할 만한 것이 없었으니 거짓으로 강제한 것에 가깝다. 증서를 효주(爻周)해서 주고 시행하지 말게 하라. 그가 말하기를, 취리(取利)의 자본금으로 찾지 못한 것이 임씨가 많고 송씨가 적으며, 원고에게 더 들어간 것이 2,438냥 7전 5푼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그 수를 반으로 나누어 피고가 돈 1,219냥 3전 5푼을 원고에게 물어주어서, 그 자본을 균등하게 하되, 받지 못한 17,520냥은 받아야 할 것에 따라 각자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에 판결한다.

1906년 5월 10일

원고와 피고 양쪽에 각 1건씩 지급한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원문

判決書 三號

* 수결(手決) : 개항 이전 조선시대에 보통 성명을 가지고 있던 상민(常民) 이상의 사람들이 공식문서(公私文書)에 사용한 독특한 부호이다. 오늘날의 '사인'에 해당한다.

** 효주(爻周) : 일반적으로 문서 등의 내용 위에 "x" 부호로 표시하여 해당 내용을 지우는 것을 의미한다. "x" 부호를 세로로 연이어 하면 "효(爻)"자 모양이 되므로 이렇게 칭했다. 한편 삭제할 내용의 둘째를 선으로 연결하여 삭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주(周)"로 파악하기도 한다.

*** 원문에는 없으나 판심을 확인하여 보충하였다.

原告 水原府內 居 任鳳烈 年

被告 同里 居 宋秉泰 年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의 對호야 取利同舍時 原告의 加入錢 當坪二千四百三十八兩七錢五分은 分半徵給호고 各人處 未捧條는 隨所捧分用함이 可호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호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昨年二月分에 與被告로 各出資本호야 殖利於安城市이온대 原告則別有商販 而不唯無識이라 京鄉來往之時에 錢坪去來物件出入을 委任置簿於被告이올다운 七八朔之間에 物件之欠縮이 夥多이오되 莫知所由矣러니 不意被告가 言以分計 故로 調查殖利冊子 則多有濁亂中 一千兩錢을 虛入實出後 欲掩奸狀호야 致書於渠之五寸者를 原告執贓호온바 會同被告族人宋致尙建七諸人 而溯考物件冊子 則欠縮者爲四萬餘金 價値矣라 被告族人建七日 事既如此에 有口難言이니 當坪一萬兩을 爲先徵給이라호고 成票以給 而無數乞參 故로 捧其票而趁限欲推 則延拖不給이라가 今來日 取利坪資本錢 未推條及利文 并七千五百兩은 不給호며 勒捧一萬兩標라호고 先爲呈訴이온바 取利坪에 各人之未捧이 自在호고 置簿上에 被告之作奸이 分明이오니 成標錢一萬兩을 徵捧出給이라호나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取利同舍之地에 原告之物貨去來를 間或置簿이나 利害無關이온디 以一千兩錢도 來去不明으로 作爲語호고 物件欠縮條를 欲爲徵捧호야 被告五寸處에 勒捧一萬兩標 故로 考其置簿호고 質諸商民에 任歸無據호야 燒滅勒標이온디 同舍時 資本餘在與利文은 延拖不給호며 成一萬兩標紙호고 一向欲勒徵於被告之五寸이오니 是可日得當乎잇가 一千兩錢 則當初運授之人이 追後推去가 雖是의確이오나 原告往質之時에 答辭橫豎之致로 至有書札來往에 果未免模糊이오되 以此執端호야 不給當給호고 反成僞標 而爭詰不已이오니 從理裁決호야 勿施其僞

標호고 推給其當捧錢七千餘百이라호나 查此一千兩錢之出入이 雖曰不明이나 一萬兩標之領受 已實係理外라 物貨之去來置簿를 被告가 非不爲之나 本非同舍 則利害無關이요 賣買出入에 其所剩縮을 日計月計에 早必知之而無言타가 藉口於不明之端 而歸咎於置簿之人이 理不近語不成也니 勿論標之恒勒호고 法不可責徵뿐더러 標紙上에 初無手決圖章之可憑 則近於僞勒이라 爰付勿施이고 其日 取利資本錢之未推가 任多宋小에 原告之加入이 爲二千四百三十八兩七錢五分 則分半其數호야 被告가 錢一千二百十九兩三錢五分을 徵給原告호야 以均其資本호고 未捧條一萬七千五百二十兩은 隨其所捧호야 各其分用함이 正當하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年 五月 十日 原被兩隻 各給一件





1906년 5월 19일 한성-수원

역문

판결서 제34호

한성漢城 남서南署 회동會洞 거주 전前 참봉參奉

원고 정원모鄭遠謨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평민平民

피고 정인하鄭寅夏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환퇴還退하여 방매放賣한 전답田畝와 산록山麓을 매득[買有]한 두 이李씨에게 강제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증인 대질[證質]에 비추어 좀 더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所供]은, “지난 1898년경에 수원水原 공향면貢鄉面에 소재한 선영先塋의 산판山坂과 위토位土를 원고가 부모의 상을 당하고 형편이 어려워져 방매放賣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오전[當錢] 2,000냥兩의 값을 치르고 영매永買하였는데, 1903년 봄 원고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는 계책으로 환퇴還退할 것을 와서 요청하기에 제가 3,000냥兩을 더 주었고, 같은 해 7월에 또 2,000냥을 주었습니다. 그 후 원고가

다시 2,000냥을 요구하기에 응하지 않았더니, 원고가 원금에 이자를 더한 8,800냥을 마련해 와서 환퇴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돈을 받아서 보관해 두고[擄留] 문권文券을 주지 않았는데, 3일이 지난 후 원고가 다시 와서 급히 쓸 데가 있다면서 전에 받아 보관해 둔[擄留] 돈 중에서 4,700냥을 도로 가져갔고, 그 후 해당 전답과 산록을 수원군水原郡에 사는 이승필李承泌·이교순李教淳 두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송추松楸를 베어내므로, 제가 막지 못하고 같은 해 추수秋收를 주지 않았더니, 두 이李씨가 수원군에 거소舉訴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1898년 문권文券을 빼앗아 원고에게 주었습니다. 이에 제가 해당 재판소에 다시 상소[申訴]하여 비로소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所供]은, “지난 1898년에 선영의 산판과 위토 전답田畝를 피고에게 전답잡히고 당오전[當錢] 2,000냥을 얻어 썼습니다. 그리고 해당 산판의 현존現存 송추松楸의 베고 파는 것은 종계宗契의 뜻을 따르기로 여러 친족과 약속하였는데 피고의 재종再從 형제가 약조를 따르지 않고 송추를 베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피고 재종 정인태鄭寅泰가 작별한 송추값 500냥은 1903년 봄에 비로소 찾았으나, 피고는 값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에 제가 해당 전답과 산판을 환퇴하려고 하니, 피고가 두 차례 5,000냥을 더 주었습니다. 그 후 제가 또 환퇴를 요구하자 피고가 말하기를 ‘네가 만약 환퇴해 가려거든 시변市邊*을 갖추어 환퇴해 가라.’고 하기에, 그 말에 따라 원금에 이자를 더한 8,800냥을 피고에게 갚아 주고, 문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억지를 부리며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가 시가時價 22,650냥을 받고 해당 전답과 산록을 이승필과 이교순 두 사람에게 나누어 팔았더니 피고가 추수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두 이李 씨로부터 거소舉訴를 당해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시끄럽게 굴어서 해당 府府에서 대질심리[質辦]도 하지 않고, 두 이 씨가 매득한 문권文券을 피고에게 찾아 주라고 하며, 저의 방조傍祖** 무덤을 피고가

* 시변(市邊) : 장날에 장에서 꾸는 돈의 이자이다. 다음 장날까지의 기간 곧 닷새 동안의 이자가 붙는다. 장변(場邊), 장변리(場邊利), 파변(派邊)이라고도 한다.

** 방조(傍祖) : 6대조 이상이 되는, 직계가 아닌 방계의 조상이다.

평평하게 한 후 부모의 무덤으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또 저희 집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데, 사내종이 위답位畓 3두락斗落을 그 정황을 알고서 해당 묘지기에게 몰래 사서 비싼 가격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겼으니, 이 또한 찾아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양자가 모두 덕의德義를 저버리고 시끄럽게 다투는 것이 풍속을 해치는 일이다. 그러나 양측의 진술을 참고하고 또 피고의 6촌인 정인태鄭寅泰의 증인 진술[證供]에 의거하면, 피고가 종중을 보존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애초 부당한 이익을 꾀하여 20,000여 냥 가치의 물건을 우선 2,000냥으로 피어내어 흥정하다가 끝내 약속을 어기고 송추를 빼어냈다. 그리고 원고가 시변을 갖추어 환퇴한 후 (피고가) 추수를 방해하고, 두 이 씨에게 불법으로 침해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5월 19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윤용李允用

판사 이규환李圭桓

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안치윤安致潤

주사 노병수魯丙洙

원문

判決書 第三十四號

漢城 南署 會洞 居 前參奉

原告 鄭遠謨

京畿 水原郡 居 平民

被告 鄭寅夏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에 對하야 還退放賣한 田畓及山麓을 買有한 兩李에게 勒侵치 못할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證質에 照하야 認其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 所供은 去戊戌年分에 水原 貢鄉面 所在한 先塋山坂及位土를 原告가 丁憂勢艱하야 欲爲放賣故 給價當錢二千兩 永買者를 癸卯春에 原告가 計在賣他하야 來要還退키로 矣身이 加給三千兩하고 同年 七月에 又給二千兩矣러니 其後 原告가 又索二千兩키로 矣身이 不應호즉 原告가 俱邊하야 八千八百兩을 辦來하야 强要還退故로 矣身이 捧留該錢하고 不給文券이러니 過三日後에 原告 更來하야 言有急用하고 前日捧留中 四千七百兩을 還爲持去러니 其後에 該田畓及山麓을 更賣於本郡居 李承泌 李教淳 兩人處하야 來伐松楸故로 矣身이 禁之不得하고 同年秋收를 不給이러니 兩李가 舉訴本郡하야 矣身所持한 戊戌年文券을 奪付原告故로 矣身이 更爲申訴該裁하야 始乃得伸이라 하며 原告 所供은 去戊戌年에 先塋山坂 位土田畓을 典當於被告하고 當錢二千兩을 得用인바 該山坂現存한 松楸則 伐賣成宗契之意로 立約諸族인바 被告의 再從兄弟가 不遵約條하고 斫賣該松楸故로 被告再從寅泰之所斫한 松價 五百兩은 癸卯春에 始得推覓이나 被告는 無意報償故로 矣身이 該田畓與山坂을 欲爲還退則 被告가 兩次加給이 爲五千兩인바 其後에 矣身이 又要還退則 被告曰 汝若退去어든 俱市邊退去하라하고 依其言 俱本邊八千八百兩하야 報給被告하고 要覓文券즉 被告가 施聽不給인바 矣身이 捧時價二萬二千六百五十兩하고 該田畓及山麓을 分賣於李承泌 李教淳 兩人處矣러니 被告가 沮戲秋收라가 因兩李之舉訴落科러니 不悛更鬧하야 自該府로 不爲質辦하고 兩李買有한 文券을 推給被告라 하며 矣身傍祖之塚을 被告가 平土後 入葬親塚이라 하며 矣身家 無后奴子 位畓三斗落을 知情偷買於該墓直處하야 捧高價越賣於他人하얏스니 此亦推給

을 爲望이라 恨바 兩造가 俱沒德義호야 嗚嗚爭下이 有關傷風이나 參互兩
供호고 據其被告六寸 寅泰之證供호니 被告가 不思保宗호고 計切牟利호야
以二萬餘兩價値之物을 先以二千兩으로 甘誘興成이다가 未乃 違約斫松호
니 原告가 俱市邊還退之後에 沮戲秋收호고 橫侵兩李함은 正當이라 謂치
못홀지라 是로 以호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는 事

光武十年 五月 十九日

平理院

裁判長 李允用

判事 李圭桓

判事 李秉和

判事 安致潤

主事 魯丙洙



1906년 5월 23일 수원-한성

역문

{광10민163호}

판결서 제38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감담면葛潭面 거주 농민農民

원고 박팔순朴順八

원고 김근배金根培



한성漢城 중서中署 재동齋洞 거주 전前 내장원경內藏院卿

피고 이규중李槩重

대언인代言人 이순응李純應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사패賜牌*를 받은 사표四標**의 경계 내 산관山坂을
침범하여 빼앗아서는 안 된다.

* 사패(賜牌) : 고려·조선 시대에, 궁가(宮家)나 공신(功臣)에게 나라에서 산림·토지·노비 따위를 내려 주며 그 소유에 관한 문서를 주던 일 또는 그 문서이다.

** 사표(四標) : 토지, 가옥, 분묘 등의 사방 경계, 특히 양안에서 토지의 위치를 동서남북의 경계로 표시한 것으로, 사방 접속지의 지목(地目), 자호(字號), 지주의 성명을 해당란에 기입하거나 혹은 별도의 도면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문적[文蹟]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供]은 “저희들 여러 집의 선영先塋을 피고가 사패를 받았다고 하고, 사표를 광점[廣占]하도록 정하여 산판[山坂]을 거의 다 빼앗겼으니, 다시 찾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所供]은 “제 집안의 선영이 마장리[馬場里]에 있었는데, 원소[園所]**로 정해진 이후 사패를 받아 선산先山 네 개의 분묘를 수원[水原] 갈담리[葛潭里] 뒤의 산록[後麓]에 입장[入葬]하여 관에서 사표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치에 맞지 않게 송사를 일으켰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참고하고 사패 문적[文蹟]을 자세히 검토하니, 원고들의 산판이 모두 사표 내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원고들이 법의法意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분소[分訴]만을 일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答下]은 이유가 있다.

1906년 5월 23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윤용[李允用]

판사 이규환[李圭桓]

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안치윤[安致潤]

주사 박유관[朴有觀]

원문

{光十民一六三號}

判決書 第三十八號

*** 원소(園所) : 왕세자, 왕세자빈과 왕의 사친(私親) 등의 산소(山所)이다.

京畿 水原郡 葛潭面 居 農民

原告 朴順八

金根培

漢城 中署 齋洞 居 前內藏院卿

被告 李槩重

代言人 李純應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에 對하야 蒙賜牌四票定界內 山坂를 不可侵爭할 事

理由

被告에 主張은 質下과 文蹟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에 所供은 矣身等諸家先塋을 被告가 蒙有賜牌고 定標廣占하야 山坂을 舉皆 見奪하니 願爲還推라 하며 被告 所供은 矣身家先塋이 在於馬場里러니 及 定園所後蒙有賜牌하야 先山四墳을 入葬於水原葛潭里後麓이은바 自官定 四標矣러니 原告等이 無理起訟이라 한바 參互兩供하고 考閱賜牌文蹟하니 原告等山坂이 俱入於四標內가 的確이거늘 原告等이 不曉法意하고 惟事奔 訴가 正當이라 謂치 못할지라 是로 以하야 被告 答下은 其理由가 有하 事

光武十年 五月 二十三日

平理院

裁判長 李允用

判事 李圭桓

判事 李秉和

判事 安致潤

主事 朴有觀



1906년 5월 29일 수원-양성

역문

[광10민788호]

판결서 제40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김희경金喜景

경기京畿 양성군陽城郡 거주 농민農民
피고 오인영吳寅泳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객주客主 파산 후의 사화조私和條 30,000냥兩과 전당잡힌 논문서[番券]를 내어 주어야 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서[票證]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供]은 “1903년경에 피고와 용인龍仁에 사는 김교성金敎性이 저의 사촌 김성옥金成玉과 동업하여 객주客主를 설립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어 피고가 와서 저에게 말하기를, ‘내 장사가 당신 사촌의

* 사화(私和) : 소송이나 분쟁 등을 법이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끼리 서로 좋게 해결하여 풀어버린다.

여러 일처리가 미흡한 탓으로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인데, 여러 상인들의 물화物貨값으로 내주어야 할 것이 적지 않다. 그래서 내가 논문서를 전당잡혀 빚을 얻을 것이니, 부디 나를 위해 장부를 잘 마감하여 정리하고 또 나를 본 후에 그 손해를 메꿔 주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이 돈을 마련하여 올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수일 후에 피고가 진위군振威郡의 논문서를 가져와 전당잡히고 빚내기를 요청하기에, 제가 해당 논문서를 나성규羅聖奎에게 전당잡히고 당오전[當錢] 50,000냥兩의 빚을 얻었습니다. 이어 조동叢洞의 이 찬정李贊政 집에 피고의 서찰을 전해 주고 또 50,000냥을 얻었고, 해당 객주 가옥[家畬]을 또한 밑천[資本]에 넣어 제 스스로 간사幹事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빚으로 인해 피신하고 저 또한 이 찬정의 빚 독촉을 받아, 예전 피고의 동업자인 김교성과 25,000냥씩 절반씩 나누어 물어주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나타나기를 기다려 서로 계산[細算]해 보니,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 30,000여 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오히려 거소擧訴하여 관찰부의 재판에서 패한 후에 또 평리원[評理院]에 상소[申訴]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의 평리원[京院] 재판을 하면 반상의 차별이 심할 것 같아 뜻밖의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성규에게 전당잡힌 문서는 마땅히 찾아 돌려주고, 당오전[當錢] 30,000냥 또한 사화私和의 뜻으로 더 주겠다는 어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김교성이 이 찬정집에서 빌린 돈을 대신 갚을 때 빌려준 25,000냥을 피고의 말을 전하고 찾아갔으니, 해당 사화조 30,000냥 어음에 대해서는 5,000냥만 지급[出次]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所供]은 “지난 1903년에 김성옥과 객주를 설립하여 장사를 접은 후, 다시 원고와 관계를 맺고 당오전[當錢] 148,000냥을 대주었는데, 이후 원고가 회계상에서 제 멋대로 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에 이르러 원고가 90,000냥에 사화私和하기로 확정하여, 20,000냥은 문권을 전당잡힌 잔금으로 제하고, 30,000냥은 어음으로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40,000냥은 원고 자신의 사촌 김성옥이 봉차책자[捧次冊子]를 가지

** 봉차책자(捧次冊子) : 봉차(捧次)는 우리 고유의 회계용어로 자산과 수입을 뜻하고, 요즘의 회계용어 대변(貸邊)에 해당한다. 반대로 급차(給次)는 부채와 지출을 뜻하고, 요즘의 차변(借邊)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산과 수입만을 기록한 장부가 봉차책자이다. 유의어는 봉차질(捧次帳)이다.

고, 김병흥金炳興을 보증 세워 증서[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김교성 집에 갚은 25,000냥을 사회조 30,000냥 어음에서 먼저 제하고 내어 주겠다.'고 하니, 해당 30,000냥과 전당잡힌 논문서는 원고에게 추심해 독촉해 주고, 김성옥 증서의 40,000냥 또한 바로 추심을 독촉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참고하고 또 증인의 말에 따르면, 1904년 8월 이전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없다. 양쪽의 뜻이 서로 잘 맞아 이미 사회가 성립되었으면 마땅히 계약에 따라 타당하게 갚아 나가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원고가 사회하기 이전, 김성규에게 빚을 저서 갚아야 할 것을 사회의 어음에서 제하려 한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다. 또 김성옥으로 말하더라도, 그가 이미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낭패한 나머지 봉차질책자捧次帳冊子를 맡아 가지고 진정으로 사회를 위하여 써 준 40,000냥 증서[標紙]를 지금 딱 잘라 거절[納回]하려 한 것 또한 매우 터무니 없으니, 두 김 씨가 모두 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갚아 주는 것이 옳다. 이로써 피고의 변론[答下]은 이유가 있다.

1906년 5월 29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윤용李允用

관사 이규환李圭桓

관사 이병화李秉和

관사 안치윤安致潤

주사 노병수魯丙洙

원문

{光十民七八八號}

判決書 第四十號

京畿 水原郡 居 商民

原告 金喜景

京畿 陽城郡 居 農民

被告 吳寅泳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에 對하야 客主出販後 私和條 三萬兩과 典質은 番券을 出給함이 可할 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票證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 所供은 癸卯年分에 被告及 龍仁居 金教性이 與矣身 四寸成玉으로 同事設客主未幾에 被告가 來言矣身曰 吾之商業이 因君之 四寸凡節未洽之致로 勢將舉販이나 諸商賈之物貨價出給條가 不少하니 吾當典番券得債하리니 幸爲我善爲勘簿하고 且看吾後하야 俾圖補其損害也하라 矣身이 答以第爲辦錢來하라 數日後에 被告持振威番券하고 來要典質得債故로 矣身이 典該番券於 羅聖奎處하고 得債當錢五萬兩하고 且傳被告書於 棗洞李贊政家하고 亦得五萬兩하고 該客主家舍를 亦入資本中하야 渠自擔任幹事인바 被告則因債避身하고 矣身이 亦因李贊政家督債하야 曾前被告之同事人 金教性과 二萬五千兩式分半徵償后 待被告現出하야 相爲細音則 矣身之當捧條가 爲三萬餘兩이거늘 被告가 反爲舉訴하야 府庭落科後 又欲申訴本院故로 矣身이 思以京院裁判이면 勢殊班常하니 不無慮外之慮하야 羅處典券은 當爲推還하고 當錢三萬兩을 亦加給私和之意로 成給於音이러니 其後에 金教性이가 李贊政家債額徵報時 貸予은 二萬五千兩을 來傳被告之言하고 推去하얏스니 該私和條三萬兩於音은 五千兩만 出次라 하며 被告所供은 去癸卯年에 與金成玉으로 設客主舉販後 更與原告相關하야 當錢十四萬八千兩을 注給하 後에 原告가 會計上에 多有施臆다가 及到昨年八月하야 原告가 以九萬兩에 私和의定하야 二萬兩則以典券零條除之하고 三萬兩은 以

於音成給하고 四萬兩은 以渠之四寸金成玉이 持捧次册子하고 使金炳興으로 居保成票러니 原告가 金教性家二萬五千兩報給者를 以私和條三萬兩於音中先除出給이라 하니 該三萬兩及典質券은 責推於原告하고 金成玉票四萬兩을 亦即督推以給이라 하니 參互兩供하고 且據證詞하니 甲辰八月以前에 原被告之互爭은 不必深究라 兩意相符하야 既成私和면 宜以契約妥報가 可也어늘 原告가 以私和以前之金教性處所負報債條로 欲爲叩除於私和於音中이 殊涉無理며 且以金成玉言之라도 渠既使人狼狽之餘에 任持捧次秩册子하고 情願私和하야 書給은 四萬兩標紙를 今欲納白함이 亦涉無據하니 兩金이 俱依票紙하야 報償被告함이 可한지라 是로 以하야 被告答下은 其理由가 有은 事

光武十年 五月 二十九日

平理院
 裁判長 李允用
 判事 李圭桓
 判事 李秉和
 判事 安致潤
 主事 魯丙洙



1906년 5월 29일 수원-남양

역문

판결서 제6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진중학陳鍾學

피고 남양군南陽郡 거주 이순문李順文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주인 있는 분묘의 땅 안에 입장入葬한 무덤을 이장移葬시켜 달라고 청하는 것이니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아내를 입장한 곳이 비록 진중학陳鍾學 산의 제한界限이나 진중학의 무덤과 거리가 84보步이고, 저의 숙부 무덤과 보수步數는 39보밖에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중학의 무덤은 처음부터 관곽과 품계가 없었으니 금장禁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산이 계곡을 나누어 경계로 삼았는데, 주인 있는 분묘 제한界限 안에 입장했으니 법에 있어서도 마땅히 이장해야 한다. 피고가 보수가 멀어서 금장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피고를 패소시키며 바로 이장해야 한다.

1906년 5월 29일
원고와 피고 양쪽에 각 1건씩 지급한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원문
六號

原告 水原郡 居 陳鍾學 年

被告 南陽郡 居 李順文 年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對하야 應할 만한 理由가 有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有主墳地內 入葬之塚을 請掘호미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矣妻之入葬이 雖是陳山之界나 於陳塚의 相距 爲八十四步 於矣身叔父之塚의 爲三十九步之地뿐더러 陳塚이 初無爵品호니 不可 禁葬이라호나 兩山이 壑分爲界에 葬於有主墳墓界限之內호니 法所當掘이 라 其日步遠이 不可禁葬이라함이 正當치아니호기로 被告는 置之落科하 니 卽爲移葬이 可호 事

光武十年 五月 二十九日
原被兩隻 各給一件

* 원문에는 없으나 판심을 확인하여 보충하였다.



1906년 5월 31일 한성-수원

역문
제215호
판결서

중서中署 전동典洞 44동 3호 상민商民
원고 신영식申英植
39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상민商民
피고 윤주영尹周榮
43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증서를 작성해 준 당오전[當錢] 8,50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子]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최병희崔秉羲와 함께 수원水原 평택平澤 정거장 운수회사運 輸會社를 동업하기로 약속하여, 원고가 당오전[當錢] 20,000냥을 출자해 장 사하다가 원고는 장사를 그만두고 물러났다. 그리고 해당 돈 20,000냥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 35,000냥으로 계산해서 피고와 최병희가 17,500냥씩 내겠다고 각각 수표手票를 작성할 때, “해당 돈을 1906년 3월 그믐 안에 갚으면 9,000냥을 줄여 주겠다.”는 뜻으로 말을 하였으니, 피고에게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가) 제때에 청산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5월 31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휘李秉輝

판사 이용상李容相

주사 박봉환朴鳳煥



中署 典洞 四十四統 三戶 商民

原告 申英植

年三十九

京畿 水原郡 商民

被告 尹周榮

年四十三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成票호 當錢八千五百兩을 報償호이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호 與原告及崔秉義로 水原平澤停車場運輸會社同事次로 爲約호야 原告가 當錢 二萬兩을 出資興販이러가 原告則退去호고 該錢二萬兩을 竝本邊計以三萬五千兩호야 被告與崔秉義가 各出一萬七千五百兩호 意로 各成手票時 該錢을 丙午三月晦內에 報給호면 九千兩을 減給호 意로 措語호얏스즉 其於被告에 可謂 幸矣而趁不清勘호은 正當이라고 호이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十年 五月 三十一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輝

判事 李容相

主事 朴鳳煥





1906년 6월 4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43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원고 김희경金喜景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평민平民

피고 김교성金敎性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권家券을 빙자하여 무리하게 가져간 당오전[當錢] 15,000냥兩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所供]은 “제가 양성陽城에 사는 오인영吳寅泳과 일찍이 거래한 것이 있었는데, 오인영의 객주客主 가옥[家舍]과 약간의 세간살이를 당오전[當錢] 50,000여 냥으로 값을 정해 신문권新文券을 만든 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문권[券]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음력 12월경에 일찍이 원고와 더불어 이자 계산 뚫으므로 15,000냥을 받고 사화私和^{*}한

* 사화(私和) : 소송이나 분쟁 등을 법이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끼리 서로 좋게 해결하여 풀어버린다.

후 해당 가권家券을 원고에게 내주어 호의好意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는 뜻으로 원고에게 말하니, 원고 또한 매우 다행이라고 하고서 해당 문권文券을 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치에 맞지 않는 말로 거소舉訴합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所供]은 “오인영 가옥을 일찍이 27,000냥에 사서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해당 가옥을 신권으로 오인영에게 구입했다고 하고 장차 거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사를 업으로 하므로 만약 정소呈訴를 당하면 장애[魔障]가 없지 않으므로, 15,000냥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해당 가권을 찾아서 책상 위에 두었더니 피고가 칼로 찢기에 지금까지 빼앗아 두었다가 일전에 거소하려 하자 피고가 되돌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질심리[質辦]하는 마당에 피고 또한 해당 돈을 이치상 마땅히 돌려주겠다고 하므로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6월 4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윤용李允用

판사 이규환李圭桓

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안치윤安致潤

주사 노병수魯丙洙

원문

判決書 第四十三號

京畿 水原郡 居 商民

原告 金喜景

京畿 水原郡 居 平民

被告 金教性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에 對하야 憑藉家券하고 無理捧去한 當錢一萬五千兩을 還給
함이 可한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 所供은 矣身이 與
陽城居吳寅泳으로 曾有去來條이온디 吳寅泳之客主家舍及如干什物을 決
價當錢五萬餘兩하야 成新文券後未給價錢하고 該券은 仍留다가 昨年陰臘
月分에 與原告로 曾於細音邊條로 一萬五千兩을 捧上私和後該家券을 出
給原告하야 以示好意하고 更無餘蘊之意로 言及原告則 原告가 亦謂幸甚하
고 該文券을 以刀切之러니 今以無理之說로 舉訴라 하며 原告 所供은 吳寅
泳家舍를 曾以二萬七千兩買有인바 被告가 該家을 以新券으로 買得於吳
라 하고 將欲舉訴故로 矣身이 以商爲業之地에 若當呈訴면 不無魔障故로
一萬五千兩을 給之被告하고 該家券을 討留案上이러니 被告가 以刀切之
이기 奪置至今다가 日前에 欲爲舉訴즉 被告가 言以還給이라 흔바 質辦之
場에 被告가 亦謂該錢을 理當還給이라 하니 是로 以하야 原告 訴求는 其
理由가 有한 事

光武十年 六月 四日

平理院

裁判長 李允用

判事 李圭桓

判事 李秉和

判事 安致潤

主事 魯丙洙

067



매장 무덤 굴이堀移에 관한 건

1906년 6월 4일 수원-양성

역문

판결서 제11호

원고 수원水原 문시면文市面 거주 임달준任達準

피고 양성군陽城郡 거주 김응배金應培 UWON RESEARCH INSTITUTE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변론(訴答)에 대하여, 새롭게 입장入葬한 아버지의 무덤을
굴이堀移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산의 경계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아버지를 입장한 곳이 김응배金應培의 국내局內이나 해
당 산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서로 간에 입장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응
배가 지금 갑자기 금장禁葬을 하는 것은 사리에 온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임달준任達準의 국내에 김응배의 무덤 하나가 있다는 것은 곧 임달
준이 입장한 것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이후로 골짜기를 나누어 양쪽의 경
계를 삼았는데, 원고가 다른 사람의 산소 뒤쪽(腦後)에 입장한 곳의 보수步
數가 39보가 된다. 따라서 법에 있어 마땅히 굴이堀移해야 하므로 원고를

패소시키고 이에 판결한다.

1906년 6월 4일

원고와 피고 양쪽에 각 1건씩 지급한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근홍李根洪

원문

十一號

原告 水原文市面 居任達準

被告 陽城郡 居金應培年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訴答의 對하야 新葬父塚을 掘移함이 可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는 山界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의 陳供은 渠父之入葬處가 果是金局之內이나 該山이 自來互相入葬之地에 被告之今忽禁葬이 事不穩當이라하나 任界之內에 有一金塚은 是乃先於任葬者也라 伊後로 兩界分壑이거늘 原告之入葬於他山腦後 三十九步之地가 在法當掘이기 原告는 置之落科하고 茲에 判決事

光武十年 六月 四日

原被兩隻 各給一件

京畿裁判所 判事 李根洪



1906년 6월 11일 수원-수원

역문

제13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예동식芮東皙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김인홍金仁紅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변론(訴答)에 대하여, 입장入葬한 무덤을 굴이掘移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우마장牛馬場에 입장入葬한 어머니 무덤에는 전혀 오래된 무덤이 없었던 빈 땅이었습니다. 산이 동서로 나뉘었고, 보수步數 또한 넓고 밟니다. 그뿐만 아니라 산의 주인은 임씨 성을 가진 자인데 피고가 경계를 넘어와 금장禁葬하는 것이 불가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선산의 국내局內에 다른 사람이 입장한 것을 어찌 금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고가 임씨 성을 가진 자의 산 경계라고 말하였으나 임씨의 산과 저의 국내는 그 경계가 분명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임씨의 종손宗孫 여러 명을 불러다가 대질시켜 보니 또한 김인홍金

仁紅의 경계라고 하였다. 소송의 이치를 살피고 증인 진술[證供]을 서로 비교해 보니 김인홍의 국내가 분명하였다. 주인 있는 산에 입장하는 것은 법에 있어 마땅히 금장해야 한다. 피고의 변론이 정당하기 때문에 원고를 패소시키고 이에 판결한다.

1906년 6월 11일

원고와 피고 양쪽에 각 1건씩 지급한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근홍李根洪

光武十年 六月 十一日

原被兩隻 各給一件

京畿裁判所 判事 李根洪

원문

十三號

原告 水原郡居 芮東哲 年
被告 同郡居 金仁紅 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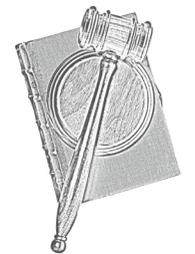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I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訴答의 對하야 入葬塚을 掘移함이 可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入葬母塚於牛馬場 無一古塚 空虛之地인되 山分東西하고 步且濶遠뿐더러 山主則林姓이거늘 被告之越界禁葬이 不可라하고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先山局內 他人之入葬을 何可不禁이리오 原告曰 林山之界라하오나 林山金局이 自在其限이라하며 林山宗孫數人을 招致問之에 亦曰金界라하느바 究其訟理하고 參互證供 則金局分明하니 有主山入葬은 法所當禁이라 所以被告의 訴答이 正當하기로 原告는 置之落科하고 茲에 判決하 事





분묘 소송에 관한 건

1906년 6월 12일 양주-수원

역문

{광10민176호}

판결서 제47호

경기京畿 양주군楊州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이상익李相益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부위副尉

피고 오직선吳直善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치에 맞지 않게 묘를 쓴 어머니 무덤을 즉시 파서 옮겨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산권[山券]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供]은 “제 증조[曾祖]의 산소가 수원[水原] 태촌면[台村面]에 있는데, 김실달[金實達]에게서 산을 매득한 문권[文券]이 분명히 있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 10월에 피고가 제 증조의 무덤으로부터 15보步 반半의 땅에 자신의 어머니를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군에 정소[呈訴]하여 관[官]에서 도

형[圖形]하여 대질 조사하는 자리에서, 피고가 내년 4월에 파서 옮기겠다는 내용으로 관에 납고[納考]하였는데 지금까지 파가지 않은 까닭에 이렇게 원통함을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所供]은 “작년 10월경에 제 어머니를 수원 태촌면 진언록[陣彦麓]으로 이장하였는데, 무덤이 많아 묻어도 되는 산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쟁송[訟爭]으로 인해 군부[郡府]에서 평리원[平理院]에까지 이르렀으니, 즉시 마땅히 파서 옮기겠습니다.”라고 납고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6월 12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운용李允用

판사 이규환李圭桓

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안치윤安致潤

주사 박유관朴有觀

원문

{光十民一七六號}

判決書 第四十七號

京畿 楊州郡 居 農民

原告 李相益

* 도형(圖形) : 분묘 소송이 발생하면 관아에서 실제 현지로 나가서 그 산세와 무덤의 위치 및 묘 사이의 거리 등을 조사·측량하여 그런 것을 말한다. 분묘 소송 재판에서 판결의 중요 근거 자료로 인용된다.

** 납고(納考) : 관청에 다짐[拷音]을 바치는 것이다. 다짐은 어떤 사실의 옳음을 확인하거나 그 사실대로 실행할 것을 맹서하는 문서이다. 특히 재판에서 패소한 자가 판결 내용의 실행을 다짐하며 바치는 문서를 말한다.

京畿 水原郡 居 副尉
被告 吳直善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에 對하여 無理入葬한 母塚을 卽爲掘移함이 可한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山券에 照하여 認直事 此에 對하여 原告 所供은 矣 身會祖山이 在於水原台村面이온바 金實達處買山文券이 自在호와 于今 七十年守護矣러니 不意昨年十月에 被告가 暗葬其母於矣會祖塚十五步半 地故로 呈訴于水原郡하여 自官으로 圖形質查之場에 被告가 明年 四月 掘 移之意로 自官納俵이더니 尙今不掘故로 有此呼冤이라 하며 被告 所供은 昨年 十月分에 矣母를 緬葬於水原台村面陣彥麓而認以北邙山矣러니 因原 告之訟爭하여 自郡府로 以至本院이온즉 卽當掘移호깃다 納호얏스니 是로 以하여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한 事

光武十年 六月 十二日

平理院

裁判長 李允用

判事 李圭桓

判事 李秉和

判事 安致濶

主事 朴有觀



1906년 6월 27일 아산-수원

역문

제22호

원고 충남忠南 아산군牙山郡 거주 서평순徐平淳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주오성朱五成 류치덕柳治德 정동완鄭東完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어장漁場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 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수원군水原郡 갈매포乞梅浦 어장을 수십 년 동안 생업으로 삼아 왔는데 지난 1903년경에 천주교의 교인에게 빼앗겨서 수년 동안 잃 어버렸다가, 관부官府에 소송하고 교당에게 말해서 교당으로부터 돌려받 았습니다. 그런데 일진회一進會 회원인 피고들이 주인이 없는 영업장이라 고 칭하며 중간에서 빼앗아 갔으니 본래 주인이 도로 찾는 것에 대해 피고 들이 빼앗고자 하는 것이 사리에 있어 정당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어장을 돌려싸고 전개되었던 소송 서류와 교당으로부터 돌려받 은 증서와 마을 주민의 보고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진술陳供은 “해당 어장은 관유官有도 아니고 사유

私有도 아니었는데, 여러 해 전부터 해당 동의 천주교당에서 주관하였습
 다. 이처럼 대를 이어 생계로 삼아 오지 않은 사람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사리에 있어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겨울에 해당 교당과 담판
 을 지어 마침내 찾아와서 말뚝을 박고 그물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원
 고가 자신이 본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군郡에 정소모訴했으나 패소한 이
 후에도 한결같이 소송을 일삼고 있습니다. 해당 어장은 본래 정해진 주인
 이 없어서 주는 것과 빼앗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사리에 있어 매우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변정辨正하기 위하여 올린 소송문서[訟軸]의 곳곳에 증거가
 있고, 해당 교당에서 돌려준 증서와 동장洞長이 보고한 사실이 모두 명확
 하니 확실히 원고의 기업基業이다. 중간에 빼앗긴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
 이라 지금 다시 찾았는데, 피고가 함부로 점유하는 것은 진실로 타당하지
 가 않다. 그러므로 해당 어장은 원고에게 줄 것을 허락거니와 올해는 피고
 들이 이미 그물을 설치해 때가 이미 늦었으니 피고가 우선 영업을 하고, 내
 년부터 시작하여 원고가 그 터를 주관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에 판결한다.

1906년 6월 27일

원고와 피고 양쪽에 각 1건씩 지급한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근홍李根洪

원문

第二十二號

原告 忠南 牙山郡 居 徐平淳 年

被告 水原郡 居 朱五成 年

柳治德 年

鄭東完 年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對하야 被告等은 漁場을 還其本主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은 被
 告等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水原郡 乞梅浦 漁場을 數十年爲業이라가 去癸卯年分에 爲
 天主教人之所奪하야 數年見失이라가 訴于官府하고 言於教堂하야 自教堂
 으로 還爲出給이거늘 一進會員被告等이 稱之無主之業이라하고 中間奪去
 하오니 本主之還推에 被告之欲奪이 事不正當이라함은 由來訟案과 自教
 堂還主之標와 洞民之報에 照하야 認其正直한 事 此에 對하야 被告等陳供
 은 該漁場이 非官非私인되 年來에 自該洞天主教堂으로 主管이온바 此等
 基業之外人句管이 事不穩當 故로 昨冬에 談辦於該教하야 竟爲推覓에 插
 抹設網이온되 原告曰 本主라하고 呈郡而落科後 一向健訟이오니 該漁場
 이 本無定主하야 予奪無常이온즉 原告之起訟이 事甚無據라하되 原告之
 呈下訟軸이 斑斑有據하고 該教還給之標와 洞長查實之報가 俱爲明確 則
 的是原告之基業也라 中間見奪은 事係理外라 及今還推에 被告之橫占이
 誠不妥當이기 該漁場은 許付原告이건과 今年段은 被告等이 旣爲設網에
 時已差晚하니 被告가 姑爲營業하고 明年爲始하야 原告가 主管其址함이
 正當하기로 茲에 判決한 事

光武十年 六月 二十七日

兩隻各給一件

京畿裁判所 判事 李根洪



1906년 6월 30일 수원-죽산

역문

[광10민95호]

판결서 제55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김정구金正球

경기京畿 죽산군竹山郡 거주 농민農民

피고 한문회韓文會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년 전에 입장入葬한 소송기한이 지난 원고의 조모祖母 묘를 파내도록 독촉할 수 없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보첩譜牒*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은 “본인의 선산先山이 수원水原 마통곡馬通谷에 있는데, 1886년 단양丹陽으로 이사할 때에 수원군에 거주하는 한성오韓成五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한성오가 김정구金正球를 묘지기

* 보첩(譜牒) : 한 종족(種族)의 계통을 부계(父系) 중심으로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나타낸 책으로, 족보 책이다.

[墓直]로 삼았고, 김정구가 1893년 3월경에 자기 조모祖母를 저희 선산 5대 조 무덤의 뇌후腦後** 19보步 거리의 땅에 몰래 장사지냈습니다. 제가 멀리 타향他鄉에 있어 알지 못하다가 1895년 10월경에 성묘하다 보니 원고가 과연 몰래 장사지냈기에 그 묘를 이장[掘移]하도록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미루기만을 일삼고 끝내 파가지 않기에 작년에 부군府郡에 거소舉訴했고 원고가 결국 패소하여 납고納拷***하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소송을 일삼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은, “한성오의 산을 지켜온 지가 30여 년입니다. 지난 1885년 3월경에 한성오에게 뒷 구덩이 1곳을 빌려 얻어 조모祖母를 장사지냈고, 그 후 같은 산을 지켰습니다. 작년 10월경에 피고가 자기 5대조 무덤 곁에 몰래 장사지낸 것이라 하며, 수원군에 거소해 제 형을 잡아가두고 (무덤을) 파낼 것을 독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京畿道에 호소했더니, 장사지낸 해수가 20여 년인데 지금 갑자기 소송하는 것은 새로운 법식[新式]에 어긋남이 있다고 하여, 해당 부府에서 수원군으로 지령을 내려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피고가 다시 경기도에 소송하여 제가 결국 패소하였으므로 이처럼 상소[申訴]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양측의 진술을 참조하며 원고 집안의 파보派譜를 검토하고, 또 해당 집안의 종손宗孫 김인식金仁植의 증인진술[證供]에 근거하니, “1898년에 족보 14책을 간행했는데, 1900년에 저희 종중宗中 김교헌金教獻이 독자적으로 21책을 간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족이 시비是非가 많아져 1901년에 저희 종중에서 다시 파보 7책을 간행하여 이 책으로 준행準行하며, 해당 파보 첫 장에 계림鷄林 김씨가 쓰여 있는 것이 진짜 파보입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파보를 살펴보니, 원고의 조모 묘의 입장入葬이 1885년 3월로 실려 있으니, 이를 미루어 보면 20여 년 전에 장사지낸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기한이 지난 소송을 법이 수리受理****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조모 묘

** 뇌후(腦後) : 무덤의 뒤쪽이다.

*** 납고(納拷) : 관청에 다짐(拷詰)을 바치는 것이다. 다짐은 어떤 사실의 옳음을 확인하거나 그 사실대로 실행할 것을 맹서하는 문서이다. 특히 재판에서 패소한 자가 판결 내용의 실행을 다짐하며 바치는 문서를 말한다.

**** 수리(受理) : 보통 서류나 문서 등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법률적으로는 소장(訴狀)을 접수하여 심리(審理)하다는 의미이다.

를) 이전과 같이 지키는 것이 옳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

1906년 6월 30일

평리원 平理院

재판장 이윤용 李允用

판사 이규환 李圭桓

판사 이병화 李秉和

판사 안치윤 安致潤

주사 박유관 朴有觀

원문

{光十民九五號}

判決書 第五十五號

京畿 水原郡 居 農民

原告 金正球

同道 竹山郡 居 農民

被告 韓文會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에 對하여 二十年前 入葬한 訴訟期限이 過한 其祖母塚을 督掘
치 못할 事

理由

原告에 主張은 質下과 譜牒에 照하여 認直事 此에 對하여 被告 所供은 本
人先山이 在於 水原馬通谷이온바 丙戌年 搬移丹陽時에 使本郡居韓成五로
守護矣러니 成五가 以金正球로 爲墓直 而正球가 癸巳三月分에 偷葬其祖

母於矣山五代祖山腦後十九步之地 而矣身이 遠在他鄉不知라가 乙未十月
分에 省墓한즉 原告가 果是偷葬故로 督其掘移한즉 專事捱過에 終不掘去이
기 昨年에 舉訴郡府하여 原告가 竟至落科納俵하고 又且健訟이라하며 原
告 所供은 韓成五之山麓守護가 爲三十餘년이온바 去乙酉三月分에 借得
一壙於韓成五하여 入葬矣祖母後 同山守護矣러니 昨年十月分에 被告가
稱以渠之五代祖塚傍偷葬이라하고 舉訴本郡하여 捉囚矣兄督掘故로 呼訴
本道한즉 入葬年條가 爲二十餘년이거늘 今忽起訟이 有違新式이라하여 自
府로 指令本郡하여 至於妥貼矣러니 至于今年二月하여 被告가 又訴本道하
야 矣身이 竟至落科故로 有此申訴라하느니마 參互兩供하고 查閱原告家派譜
하고 且據該家宗孫金仁植之證供한즉 戊戌年에 刊譜十四冊矣러니 庚子年
에 矣宗金教獻이 獨自刊出二十一冊故로 諸族이 多有是非하여 辛丑年에
自矣宗中으로 更刊派譜七冊하여 以此準行 而該譜始面에 書墳鷄林金氏가
是眞譜云故로 查閱該譜則 原告之祖母塚入葬이 載在於乙酉三月矣라 以此
推之면 二十餘年入葬이 照然하느니 過期한 訴訟을 法不可受理인즉 依前守
護함이 可한지라 是로 以하여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한 事

光武十年 六月 三十日

平理院

裁判長 李允用

判事 李圭桓

判事 李秉和

判事 安致潤

主事 朴有觀



1906년 6월 30일 시흥-수원

역문

제25호

원고 시흥군始興郡 거주 이홍식李弘植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공윤경孔允卿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변론[訴答]에 대하여, 어음으로 찾아야 할 몫 6,000냥兩 중 3,000냥을 먼저 나누어 징수하여 김형기金亨基의 빚을 갚게 하고, 동업했을 때 장부[文簿]의 조사 결과에 따라 더 징수하거나 다시 돌려주거나 하여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피고 및 이재한李載翰 등과 함께 산판山坂 벌목을 동업할 때 돈[錢兩]의 지출과 수입을 피고가 전담하여 계산하고 장부에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일이 있어 먼저 돌아왔고, 피고와 이재한 등이 여전히 머물며 장부를 헤아린 후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세 사람이 만나서 회계해 보니 이익 중에 남은 것이 5,000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그 추심증서[推標]를 가지고 몰래 도망갔으므로 여러 번 피고의 집으로 갔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고가 수원水原에 사는 김형기金亨基

에게 빌려 온 6,000냥의 돈을 도로 갖고자 남양군南陽郡 사람에게 추심한 어음으로 김형기에게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김형기가 곧 가서 추심하니 증서의 주인이 말하길 ‘알지 못한다.’고 하여, 김형기는 그 증서를 내 왕하던 현기동玄岐東에게 돌려주니, 현기동이 동업을 인정하면서 별일이 아니라하고는 저에게 그 증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서 주인에게 가서 독촉하여 결국에 찾아왔습니다. 이후 작년 12월에 피고와 이재한이 저에게 왔으므로 전후를 상계相計해 보니 제가 더 사용한 것이 1,250냥이 됩니다. 그래서 맡아 두라고 피고가 문서를 써 주기에 그 증서를 말고 1,250냥을 찾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말하길 ‘김형기에게 갚아야 할 액수는 원고가 그 증서를 가지고 돈을 찾았으니 나는 관계되는 것이 없고, 이것은 곧 원고가 갚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하니 해당 증서의 돈 6,000냥을 추심한 후 상계相計할 때에는 1,250냥을 맡아 두겠다고 증서를 써 주고는, 지금 와서는 말을 바꾸어 6,000냥의 빚을 떠넘기려 하는 것으로 지극히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작년 8월 말에 이재한과 함께 전후를 상계相計해 보니 원고가 더 사용한 것이 1,250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서를 써 주어 맡아 두게 하고 그 중 1,000냥을 이재한에게 출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계급[計給]하지 않아 이재한이 제게 와서 말하기에 제가 우선 마련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맡아 둔 돈 가운데 1,000냥을 출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김원형金元亨에게 갚아야 할 돈인 6,000냥 어음을 현기동이 잘못 전해 준 것을 가지고 이 역시 찾아서 써 버렸습니다. 따라서 김형기의 빚은 원고가 마땅히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익 중에 남은 돈 5,000냥을 제가 사용했다고 칭하면서 억지 부리는 것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5,000냥은 곧 아직 지급하지 않은 식대와 품삯입니다. 치부[置簿]가 분명하게 남아 있으니 원고가 이치가 아닌 것으로 소송하기를 일삼는 것을 헤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말한 치부는 서울에 있다고만 말하고서 대령하지 않았고, 동업했던 이재한의 진술[所供]은 어물어물하고 명백하지 않게 모호하여 옳

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웠다. 다만 원고가 소유했던 피고의 필적이 있는 증서로 말한다면 원고의 이유가 분명하나 피고가 말하길 “6,000냥을 찾아 오기 이전의 증서입니다.”라고 하였고, 원고가 말하길 “6,000냥을 찾아 온 후인 12월에 상계할 때에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증서에 처음부터 월일이 없어서 그 선후를 알 수가 없었으니 형세상 장차 모든 것을 계산하여 기록한 장부를 열람하여 상고한 연후에야 옳고 그름을 판가름 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있어 즉시 추납推納하기 어렵다고 하며 장부를 조사하기 전에 해당 6,000냥을 반씩 나누어 물어주고 후에 소급하여 장부를 계산하여 바로 잡을 것을 양측이 청원하였다. 김형기의 돈은 피고와 관계된 것이고 기한을 넘겼으므로 해당 돈의 이자를 계산한 10,000냥 안에서 3,000냥은 원고가 부담하고, 7,000냥은 피고가 부담하여 각각 김형기에게 증서를 받고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래 장부를 거슬러 상고하기를 기다려 6,000냥 본전 중에 3,000냥을 원고가 도로 찾아 주거나 더 물어주거나 하는 것을 나중에 서로 계산하여 결정(歸正)하는 것이 옳다. 이에 판결한다.

1906년 6월 30일

원고와 피고 양쪽에게 각 1건씩 지급한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근홍李根洪

원문

第二十五號

原告 始興郡 居 李弘植 年

被告 水原郡 居 孔允卿 年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訴答에 對하야 於音所推條 六千兩內 三千兩은 先爲分徵하야

俾報金亨基之債케호고 待其同事時 文簿之查得하야 加徵還推間 歸正함이
可호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與被告及李載翰等으로 山坂伐木同事時 錢坪出入을 被告가 專管計簿인되 昨年七月에 原告則有事先歸호고 被告與李載翰等으로 仍留勘簿後 來到原告之家하야 三造會計 則利益中 餘在가 爲五千兩이온되 被告가 持其推標호고 暗地逃竄 故로 屢往被告之家 而不逢이올다가 被告之於水原居金亨基處 債來錢六千兩 還報次 南陽人處所推於音을 傳給於金하야 金乃往推에 票主曰不知라호고 金還其票於來往之玄岐東 則玄哥가 認以同事 則一般이라호고 傳票於原告 故로 往督於票主하야 竟爲推尋이온바 伊後昨臘에 被告與李載翰으로 來于原告處하야 前後相計 則原告之加用이 爲一千二百五十兩이라 以留置樣으로 孔書以給이올기 留其標 而待其一千二百五十兩之推去이올더니 被告曰 金亨基處 所報條는 原告가 持其標而推錢하얏스니 渠無所關이요 是乃原告之辦報라호오니 該票錢六千兩 推尋後 相計時 以一千二百五十兩留置로 書標以給호고 今來變辭 而欲移徵六千兩之債가 極爲無據라호고 此에 對하야 被告에 陳供은 昨年八月晦日에 與李載翰으로 前後相計 則原告之加用이 爲一千二百五十兩 故로 書給以留置호고 就中一千兩은 出給李載翰하랏호얏스니 原告가 不爲計給하야 李載翰이 來言於被告이올기 被告가 先爲辦給이라온 原告가 不惟不留置錢中 一千兩之出給이오라 金元亨處所報條 六千兩於音을 因玄岐東之誤傳 而亦爲推用하얏스니 金亨基之債는 原告가 宜乎辦償이거늘 稱以利益 餘在錢五千兩을 被告用之라호고 生臆不已이오나 其云五千兩은 是乃食價雇價之未給者也라 置簿가 自在호니 原告之非理健訟을 自可洞燭이라호되 其云置簿는 云在於京而不待호고 同事李載翰之所供은 罔圖模糊하야 曲直을 難辦인되 第以原告處所有之孔筆片標로 論之면 原告의 理由가 分明호나 被告曰 六千兩推尋以前之標라호고 原告曰 六千兩推來後 臘月相計時 成給이라호는되 該票에 初無月日하야 其先其後를 無以知得 則勢將考閱其都計文簿 然後에 可辦是非이거늘 日在於京中에 猝難推納이라

호며 查簿之前에 該六千兩을 分半徵報호고 日後에 溯考計簿而歸正이라
兩相請願인바 金亨基之錢는 係是被告之所關 而過限者 故로 該錢利計一萬
兩內에 三千兩은 原告에 擔當호고 七千兩은 被告에 擔當호야 各其捧票以
給于金亨基이건과 待其原文簿之溯考호야 六千兩本錢中 三千兩을 原告가
還推이거나 加徵이거나 追後 相計歸正함이 可호기로 茲에 判決호는 事

光武十年 六月 三十日
兩隻各給一件
京畿裁判所 判事 李根洪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6년 7월 2일 수원-수원

역문

제26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최치중崔致仲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진중국陳鍾國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사리와 대질[質卡]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詞]은 “외양간에 송아지[犢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1901년경에 마을에 사는 유성일柳成日이 와서 원고의 말로 이르길, ‘도지賭只로 송아지를 받아 가겠다.’고 하기에 그 말대로 하라고 허락하였습니 다. 이후에 저희 집 남정네들이 집에 없는 사이에 원고가 송아지를 끌고 가 이듬해 8월에 이르러 제멋대로 소를 바꾸더니 올해 9월에 와서는 말하길, ‘소가 돌림병[輪疫]에 전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가서 확인하니 애초 저희 집에서 기르던 소가 아닐뿐더러 김익동金益東의 집에 매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소 주인에게 말하지도 않고 소를 바꿔 놓은 일을 꾸짖고 그대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가 결국 병들어 죽었다고 하고 최치중崔致仲과 김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6년 7월 6일 미상-미상

역문

제36호

결석판결서

원고 심상연沈相璉

피고 용영주龍永珠

올해 3월 23일에 원고의 소장訴狀에 의거해서 피고 용영주龍永珠를 불러들여 대질하여 조사하여 온 재판인데, 해당 안건의 증인證參人은 안산군安山郡 서리 김원배金元培, 문정현文貞鉉이기에 훈령訓令을 보내 불러들이고 그 사이에 용영주를 보방保放하였다. 그랬더니 한 번 간 뒤로 여러 달 동안 전혀 소식이 없어 기약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일주일 내에 만약 와서 변론하지 않는다면 결석 판결을 한다는 내용으로 곳곳의 도로에 게시하였다. 그런데 기한이 지난 지 오래되도록 끝내 와서 대령하지 아니하니, 이치에 어긋남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정리규칙廷吏規則 제6조에 의하여 결석 판결을 즉시 행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1904년 4월에 수원군水原郡에 있는 논 5석石 14두斗 5승락升落, 밭 1석石 11두락斗落의 문권文券을 처음에 전당잡혀 빚낸 엽전 합계 4,000냥兩과, 같은 해 7월에

* 보방(保放) :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잠시 구류(拘留)에서 풀어 주다.

같은 군에 있는 논 11석 10두락, 밭 3일경日耕 문권을 다시 전당잡혀 빚낸 엽전 합계 10,000냥을 관官에서 정한 이자를 함께 더해 갚아 주어야 한다.

1906년 7월 6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휘李秉輝

판사 이용상李容相

주사 박봉환朴鳳煥

원문

第三十六號

缺席判決書

原告 沈相璉

被告 龍永珠

本年三月二十三日 原告 訴狀을 據호야 被告龍永珠를 招致質查來判인 바 該案證參人은 安山郡吏金元培文貞鉉이 發訓招上間龍永珠를 保放矣 러니 一去多月에 杳無消息호야 歸決無期故로 一週日內若不來下이면 缺席判決호 意로 揭示於各處通衢 而過限已久도록 終不來待호니 其理屈함은 推此可知이 廷吏規則 第六條를 依호야 缺席判決을 即行호노니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甲辰四月分에 水原郡所在 畝五石十四斗五升落 田一石十一斗落 文券을 初次典執出債호 葉計四千兩과 同年七月分에 同郡所在 畝十一石十斗落 田三日耕 文券을 再典出債호 葉計一萬兩을 并爲具官邊 報給함이 可호 事

光武十年 七月 六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輝
判事 李容相
主事 朴鳳煥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6년 7월 21일 한성-남양

역문

{광10민984호}

판결서 제58호

중서中署 교동校洞 거주 상민商民

원고 박용현朴容鉉

경기京畿 남양南陽 인천동仁川洞 거주 농민農民

피고 조성필趙性弼

경기京畿 남양南陽 인천동仁川洞 거주 농민農民

피고 강원강姜元綱

판결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당오전 합계[當五計] 6,120냥兩을 2할의 이자례[十二例]로 더해 박의경朴宜卿에게 갚고 4두락斗落 논문서[番券]를 찾아내어 피고 조성필趙性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유

피고들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1904년경에 피고 조성필의 4두락 논문서를 전당

잡고 당오전當五錢 1,000냥을 빌려주었는데, 작년 음력 7월 27일에 조성필이 이자를 더해 모두 갚았으므로 전당잡은 논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작년 음력 4월경에 피고 조성필이 박재원朴在元의 땀감[柴] 90동同을 사두고, 제 소유의 땀감 240동을 또한 사서 같은 달 그믐 내에 갚을 주기로 명확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조성필이 같은 달 20일 무렵에 박재원에게 산 땀감을 먼저 실어 가고자 하여, 제가 박재원에게 말하기를, '내 땀감값을 갚지 않고 이 땀감을 실어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즉 조성필이 다투었지만 언지 못하자 원래 판매인 박재원에게 해당 땀감 흥정을 환퇴還退하여서, 해당 땀감을 제가 사고 제 땀감 240동 흥정도 또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제가 전매轉賣한 박재원의 땀감 90동 중에서 조성필의 동업자가 7동을 그전에 이미 실어 가버려 다른 곳에 방매放賣하지 못했으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땀감 240동은 피고 강원강姜元綱의 방해와 욕설로 인해 방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곳에 땀감이 오가다 씩고 상하여 90동 값 1,500냥에 이자 300냥을 더해 합 1,800냥을 조성필에게 징수徵擄하였고, 240동 값 4,320냥을 강원강에게 징수했습니다. 해당 돈을 마련해 낼 때 제가 전당잡았던 논문서를 조성필, 강원강 두 사람이 박의경에게 다시 전당하여 빚을 냈으니, 해당 논문서를 제게 돌려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대질[質]과 여러 증인證人의 증인진술[證供]을 참고하면, 조성필이 산 땀감을 실어가는 것을 원고가 무리하게 막아 자기가 중간에서 사고 자기가 방매하였던 땀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약속을 파기하였다. 90동 중에 7동이 부족[欠縮]한 것에 대해, 조성필이 땀나무 주인 박재원에게 환퇴한 후 7동 값[價]을 계산하여 보냈는데도, 박재원과 원고가 서로 핑계대며 거절하여 아직까지 받지 못했던 것이므로 피고들의 잘못이 없다. 240동을 강원강이 자기 아버지를 욕하여서 방매할 수 없었다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 원고가 피고들이 보잘것없음을 멸시하여 피고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 강제로 붙잡고, 양복 입은 사람 1인과 기타 여러 사람들을 회동會同하여 피고들을 공갈하면서, 빚진 돈[價]을 갚아서 청산하는데 사용한 전당잡은 논문서를 내주지 않고 땀감값 6,120냥을 그 자리에서 갚으라고 하며,

박의경 등과 멋대로 주고받아 '박의경이 전당잡았다.'고 하고, 이른바 6,120냥'을 피고 두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하였다. 이른바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애초에 증서로 약속한 것이 없으니, 미리 꼼꼼히 계획하여 농락한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런데도 원고의 진술에 '6,120냥을 징수했다.'고 했으니, 원고가 징수한 것은 확실히 억지로 빼앗은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돈을 박의경에게 되갚게 하고 4두락 논문서를 되찾아 조성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答]은 그 이유가 있다.

1906년 7월 21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윤용李允用

판사 이규환李圭桓

판사 태명식太明軾

판사 안치윤安致潤

주사 박유관朴有觀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문

{光十民九八四號}

判決書 第五十八號

漢城中署 校洞 居 商民

原告 朴容鉉

京畿 南陽 仁川洞 居 農民

被告 趙性弼 姜元綱

* 원문에는 '1,620냥'으로 되어 있으나, 앞뒤의 문장 내용으로 '6,120냥'으로 파악하였다.



1906년 8월 10일 강화-개성

역문

판결서 28호

원고 강화부江華府 하음면河音面 거주 김판옥金判玉 20세

피고 개성부開城府 묵지동墨只洞 거주 윤수현尹秀賢 43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원고 김판옥金判玉의 진술(所供)은 “저의 선산先山이 개성부開城府 청교면靑郊面に 있습니다. 지난 1861년경에 조부가 선산의 한 산기슭을 피고의 조부에게 방매放賣하였고, 서로 분할하여 경계를 정하고 입지立旨하여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01년경에 피고가 저의 국내局內로 넘어와 함부로 벌목하여 송추松楸* 325그루를 거리낌 없이 벌목[斫伐]하였으니 바로 값을

* 송추(松楸) : 분묘(墳墓) 및 분묘 주변의 산지, 즉 분산(墳山)에 심는 나무를 총칭한다. 분묘의 실전(失傳)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의 수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지거나 묘지기를 두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의 양산(養山) 금양(禁養)을 하였다. 양산 금양권은 분산 구역 내의 산림을 잘 기르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금양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나 땔나무 등을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배타적 산림 이용권이 포함되었다(김경숙, 2012, 『조선의 묘지 소송』, 문학동네). 유의어는 구목(丘木·邱木)이다.

계산하여 찾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 윤수현尹秀賢의 진술(所供)은 “저의 조부가 지난 1861년 겨울에 해당 산의 합국舍局”을 280냥兩의 값을 지급하고 원고의 조부에게 매득買得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산의 주인 이동익李東益이 원고의 조부에게 거소舉訴하여 일에 장애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 집안이 협의하여 산값 중에 절반은 이동익에게 계산하여 지급하고, 이씨 집안의 소지所志 제사題辭와 해당 가옥 구문기 3장 및 김판옥 집안의 신문기 2장을 모두 매득하였습니다. 지난 1901년경에 심고 길렀던 송추를 마침내 벌목하였는데 이제 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송추값을 강제로 받아 가고자 하고 있으니 사리에 매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전후의 문권文券을 열람하여 상고해 보시면 잘 헤아릴 수 있을 것이오니 명백히 조사하여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에 준하여 살피고, 소송문서(訟軸)를 열람하여 상고해 보니 당초에 해당 산은 이동익의 산판山坂이었고, 원고 조부 김치룡金致龍에게 구덩이 하나를 빌려주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에 김치룡이 피고의 조부에게 합국을 몰래 방매하였고, 이동익이 곧 김판옥에게 소송하였다. 그랬더니 해당 산값을 윤수현 집안에서 반으로 나누어 이동익과 김판옥 두 사람에게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양쪽 집안의 문권을 받고 모든 합국을 매득한 것이 분명히 근거할 만하다. 원고는 1876년에 경계를 정했던 입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바로 1861년에 받은 소지의 제사이므로 15년이 지난 일이다. 관부官府 제사의 선후와 문권의 내력이 저와 같이 명확하므로 원고 김판옥을 패소시킨다.

1906년 8월 10일

원고와 피고 양쪽에 각 1건씩 지급한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수원군수 이완호李完鎬

** 합국(舍局) : 뗏자리나 집터에서, 혈과 사가 합쳐서 이루어진 좋은 자리이다.

원문

二十八號

判決書

原告 江華府 河音面 居 金判玉 年 二十

被告 開城府 墨只洞 居 尹秀賢 年 四十三

判決要旨

被告은 原告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는 原告가 擔當事

判決理由

原告金判玉所供은 渠矣先山이 在於開城青郊面 而去辛酉年分에 原告之祖父가 先山一麓을 許賣於被告之祖호고 交割定界에 立旨以置矣러니 去辛丑年分에 被告가 越界犯斫於矣山局內호야 松楸三百二十五株를 無難斫伐호니 卽爲計價推給이다이되 被告尹秀賢所供은 矣祖父가 去辛酉冬에 該山合局을 給價二百八十兩호고 買得於原告之祖父矣러니 原山主李東益이 舉訴原告之祖호야 事多碍滯이올기 三家協議호야 山價中折半은 計給李東益호고 李家訴題與該家舊券三張及金家新文記二張을 并爲買得 而去辛丑年分에 所養植木을 果爲斫伐矣러니 尙今無語타가 今欲勒徵松價호니 事甚無據라 考閱前後文券이오면 自可洞燭이오니 明查處分이라인바 聽準兩供에 考閱訟軸 則當初該山이 以李東益之山坂으로 借給一壙之地於原告祖父金致龍이던지 其後致龍이 暗賣合局於被告之祖父 則李乃訴金호니 該山價을 尹家로 分半計給於李金兩人호고 捧其兩家文券 而都買合局이 昭有可據 而原告則有丙子年定界立旨이되 此是辛酉訴題 十五年之後事 則官題之先後와 文券之來歷이 如彼明確이기 原告金判玉을 置之落科事

光武十年 八月 十日

兩隻各給一件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水原郡守 李完鎬

077



물건값[物件價]에 관한 건

1906년 9월 21일 수원-한성

역문

제423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평민平民

원고 김성옥金成玉

서서西署 서강西江 창전리倉前里 거주 상민商民

피고 이화심李化心

서서西署 서강西江 창전리倉前里 거주 상민商民

피고 최순기崔順奇

판결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화심李化心이 내야 할 당오전 합계[當計] 4,569냥兩 1전錢 5푼[分] 및 최순기崔順奇가 내야 할 당오전 합계[當計] 3,170냥兩 6전 5푼을 모두 즉시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1903년경에 갚지 않은 물건값의 잔금을 4년에 이르도록 미루면

서 오로지 떠넘기기만을 일삼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9월 21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홍면희洪冕憲

원문

第四百二十三號

判決書

京畿 水原郡 居 平民

原告 金成玉

西署 西江 倉前里 居 商民

被告 李化心

西署 西江 倉前里 居 商民

被告 崔順奇

判決要旨

被告等은 原告 訴求에 應하여 李化心 所出條 當計 四千五百六十九兩一錢
五分及崔順奇 所出條 當計 三千一百七十兩六錢五分을 并即報償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은 被告等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여 認直事 此에 對하여 被告等은 癸卯年分에
未報한 物價零條를 拖至四載에 專事推諉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여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한 事

光武十年 九月 二十一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李源國

主事 洪冕憲





폐업 손해 및 피측被捉 浮費에 관한 건

1906년 9월 23일 광주-남양

역문

제29호

원고 광주廣州 구룡동九龍洞 거주 강치형姜治馨

원고 광주廣州 구룡동九龍洞 거주 강원형姜元馨

피고 남양군南陽郡 신기장新基場 거주 문귀락文龜洛

피고 남양군南陽郡 신기장新基場 거주 홍우석洪愚錫

판결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이유

원고들의 진술(所供)은 “남양군南陽郡 세곳면細串面에 소재한 수진궁壽進宮*의 어장(漁基)을 본궁에서 인가를 얻어 올해 5월경에 그물을 설치하고 영업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이 보부상을 핑계 삼아 거리낌없이 세금을 토색하므로 이치에 따라 꾸짖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들이 도집사都執事를 파견하였고, 전령傳令을 휴대하고 5명의 무리를

* 수진궁(壽進宮) : 조선시대 한성의 중부 수진방에 있던 궁으로, 예종의 둘째 아들인 제안대군의 저택으로 사용되었으며, 봉작받기 전 사망한 대군이나 출가하기 전 사망한 옹주들의 제사를 담당하였다.

거느리고 와서 (저희들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업을 포기하고 도망하여 서울로 올라와서 본궁과 교육회에 급히 알리고 침범하지 말라는 문적文蹟을 받아 피고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보부상이 파견되어 저희들을 잡아가서 개인 방에 가두고 당오전(當鐵) 1,500냥兩을 강제로 거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간신히 300냥을 갖추어 지급하고 풀려났으나 그 사이에 폐업으로 인한 손해가 15,000냥이 되고, 잡혔을 때의 각종 비용이 280냥입니다. 그러니 모두 찾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피고들의 진술(所供)은 “저희들은 교육회 회원으로 도중(都中)**이 지출할 비용을 위해서 결국 그릇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가 소송을 당하고 잡혀오게 되었으니 모두 우매하고 미혹한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들어보니 피고들이 교육회를 믿고 강제로 징수한 것은 진실로 매우 놀라고 통탄스럽다. 마땅히 엄히 징계하고 징수해 간 돈 300냥과 잡아갔을 때의 각종 비용 280냥의 돈은 지금 부정부(府庭)에서 징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또한 만약 손해금이 15,000냥에 이르렀다고 했으나 이것은 틀림없는 손해를 봤다는 증거로 볼 수 없으니 법적으로 거두는 것은 어렵다. 이에 판결한다.

1906년 9월 23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성기운成岐運

원문

第二十九號

原告 廣州 九龍洞 居 姜治馨 年

** 도중(都中) : 원래 상인 단체 또는 상인 조합을 뜻하나 여기서는 교육회를 지칭한다.

姜元馨 年

被告 南陽郡 新基場 居 文龜洛 年
洪愚錫 年

判決要旨

被告等은 原告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有흔 事 訴訟費用은 被告等에 擔當事

判決理由

原告等 所供은 南陽細申面所在 壽進宮漁基을 得認於本宮하야 今五月分에 設網營業矣러니 被告等이 藉托負商하고 無難討稅 故로 據理責送矣러니 不幾日에 被告等이 發遣都執事하야 帶持傳令에 率黨五人來捕 故로 棄業逃走上京하야 告急於本宮及教育會하야 得受勿侵之文蹟 而付之被告 則更加一層하야 多發負商에 縛去原告等하야 嚴囚私室하고 勒討當錢一千五百兩 故로 艱辛以三百兩으로 備給脫免이오니 這間廢業損害가 爲一萬五千兩이오 被捉時浮費 爲二百八十兩이오니 并卽推給이다이고 被告等 所供은 矣等이 以教育會會員으로 爲其都中用下하야 果爲襲謬討稅이다가 以至被訴見捉하니 都出於愚迷所致라 無辭可達이라하야 聽來兩供에 被告等之藉會勒討가 誠極痛駭라 當有嚴懲이어이와 討索錢三百兩及捉來時浮費錢二百八十兩은 今自府庭으로 徵給原告이건과 至若損害金一萬五千兩하야 此無丁寧見害之可據하니 法難徵推키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年 九月 二十三日
京畿裁判所 判事 成岐運



1906년 9월 25일 직산-인천

역문

{광10민20호}

제438호

판결서

충청남도忠淸南道 직산군稷山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박문오朴文吾

경기도京畿道 인천항仁川港 거주 상민商民

피고 지형하池亨河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피고 이근상李根相

판결요지

피고 지형하池亨河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이근상李根相에게서 사간 소금 35석石을 원고에게 돌려주고, 피고 이근상은 지형하에게 갚을 몫을 돈으로 갚아 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卮]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지형하는 이근상에게 원고가 보낸 소금 99석 중 35석을 값을 정해 사
갔는데, 해당 소금값을 이근상에게 받을 몫으로 계산하여 제하는 것은 무
슨 경우인가. 소금은 원고의 소유이고 돈은 이근상이 값을 것이니, 원고의
소금이 이근상이 값을 몫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당 소금은 원고에게 돌
려주는 것이 옳고, 이근상은 지형하에게 값을 몫을 역시 즉시 청산하는 것
이 옳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지 않아 소송으로 다투게 되었으므로 정당하
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9월 25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김정목金正穆

주사 홍우기洪祐夔

원문

{光十民二〇號}

第四百三十八號

判決書

忠淸南道 稷山郡 居 農民

原告 朴文吾

京畿道 仁川港 居 商民

被告 池亨河

京畿道 水原郡 居 商民

被告 李根相

判決要旨

被告 池亨河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李根相處 買去한 鹽三十五石을 還給原
告하고 被告 李根相은 池亨河處 所報條를 以錢報給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
은 被告等の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 池亨河는 李根相處
에 原告所送한 鹽九十九石中 三十五石을 定價買去하얏는디 該鹽價를 李
根相處 所報條로 計除는 是何涇渭인지 鹽是原告所有오 錢是根相所報則
原告之鹽이 何關於根相之所報乎아 該鹽은 還歸原告가 可也오 李根相은
池亨河處 所報條를 亦卽淸勘함이 可也어늘 不此之爲하야 以至爭下케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한 事

光武十年 九月 二十五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金正穆

主事 洪祐夔



1906년 10월 6일 한성-수원

역문

제32호

원고 서울 거주 승지承旨 한상학韓相鶴 대인인代言人 최명래崔明來

SRI 수원시정연구원
 피고 수원水原 문시면文市面 사랑동土郎洞 거주 차경구車敬九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물레방아[水春] 기지[基址] 세금으로 매년 쌀 3두斗씩을 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저의 전장田庄 기지[基址] 안에 피고가 지난 1900년경에 물레방아를 설치하고 매년 도조[賭租]로 쌀 10두씩을 세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5년 분량의 세금 쌀 50두를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물레방아를 설치한 기지가 이씨와 최씨의 땅을 넘어가게 되어 처음 물레방아를 설치할 때에 이씨가 도조를 요구하였으나 최씨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씨에게 도조로 쌀 2두씩을 물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최씨가 ‘한상학韓相鶴의 땅에도 물레방아 기지가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세금으로 쌀을 매년 10두씩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4~5칸인 기지에 10두의 쌀을 징수하니 일의 이치가 매우 온당하지 않아 이씨의 전례대로 쌀 2두씩으로 물어주겠다고 말했더니 결국 듣지도 않고 수원군水原郡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관[官]에서는 매년 3두씩으로 물어주라고 판결하였으므로 관의 판결에 따라 마련하여 지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빈궁한 여름을 만나 가을을 기다려 갖고자 하여 지금까지 이르렀으나 또 이렇게 소송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명백하게 조사하시어 처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 기지는 논인지 밭인지의 문제가 아니고 공한지空閑地의 문제이다. 그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기지가 서로 비슷하므로 이씨가 2두씩으로 받은 전례가 있고, 관에서 3두씩으로 물어주라는 판결이 있으니 수원군의 판결에 따라 5년 분량을 쌀 15두로 주고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6년 10월 6일

SRI 수원시정연구원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성기운成岐運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원문

第三十二號

原告 京居 韓承旨相鶴 代言人 崔明來 年

被告 水原 文市面 土郎洞 居 車敬九 年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對하여 水春基址稅를 每年 米三斗式 徵給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할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自己田庄基址內 被告가 去庚子年分에 設水春하고 每年 賭

米十斗式 應稅云矣러니 尙此不給 則五年條稅米 五十斗捧上이 正當이라
 하나 此에 對하야 被告에 陳供은 設春基址가 跨在於李崔兩人之土 而設春
 之初에 李責賭稅 而崔無所言 故로 於李哥處 賭米二斗式 徵給矣러니 伊後
 崔曰 韓土가 亦入於春址라하고 責稅米每年十斗式이오나 不過四五間基址
 에 責徵十斗米가 事甚不穩하야 依李哥之例 而米二斗式 徵給事爲言 則竟
 爲不聽하고 呈于本郡하야 自官裁決에 每年三斗式 徵給하라하옵기 依官決
 備給이오되 時值窮夏하와 待秋辦給次 至于今日이올더니 又此被訟이오니
 明查裁處라하마 此非田畝之間也요 卽空閒之地뿐더러 兩人基址가 相半하
 야 李有二斗捧上之例하고 官有三斗徵給之決하니 依郡決五年條米合十五
 斗를 授受함이 妥當하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年 十月 六日
 京畿裁判所 判事 成岐運



1906년 10월 8일 인천-수원

역문

{광10민1660호}

판결서 제69호

경기京畿 인천항仁川港 거주 상민商民

원고 지형하池亨河

충청남도忠淸南道 직산군稷山郡 거주 농민農民

피고 박문오朴文吾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상민商民

피고 이근상李根相

판결요지

피고 박문오朴文吾는 소금 31석石 값 엽전 합계[葉計] 498냥兩을 이근상李根相에게 추심하여 받고 원고에게는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박문오의 진술[所供]은 “올해 음력 3월경에 이근상이 금산金山과 김천金泉에서 객주客主를 할 때, 토염土鹽을 임치任置하고 잘 팔아 달라고 위

탁하였습니다. 다른 집에 유숙하다가 수일 후 이근상 집에 찾아갔더니 이근상은 부재하고 해당 소금도 없어 매우 놀라고 의아하여 사방을 찾아보았습니다. 원고가 해당 소금 중 35석을 1석당 엽전 18냥씩 값을 매겨 이근상에게 사갔고, 그 값은 원고가 이근상에게 받을 몫으로 상계相計하였습니다. 소금 4석은 현물[本色]로 찾아오고, 그 나머지 31석은 아직 찾아오지 못하여 원고에게 즉시 물어내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근상의 진술[所供]은, “제가 객주로 박문오의 토염을 과연 임치했다가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에게 받을 몫으로 상계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상호 진술을 살펴건대, 객주 집에 물건을 임치하였다가 해당 객주가 방매放賣하였으면 물건 주인이 물건이든 그 값이든 해당 객주에게 추심해야지, 시간 사람에게 추심하는 것은 상업상 규례가 없다. 따라서 피고 박문오는 해당 소금 31석의 값 엽전 합계[葉計] 498냥을 이근상에게 추심을 요구해야지 원고에게 물어내라 할 수 없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10월 8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이윤용李允用

판사 이규환李圭桓

판사 안치윤安致潤

판사 박만서朴晩緒

판사 박유관朴有觀

주사 노병수魯丙洙

원문

{光十民一六六〇號}

判決書 第六十九號

京畿 仁川港 居 商民

原告 池亨河

忠淸南道 稷山郡 居 農民

被告 朴文吾

京畿 水原郡 居 商民

被告 李根相

判決要旨

被告 朴文吾는 鹽三十一石價 葉計四百九十八兩을 李根相에게 推捧하고 原告에게는 橫侵치 못홀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 朴文吾所供은 今年陰曆三月分에 李根相이가 金山金泉에서 客主홀 時에 土鹽을 任置하고 善賣以給함을 委託하고 留宿他家이다가 數日後往見李根相家則 李根相도 不在하고 該鹽도 無有하옵기 心甚驚訝하야 四面搜探하든즉 原告가 該鹽中三十五石을 每石에 葉錢十八兩式 決價하야 李根相處에 買去하고 該價는 原告가 李根相處所捧條로 相計이온바 鹽四石은 本色으로 推來하고 其餘三十一石은 尙未還推이온즉 原告處에 卽爲徵推라하고 李根相所供은 矣身이 以客主로 朴文吾에 土鹽을 果爲任置라가 賣渡於原告處하고 以原告處所報條로 相計라하든바 參互質供하든則 客主家에 物件을 任置하얏다가 該客主가 放賣하얏스면 物主가 物與價間 該客主에게 責推홀거시오 買去者에게 責推하든 商規가 無하든 被告 朴文吾는該鹽三十一石價 葉計四百九十八兩을 李根相處에 責推홀거시어늘 原告處에 徵推코자함이 不可하리라 是로 以하야 原告訴求는 其理由가 有하 事

光武十年 十月 八日

平理院
裁判長 李允用
判事 李圭桓
判事 安致潤
判事 朴晚緒
判事 朴有觀
主事 魯丙洙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6년 10월 19일 남양-한성

역문

제520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전前 사과司果

원고 이병상李秉商

북서北署 삼청동三清洞 거주 평민平民

피고 김개문金開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빌려 전당잡혀 논문서[番券]를 찾아 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논문서를 전당잡혀 빚을 얻고도 진작 돈을 갚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전주錢主에게 곤란을 당하게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10월 19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김정목金正穆
주사 홍우기洪祐夔

원문

第五百二十號
判決書

京畿 南陽郡 居 前司果
原告 李秉商

北署 三清洞 居 平民
被告 金開門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借典호 畚券을 推給호미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는 原告의 畚券을 借典得債호고 趁不報錢호야 使原告로 見困於錢主케호은 正當이라고 호미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十年 十月 十九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金正穆

主事 洪祐夔

083



소금값[白鹽]에 관한 건

1906년 10월 22일 직산-수원

역문

제537호
판결서

충청남도忠淸南道 직산稷山 거주 농민農民

원고 박문오朴文吾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상민商民

피고 이건상李健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백염白鹽 15석石 값 엽전 285냥兩을 갚아야 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訴求]는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백염 15석을 원고에게서 가져가고 해당 값 엽전 285냥을 진작 청산하지 않아 이렇게 소송을 당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10월 22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김정목金正穆
주사 홍우기洪祐夔

원문

第五百三十七號
判決書

忠淸南道 稷山 居 農民
原告 朴文吾

京畿 水原 居 商民
被告 李健相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白鹽十五石價 葉錢二百八十五兩을 辦償함이 可호 事

理由

原告 訴求는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는 白鹽十五石을 原告 處에서 持去호고 該價 葉錢二百八十五兩을 趁未淸勘호고 至此被訴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十年 十月 二十二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金正穆

主事 洪祐夔



1906년 10월 23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35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옹포瓮浦 거주 방여재方汝在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홍태윤洪泰允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조기[石魚] 23동同을 다른 중선中船의 전례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빌려 간 돈 중에 남은 엽전 595냥兩 2푼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올 봄에 피고가 조기[石魚] 잡는 중선中船을 새롭게 만들 때에 돈 2,000냥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어촌에서 유래하는 관례에 따라 조기를 방매放賣하는 것을 기다려 전주錢主와 선주船主가 장기掌記대로 셋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뜻으로 약속을 정한 후에 2,000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전주와 함께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 장기(掌記) : 물건이나 논밭 등을 팔고 사는 데 물목(物目)을 적은 글밭이다. 물품의 목록이다.

잡은 것은 이미 다른 전주에게 지급하였고, 두 번째 잡은 조기 23등을 받아 와서 방매한 후에 장기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 계산했더니 피고가 갑자기 억지를 부리며 말하길 ‘조기를 수송해 갈 때에 동마다 180냥씩으로 값을 정하였다.’고 하며 방매가격을 넘는 값으로 징수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길 ‘조기를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잡은 것이 완전히 다르고 올봄에 조기값이 처음부터 매 동마다 180냥씩으로 매매한 것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한결같이 억지를 부리다가 수원군水原郡에 정소로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원군에서 동마다 140냥씩으로 해서 물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셋으로 나누는 전례를 버리고 동마다 80여냥씩 방매한 것을 어찌 받은 액수를 넘어서는 값으로 억지로 물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밖의 다른 중선의 주인에게 자세하게 조사하여 이치를 좇아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陳供은 “원고에게 2,000냥의 돈을 빌려 쓰고 바다로 나가서 조기를 잡았습니다. 이때의 시가時價는 동마다 220냥이거나 혹 200냥이었습니다. 원고가 180냥씩으로 값을 논하고 조기 23등을 수송해 간 후에 말하길 ‘시가가 본전보다 손해다.’라고 하면서 당초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자 하였으니 어찌 이와 같은 경위가 있겠습니까? 해당 조기 23등을 동마다 180냥씩으로 하여 값을 계산하여 원래 빚을 갚고, 남은 돈을 책임을 물어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중선의 주인 두 사람을 불러다 대령시켜서 심문해 보니 올봄 조기 값이 처음부터 동마다 180냥씩으로 방매했던 것은 없었고, 처음에 방매한 것이 높은 것이 120냥을 넘지 않았고 100냥에 그쳤을 따름이요, 그 후에도 모두 100냥을 넘지 않았다고 틀림없이 대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셋으로 나누는 전례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렇게 번듯하고 문제가 생긴 적 없는 전례를 버리고서 시가였던 적도 없는 180냥씩으로 값을 정하여 받아 가고자 한다는 것은 이치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이로써 원고의 이유가 정당하다. 빌린 돈을 조기값을 셋으로 나누는 전례대로 서로 계산하고, 부족한 돈 595냥 2푼은 피고가 값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아 이로써 추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한다.

1906년 10월 23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성기운成岐運

원문

第三十五號

原告 水原郡 瓮浦 居 方汝在 年

被告 同里 居 洪泰允 年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의 對하야 石魚二十三同을 依他中船之例 而三分會計하고 債去錢中 餘在葉五百九十五兩二分을 報償함이 可할 事 訴訟費用은 被告에 擔當할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正事 此에 對하야 原告에 陳供은 今春에 被告가 石魚中船新設之時에 錢文二千餘兩을 懇請이기 一依漁村由來之例 하야 待魚之放賣하야 錢主船主가 依掌記三分會計之意로 就之定約後 辦給二千餘兩이고 與各錢主로 隨之入海 則初等所捉은 已給他錢主하고 再次石魚二十三同을 受來放賣後 依掌記三分會計 則被告가 猝然生臆曰 石魚輸去時 折價以每同一百八十兩式이라하고 欲徵價外之濫價이옴기 原告曰 石魚之初再等이 判異하고 且今春石魚價가 初無每同一百八十兩式 賣買者하오되 被告가 一向生臆타가 至於呈郡하야 自郡으로 每同一百四十兩式 徵給하리라하오니 捨其三分之例하고 每同八十餘兩式 所賣者를 豈可生徵其所捧外之價乎잇가 詳查於外他中船之主하야 從理裁處라하고 被告에 所供은 原告의게 錢二千餘兩을 債用하고 出海而捕石魚이온되 伊時時價가 每同式二百二十兩 或二百兩矣라 原告가 論價以一百八十兩式하고 石

魚二十三同을 輸去호은後 日時價落本이라호고 不欲違當初之約이오니 豈有如許經緯乎잇가 該石魚二十三同을 每同一百八十兩式 計價호야 報其原價호고 餘在錢을 徵捧以給이라호나 招待他中船主兩人而問之 則今春石魚價가 初無每同一百八十兩式 放賣者이고 初頭所賣가 高不過一百二十兩一百兩而已요 其後則統未拂一百兩이라 丁寧質對뵈더러 既有三分之例이거늘 原告之捨此堂堂無狼狽之例호고 時價所無之一百八十兩式 願爲折價以去云者 於理不當이라 是以로 原告에 理由가 正當호지라 債錢魚價를 以三分例相計호고 不足錢五百九十五兩二分은 被告가 報償호기로 捧俵以給後 判決호는 事

光武十年 十月 二十三日
京畿裁判所 判事 成岐運



1906년 10월 27일 수원-영흥

역문

판결서 제36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발안장發安場 거주 최덕중崔德仲

피고 영흥군永興郡 거주 김용서金用西 SUWON RESEARCH INSTITUTE

피고 수원군水原郡 장안면長安面 거주 박봉의朴鳳儀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김용서金用西의 변론[訴答]에 대하여, 원고가 준 돈 엽전 함께 [葉計] 12,050냥兩 9전錢 5푼[分]과 원고가 가져온 돈 10,447냥 8전에 대하여 이지는 그 거래 일자를 서로 계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원고가 말한 이자 1,000냥 중에 김윤명金允明 몫 200냥은 거래 중에 계산하여 지불한 이자 중에 포함되었고 남은 800냥은 품삯[役價]을 받아 간 사람과 삼자대면[三造]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말한 각종 비용은 모두 시행하지 말고, 원금에 있는 1,603냥 1전 5푼은 피고 김용서가 추가로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材]과 사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작년 7월경에 서울 사는 신申 상궁尙宮 집의

간사 진동익(陳東翊)이 수원군(水原郡) 장안면(長安面) 독정포(兪汀浦)에 독을 쌓기 위해 박봉의(朴鳳儀) 집에 내려와서 피고 김용서(金用西)로 하여금 공사의 시작을 두루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박봉의가 와서 서울에서 물건을 거래한 돈을 이곳에서 환표(換標)로 쓰겠다고 수없이 간청하였으므로 엽전 12,000여 냥을 내어 주고, 상경하여 추심하고자 하였더니 차일피일로 미루며 10여 차례 퇴환(退換)*하였다가 10월에 이르러서야 80여 냥만 조금씩 나누어 추심했고, 나머지와 손해금을 합친 6,000냥을 피고 김용서 고향집에 가서 추심하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 리 눈길에 비용을 써 가며 왕래하였습니다. 12월에 이르러서 진동익은 도망가고 피고 김용서가 저에게 갚을 몫과 각 사람의 품삯을 만약 1906년 1월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제방 쌓은 곳을 영구히 허급(許給)하겠다는 뜻으로 증서(證)를 작성해 주었고, 각 역인(役人) 또한 이와 같은 뜻으로 등장(等狀)을 연명(聯名)하여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2월경에 장안면과 수원군의 보고를 청구하여 농부(農部)의 인가를 청원하던 시기에 도망 중이던 진동익이 은신한 채 (피고를) 부추겨서 농부의 인허가증을 중간에서 발급받고자 도모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립하여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인허가증을 발급받았으며, 들어간 비용 2,000여 냥은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 김용서가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가 지난 5월에 올라와서 박봉의와 한통속이 되어 말하길, '너에게 한 푼도 갚을 것이 없다.'고 하고 인허가증을 찾고자 수원군에 무소(誣訴)하여 제가 장杖을 맞고 4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송사가 중지된 때에 호소할 곳이 없어 수원부 경무서(警務署)에 인허가증을 제출하고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들이 교활한 계책으로 돈을 갚을 것이니 다시는 서로 소송하지 말자는 뜻으로 화해를 요청한다는 증서를 경무서에 제출하고 그 인허가증을 찾아 갔습니다. 그 후에 피고가 시일을 끌다가 지금 와서 하는 말이 '이자와 원금은 박봉의에게 추심하여 받고, 인허가에 들어간 비용은 각자에게 물리어 찾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용전(換用錢)을 1년 동안

* 퇴환(退換) : 요즘의 환어음에 해당하는 환간(換簡)·환표(換標)의 당사자인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중 지급인이 환간(換簡)·환표(換標)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대개 환간 상에 '퇴(退)'자를 써 주었다.

갚지 않고서 도리어 수원군에 정소(呈訴)하여 2,000여 냥의 비용이 발생했으니, 제가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원금과 이자와 들어간 비용을 하나하나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피고 김용서의 진술(所供)은 "진동익과는 처남과 매부 사이로 각자 22,000냥의 자본을 내어 해당 제방을 쌓자고 확실하게 정한 후, 22,000냥을 변통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후에 내려와 공사를 시작하여 소용에 따라 때때로 환표를 썼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아들 최명순(崔明順)이 포목상(布木商)으로 이곳에 와서 장사할 때, 서울에서 물건을 거래한 돈 1,600냥을 환표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와서 말했으므로 그 말에 따라 환표로 사용하고 식주인(食主人) 박봉의로 하여금 서울에 올라가 돈 2,500냥을 찾아서 최명순에게 내어주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본읍의 돈(本邑錢) 또는 포목값으로 서로 거래하였습니다. 9월에 이르러 품삯으로 들어간 것이 합계 60,000여 냥이 되었으나 분하게도 저 진동익이 자본 22,000냥을 위와 같이 논하지 않고, 임치전(任置錢) 중에 8,000냥만 조금씩 나누어 내려 보낸 후, 남은 14,000냥을 착복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도달함에 각 사람의 품삯을 여기저기 빌리고 취하여 이곳저곳에 임시로 해결했으나 결국 지급하지 못한 몫이 33,000냥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제방 공사는 자연스럽게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이르러 사정을 진술한 글을 준비하고 군(郡)·부(府)·부(部) 인허증서와 함께 박봉의에게 지급하여 혼자 고향 집으로 보내고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박봉의가 왕래하는 길에 원고 부자(父子)가 김용서에게 받을 몫이 있다고 말하며 그 인허증서와 하기책(下記冊)** 1권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이유로 12월 보름경에 품삯을 지급해야 하는 각 일꾼에게, '내가 마땅히 고향에 내려가 돈을 마련해 올 것이니, 만일 1906년 1월 말일을 넘긴다면 해당 제방을 쌓은 것에 대한 권리를 지급하지 못한 품삯조로 내어 주겠다.'고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일꾼들이 말하길, '이번에 내려 간 후에 돈을 만약 조금이라도 올려 보내거나, 돈을 우선 마련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만일 받지 못하게 되

** 하기(下記) : 돈 치러준 것을 적은 기록이다.

는 걱정만 없게 해 준다면 비록 1월 말의 기한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증서로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하며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길에 원고를 방문하고 인허증서를 찾기자 하였더니 원고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잡혔고, 값을 돈을 마련해 오면 마땅히 찾아서 돌려주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고향에 있는 집에 내려갔더니 그 사이에 삼촌 숙부가 도보로 올라와서 일꾼들에게 당오전(當五錢)을 변통하는 일을 갖추어 말하였더니 일꾼들이 말하길, '비록 사람이 와서 말은 하였지만 믿을 수 없다. 박봉의로 하여금 혼자 가서 자세하게 탐지하게 하라.'고 하여 박봉의가 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집의 장물을 방매(放賣)하고 다른 사람에게 빚을 청하여 30,000여 냥 가치의 미역으로 바꾸어 싣고 올라와서 들어보니 원고가 농부에서 인허 문적(文蹟)을 발급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서 찾기자 하였더니 대답에 '들어간 비용 6,000여 냥을 마련해 지급한 후에 찾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군·부·의 지령으로 경영재(經起劑)임을 허락받았는데, 원고가 무슨 생각으로 스스로 적지 않은 비용을 마련하여 인허증서를 발급받은 것이며, 그가 말한 들어간 비용이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것이며, 애초에 6,000냥이라고 말했다가 소장에는 2,000냥이라고 한 것은 그 증감하여 일정하지 않은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단지 인허증서를 발급받는 일로서만 논할지라도 원고가 그 일꾼의 부탁을 받아 가져 온 소장(等詞)은 1월 말일의 기한이 지나길 기다려 정소(呈訴)하고 나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인허증서를 발급받은 것이 사리에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일꾼들의 소장을 올리지 않고, 증서의 기한도 기다리지 않은 채, (청구하여) 장안면의 보고서를 받아 수원군에 소장을 올려 다시 보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허증서를 발급되자 도리어 저의 이름으로 한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그런 것입니까? 원고가 말하길, '피고가 진동익이 몰래 인허증서를 발급받으려 한다고 들었으므로 들어간 비용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마련하여 성사시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동익은 그 인허증서를 지니고 서울과 지방에 가서 전달잡고 구매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원고와 진동익이 한통속에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으로 각 일꾼들이 원고의 손에 품삯을 잃게 될까 염려하

여 먼데도 수원군에 보고하였습니다. 전후의 원하는 뜻이 분명하게 존재하니 명백하게 해당 일꾼들을 조사하신다면 저절로 그 옳고 그름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원고가 영흥(永興)에 왕래한 것으로 말한다면, 원고에게 거래상 갚지 않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채무자를 버려두고서 저의 사촌 파락호(破落戶) 김봉서(金鳳西)에게 증서를 받고 맘대로 왕래한 비용을 물어 달라고 요구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끝내 해당 인허증서를 일본인에게 전달잡혔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경무서에 비용 100원(圓)을 배상한 후에 그 인허증서를 추심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농부은행에서 발급받은 인허증서를 전달잡히고서 16,000냥의 빚을 요청하여 서로 간에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원고가 해당 인허증서를 가지고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빚을 얻을 수 없었고, 이자 660냥만 억지로 물어줬으니 경무서에 납입한 1,000냥과 은행에 물어준 660냥은 바로 원고 때문에 생긴 과징금이니 조목조목 명백하게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또한 제가 박봉의에게 말하길, '당초 16,000냥을 거간하여 환표를 얻어 김용서에게 주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에 원고의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기에 2,250냥을 추심하여 내어주고, 더 간 돈을 추후 김봉서와 최덕중(崔德仲) 두 사람이 서로 계산했으니 그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조사해 보니 박봉의는 당초 1,600냥을 거간하고 얻어 주었다가 이어서 바로 경전(京錢)으로 추심하여 갚았으므로 이후 거래와는 실로 관련이 없다. 원고가 말한 인허비 및 부대비용과 피고 김용서가 말한 경무서에 납입한 1,000냥 및 은행에서 몇대로 징수한 이자와 허다한 손해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利害)가 상반되어 모두 거론할 수 없다. 그러니 각각 시행하지 말고, 원금에 남은 돈 1,603냥 1전 5푼만 피고 김용서가 원고에게 갚는 것이 정당하다. 이에 판결한다.

1906년 10월 27일

*** 경전(京錢) : 대한제국기 당시의 화폐인 당오전(當五錢)을 민간에서 설했던 방법이다. 서울에서 당오전의 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엽전 1전을 닷 돈, 2전을 한 냥으로 쳤다.

원문

第三十六號

原告 水原郡 發安場 居 崔德仲 年

被告 永興郡 居 金用西 年

水原郡 長安面 居 朴鳳儀 年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金用西 訴答에 對하야 被告去文葉計一萬二千五十兩九錢五分과 原告來文一萬四百四十七兩八錢에 利金은 互相會計 其去來日字 而歸正하며 原告曰 邊條一千兩中 金允明條二百兩은 自在於去來計邊之中하고 餘在八百兩은 三造於役價受去之人 而歸正하고 兩隻所謂浮費已并爲勿施하고 原錢在條 一千六百三兩一錢五分은 被告金用西가 加償함이 可하 事 訴訟費用은 各其擔當하 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과 事理에 照하야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 事 此에 對하야 原告에 陳供은 昨年七月分에 京居申尙宮家 幹事人 陳東翊이 本郡 長安面 禿汀浦 築堰次 下來于被告朴鳳儀家하야 使被告金用西로 看檢始役矣러니 被告朴鳳儀來言曰 京中貿物錢을 自此換用이라 無數懇請 故로 葉一萬二千餘兩을 出給하고 上京欲推 則此日彼日 十餘次退換이라가 至于十月하야 八十餘兩 流伊推尋하고 餘在與損害金 并六千兩을 往推於被告金用西鄉家하야하옵기 千里雪程에 空費往還하옵고 至其臘月하야 陳東翊은 逃躲하고 被告金用西가 原告處 所報條及 各人役價를 若過丙午正月晦日而不給 則右築堰廳乙 永爲許給事 成票以給이고 各役人이 又以此意로 等訴狀을 列

名出給 故로 去二月分에 請求面報及本郡報告하야 請願農部之認許之際에 在逃之陳哥가 隱身嗾囑하야 農部認蹟을 中間圖出코자하야 因此相持에 不計所費하고 竟出認蹟 而所費二千餘兩之入用은 確有證據이거늘 被告金用西가 下往鄉家라가 去五月上來하야 符同朴鳳儀曰 原告處에 無一分所報條라하고 欲索認蹟 而誣訴本郡하야 至於杖囚四朔 而時值停訟에 呼訴無處하야 納其認蹟於本府警署하고 以請公決矣러니 被告等이 以誦計로 錢則辦報 할지니 更勿相訟之意로 請和而各其納票於警署하고 推去其認蹟之後에 延拖時日타가 今來被告曰 利本錢은 推捧於朴鳳儀하고 認許所費는 徵推於各人處하야하오니 換用錢之一年不報하고 反爲呈郡하야 生費二千餘兩이오니 豈不冤抑乎잇가 本利錢與所費錢을 一一推給이라하고 被告金用西所供은 陳東翊으로 爲甥妹之間이온되 各出資本錢二萬二千兩하야 該堰防築次 牢定後 錢二萬二千兩을 區處以給後 下來始役하야 隨所用 或執換以用이온되 原告之子明順이 以布木商으로 來買於此일되 京中貿物錢一千六百兩 換用次 來言 故로 依其言換用이고 使食主人朴鳳儀로 上京推錢二千五百兩하야 出給崔明順이온後 或本邑錢 或布木價로 互相去來이올다가 至于九月하야 役價所入이 合爲六萬餘千이온되 恨彼陳東翊이 渠之資本錢二萬二千兩은 如此勿論하고 任置錢中 八千兩을 流伊下送後 餘在一萬四千兩을 乾沒避身이오니 到此地頭에 各人役價를 東貸西取하야 左右彌縫이오니 畢竟未給條爲三萬三千兩이온 則緣此而築役은 自歸停止矣라 至于十一月하야 備陳事狀於書中하고 并與郡府部認許之蹟 而給付朴鳳儀하야 專送于鄉家하고 以通消息矣러니 及其朴鳳儀往還之路에 原告父子가 謂有所捧條於金用西라늘 奪去其認蹟與下記册一件이온바 臘月望間에 對各該役人曰 吾當下鄉辦錢以來矣니 若過丙午正月晦日 則該堰築은 以役價未給條로 永爲出給事 成標하고 下往本鄉之時에 役人等曰 今番下去後 錢若多少間上來이거나 錢姑未辦이라도 如無難捧之慮 則雖閱正晦之限이나 就不以標爲言이라 丁寧質護이온바 被告發行之路에 歷訪原告 而欲推認蹟 則答以謂典執於他하야스니 辦來所報之錢 則當推還云 故로 仍往鄉第矣러니 其間에 三寸叔父가 徒步上來하야 對役人等 而備陳錢坪區處之事 則役人等曰 雖有來人之言이나 不可準信이라 使朴鳳儀로 專往探詳하야하야 朴又下來이옵기 放賣家賊하고 請債於人하야 三萬餘兩價値甘藿을 質馱上來而聞之 則原告가 圖出認許文蹟於

農部이라 故로 往欲推之 則答曰 所費錢六千兩辦給後 推去하라오니 被告가 既蒙郡府部指令 而經起者를 原告가 何慮之有 而自辦不少之費야 圖出 認蹟이며 其日所費는 何如是夥多이며 初焉曰六十餘兩 訴狀曰二千兩은 何 其增減無常이오며 第以認蹟圖出之事而論之라도 原告가 受其役人之托 而 受來等訴之狀 則待正晦之過限 而先呈其訴하고 以他姓名으로 更出認許가 事理當然이거늘 不呈役人之等訴하고 不待票限 而受面報呈郡야 以圖轉 報 而出認蹟也에 反以被告之名으로 爲之者 抑何意思이오며 原告曰 渠聞陳 東翊이 暗欲圖出認蹟 故로 不計所費之多少 而自辦成事하되 陳東翊 則持帶 其認蹟 而京鄉請典求賣하얏사오니 此豈非原告與陳東翊으로 腸肚相違者乎 잇가 所以로 各役人等이 慮失於原告之手야 遠次具報於郡야 前後願意 가 分明自在이오니 明查於各該役人等處 則自可洞燭其是非이올고 以原告 之永興往來言之라도 原告處去來上 未報者는 卽被告어늘 原告가 捨此債主 하고 被告之四寸破落戶鳳西處에 受票而恣意往來하고 其所費用을 責徵以 去하얏사오니 此非被告之所送이올고 未乃該認蹟을 典執於日本人云矣러니 自本道警務署로 賠償費金一百圓後 推尋其蹟하얏고 被告가 欲典執其初次 認許之蹟於農工銀行하고 請債一萬六千兩야 彼此成約之後에 原告가 該 認蹟을 執置不給함을 因야 不得其債하고 利金六百六十兩만 橫徵하얏사 오니 警署之納一千兩과 銀行之徵六百六十兩은 是原告之所使而生徵이오니 條條明查하되 從公決處라하고 被告於朴鳳儀曰 當初一千六百兩 居間得換 以給于金用西라가 卽其時帶同原告之子 而上京야 錢二千二百五十兩 推 尋出給야 加去錢을 追後 崔金兩人相計 則渠無所關이라하느바 查此朴鳳 儀는 當初一千六百兩을 居間得給이라가 仍卽以京錢推報 則伊後去來는 實 無所關이요 原告之曰 認許費與浮費之說과 被告金用西之曰 警署納一千兩 及銀行橫徵邊利與許多損害之說은 利害相半이라 俱不可舉論者也니 各其勿 施이고 原錢在條一千六百三兩一錢五分 被告金用西가 報給原告함이 正當 하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年 十月 二十七日
京畿裁判所 判事



1906년 11월 6일 한성-남양

역문

제595호

판결서

중서中署 전동典洞 거주 동몽童蒙

원고 민기룡閔騎龍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선격船格

피고 강영옥姜永玉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선격船格

피고 서응운徐應云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거주 상민商民

피고 장관유張寬裕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거주 강상薑商

참가인피고 전평숙全平叔

경상남도慶尙南道 동래군東萊郡 거주 강상薑商

참가인피고 김영삼金英三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거주 강상薑商
참가인피고 이관두李寬斗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거주 강상薑商
참가인피고 최래수崔來壽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거주 강상薑商
참가인피고 이형진李亨晉

전라북도全羅北道 전주군全州郡 거주 강상薑商
참가인피고 이춘보李春甫

판결요지

피고 강영옥姜永玉, 서응운徐應云 등은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
고, 피고 장관유張寬裕와 참가인들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생강生薑 매석
每石에 엽전 합계[葉計] 8전錢과, 생강 2승升씩 전례에 따라 도조[賭地]를 물
어주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장관유와 참가인들은 원고의 집에서 생강 도지[薑賭地]를 매득하여 온
내력을 애초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도지의 매득 신구
문기新舊文記를 조사해 보건대, 원고의 증조부가 1866년경에 전라북도全羅
北道 전주全州 대장촌大場村 소재 생강 도지[薑賭地]를 엽전 합계 700냥兩의
값을 주고 본문기本文記 1장과 입지立旨 1장으로 매득하여 40여 년 도조를
거두어 온 증적證跡이 확실하다. 따라서 무명잡세無名雜稅*라 할 수 없어
전례에 따라 물어주는 것이 옳음에도, 이렇게 하지 않아 이처럼 소를 제기

* 무명잡세(無名雜稅) : 정당한 세목(稅目)을 붙이지 않고 받는 갖가지 세금이다.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
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11월 6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이금수李兢洙

원문

第五百九十五號

判決書

中署 典洞 居 童蒙

原告 閔騎龍

京畿 南陽郡 居 船格

被告 姜永玉

同道 同郡 居 船格

被告 徐應云

全羅北道 全州郡 居 商民

被告 張寬裕

同道 同郡 居 薑商

參加人被告 全平叔

慶尙南道 東萊郡 居 薑商

參加人被告 金英三

全羅北道 全州郡 居 薑商

參加人被告 李寬斗

同道 同郡 居 薑商

參加人被告 崔來壽

同道 同郡 居 薑商

參加人被告 李亨晉

同道 同郡 居 薑商

參加人被告 李春甫

判決要旨

被告 姜永玉 徐應云等은 原告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호고 被告 張寬裕와 參加人等은 原告訴求에 應호야 薑每石에 葉計八錢과 薑二升式 依前例徵給賭地가 可호 事 訴訟費用은 參加人等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 張寬裕와 參加人等은 原告家의 買得薑賭흔 來歷을 初不知之라호나 考閱原告所納買賭新舊文記 則 原告의 曾祖가 丙寅年分에 全羅北道 全州 大場村所在 生薑賭地를 給價 葉計七百兩호고 本文記一張과 立旨一張으로 買得호야 四十餘年收賭흔 證跡이 的確흔즉 不可謂以無名雜稅라 依前例徵給이 可也어날 不此之爲호야 致此被訴흔은 正當이라고함이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十年 十一月 六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李源國

主事 李兢洙





임치전任置錢에 관한 건

1906년 11월 7일 수원-수원

역문

제601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前前 부윤府尹

원고 김문환金文煥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현 거류지 남서南署 죽동竹洞 상민商民

피고 고흥삼高興三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임치전任置錢 당오전 합계[當計] 10,640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치전 당오전 합계[當計] 10,640냥兩을 착복[乾沒]하였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핑계 대며 갚지 않고 있다. 또 자신 소유의 가권家券을 원고의 부친에게 전당잡혀 주고도 미루면서 갚지 않아 이렇게 다툼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11월 7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이용상李容相

주사 홍우기洪祐夔

원문

第六百一號

判決書

京畿 水原郡 居 前府尹

原告 金文煥

京畿 水原郡 居 現留 南署 竹洞 商民

被告 高興三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하야 任置錢 當計一萬六百四十兩을 辦償함이 可하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卞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는 原告의 任置錢
當計一萬六百四十兩을 乾沒而推以勢難辦報하고 渠之所有家券을 典給於
原告之父하고 延拖不報하야 致此紛拏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原告訴求는 其理由가 有하事

光武十年 十一月 七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李容相

主事 洪祐夔



누룩값[麴子價]에 관한 건

1895년 9월 21일 보령-남양

역문

제662호

판결서

충청남도忠淸南道 보령군保寧郡 거주, 현 사동寺洞 거주 상민商民

원고 이응호李應浩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현 자암紫岩 거주 상민商民

피고 노영우盧永祐

서서西署 관정동館井洞 거주 상민商民

피고 김용현金容鉉

판결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누룩값(麴子價) 중 노영우盧永祐는 당
오전 합계(當計) 198냥兩 7전錢 5푼(分)을 갚고, 김용현金容鉉은 당오전 합계
(當計) 1,320냥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져간 누룩값을 미루고 갚지 않아서 원고로 하여금

누룩 원주인에게 소송을 당하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6년 11월 28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이용상李容相

주사 홍순용洪淳瑒

원문

第六百六十二號

判決書

忠淸南道 保寧郡 居 現留 寺洞 商民

原告 李應浩

京畿 南陽郡 居 現留 紫岩 商民

被告 盧永祐

西署 館井洞 居 商民

被告 金容鉉

判決要旨

被告等은 原告 訴求에 應호야 麴子價中 盧永祐는 當計 一百九十八兩七錢
五分을 報給호고 金容鉉은 當計 一千三百二十兩을 辦報함이 可호는 事 訴訟
費用은 被告等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等은 原告處에 持去 糶子價를 延拖不報하야 使原告로 被訴於 糶子原主케 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흔 事

光武十年 十一月 二十八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李容相

主事 洪淳瑢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1906년 12월 1일 남양-수원

역문

판결서 제43호

원고 남양군南陽郡 팔탄면八灘面 거주 임의준任宜準

피고 수원水原 남곡면南谷面 거주 주영은朱永根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그의 아버지 무덤을 굴이掘移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여러 세대의 분묘가 수원水原 남곡면南谷面에 있으나 40년 전에 피고의 할아버지 주완서朱完晝가 국내局內에 그의 아내를 평장平葬* 하였습니 다. 그러므로 직접 만나서 꾸짖으며 독굴督掘하였으나 기한을 정해 달라고 애걸하니 증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가족을 거느리고 도망갔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와 산 아래에 살았으므로 또 다시 독굴하였습니 다. 주완서가 불행히도 죽어서 쌍분雙墳을 만들고서 입장入葬하였기 때문에 독굴한 것이 수십 차례에 그치지 않았으나 피고가 오직 애

* 평장(平葬) :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한다.

걸하기만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완악하고 쾌악한 습속으로 또 그의 할아버지 무덤에서 10보步 떨어진 곳에 그의 아버지를 입장하였으니 어찌 원통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즉시 독굴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1852년경에 저의 할아버지가 해당 산기슭을 유건옥(劉建玉)에게 값을 지불하고 매득(買得)한 문권(文券)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경계를 정한 것이 분명하여 온 마을이 다 아는 일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무덤 섬돌 아래에 저의 아버지를 계장(繼葬)^{**}하였는데 원고가 그의 산에 투장(偷葬)했다고 일컬으며 지금 갑자기 독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산을 나눈 경계가 분명하니 보수가 비록 가까울지라도 경계를 넘어 금장(禁葬)한 것은 실로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이 모순되지만 피고가 산을 매득한 문권이 있으니 산국(山局)의 다툼은 다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고가 그의 할아버지가 종2품으로 증직(贈職)된 교지(敎旨)를 제출하였으니 분묘(墳墓)제한(墳墓界限)은 법전에 따라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12보가 떨어진 땅은 마땅히 금장(禁葬)해야 하므로 피고를 패소시키고, 그의 아버지 무덤을 독굴해야 한다. 피고가 음력 11월 5일에 이굴(移掘)하기 위해 기한을 정했으므로 이렇게 판결서를 작성해 준다.

1906년 12월 1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서(判事)리 참서관(參書官) 김한목(金漢睦)

원문

第四十三號

原告 南陽郡 八灘面 居 任宜準

**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잇대어 자손의 무덤을 쓰는 것을 뜻한다.

*** 1905년에 공포한 『형법대전』 제32조 「분묘제한(墳墓界限)」에 따르면, 제1항에 종친 1품의 분묘제한을 4면 100보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 일반관인은 1항에 따르되 10보를 제한한다고 규정하였다.

被告 水原 南谷面 居 朱永根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對하여 被告는 其父塚을 掘移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에 主張은 屢世墳墓가 在於水原南谷面 而四十年前에 被告之祖完書平葬其妻於局內 故로 面責督掘 則哀乞定限하여 至有成標矣러니 仍卽率眷在逃라가 乃於十餘年之後에 還居山下 故로 又爲督掘이옵더니 完書不幸身死 則仍成雙墳而葬之이옵기 督掘이 不止數十次이오되 被告가 惟事哀乞矣러니 以頑悖之習으로 又葬其父於矣祖塚不滿十餘步之地 則豈不冤抑乎잇가 卽爲督掘이라하든마 此에 對하여 被告에 陳供은 奧在壬子年分에 矣祖父가 該山麓을 給價買得於劉建玉處하여 文券이 自在요 定界昭然하여 一洞共知 而矣祖父塚階下에 繼葬矣父어늘 原告가 謂以渠山偷葬하고 今忽起督掘이오되 兩山之分界分明 則步數雖近이나 越界禁葬이 實非事實이라하여 兩供矛盾이나 被告에 買山한 文券이 有하니 山局之爭詰은 不須更論이되 原告가 其祖에 贈從二品敎旨를 現納하든 墳墓界限은 不容不依法典施行 則十二步相距之地에 宜有禁葬이기 被告을 置之落科 而督掘其父塚인되 被告가 以陰曆十一月初五日노 掘移次定限이기 茲에 判決書繕給事

光武十年 十二月 一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參書官 金漢睦



1906년 12월 4일 용인-수원

원문

제44호

원고 용인군龍仁郡 거주 이세헌李世憲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박창식朴昌植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의 변론[訴答]에 대하여, 피고의 아버지 무덤을 독굴督掘할 이유가 없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백부伯父인 이민달李敏達이 살아 계실 때에 저의 6대조 산소의 백호 등마루의 땀감[柴藁]만 70냥兩의 값을 받고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나 산판山坂은 처음부터 방매放賣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저의 4대조 무덤 뇌후腦後에서 20보 거리의 땅에 그의 아버지를 입장入葬하였으니 마땅히 즉시 독굴督掘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이미 1883년경에 원고의 백부 이민달에게 산을 매득買得하였고, 1886년에 저의 아버지 무덤에 입장할 때에는 처음부터 한마디 말도 없었던 것이 지금까지 해서 21년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지금 갑자기 소송하여 금장禁葬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그런 것이지 알지 못하겠으며, 또 본군本郡에서 산도山圖를 그리고 적간摘奸하여 공정하게 판결한 이후에 또 다시 소송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며 산을 매득한 문권文券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그 문권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입장할 한 곳의 땅과 땀감 할 곳[柴草場]을 경계를 정하고 방매放賣한 것은 명확하였다. 원고가 진술[所供]에서 “땀감만 방매했습니다.”라고 한 것은 스스로 무고誣告한 것이 되며, 원고의 백부가 관직이 있었고, 또한 20년이 지났으니 분묘계한墳墓界限에 대한 소송 기한은 모두 법전을 따른다. 원고가 번거롭게 소송한 것은 실로 근거가 없으므로 패소키시고 이에 판결서를 작성해 준다.

1906년 12월 4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참서관 김한목金漢睦

원문

第四十四號

原告 龍仁郡 居 李世憲

被告 水原郡 居 朴昌植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訴答에 對하여 被告에 父塚을 督掘할 理由가 無은 事

理由

原告에 主張은 伯父敏達生時에 矣六代祖山所白虎脊을 柴草束 結價七十兩하여 賣渡於被告處 而山坂則初不放賣어늘 被告가 入葬其父於矣四代祖塚腦後二十步之地이온즉 宜卽督掘이라흔바 此에 對하여 被告의 陳供은 已於癸未年分 買山於原告之伯父李敏達許하여 至于丙戌에 入葬矣父塚 而

初無一言이 今爲二十一年之久이온되 原告之今忽起訟禁葬이 未知何據이
오며 且於本郡圖形摘奸公決之後에 又爲健訟이라하고 買山文券을 現納이
기 取考其文券 則一葬之地와 柴草場을 定界放賣하미 明確하니 原告所供
에 柴草뿐 放賣라하미 自歸誣告이며 原告의 伯父가 官職하고 且過二十餘
年 則界限訟限이 俱遵法典이라 原告之煩訟이 實爲無據이기 置之落科하
고 茲에 判決書成給事

光武十年 十二月 四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參書官 金漢睦



1906년 12월 12일 한성-수원

역문

제46호

원고 서울 거주 김학수金學洙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신영현申永憲 SUWON RESEARCH INSTITUTE

판결요지

원고는 압류[執留]한 피고의 가옥[家舍] 세간살이[什物]를 도로 내어 주고,
어음조로 당오전[當坪] 100,000냥兩을 독촉하여 추심해야 한다. 소송비용
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청구와 대질[質下]에 비추어 어음을 독촉하여 추심하는 것
이 정직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서울에 사는 저의 형 신영
조申永祚가 작년 7월경에 상업[商業]에 실패하여 빚진 것으로 인해서 현재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에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로 서울로 올라갔
더니 저의 형 집을 돌보는 사람이 말하길, ‘가장 급한 빚이 곧 심의준沈義
俊 몫이며 만약 바로 갚지 못한다면 반드시 가옥[家舍]을 집행하겠다고 하
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준이 와서 저에게 말하길, ‘너의 형이 나에게
갚을 어음이 있으며 이것은 일본 사람에게 빌린 돈이다. 일본 사람이 만약

혹 가옥을 집행한다면 어찌 곤궁함을 걱정하지 않겠는가?라고 하기에 실로 도리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날에 또한 저의 형이 빚진 것 이외에 다른 빚으로 제가 대신 잡혀 곧바로 명례궁(明禮宮)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심의준이 감옥에 방문하여 50,000냥의 어음 2편을 써 보이며 말하길, '만약 도장을 찍어서 전에 어음을 바꿔 준다면 일본인에게 이것으로 증빙을 삼아 마땅히 기한을 늘려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도장을 찍어 주었더니 그 후에 심의준이 또다시 와서 말하길, '어음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고 하였고, 제가 '돈은 바로 나의 형이 마련하여 갚을 것이다.'라고 대답하고서 수원 집으로 내려 왔습니다. 심의준은 일본인 변호사와 동반하여 와서 어음을 독촉하였으므로 지금은 변통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해당 변호사가 하는 말이 '돈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우면 어느 정도 합당한 세간살이(什物)라도 먼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기에 저의 가옥과 세간살이를 모두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하는 말이 '만약 이것을 방매하여 100,000냥의 액수에 차지 않는다면, 네가 반드시 달리 보충하여 갚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아 있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니 다시 보충하여 갚을 대책이 없다.'라고 대답했으나 변호사가 스스로 증명서를 써서 도장을 찍기를 요구하였고, 형세상 어쩔 수 없어 손가락으로 도장을 대신하였습니다. 심의준이 그 변호사와 그대로 서울로 올라갔다가 두 사람이 그 후에 다시 왔으나 제가 마침 출타하였더니 심의준이 곧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에 정소(呈訴)하여 저의 형 신범균(申範均)을 잡아 가두고 저의 가옥과 세간살이를 모두 탈취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먼저 떠나고 심의준이 뒤떨어졌기에 봄날의 추운 계절에 가옥을 잃어버려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을 심의준에게 갖추어 말하였습니다. 가옥과 세간살이의 방매에 값이 충분하고 충분치 않는 것은 내가 알 바가 아니니 이것으로 별탈없이 끝내자고 하고 어음은 도로 돌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준이 말하길, '이것은 곧 너의 형의 일이지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이처럼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 네 형의 가옥은 그대로 두고 묻지도 않는 것이 또한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의준의 말대로 형이 가옥을 일체 내어 주고 어음의 환급을 요청했더니 대답에 '어음은

일본인 변호사가 이미 가지고 갔다. 마땅히 찾아 줄 것이다.'라고 하며 별탈 없이 일이 마무리되었다는 표적(標蹟)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표적을 받고 갇힌 저의 형 신범균을 즉시 방면하라고 하였더니 심의준이 경무서에 들어가 사유를 들어 고과(告課)*하여 즉시 방면되었습니다. 그 후 작년 12월에 심의준이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청하고서 다시 수원군(水原郡)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대질하는 재판장에 이르러 관(官)에서는 소송을 받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올해 1월에 서울 사는 김학수(金學洙)가 갑자기 전주(鎭)라고 칭하고서 수원군에 다시 정소하여 역시 대질에 나아갔으나 소송을 받지 않고 물리쳤습니다. 곧 3월에 경무고문지부(警務顧問支部)에서 저를 잡아다가 심의준의 소송문서(訴軸)를 보이고 마땅히 갚을 것인지, 갚지 않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전후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역시 바로 돌려보냈으므로 폐단이 없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김학수가 또다시 이렇게 정소하여 별탈 없이 마무리된 당오전(當錢)을 추심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심의준의 진술(所供)은 "제가 김학수와 본래 친분이 있었는데 김학수가 본가(本)로 당오전(當錢) 100,000냥 어음을 신영조에게서 받고, 기한은 다음해 7월 20일로 하였습니다. 그때 김학수가 위관(尉官)이었던 까닭에 공무로 인해 겨를이 없어 해당 돈을 제대에 추심하는 일로 저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기한에 찾고자 하였더니 신영조가 5일을 늘려 달라고 했으므로 26일에 또다시 가서 추심을 요구했습니다. 신영조가 20,000냥 어음 1편을 내어 주었고, 지급(出次)한 사람은 곧 안동(安洞)의 김상운(金尙云)이었습니다. 신영조가 먼저 이 뭇을 찾아가라고 말하였으므로 그 말에 따라 김상운을 방문하였더니 김상운이 빚이 있어 한성은행(漢城銀行)으로부터 마침 가옥을 집행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신영조를 만나 김상운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로 어음을 주었습니다. 신영조의 대답에 '당오전 150,000냥을 김상운에게 유치(留置)하였는데 김상운이 실패한 것이 이와 같다면 형세상 기한을 다시 8월 말일로 할 수밖에 없으니 당일에 수효대로 마련하겠다.'고 하

* 고과(告課) : 하급관이 상급관에게 보고하는 것이다.

며 끝없이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돌아와 김학수에게 말하고 그 기한을 기다렸습니다. 같은 달 20일 후에 두 차례 찾은 것이 6,800냥이 되었고, 10월 1일에 신영조 집에 가서 만났더니 신영조는 이미 한성 재판소에 간혀서 요구할 곳이 없었습니다. 신영조의 일을 살피던 이씨와 배씨 두 사람이 말하길, '신영조의 아우가 수원에서 하루사이에 올라올 것이니 그 당오전을 마땅히 변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과연 신영조의 동생 신영헌(申永憲)을 만나 서로 인사를 한 후에 그 어음 당오전을 말했습니다. 대답에 '대략을 집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으며 마땅히 주선할 것이니 조금도 염려치 말라. 내가 갚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안으로 기필코 주선을 도모해 달라고 신영헌에게 부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다음 날에 신영헌은 명례궁에 간헐고, 그 간사 이씨와 배씨 두 사람이 신영헌의 어음 받기를 권유하고, 몇달 사이로 기한을 늘려 주는 것이 일에 매우 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영헌을 만나 어음을 작성해 주길 요청했더니 신영헌이 곧 흔쾌히 승낙하고, 어음을 작성해 주어 받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신영헌의 방면을 듣고 방문하여 독촉하였더니 잠시 주선하여 변통하길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결국 어떠한 말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수원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김학수에게 가서 말했더니 김학수가 탄식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거소(擧訴)하고자 하였는데, 곧 10월에 마침 신영헌을 서울 남대문 밖에서 만났으므로 신영헌이 올라 온 사실을 급히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신영헌을 불러다가 어음에 적힌 당오전을 마땅히 내줄 것인지 여부를 탐문하니 신영헌이 10월 말까지 마련하여 갚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말하길, '그대의 말을 믿기가 어려우니 신실한 사람으로 보증을 서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신영헌과 동반해서 온 수원 사는 박씨라는 사람이 말하길, '신영헌이 100,000냥의 빚 때문에 도망간다는 염려는 하지 말라.'라고 하며 자신이 보증을 서는 것으로 하고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았으므로 제가 변호사와 경기도재판소에 와서 정소하여 해당 가옥과 세간살이를 압류(執留)하고 다

시 기한을 11월 15일로 정했더니 또다시 그 기한을 지나치고 역시 갚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제가 신영헌을 방문하였더니 몸을 숨기고 나타나지 않아 다시 경기도재판소에 정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신범균을 잡아 가두고 신영헌이 나타나길 독촉하였더니 며칠 후에 신영헌이 와서 그의 집에 머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의 집에 가서 머물며 빚을 독촉할 즈음에 마침 일본 설날이 되어 일본인 변호사가 신영헌의 세간살이 중에 3건을 2,100냥의 값을 받고 방매하여 노비(路費)로 삼고 먼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홀로 신영헌의 집에 머물며 그 당오전을 변통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신영헌은 그의 부친 신윤명(申允明)과 그의 숙부 신윤삼(申允三), 사촌형제와 함께 감히 나쁜 계획을 품고 저를 신윤삼의 쪽방에 가두고 위협하며 공갈하기를, '너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없고, 물건도 준 일이 없는데 어찌 받고자 하는가? 내가 나의 가옥과 세간살이를 빼앗았으니 해당 어음증서는 돌려 달라. 이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하며 하루 종일 못된 행실을 부려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해당 어음은 변호사가 이미 가지고 가서 내어 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만약 어음이 없으면 별 탈 없이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주(主)가 분명하게 있으니 설령 나의 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실효가 없다고 갖추어 설명했으나 한결같이 소란을 야기하였습니다. 큰 읍이 가까워서 도망갈 계획으로 잠시 여관에 가서 증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했더니 신영헌이 한 노파의 집에서 직접 작성한 수표에 억지로 저의 착명(著名)을 받았습니다. 신영조의 가옥 문권(文券)은 그때 신영헌이 내어 주겠다고 흔쾌히 말하였으므로 말한 대로 받은 것입니다. 경무서에 밤중에 간헐던 신범균을 함께 가서 방면을 요청하자고 저에게 강제로 요구하여 매우 좋겠다고 하며 역시 따라 갔더니 신영헌이 경무서에 말하여 즉시 석방하였습니다. 형세상 어쩔 수 없어 바로 가서 이 사실을 김학수에게 설명하였더니 김학수가 그 실상을 가지고 수원군에 다시 정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가르쳐 주어 김학수의 말대로 청원하였습니다. 수원군에서 1차로 사실을 조사한 후에 신영헌을 패소시켰으나 잡아 가두었다가 바로 방면하여 김학수가 또다시 이렇게 거소(擧訴)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김학수의 진술은 “심의준이 아뢰 바(所告)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여러 진술을 참고하였더니 사리의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었다. 그 어음과 작성한 증서를 살펴보니 허실(虛實)이 분명하고, 해당 어음에 신영조가 한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니 김학수 돈과 심의준 돈을 논하지 않고, 신영조가 마땅히 갚아야 하는 것도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가옥과 세간살이가 30,000냥의 시중가격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영조가 혹 비용을 사적으로 다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30,000냥 값의 물건으로 100,000냥 갚는 것으로 잘 마무리되길 요구하는 일은 실로 염치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정(人情)의 잠시간 두터운 정의는 미루어 헤아리기 어려우나 김학수는 전주가 아니고, 심의준이 실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지 30,000냥 가치의 물건만 받고서 100,000냥으로 잘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다. 진실로 만약 좋은 뜻으로 잘 마무리 했다면 오늘날에 어찌 이런 소송이 있겠는가? 잘 마무리 되게 요청한 것으로 말하더라도 심의준과 변호사가 동석할 때에는 어찌 한마디 말도 없다가 변호사가 길을 떠난 후에 바로 감히 요청한 것인가?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신영현이 작당(作黨)하고 위협하여 심의준의 증서를 강제로 받은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마음 쓰고 한 행동이 진실로 매우 통악(痛惡)하므로 패소시킨다. 압류한 가옥과 세간살이는 도로 바로 내어 주어야 한다. 어음 100,000냥 중에 먼저 받은 6,800냥과 변호사가 가지고 간 세간살이 값 2,100냥은 덜어 내고, 그 나머지는 액수대로 피고에서 독촉하여 추심하는 것이 옳다. 이에 판결서를 작성해 준다.

1906년 12월 12일

각각 1진씩 지급한다.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서(判事)리 참서관 김한묵(金漢睦)

원문

第四十六號

原告 京居 金學洙

被告 水原郡 居 申永憲

判決要旨

原告는 執留(執留)한 被告의 家舍汁物을 還爲出給(還爲出給)하고 於音條當坪十萬兩을 督推(督推)함(督推)이 可(可)한 事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訴求와 質(質)卜에 照(照)하여 於音條를 督推(督推)함(督推)이 正直(正直)한바 此에 對(對)하여 被告의 陳供은 京居(京居)矣兄永祚가 昨年七月分에 商業이 良貝(良貝)하여 以 價帳(價帳)으로 現囚(現囚)於漢裁(漢裁)이다 故로 矣身이 卽爲(卽爲)上京 則矣兄家看事之人이 言之曰 最急(最急)債錢이 乃沈宜俊(沈宜俊)條 而若不卽報(若不卽報)면 必有家舍之執行(必有家舍之執行)이라(必有家舍之執行)하더니 沈宜俊이 來到(來到)하여 而矣身曰 汝兄이 於我(於我)에 有所報(有所報)於音條 而此則日人之 債錢(債錢)이라 日人(日人)이 若或執行(若或執行)家舍 則豈不悶隘(則豈不悶隘)哉(則豈不悶隘)아(則豈不悶隘)하옵기 答以實無道理(答以實無道理)라(答以實無道理)하(答以實無道理)엿(答以實無道理)삽(答以實無道理)더니 其日(其日)에 亦以矣兄所負(亦以矣兄所負)之外他債錢(之外他債錢)으로 矣身이 替被推捉(替被推捉)하(替被推捉)야(替被推捉) 就囚(就囚)於明禮宮(就囚於明禮宮)이온(就囚於明禮宮)바 沈宜俊이 來訪(來訪)於囚禁(於囚禁)中(於囚禁)하(來訪)야(來訪) 書示(書示)五萬兩於音二片(書示五萬兩於音二片) 曰 若有擗章(若有擗章)하(若有擗章)야(若有擗章) 換給(換給)前於音(換給前於音) 則日人處(則日人處)에 以此爲憑(以此爲憑)하(以此爲憑)야(以此爲憑) 當有寬限(當有寬限)云(當有寬限) 故로 果爲擗章(果爲擗章)以給(以給)이(以給)옵(以給)더니 其後(其後)에 沈又來言(沈又來言)曰 於音條(於音條)를 何以措劃(何以措劃)이(何以措劃)옵(何以措劃)기(何以措劃) 答以錢則是我兄之所辦報(答以錢則是我兄之所辦報)라(答以錢則是我兄之所辦報)하(答以錢則是我兄之所辦報)고(答以錢則是我兄之所辦報) 下來(下來)于水原家(於水原家)矣(於水原家)러(於水原家)니 沈宜俊이 與日人辯護士(與日人辯護士)로 伴來(伴來)하(伴來)야(伴來) 督促(督促)於音條(於音條)이(督促)옵(督促)기(督促) 答以今無變通(答以今無變通)이라(答以今無變通)한(答以今無變通)즉(答以今無變通) 該辯護士曰 錢猝難辦(錢猝難辦)이면 雖可合汁物(雖可合汁物)이라도 先給(先給)이(先給) 甚妥(甚妥)라(先給)하(先給)야(先給) 矣身(矣身)에 家舍汁物(家舍汁物)을 并錄(并錄)以給(以給)이(以給)옵(以給)더니 該辯護士曰 若賣此而不滿十萬兩之數(若賣此而不滿十萬兩之數) 則汝必從他充報(則汝必從他充報)하(則汝必從他充報)라(則汝必從他充報)하(則汝必從他充報)옵(則汝必從他充報)기(則汝必從他充報) 答以所存者 只此則更無充報之策(答以所存者 只此則更無充報之策)이라(答以所存者 只此則更無充報之策)하(答以所存者 只此則更無充報之策)되(答以所存者 只此則更無充報之策) 該辯護士가 自書證明書(該辯護士가 自書證明書)하(該辯護士가 自書證明書)야(該辯護士가 自書證明書) 要以擗章(要以擗章)이(要以擗章)옵(要以擗章)기(要以擗章) 勢不得已(勢不得已)以指代章(以指代章)이(勢不得已)온(勢不得已)바 沈宜俊이 與其辯護士(與其辯護士)로 仍爲上京(仍爲上京)矣(仍爲上京)라(仍爲上京)가(仍爲上京) 兩人(兩人)이 其後更來(其後更來) 而矣身(而矣身)이 適值(適值)出他(適值出他)러(適值出他)니 沈乃呈訴(沈乃呈訴)於

京畿裁判所^하야 捉囚矣兄範均^이옴고 矣身之家舍與汁物를 并爲奪取 而該辯護士 則先作發行^호고 沈宜俊^이 落後^이옴기 寒節春日의 失所難保之狀을 備說於沈氏^호고 家舍汁物放賣에 價錢之足不足은 吾所不知者니 以此妥貼^호고 其於音을 還歸^호라^호는^즉 沈曰 此乃汝兄之事요 非汝所犯인되 至此難保나 汝兄之家舍는 置而勿問^이 亦非事理라^호옴기 依渠言一體出給^호고 要以於音還給 則答以於音은 日人辯護士 已爲持帶而去矣라 從當有推給이라^호며 成給妥貼標蹟^이옴기 果受其標^호고 滯囚之矣兄範均을 卽圖放免^호라^호였^습더니 沈氏^이 入于警署^호야 舉由告課^호야 卽爲蒙放^이온대 其後 昨年十二月에 沈稱抑冤^호고 更訴本郡^호야 及其質卜之場에 自官退訟^이옴며 今年正月에 京居金學洙 忽稱錢主^호고 更訴本郡^호야 亦爲就質而退^이온되 乃於三月에 自警務顧問支部로 招致矣身^호야 出示沈宜俊之訴軸^호고 請問當報不報^이옴기 說明前後事狀 則亦卽退送^이옴기 認以無弊라니 不意金學洙 又此呈訴^호야 欲推妥貼之錢坪이라^호나 沈宜俊所供內 矣身^이 與金學洙로 素有親分^이온대 金學洙以本價條로 當錢十萬兩於音으로 受於申永祚^許 而限則明年七月二十日也라 其時金學洙以尉官之致로 緣公而無暇라^호야 該錢을 趁限推尋^호 事로 托於矣身^이옴기 限日欲推 則申永祚退以五日 故로 二十六日^에 又往責推^이옴더니 申永祚出給二萬兩於音一片 而出次之人은 乃安洞金尙云也라 申曰 先推此條라^호옴기 依其言往訪金尙云 則金有債帳^호야 自漢城銀行所로 適有執行家舍^이옴기 回見申永祚^호고 說道金之事狀 而還傳於音 則答以當錢十五萬兩를 留置於金인되 金之良貝如此 則勢不已更限八月晦日 則當有准數拮据라^호며 懇乞不已^이옴기 不得已歸言於金學洙^호고 以待其限^이온되 同月念後에 兩次所推가 爲六千八百兩 而十月初一日^에 往見申家 則申已就囚於漢裁^호야 言責無處^이온대 申之看事者 李斐兩人^이 言曰 申永祚之弟 自水原으로 日間上來 則其錢坪^이 當有變通이라^호더니 不幾日^에 果逢申永祚之弟永憲^호야 相叙寒暄 後 言其於音錢坪 則答以略聞於在家諸人인^즉 當有周旋^이니 小勿爲慮라^호옴기 矣身^이 所報라 明日內 期圖周旋之意로 申托而歸^이옴더니 其翌日^에 永憲^이 被囚於明禮宮也라 其看事李斐兩人^이 勸以受申永憲之於音^호고 幾數間寬限^이 事甚便當이라^호옴기 往見申永憲^호고 要請於音成給 則申乃快

諾成給^이온바 受而還家^이옴더니 追聞申永憲之放免^호고 訪見催促 則姑俟周變^호라^호옴더니 竟無如何一言 而旻往水原渠家^이옴기 其事實을 往言于金學洙 則自歎不已^이옴다가 不獲已委任於日人辯護士^호야 欲爲舉訴^이온되 乃於十月^에 適逢申永憲於京城南門外^이옴기 申永憲之上來를 急言於辯護士 則辯護士招致申永憲^호야 於音錢坪之當出與否를 探問한^즉 申永憲^이 以十月晦日 備報로 爲答也라 該辯護曰 難信汝言^이니 信實之人으로 立保^호미 爲好라^호는^되 其時 與永憲으로 伴來^호은 水原居朴哥者 爲言曰 申以十萬兩錢債를 萬無逃避之慮라^호야 以朴立保^호고 至有成標^이온되 過限不報 故로 矣身^이 與辯護士로 來訴於本所^호야 該家舍汁物를 執留^호고 更限十一月十五日^에옴더니 又過其限 而亦不報償^호야 辯護士與矣身^이 往訪申永憲 則隱避不現^호야 更呈本所 而捉囚其兄範均督現永憲^이옴더니 數日之後^에 永憲^이 來到^호야 要請留食於渠家^이옴기 往留其家^호야 督責債錢之際^에 適值日本元月一日^호야 日人辯護士가 申之汁物中 三件을 放賣捧價二千一百兩^호야 以爲路費 而先爲上京^이옴고 矣身^이 則獨留永憲家^호야 俟其錢坪區劃^이온되 申永憲^이 與其父允明과 其叔允三과 其四寸兄弟로 敢懷不良之計^호야 矣身을 捉入於允三之挾房^호고 威脅恐喝曰 汝於我^에 無錢債給^이오 無物所給^이어늘 有何所捧^호야 汝奪吾之家舍汁物^호니 該於音票를 還給^호라^호며 如此之漢은 必殺乃已라^호야 盡日作梗^이 令人傷膽^이온되 該於音則辯護士가 已爲持去^호야 出給無路云 則若無於音^이면 成票妥貼^이 未爲不可라^호옴기 備說錢主自在 則設有吾票라도 果無實效라^호되 一直惹鬧^호야 大邑^이 迫頭라 以逃躲之計로 言以暫往旅館 而成標云^이러니 申永憲^이 請一老家^호야 自書手標^에 勒受着名^이옴며 申永祚之家舍文券 則其時永憲^이 好言出給^이옴기 依言受之者^이옴며 警署夜囚之申範均을 強要同往請放^이 甚好라^호기 亦隨往^이옴더니 永憲^이 言于警署^호야 卽爲放釋^이옴기 勢無奈何^호야 卽往說明此事於金學洙^이옴더니 金學洙教以舉其實狀^호야 更訴於本郡^이 可也라^호야 依金言請願^이옴더니 自郡으로 一次查實後 申永憲을 置之落科나 捉囚而旋放^호여 金學洙又有此舉訴라^호니 金學洙之所供은 與沈宜俊所告로 別無異同인바 參以諸供^에 曲直을 可知^여오 考其於音與標成^에 虛實^이 分明^호고 該於音^이 具爲申之所爲云 則不

論金錢沈錢^{호고}申之當報^는已無可論^{이요} 家舍汁物^이不備三萬兩時價^어
 늘申或費盡情私^{라도}以三萬兩價值之物^노十萬兩所報^를要以妥貼^이實
 爲無廉之人^{이며}且人情之臨時厚誼^는難以揣度^{이나}金非錢主^요沈實所捧
 이라도只受三萬價值之物而十萬兩妥貼云者似不近理^{호고}眞若好意妥
 貼則今日에胡有此訟^{이며}要其妥貼으로言之라도沈宜俊與辯護士同席
 之時에胡無一辭^라가辯護士發程之後에乃敢要請^{이런지}細究情形^{이던}
 申乃作黨威脅^{호야}勒捧沈標^가明若觀火^니設心行爲^가誠甚痛惡^{이기}置
 之落科^{이건과}執留之家舍汁物은還即出給^{호고}於音條十萬兩中先捧條
 六千八百兩과辯護士持去之汁物價二千一百兩은計除^{호고}其餘則准數督
 推於被告處^가可^호기로茲에判決書成給事

光武十年十二月十二日

各給一件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參書官 金漢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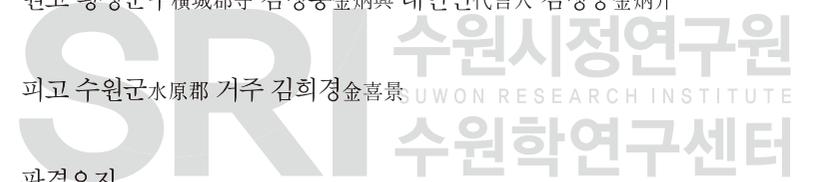
1907년 1월 14일 황성-수원

역문

판결서 제52호

원고 황성군수橫城郡守 김병흥金炳興 대인인代言人 김병승金炳升

피고 수원군水原郡 거주 김희경金喜景 UWON RESEARCH INSTITUTE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 선 당오전[當錢] 40,000냥兩을 책징責徵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양성군陽城郡에 사는 오인영吳寅泳과 동업할 때에 정산[細音]과 관련하여 상송相訟하였는데, 피고가 스스로 잘못된 것을 알고 저에게 요청하여 갚아야 할 돈의 액수를 줄여 화해하기를 바라기에 친분이 있어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오인영에게 90,000냥을 주고받는 것으로 정하여 최종적으로 화해를 체결하였습니다. 50,000냥의 돈은 피고가 오인영에게 백표白標로 주었고, 남은 40,000냥은 그의 사촌 김성옥金成玉의 증서로 하여 기한을 정하고 작성해 주려 하였습니다. 그때

* 백표(白標) : 수표(手標)의 발행인이 추후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하게 할 목적으로 만기(滿期)나 기타 요건을 백지(白地)로 하여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인영이 ‘확실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피고가 김성옥을 시켜 보증을 서 달라는 말을 거듭 전해 왔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서 ‘김성옥이 만일 기한 내에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에게 독촉하여 징수할 것이니 실로 들어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피고가 마땅히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끊임없이 간청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보증으로 증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증서의 기한이 이미 1년이 넘었는데 전혀 구분하여 처리하지 않아서 보증인에게 책임이 돌아갔으며, 최근에 제가 평리원平理院에서 잡아가겠다는 훈령의 신칙을 만나 물어주기를 독촉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오로지 거절하기만을 일삼고서 마련하여 갚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증인[證佐]시으로 오인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여러 차례 한 편지가 명백한 증거로 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사촌 김성옥이 증서로 작성한 40,000냥은 실로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저와 오인영이 서로 소송한 일은 50,000냥으로 서로 사화私和하여 이에 대한 오인영의 표적標蹟이 분명하게 남아 있으니, 제 사촌 김성옥이 작성한 수표가 저와 무슨 관계가 있고, 보증을 선다는 증서의 작성을 원고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까? 저의 사촌과 오인영의 간청에 곤란해 하여 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원고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40,000냥에 대해 보증을 선 것으로 원고가 평리원에 잡혀간 것은 바로 저의 사촌 김성옥의 일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친분이 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김성옥에게 각 사람에게 받을 것을 독촉해 견제하고 미봉하게 하였으니, 이는 바로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차 저에게 거듭하여 이르렀는데, 이에 주고받아 온 편지가 있는데도 혹 다른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오인영과 김성옥을 불러서 대령시키고 대질하여 조사해 보니 원고에게 피고가 보증을 청했다는 것에 실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오인영이 피고와 소송한 사건에 대해 50,000냥으로 사화私和하고 증서를 작

** 사화(私和) : 소송이나 분쟁 등을 법이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인끼리 서로 좋게 해결하여 풀어버리다.

성한 것이 확실하니 지금 원고가 거소舉訴한 것은 실로 이치가 없다. 김성옥은 결국 그가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 김희경金喜景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으므로 김성옥에게 기한을 정하여 엄히 독촉하는 것으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1월 14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참서관 김한묵金漢睦

원문

第五十二號

原告 橫城郡守 金炳興 代言人 金炳升

被告 水原郡 居 金喜景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의 對하야 居保한 當錢四萬兩을 責徵하미 不可한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被告가 與陽城郡居 吳寅泳으로 同商時 細音相訟事에 被告自知理屈하고 要請於原告하야 所報之錢을 欲爲減數私和이옵기 親分所在의 不可忍却 故로 果定於吳民하야 以九萬兩與受로 竟爲妥和이온되 五萬兩錢 則被告가 白標以給於吳民하고 其餘四萬兩 則其四寸金成玉之標로 定限成給之際에 吳民이 必有不信이라하야 被告가 使金成玉으로 送言申飭居保이옵기 初不肯從而言曰 金成玉이 若於限日에 未得區劃이면 必有督徵이니 實難行之云 則被告가 當有擔着之意로 退乞而已이옵기 不得已以保成標이온되 標限이 已過某年에 頗無區別하야 責歸於保人 而這間原

告가 屢值平理院押上訓飭하야 以至督徵이온되 被告가 專事納白에 不欲 備報나 其後證佐人은 吳寅泳이 自在뿐더러 被告之屢次書信이 亦可爲明 證이라흔바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矣四寸金成玉之成標錢四萬兩 則 實非被告之所知라 被告與吳寅泳相訟事 則以五萬兩으로 互相私和하야 吳 民標蹟이 自在하니 矣四寸成玉之成標가 何關於被告 而居保成標을 請於 原告乎잇가 矣四寸及吳民之懇乞에 困而行之라함은 從後得聞於原告許이 온바 以此四萬兩立保로 原告가 至於平理院押上 則寔由於矣四寸成玉之事 而且有親分也 故로 成玉에 各人所捧을 另督收刷하야 俾爲彌縫 則是所便 當이라 屢有申抵於被告하야 自有去來書信에 或有他說이라하야 吳寅泳與 金成玉을 使之來待而質查 則原告處에 被告之請保가 實無明證뿐더러 吳 民이 與被告로 訴訟事件을 以五萬兩으로 私和成標하미 的確한즉 今此原 告之舉訴가 實爲無理이며 金成玉則果爲渠之當報요 無關於金喜景이다이 기 金成玉處에 定限嚴督하미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一月 十四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參書官 金漢睦



1907년 1월 16일 수원-수원

역문

제53호

판결서

원고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 거주 이치홍李致弘

피고 수원군水原郡 오산烏山 거주 최명윤崔明允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김억이金億伊에게 매득買得한 아자전雅字田 을 반으로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수원군水原郡 남부南部 상류천上柳川에 있는 김억이가 경 작했던 아자전雅字田 문권文券을 이미 전당잡았는데, 김억이가 돈을 마련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며 와서 영매永買를 청했으므로 작년 11월에 15,000냥 兩의 값을 주고 서로 계산하여 별 탈 없이 끝냈습니다. 그리고 김억이에게 그대로 해당 밭의 경작을 맡겨 도지賭只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본래 윤씨의 밭으로 김억이에게 매도하였던 구문기舊文記 3장이 분명 존 재할 뿐 아니라, 부당한 결세結稅를 함부로 거두고자 함에 윤씨가 정소하

여 탈면(顛免)* 받은 옛 소장과 제사(題辭)** 역시 분명히 남아 매매문서에 첨부하여 거래되었으니 그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뜻하지 않게 피고가 올해 9월경에 또다시 매매했다고 말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므로 (제가) 수원군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김억이는 명령이 내리기 전에 도망가서, 잡아와 대령시킬 수 없었으며 다만 피고와 함께 군정(郡庭)에 나와서 변론했던 것인데, 수원군에서는 저를 패소시켰으니 일이 매우 원통하고 억울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訴)은 “작년 2월경에 김억이가 윤씨에게서 이 밭을 매득하였습니다. 해당 값을 돈으로 마련할 때에 돈이 부족하다고 하며 그 밭문서(田券)를 전당잡히고 빚을 얻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워 윤씨에게 직접 탐문하여 눈을 방매하겠다는 패지(牌旨)***를 받고 당오전(當錢) 7,000냥을 김억이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1월에 김억이가 요청하여 그대로 매득한 것이오니 제가 먼저 전당 잡은 후에 매득한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원고가 함부로 매매했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억지스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작년의 도조로써 말할지라도 제가 또한 각각 수확물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윤씨를 또다시 불러 대령시키고 문권의 진위를 조사하며 심문해 보니 “원고와 피고가 가지고 있는 문권은 모두 저의 필적이 아니니 반드시 이것은 김억이가 중간에서 농간을 부린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저의 옛 소장 2건은 밭을 방매할 때에 부당한 결세의 횡침(橫侵)을 설명하고 이로써 후일 증빙하기 위하여 김억이에게 출급해 준 것인데, 김억이가 이치홍(李致弘)에게 이내 전해 지급한 것인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최명윤(崔明允)에게 패지 1조각을 작성해 준 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오나, 제가 방매한 밭

* 탈면(顛免) :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생겨서 책임을 면제받다.
 ** 제사(題辭) : 백성이 관부(官府)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 등에 대하여 그 문서에 관부에서 써주는 처분 또는 판결. 제사를 받은 소장 등은 소송 자료 또는 권리·특전의 증거자료로 소중히 간직되었다. 동의어는 제음(題音), 제지(題旨)이다.
 *** 패지(牌旨) : 조선시대 양반들이 전답, 노비 등을 매매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심복 하인이나 노비 등에게 위임할 때 사용한 문서. 패자(牌子), 패자(牌字) 등이라 하고 한글로는 배지, 배자라고 한다.

에 한정된 것입니다. 김억이의 빚은 처음부터 (저와) 상관이 없는데 해당 밭문서에 옛 주인의 패지가 없어서 방매하는 사유를 탐지하러 왔다고 하고, 또 패지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 시행하고 값을 찾아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진술을 참고하여 듣고 문권을 열람하여 살펴보니 원고와 피고가 매득한 밭이 모두 같은 해 같은 달이다. 원고의 문권은 옛 소장 2건을 첨부한 것이 진짜 문서인 듯하나, 피고가 매득한 것도 역시 옛 주인인 윤씨에게 패지를 받았으니 거짓된 문서라고 하기도 어렵다. 도망간 김억이를 기필코 잡은 이후에 곧 판결할 수 있으나, 조사해도 종적이 없어 갑자기 탐문하여 잡아오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치홍과 최명윤이 전부 얻거나 잃은 것이 모두 억울한 것이니 올해 도조(租稅)를 먼저 반으로 나누고, 지금 이후부터 해당 전평(田坪)을 반으로 가르고 갈아 먹되, 도망간 김억이를 별도로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여 다시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기에 이에 판결한다.

1907년 1월 16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참서관 김한목金漢睦

원문

第五十三號

判決書

原告 水原郡 烏山 居 李致弘

被告 同郡邑 居 崔明允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金億伊處에 買得호 雅字田麁을 分半以給於原告호미 可호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本郡南部上柳川 伏在 雅字 金億伊所耕田廳 文券을 已爲典執이옵더니 金億伊錢無辦備之道이다 來請永買이옵기 昨年十一月의 給價一萬五千兩호야 相計妥貼하고 該田作人 則仍任於金億伊호야 以賭爲定이온바 此本尹民之田으로 賣渡於金億伊호야 舊文記三張이 昭然自在이올뿐더러 該田의 有不當結之侵徵호야 尹民에 呈訴頃免호 舊訴狀題辭가 亦有分明호야 買賣券의 添附來往이 確有其據이온디 不意被告가 今九月分에 亦云買得호고 空出生臆이옵기 呼訴本郡이옵더니 金億伊 則令前逃躲호야 未得捉待 而只與被告로 就下郡庭이온대 原告을 置之落科호오니 事甚冤抑이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昨年二月分의 金億伊買此田於尹民이온바 該價錢吉居之時에 錢有不足이라호야 典其田券호고 要以得債이옵기 難信渠言호야 面探於尹民許호야 至捧賣田牌旨호고 當錢七千兩을 債給金億伊이옵다가 同年十一月에 因金所請호야 仍爲買得이온즉 被告之先典執後買得은 若是明確이옵거늘 今此原告之橫出買得云者 豈非抑說乎잇가 以昨年賭條로 言之라도 被告가 亦各收穫이라호기 該尹民을 亦爲招待호야 文券에 眞僞를 查問호즉 原被兩隻에 所持文券이 俱非矣身之筆蹟이니 必是金億伊之中間容奸이오나 原告所納矣身之舊訴狀二件은 賣田之時에 說明不當結之橫侵호고 以憑後之意로 果爲出給於金億伊이옵더니 金乃轉給李民이런지 今有現納이오며 崔民處에 牌旨一片成給은 實有是事이오나 矣身則賣田而已라 金之得債는 初無相關이온디 該田券에 無舊主牌旨이라 來探放賣之由호고 且請牌旨成給이옵기 依言施行호고 推尋價錢이라한바 參聽其供호고 考閱文券 則原被告之買田이 俱是同年同月 而原告之文券 則舊訴狀二件添附가 似是眞券이나 被告之買得에 亦受舊主尹民之牌旨호니 難歸僞券이라 在逃金億伊을 期於捉得後 乃可歸決이되 查無踪跡에 猝難詞捉이라호니 於李於崔에 全得全失이 俱不無呼冤이니 今年賭條는 先爲分半호고 從今以後로 該田坪을 割半耕食이되 在逃金億伊를 另探來告호야 以爲更查處辦罷호미 可호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一月 十六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參書官 金漢陸



1907년 1월 19일 수원-남양

역문

판결서 제55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석탄리石灘里 거주 예대식芮大植

피고 남양군南陽郡 송산면松山面 거주 김조이[金召史]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투매偷埋한 남편의 무덤을 굴이掘移해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卜)과 군郡의 보고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같은 마을에 사는 예성여芮成汝에게 밭두렁(田畔) 한 삼첩의 땅을 빌려서 저의 남편을 매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예성여의 먼 친족이라고 하면서 마땅히 금장禁葬해야 한다고 말하며 본군本郡에 구소構訴하였고, 이장비를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저에게 300냥兩을 주고 기한을 정하여 굴이掘移할 것을 재촉하는 것으로 본군에서 신칙한 것이 매우 엄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차장借葬한 것을 도리어 굴이하는 것은 일에 있어 매우 억울하고 원통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진술(所供)은 “저의 친족인 예성여가 처음부터 빌려 주었다

는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에 빌렸었다면 한낮에 입장入葬하는 것이 어찌하여 불가하며 어두운 밤에야 입장하겠습니까? 그녀가 투장偷葬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일이니 차장借葬했다고 하는 말은 스스로 무고誣告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본군의 도형圖形을 불지라도 산은 바로 예씨의 산이고 밭도 바로 예씨의 밭입니다. 예씨의 무덤이 연이어 있는 가운데 다른 무덤이 하나도 없이 오랫동안 수호한 땅이니 어찌 금장禁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도형을 살펴보고 그 진술陳供을 들어보니 원고와 피고 양쪽 무덤의 보수步數가 비록 멀다고 할지라도 산과 밭은 모두 바로 예씨의 소유이다. 마땅히 금장해야 하는 것과 관계되므로 피고를 패소시키고, 기한을 정하여 굴이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1월 19일

경기재판소 관사서리 참서관 김한목金漢睦

원문

第五十五號

原告 水原郡 石灘里 居 芮大植

被告 南陽郡 松山面 居 金召史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偷埋호 其夫塚을 掘移호미 可호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卞과 郡報에 照호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同里 居 芮成汝許에 借得田畔一鍾地호야 葬埋矣夫러니 原告以成汝

之遠族으로 謂以當禁호고 構訴本郡호야 謂以移葬費備給이라호야 勒付三百兩於被告호고 定限促掘 而自郡으로 申飭截嚴이옴기 不得已受置이오나 借葬還掘이 事甚抑冤이라호나 原告의 所供은 矣族成汝가 初無借給之確證뿐더러 如或借得이면 白日入葬이 何所不可 而黑夜暗葬乎아 其所偷葬이 衆所共知 則借葬之說은 自歸誣告이며 且以本郡圖形으로 觀之라도 山是芮山에 田是芮田이요 芮塚纍纍之中의 無一他塚 而自來守護之地 則豈不禁葬이라호나 觀以圖形호고 聽其陳供호니 原被兩塚이 步雖濶遠이나 山與田이 俱是芮之所有라 係是當禁이기 被告을 置之落科호야 定限掘移케호며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一月 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參書官 金漢睦





1907년 1월 25일 수원-한성

역문

{광11민4호}

제2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水原 현암면玄岩面 용동龍洞 거주 유업儒業
원고 남정석南廷奭

북서北署 간동諫洞 거주 참령參領

피고 유진형俞鎭滢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답변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 동생의 장토庄土*를 피고가 유인하여 이매移賣하였고, 제 동생이 빚이 있어 땅을 팔았는데 피고가 쓴 것이 8,500냥兩입니다. 또 제 동생이 도일渡日할 때 돈을 전당잡혔는데,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피고가 이를 멋대로

* 장토(庄土) : 개인이 소유하는 논밭을 의미하며, 전장(田庄)이라고도 한다.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동생 남정륜南廷倫이 남매男妹의 정有情誼가 있는데, 원고네 종풍宗風이 어찌나 사리에 맞지 않고 어그러지던지 원고 동생의 재산[産業]을 기어이 침탈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 동생이 와서 피고집 근처로 이사하기를 요청해서, 그 뜻에 따라 장토庄土를 척매하여 150,000냥 어치의 가대家垆를 목천木川 땅에 이매移買하고, 나머지는 경성京城에 임치任置했다가 원고 스스로 조금씩 나누어 다 써 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일본에 건너갈 때, 끝없이 애걸복걸한 까닭에 부득이 허락하여 10,000냥을 먼저 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모두 원고의 재산[産業]을 보호하는 속셈에서 나온 것이지, 애초 (남을) 꺾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또 8,500냥으로 말하면 더욱 원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남정륜의 전후 사정이 원고와는 추호도 관련이 없으니, 설령 갚아야 할 것이 있더라도 원고와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가 자기 동생의 재산과 거취, 범절을 본래 간섭하지 않았고, 도일渡日 후에도 또한 자기 동생의 부탁이 없었다. 그런데도 동생 일이라고 핑계대고 이렇게 거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訴答]은 이유가 있다.

1907년 1월 25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윤방현尹邦鉉

주사 신정식申正植

원문

{光十一民四號}

第二號

判決書

京畿 水原 玄岩面 龍洞 居 儒業
原告 南廷奭

北署 諫洞 居 參領
被告 俞鎮滢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答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는 渠弟庄土를被告 誘引移賣하고 渠弟가 有債賣土하는디 被告所用이 八千五百兩이오 渠弟渡 日時에 亦爲典番인바 一無相議하고 被告가 任意爲之라 하나 被告는原告 弟廷倫이가 有 男妹之誼인바 原告宗風이 如何乖戾이던지 渠弟産業을 期 欲侵奪故로 渠弟가 來要搬移于被告家近處이기 從其願斥賣庄土하야 十五 萬兩價値家垵를 移買於木川地하고 餘條는 任置於京城이라가 渠自流伊盡 用하고 渠弟渡日本時에 無限懇乞故로 不得已許之하야 爲先得給萬兩이온 디 此事가 都出於保渠産業之計오 初非誘引之事이오며 以八千五百兩言之 則 尤無關於原告오 自初南廷倫之前後事狀이 無一毫關係於原告즉 設或有 可報之物이라도 不可與受於原告라 한바 原告가 渠弟의 財産과 去就와 凡 節을 本不干涉이오 渡日後亦無渠弟之囑이거늘 稱以弟事하고 有此舉訴하 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被告 訴答은 其理由가 有은 事

光武十一年 一月 二十五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尹邦鉉

主事 申正植

물에 잠긴 보리 및 보리종자
소송에 관한 건

096



1907년 2월 1일 진위-수원

역문

제56호

원고 진위군振威郡 고두면古頭面 고포橋浦 거주 예덕민芮德敏

피고 수원군水原郡 수북면水北面 삼동三洞 거주 송경문宋敬文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물에 잠긴 보리[牟麥]의 소출을 이치상 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 해당 보리밭[麥田]의 종자만 원고 및 이공선李公先에게 반씩 나누어 찾아 가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저의 논 30두락斗落이 수원군水原郡 이서면二西面에 있으며, 위로는 물을 저장한 보漲가 있고, 아래로는 일본인의 담토畓土가 있습니다. 봄갈이를 편하게 하고자 하여 작년 12월에 보를 터서 저의 논에 물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인 마름[畝耨] 이공선李公先이 계속 제 논두렁을 터서 그 물을 일본인의 논에 끌어 대는 바람에 피고 송경문宋敬文 등이 일본인의 담평畓坪에 보리를 파종한 것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 보리[牟麥]의 손해를 저에게 물리고자 하여 피고가 일본인을 부추겨서 날마다 위협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을 이길 수 없어 수원군과 평

택군平澤郡에 여러 차례 정소로訴하여 이미 심사審査가 있었으나,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한결같이 완고하게 보리(牟=糶) 5석石과 2,000냥兩의 돈을 강제로 물리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원고가 논에 물을 댄 것이 아래 논까지 새어 나와 여러 사람의 보리가 모두 물에 잠겨서 농사가 실패함에 이르렀 습니다. 비록 원고가 고의로 범한 것은 아니나 그 소출의 손해를 마땅히 원고에게 물리게 해야 합니다. 이공선이 물을 댄 것은 보리가 모두 잠긴 이후에 있었으므로 실로 책임지우고 물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피고의 진술과 평택군·수원군의 판결을 서로 비교해 살펴보니 원 고인 예덕민芮德敏이 봄갈이를 위해 그의 논에 관개灌漑하는 것은 바로 농 민이 근면하게 힘쓰는 것이다. 뜻하지 않게 물이 새서 보리밭(牟田)이 잠겼 던 것이니 보리의 소출을 실로 책임지우고 물리게 하는 것은 어렵다. 이 공선은 비록 고의로 물을 텄다고 하나 그 일은 모두 침수된 이후에 있었던 것이니 또한 강제로 책임지게 하는 것도 어렵다. 송경문 등에 대해 말하자 면 많은 사람들이 그 보리농사를 실패한 것에 장각지힘(牆角之嫌)이 없지 않 지만 소출을 책임지우며 물리게 하는 것을 의논擬論할 수 없으며, 해당 종 자 보리 5석은 예덕민과 이선공이 반으로 나누어 물어 주는 것이 타당하 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2월 1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참서관 김한묵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第五十六號

* 장각지힘(牆角之嫌) : 한유(韓愈)의 '단경가(短檠歌)'에 '그대 담장 귀퉁이에 짧은 등잔대 버려져 있음을 보리라.(牆角君看短檠)'란 구절에서 온 말로, 이 구절은 성공한 후에 어렵게 힘썼던 시절을 잊어버림을 노래한 것이다.

原告 振威郡 古頭面 槁浦 居 芮德敏

被告 水原郡 水北面 三洞 居 宋敬文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對하여 被告는 水沈한 牟麥所出을 理不可責徵이니 該麥田種 子은 原告及李公先處에 分半推去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矣畚三十斗落이 在於水原二西面 而上有儲水之淤고 下 有日人之畚土이온대 爲其春耕之便利하여 昨年臘月에 決淤灌水於矣畚이 을더니 日人舍音李公先이 繼決矣畚之畔고 引灌其水於日人畚하여 被告 宋敬文等之 播麥於日人畚坪者 盡被沈沒이온대 其牟麥之損害을 欲徵於原 告하여 被告가 嗾囑日人하여 日事威脅이옵기 不勝冤抑하여 水原平澤兩郡 에 屢次呈訴하여 已經審査이오되 未蒙從公處辦 而被告가 一直施頑하여 牟五石及錢三千兩을 欲爲勒徵이라하며 此에 對하여 被告의 陳供은 原告 畚之灌水가 流泄於下畚하여 衆人之牟麥이 全被水沈하여 以至失農하니 雖 非原告之故犯이나 其所出損害을 宜徵於原告이오며 李公先之灌水는 在於 牟麥盡沈之後 則實無責徵之理라하마 原被兩隻之供과 平水兩郡之決을 參 互함이 芮德敏이 爲其春耕하여 灌漑渠畚은 是乃農民之勤務요 不意於泄水 而沈牟田인즉 牟之所出을 實難責徵이며 李公先則雖曰故意決水나 事在盡 沈之後하니 亦難強責이되 宋敬文等으로 言之하면 衆民之失其麥農이 不 無牆角之嫌이나 責徵所出은 不可擬論 而該種子牟五石은 芮李兩民이 分 半徵給함이 妥當이기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二月 一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參書官 金漢睦

主事 李在弘



솔가지값[松枝價]에 관한 건

1907년 2월 5일 수원-한성

역문

{광11민34호}

제13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조홍재趙鴻載

동서東署 이현梨峴 거주 평민平民

피고 유순명劉順明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솔가지값[松枝價]의 잔액 662냥兩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04년 4월경에 배 한 척 분량의 솔가지를 당오전[當錢] 839냥으로 값을 매겨 가져갔다. 그리고 해당 값 가운데 177냥은 이미 갚아 주었으나, 나머지 662냥은 3년이나 미루며 갚지 않아 이렇게 소송을 당하게 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7년 2월 5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윤방현尹邦鉉

판사 이용상李容相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정섭조鄭燮朝

원문

{光十一民三四號}

第十三號

判決書

京畿 水原郡 居 農民
原告 趙鴻載

東署 梨峴 居 平民

被告 劉順明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하야 松枝價 零條 六百六十二兩을 辦償함이 可하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는 甲辰四月分에 松枝一船을 結價當錢八百三十九兩以去 而該價中一百七十七兩은 已爲報 給하고 其餘六百六十二兩을 拖至三年不報하야 致此被訴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하事

光武十一年 二月 五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尹邦鉉
判事 李容相
判事 李源國
主事 鄭變朝



1907년 2월 6일 남양-한성

역문

{광11민12호}

제12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김정희金廷熙

남서南署 죽동竹洞 거류 일진회원一進會員

피고 박규철朴奎喆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쌀값의 잔금 엽전 합계[葉計] 287냥兩 5전錢을 즉시 모두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子]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년本年 음력 윤4월에 원고 소유의 쌀 50두斗, 즉 엽전 합계 487냥 5전어치를 외상으로 사갈 때 증서[票證]를 써 주었다. 그런데 해당 돈 가운데 200냥만 겨우 갚고 잔금 287냥 5전을 미루고 갚지 않아 분란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7년 2월 6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윤방현尹邦鉉

판사 이용상李容相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노중식盧中植

由가 有 訶 事

光武十一年 二月 六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尹邦鉉

判事 李容相

判事 李源國

主事 盧中植

원문

{光十一民一二號}

第十二號

判決書

京畿 南陽郡 居 農民

原告 金廷熙

南署 竹洞 留 一進會員

被告 朴奎喆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米價 零條 葉計貳佰捌拾柒兩五錢을 卽爲畢報
함이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는 本年陰閏四月分
에 原告所有米五十斗 葉計四百八十七兩五錢價値를 外上貿去時에 成給票
證호야는디 該錢中二百兩만 纔報호고 零條 二百八十七兩五錢을 推諉不報
호야 以至紛拏케 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호니 因호야 原告 訴求는 其理





1907년 3월 14일 남양-한성

역문

{광11민58호}

제45호

판결서

경기京畿 남양군南陽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洪鍾寬 洪鍾寬

남서南署 후동后洞 거주 평민平民

피고 이경수李景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1898년경에 피고의 형 이희준李熙準과 은장銀匠을 동업하려고 자기 소유의 당오전 합계[當計] 10,000냥兩을 이희준에게 빌려줄 때, 피고는 애초 자기 형이 빚을 요청한 것을 몰랐고 책임지고 맡겠다고 또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희준이 달아나 숨은 뒤에, 원고가 형제간의 일이라고 하면서 피고를 무리하게 거소擧訴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의 변론[訴訟]은 이유가 있다.

1907년 3월 14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판관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윤방현尹邦鉉

판사 이용상李容相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노중식盧中植

원문

{光十一民五八號}

第四十五號

判決書

京畿 南陽郡 居 農民

原告 洪鍾寬

南署 后洞 居 平民

被告 李景秀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가 戊戌年分에 被告兄李熙準으로 銀匠同商次로 渠之所有當計一萬兩을 給債於熙準時에 被告則初不知渠兄之請債오 亦無擔着之事이거늘 熙準隱避之後에 被告를 稱

以兄弟間事라하야 原告之無理舉訴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被告 訴答은 其理由가 有흔 事

光武十一年 三月 十四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尹邦鉉

判事 李容相

判事 李源國

主事 盧中植



1907년 3월 18일 수원-한성

역문

{광11민74호}

제60호

판결서

서서西署 냉동冷洞 거주 고용雇傭
원고 진병선陳秉善

서서西署 현석리玄石里 거주

원고 장용식張龍植 (4월 16일 추가 기입)

서서西署 냉동冷洞 거주 상민商民

원고 박성도朴性道

원고 한복만韓福萬 (4월 16일 추가 기입)

서서西署 상동尙洞 거주 평민平民

원고 조재신趙載信

서서西署 당피동唐皮洞 거주

원고 김응현金應鉉 (3월 19일 추가 기입)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원고 오조이[吳召史] (4월 3일 추가 기입)

중서中署 전동磚洞 거주 평민平民
피고 박인혁朴仁赫

서서西署 상동尙洞 거주
피고 이정식李正植 (5월 16일 추가 기입)

남서南署 장동長洞 거주
피고 한정석韓廷錫 (5월 16일 추가 기입)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하여, 담당한 원고들의 가권家券을 자의로 전당잡혀 사용한 것을 낱낱이 되찾아 본 재판소에 바쳐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은 대질[質卡]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한광석韓匡錫이 전당잡았다가 파산[擧販]할 때 강석호姜錫鎬에게 임치任置했던 원고들의 가권家券을, 한광석이 도피한 것을 엿보고 강석호가 없는 틈을 타서 가권의 주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곳에 전당잡혔다. 따라서 해당 여러 가권을 본 재판소에 찾아서 제출하고, 한광석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빚을 청산하고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오히려 책임을 미루려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7년 3월 18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윤방현尹邦鉉
판사 이용상李容相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정섭조鄭燮朝

원문

{光十一民七十四號}
第六十號
判決書

西署 冷洞 居 雇傭
原告 陳秉善
西署 玄石里 居
張龍植 (四月 十六日 追入)

西署 冷洞 居 商民
原告 朴性道
韓福萬 (四月 十六日 追入)

西署 尙洞 居 平民
原告 趙載信

西署 唐皮洞 居
金應鉉 (三月 十九日 追入)

京畿 水原郡 居
原告 吳召史 (四月 三日 追入)



中署 磚洞 居 平民
被告 朴仁赫

西署 尙洞 居
李正植

南署 長洞 居
韓廷錫 (五月 十六日 追入)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等 訴求에 應하야 擔當하 原告等家券으로 自意典用하 者를 一一 還推하야 納置本所함이 可하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等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는 韓匡錫이가 典執하얏다가 舉販時 姜錫鎬에게 任置하얏든 原告等家券을 歐韓逃避하고 乘姜不在하야 不由券主하고 任意轉典하얏스즉 該諸券은 本所에 覓納하고 待韓現出하야 勸債還主케함이 可하거늘 被告가 猶欲推諉함은 正當이라고 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原告等 訴求는 其理由가 有하 事

光武十一年 三月 十八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尹邦鉉
判事 李容相
判事 李源國
主事 鄭燮朝



1907년 3월 26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62호

원고 수원水原 남부면南部面 거주 홍태숙洪泰淑

피고 수원水原 남부면南部面 거주 최재호崔在浩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가 금장禁葬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파서 옮겨진 원고*의 조모祖母 무덤을 다시 입장入葬함이 옳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산군山券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조부祖父와 조모祖母의 무덤이 수원군水原郡 남부면南部面 우만리牛滿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룡單龍에서 35보步 떨어진 땅에 원고가 작년 12월에 그의 조모祖母를 입장하였습다. 원고가 교인敎人인으로 서양의 신부信夫와 여러 사람을 데려 왔으므로 저의 보잘것없는 힘으로는 금장禁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비록 관宦에

* 원문에는 '피고'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 '원고'이어야 하므로 이렇게 바꾸어 해석하였다.

알렸더라도 원고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승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무릅쓰고 사굴私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은 제 산이 맞고 매득買得한 문권文券도 분명이 있으며 또한 제가는 가옥도 근처입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所供)은 “해당 산판山坂에 7대조 이하부터 계속하여 입장한 것이 100여 년이 됩니다. 전에 최재호崔在浩로 묘지기를 정하고, 그에게 금양禁養하도록 시켰습니다. 묘지기의 간청으로 인하여 조금 먼 곳으로 한 곳의 밧자리를 허급許給하였더니 그 후에 피고가 한 차례 이어서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꽤 씩하고 영큼한 마음을 가지고 서울에 사는 유俞 승지承旨 집안에 청탁하여 처음에는 치표置標**하더니 곧 재작년 10월에 유 승지 집안에서 과장過葬***을 위해 관을 옮겨 왔습니다. 이에 제가 금장하고 정소呈訴하기에 이르렀으니, 관에서 도형圖形하고 마을에 탐문하며 조사한 결과 저의 산국山局이 이로부터 분명해져서 유 승지가 입장할 수 없게 되었음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작년 12월에 제 조모의 무덤을 입장하였는데 피고가 무슨 흥계로 지금 갑자기 사굴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산판이 확실한 것은 전후 관의 문적文蹟에 분명하며, 서양 신부와 교인이 모여 입장한 것은 돈독한 정을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위세를 빌려 입장할 이치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공정한 판결만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수원군의 도형과 양쪽의 산권을 열람하여 살펴보니, 해당 산국이 원고의 여러 세대가 입장한 땅이며, 또한 관의 인장이 찍힌 문적으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하나 둘에 그치지 않았다. 피고는 이미 그의 조부와 조모를 입장했으나 과 옮겨진 원고의 무덤으로부터 피고의 조부 무덤까지 74보가 되고, 조모의 무덤까지는 54보가 되니 (법으로 정한) 제한界限을 벗어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피고가 매득한 문권에 그 연도를 계산해 보

** 치표(置標) : 미리 밧자리나 이장할 곳을 선택하여 무덤 모양으로 만들 때, 밧자리를 표시하거나 밧구덩이 속에 표적을 묻어 두는 일 또는 그 표적을 의미한다.
 *** 과장(過葬) : ① 일정(一定)한 기일(期日)이 지난 뒤에 장사(葬事)를 지내는 일 또는 그 장사를 의미한다. 계급(階級) 신분(身分)에 따라 각각 달리 정해져 있다. ② 경제적인 이유로 일정한 기일을 넘겨 지내는 장례이다.

니 지금까지 140년이 되었으나 종이가 변색되지 않았으니 처음부터 오래된 모양이 없었다. 산을 방해한 남南 생원生員은 오랫동안 알지 못하며 그 후손도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매득한 최기필崔起弼은 피고와 어느 정도의 친숙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한다고 하니, 피고가 어찌 자신의 산이라고 말할 있는 것인가? 또한 재작년 유 승지가 입장할 때에 원고가 금장하는 소장이 분명히 있으니 이것은 원고의 산 경계가 매우 명확하다. 가옥에서 가깝다는 것으로 말하더라도 가옥의 대지地地가 또한 원고 산의 경계이고, 이는 곧 우뚝하게 외따로 선 집이다. 그런데 집을 짓는 날에 원고가 또한 금지하지 않았으니, 즉 다른 사람의 집과는 거리를 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원고의 조모 무덤을 다시 입장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3월 26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서서리 김한묵金漢陸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第六十二號

原告 水原 南部面 居 洪泰瑒

被告 同郡 同面 居 崔在浩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禁葬을 理由가 無호니 被掘호 被告의 祖母塚은 還葬호미 可호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山券에 照호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



1907년 4월 3일 수원-수원

供은 矣祖父與母塚이 在於水原郡南部面牛滿里 而單龍三十五步之地에 原告가 昨年十二月에 入葬其祖母塚이온바 原告가 以教人으로 西洋信夫와 衆人을 率來호은즉 以被告之殘弱으로 莫可禁葬이요 雖爲告官이라도 原告가 有勸力之人이라 想未必得訟也 故로 冒法私掘이오나 山是被告之山 而買得文券이 自在호고 且於被告所居家屋에 亦爲逼近이라호며 原告所供은 該山坂이 自七代祖以下로 繼葬以來者 爲百餘年 而前者에 以崔民으로 定墓直 使之禁草矣러니 因墓直之所懇호야 稍遠處一曠地를 有所許給이 올더니 其後에 被告가 有一繼葬이온되 至今以不測之心 請囑於京居俞承 旨家호야 初有置標러니 乃於再昨年十月에 自俞承旨家로 過葬次 運柩以 來이옴기 原告禁葬호야 以至呈訴 則自官圖形호고 查探洞中 則原告山局 이 自爾分明호야 俞承旨勢不得入葬은 衆所共知이온바 昨臘에 入葬矣祖 母塚이온되 被告가 以何凶計로 今忽私掘이온지 原告山坂之的確은 前後 官文蹟이 昭然이오며 西洋信夫與教人之會葬은 爲敦睦之誼也라 有何借威 入葬之理리오 惟俟公決이라호니 該郡圖形과 兩隻山券을 考閱호은즉 該山 局에 以原告屢代入葬之地로 亦有官印蹟之可據者 非止一二이더 被告則已 葬其祖其母나 自原告塚被掘處로 被告祖塚이 爲七十四步요 至母塚이 爲 五十四步호야 係是界限外뿐더러 所謂被告之買有文券에 計其年條 則今爲 一百四十餘年인되 紙色이 不渝호야 初無年久之樣호며 賣山之南生員은 年 久不知 而亦無其後라호며 買得之崔起弼은 於渠에 不知爲何許親屬이라호 니 被告가 豈可曰渠山이며 且於再昨年俞承旨之入葬也에 原告之禁葬訴狀 이 自在호니 此爲原告之山界가 十分明確이고 以家屋逼近으로 言之라도 家屋垜地가 亦原告之山界 而是乃凡然孤屋인되 建築之日에 原告가 亦未 禁止 則與他人家론 慾有間焉이니 原告之祖母塚을 還葬호기 妥當호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三月 廿六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역문

판결서 제66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공향면貢鄉面 거주 홍치덕洪致德

피고 수원군水原郡 공향면貢鄉面 거주 최형균崔衡均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종답宗畜 4두락斗落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종답宗畜을 잃어버렸다고 칭하고 저의 조카 홍종민洪宗敏이 경작하는 분자답紛字畜 4두락斗落을 강제로 빼앗고자 경무서警務署에 거소舉訴하여 홍종민이 잡혀간 지가 지금까지 10일이 되며, 그동안에 들어간 부비浮費가 매우 많았습니다. 해당 논은 저의 형이 살아 있을 때에 매득買得하여 갈아먹던 곳이며, 문권文券도 분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어떤 무슨 근거로 이렇게 거소하여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을 잡아 가두는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述은 “원고의 증조曾祖인 홍홍대洪弘大는 바로 저의 선산을 지키는 묘지기墓直입니다. 조금의 종답을 묘지기에게 주어

같이먹게 하였는데, 공향면貢鄕面에 소재한 분자6번 논 8부負 6속束 2두락과 분자15번 논 4부 6속 2두락을 홍홍대에게 매득하였고, 또한 종답을 홍홍대에게 주어서 같이먹게 하였습니다. 1854년에 박춘서朴春西로 묘지기를 바꿔 임명하였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홍홍대가 해당 논 4두락을 간사함을 부러 은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잃어버렸는데, 제가 본래 남곡면南谷面에 살다가 1897년에 공향면으로 이사한 후 나중에 탐문하여 알아보니 해당 논 4두락을 홍종민이 은닉하며 같이먹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렇게 거소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며 살펴보니 피고가 이 논을 잃어버린 것이 1854년에 묘지기를 바꿀 때의 일이니 지금까지 54년이 되어 소송기한이 지났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증조 홍홍대에게 매득하였다고 하였으나 원고에게 오래된 호적을 제출하게 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름이 곧 ‘홍섭弘燮’으로, 피고의 문권에 기록된 ‘홍대弘大’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수원군水原郡의 양안量案을 열람하여 상고해 보니 분자15번 논은 결부[結卜]수가 4부 2속이 되는데 피고 문권에는 4부 6속이라고 쓰여 있는 것도 서로 어긋나며, 원고가 경작했던 분자답이 다만 15두락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는 애초 ‘15번 논’이 없으니, 가히 티끌만큼도 믿을 것이 없다고 하겠다. 분자 6번 논으로 말한다면 원고가 매득한 것이 불과 10년 전인데 방매자 김학선金學先과 매매할 때에 증인으로 선 유영실劉英實이 나와 대령하여 명백하게 해명하였으므로 확실한 근거가 될 만하다. 그러나 피고가 억울함을 호소하기를 일삼아 그치지 않으니 해당 면장에게 분자답의 크기를 모두 측량하게 하였다. 그리하였더니 15번 논은 곧 정한조鄭韓朝가 전래하여 같이먹던 곳임을 많은 사람들이 공히 아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피고의 잃은 것을 찾고자 한다는 주장은 그 증거가 하나도 없어 패소로 귀결되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4월 3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묵金漢謨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第六十六號

原告 水原郡 貢鄕面 居 洪致德

被告 同郡 同面 居 崔衡均

判決要旨

原告 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宗畚四斗落을 推覓호 理由가 無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被告가 稱以宗畚見失호고 矣 係宗敏의 所耕紛字畚四斗落을 欲爲勒奪 而舉訴警務署호야 宗敏之被囚가 今爲十餘日 卽這間浮費가 數甚夥多이온되 該畚을 矣兄生時에 買得耕食호야 文券이 自在어늘 被告가 有何可據인지 有此舉訴호야 捉囚無告之恨이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原告之曾祖洪弘大는 卽矣身先山墓直也라 如干宗畚을 付之墓直호야 使之耕食이온바 本面所在紛字六畚 八負六束 二斗落과 同字十五畚 四負六束 二斗落을 買得於洪弘大許 而亦以宗畚으로 仍給洪弘大而耕食이온더니 乃於甲寅年에 以朴春西로 改差墓直이온되 於焉之際에 洪弘大該畚四斗落을 容奸隱匿也 故로 以至見失 而被告本居南谷面이온다가 丁酉年에 搬移于本面호야 從後探知 則該畚四斗落을 洪宗敏이 隱匿耕食이온기 有此舉訴라호며 參互兩隻之供호니 被告之見失此畚이 在於甲寅年 墓直改差之時 則今爲五十四年이니 訟限이 已過뿐더러 被告가 買得於原告曾祖弘大處라호나 原告의 年久戶籍을 現納詳考호는즉 其名이 乃弘燮也라 被告文券에 書以弘大가 自有相左이고 考閱本郡量案 則紛字十五畚結卜이 爲四負二束인되 被告文券에 書以四負六束이 亦爲相左이며 原告所耕紛字畚이 只存十五斗落인되 其中의 初無十五畚호니 可謂毛無依焉이며 以紛字六畚으로 言之 則原告之買得이 不過十餘年 而放賣者金學先과 賣

買時 立證之劉英實이 來待下明하야 確有可據이되 被告之呼冤이 惟有不
已이기 使該面長으로 紛字番坪을 并爲逐塵尺量 則十五畝은 卽鄭韓朝之
傳來耕食이 衆所共知인즉 被告之托以見失欲推가 一無其證하야 自歸落科
이기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四月 三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陸

主事 李在弘



역문

판결서 제69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매곡면梅谷面 거주 우창수禹昌水

피고 수원군水原郡 송동면松洞面 거주 최백룡崔白龍 대인인代言人 최윤환
崔允煥

판결요지

피고의 변론(訴答)에 응하여, 원고는 소송(訟下)할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저의 선산이 피고의 산판(山坂)과 비록 서로 접하고 있으나 각각의 경계로 분명한데, 40여 년 전에 피고가 그 조부모의 두 무덤을 저의 8대조 무덤 뇌후(腦後) 100여 보步 되는 땅에 투장(偷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쪽은 강하고 제가 약하여 금장(禁葬)할 수 없었습니다. 산국(山局)의 송추(松楸)를 또 빼앗아 간 것이 절반이 이르렀으므로 원통하고 억울함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수원군(水原郡)에 정소(呈訴)하였다니 수원군에서 저를 패소시켰고, 피고가 감히 끝없는 욕심을 부려 전체 산국의 송추를 지금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해당 산판은 여러 세대 동안 계속해서 입장(入葬)했던 땅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나이가 어려 비록 목격하지 않았더라도 전해 오는 말에 이른바 원고가 8대조 무덤이라고 말한 것은 근래에는 이미 옛날에 비교하면 거의 아이 무덤과 같았다고 하며 암장(暗葬)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원고의 조부가 자신의 산국(山國)이라고 칭하고 거소(擧訴)하여 저의 조부와 관정(官庭)에서 대질(質下)하여 원고 조부가 패소하였고, 도형(圖形) 뒷면의 제사(題辭)가 아직도 이렇게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조부와 조부의 형이 그 사이에 저의 산국 안에서 함부로 벌목하였으므로, 소나무값을 물리고자 하였더니 애걸하며 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살펴보다도 원고가 어찌하여 자신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로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이 모두 모순되나 우창수(禹昌水)는 증빙할 만한 문권(文券)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1867년에 최백룡(崔白龍)과 소송(訟下)하여 패소한 관의 제사가 분명하다. 또한 다시 함부로 벌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의 조부와 조부의 형이 증서를 작성한 것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도, 지금 갑자기 선산(仙山) 국내(局內)라고 말하는 것은 실로 이치에 맞지 않은 소송이므로 패소시키고 이에 판결한다.

1907년 4월 15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判事) 김한목(金漢睦)

주사(主事)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第六十九號

原告 水原郡 梅谷面 居 禹昌水

被告 同郡 松洞面 居 崔白龍 代言人 崔允煥

判決要旨

被告訴答에 應하야 原告는 訟下할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矣身先山이 與被告山坂으로 雖爲相接이나 各分兩界이온 되 已於四十餘年前에 被告가 偷葬其祖父母兩塚於矣八代祖塚腦後百餘步之地이오되 被強我弱하야 不得禁葬이옵더니 山局松楸을 亦爲見奪이 以至折半이옵기 不勝冤抑하야 向有呈訴於本郡矣러니 自郡으로 置矣身於落科則 被告가 敢生無厭之慾하야 全局松楸을 今爲全奪이라하며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該山坂이 屢代先山繼葬之地로 衆所共知이온바 矣身則 現今年淺에 雖未目擊之事이오나 聞傳來之言則 所謂原告之八代祖塚云者 近已於昔年에 殆若兒塚 而有暗葬焉이옵더니 及其幾年之後에 原告之祖父 稱以渠之山局하고 至於擧訴하야 與被告之祖父로 質下於官庭하야 原告 祖父가 以至落科 而圖形背題가 尙此昭在이오며 且原告之祖與兄이 間有 犯斫於矣山局內 故로 欲徵松價則 至有哀乞成標이오니 以此觀之라도 原告가 豈可曰渠山乎잇가 實爲無據라하야 兩隻之供이 俱爲矛盾이나 禹則 一無可憑文券뿐더러 其祖然默이 於丁卯에 與崔訟下하야 以至落科는 官題가 分明이고 且以更勿犯斫으로 其祖其兄之成標가 自在어늘 今忽先山局云者 實是無理之訴이기 置之落科하고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四月 十五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4월 19일 수원-수원

역문

[광11민401호]

판결서 제71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문시면文市面 거주 나수경羅秀景

피고 수원군水原郡 문시면文市面 거주 홍여정洪汝正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암장暗葬한 그 부친 무덤을 굴이堀移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과 증거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은 “저의 6촌 홍여공洪汝公이 해당 산록과 전답을 과연 이미 방매하였으나, 산록은 땃밭[柴畝]의 별채[제]를 3년으로 약속을 정하였고 뒷자리는 영원히 방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증조부 무덤과 백부의 무덤이 모두 해당 산판山坂*에 있어 지금 70여 년을 수호하였는데, 올해 2월 초에 증조부 무덤 50보步의 땅에 저의 부친을 입장하였더니 원고

* 산판(山坂) : 멧갓이라고도 부르며 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산이다.

가 그의 산에 투장偷葬했다고 칭하고 갑자기 땅을 굴해掘塚**하였으며 산록을 영매永買한 것처럼 문권을 위조하여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짓거리를 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所]은 “지난 1877년에 논 5승락升落과 밭 2작작 및 해당 산록을 38냥兩의 값을 주고 홍여공에게 매득買得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하여 문권을 작성할 때에 필집이었던 홍경조洪景祚는 바로 피고의 9촌이니 매매 여부를 한번 조사해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권은 이미 1905년에 화재火賊 수십 명이 저의 마을에 갑자기 들어와 모든 집의 세간살이[什物]를 모두 약탈해 갈 때에 결국 잃어버려서 뒤늦게 베껴서 고친 것이 실로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홍성문洪性文은 피고와 11촌이 됩니다. 1905년에 이 산에 피고의 모친을 투장하였으므로 그때 관에 정소呈訴하고 대질[質]하여 그 무덤을 굴이堀移하였고, 소송문서[訟]도 분명히 남아 있으니, 이것이 어찌 제가 영매永買하여 소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매했던 홍여공이 지금 이미 죽었으니 피고가 감히 이치에 맞지 않은 계략을 내어서 이렇게 투장하고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로는 결정하기가 어렵기에 홍경조를 불러와서 조사하고 물어 보니 해당 산록과 전답의 매매에서 과연 필집이었고 시장柴場 1곳으로 영영 방매하여 글로 써서 문서를 만들었다고 명확하게 고해 바쳤다. 그러하니 잃어버린 문서를 나중에 고친 것은 비록 온당하지 않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반드시 깊이 따질 필요가 없다. 또한 원고와 홍성문이 일찍이 소송[訟]하였는데 85보의 땅에서 굴이한 공적公跡이 분명하니 이것은 오늘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가 만약 산주라고 한다면 매매한 30년 사이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암장하고 증거가 될 만한 단서 하나도 없이 두루 자신의 산이라고 칭하는 것은 실로 이치가 아니기에 암장한 것을 즉시 굴이하도록 해야하므로 이에 판결한다.

** 굴해(掘塚) : 무덤의 돌레를 돌아가며 고투를 깊게 파는 것이다. 몰래 매장(埋葬)한 무덤의 주인에게 파가기를 재촉하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

1907년 4월 19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관사서리 김한묵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光十一民四〇一號}

判決書 第七十一號

原告 水原郡 文市面 居 羅秀景 年

被告 同郡 同里 居 洪汝正 年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暗葬호 其父塚을 掘移호미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卜가 證據에 照호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矣六寸汝公이 該山麓與田畚을 果已放賣이오나 山麓則 只以柴草刈取로 三年定約이요 非山地永賣也라 矣曾祖塚與伯父塚이 俱在該山坂호야 今爲七十餘年守護 而本年二月初에 入葬矣父於曾祖塚五十七步之地이옵더니 原告가 稱以渠山偷葬호고 忽地掘塚이온디 以永買山麓樣으로 爲造文券호야 行此非理之舉라호며 原告所供은 去丁丑年에 畚五升落田二作及 該山麓을 給價三十八兩호고 買得於洪汝公處는 非徒衆所共知라 買賣成券之時에 執筆洪景祚는 卽被告之九寸이니 買賣如何을 一查可辦 而該券則 已於乙巳年에 火賊數十名이 突入於矣洞호야 諸家汴物을 并爲搶奪之際에 果爲見失호야 從後摹繕者則 實非僞券이오며 且洪性文은 與被告로 爲

十一寸也라 乙巳年에 偷葬其母於此山 故로 其時呈官質卜호야 掘移其塚 而訴軸이 自在호니 此豈非矣身之永買所有乎잇가 放賣之汝公이 今旣身死則 被告가 敢生非理之計호야 有此偷葬而爭訟이라호바 兩隻之所供은 難以歸決이거 招致洪景祚而查問則 該山麓與田畚買賣에 果爲筆執 而以柴場一處 永永放賣로 措辭成券이다 的確納告호니 失券追繕은 雖非穩當이나 有此確證호니 不必深究요 且原告與洪性文으로 業有訟卜호야 八十五步之地 掘移호 公蹟이 分明호니 此爲今日之可據라 被告가 若曰山主면 買賣三十餘年之間에 胡無一言타가 今忽暗葬호고 無一可證之端 而泛稱我山이라호미 實非係理이거 暗葬을 使卽掘移가 可호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四月 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4월 19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71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문시면文市面 거주 나수경羅秀景

피고 수원군水原郡 문시면文市面 홍여정洪汝正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암장暗葬한 그 부친 무덤을 굴이掘移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과 증거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은 “저의 6촌 홍여공洪汝公이 해당 산록과 전답을 과연 이미 방매하였으나, 산록은 땃감[柴藪]의 벌채[刈取]를 3년으로 약속을 정하였고 밭자리는 영원히 방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증조부 무덤과 백부의 무덤이 모두 해당 산판山坂에 있어 지금 70여 년 수호하였는데, 올해 2월 초에 증조부 무덤 50보步의 땅에 저의 부친을 입장하였더니 원고가 그의 산에 투장偷葬했다고 칭하고 갑자기 땅을 굴해掘壞하였으며 산록을 영매永買한 것처럼 문권을 위조하여 이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짓거리를 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所供]은 “지난 1877년에 논 5승락升落과 밭 2작作 및 해당 산록을 38냥兩의 값을 주고 홍여공에게 매득買得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하여 문권을 작성할 때에 필집이었던 홍경조洪景祚는 바로 피고의 9촌이니 매매 여부를 한 번 조사해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권은 이미 1905년에 화적火賊 수십 명이 저의 마을에 갑자기 들어와 모든 집의 세간살이[什物]를 모두 약탈해 갈 때에 결국 잃어버려서 뒤늦게 베껴서 고친 것이지 실로 위조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홍성문洪性文은 피고와 11촌이 됩니다. 1905년에 이 산에 피고의 모친을 투장하였으므로 그때 관에 정소呈訴하고 대질[質]하여 그 무덤을 굴이掘移하였고, 소송문서[訟軸]도 분명히 남아 있으니, 이것이 어찌 제가 영매永買하여 소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방매했던 홍여공이 지금 이미 죽었으니 피고가 감히 이치에 맞지 않은 계락을 내어서 이렇게 투장하고서 소송으로 다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所供]로는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홍경조를 불러다가 조사해 보니, (홍경조가) 해당 산록과 전답의 매매에서 과연 필집이었고, 시장柴場 한 곳으로 영영 방매하여 글로 써서 문서를 만들었다고 명확하게 고해 바쳤다. 그러하니 잃어버린 문서를 나중에 고친 것은 비록 온당穩當하지 않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반드시 깊이 따질 필요가 없다. 또한 원고와 홍성문이 일찍이 변론[訟]하였는데 85보의 땅에서 굴이한 공적公跡이 분명하니 이는 오늘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피고가 만약 산의 주인이라고 말한다면 매매한 30년 사이에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암장하고서 증거가 될 만한 단서 한 가지도 없이 자신의 산이라고 믿는 것은 실로 이치에 맞지 않기에 암장한 무덤을 즉시 굴이하도록 해야 하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4월 19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목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第七十一號

原告 水原郡 文市面 居 羅秀景 年

被告 同郡 同面 洪汝正 年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暗葬호 其父塚을 掘移호미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卜과 證據에 照호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矣六寸汝公이 該山麓與田畚을 果已放賣이오나 山麓則 只以柴草刈取로 三年定約이요 非山地永賣也라 矣曾祖塚與伯父塚이 俱在該山坂호야 今爲七十餘年守護 而本年二月初에 入葬矣父於曾祖塚五十七步之地이옵더니 原告가 稱以渠山偷葬호고 忽地掘塚이온디 以永買山麓樣으로 僞造文券호야 行此非理之舉라호며 原告所供은 去丁丑年에 畚五升落田二作及 該山麓을 給價三十八兩호고 買得於洪汝公處는 非徒衆所共知라 買賣成券之時에 執筆洪景祚는 卽被告之九寸이니 買賣如何을 一查可辦 而該券則 已於乙巳年에 火賊數十名이 突入於矣洞호야 諸家汁物을 并爲搶奪之際에 果爲見失호야 從後摹繕者 則實非僞券이오며 且洪性文은 與被告로 爲十一寸也라 乙巳年에 偷葬其母於此山 故로 其時呈官質卜호야 掘移其塚 而訴軸이 自在호니 此豈非矣身之永買所有乎잇가 放賣之洪汝公이 今旣身死則 被告가 敢生非理之計호야 有此偷葬而爭訟이라호니 兩隻之所供은 難以歸決이거 招致洪景祚而查問 則該山麓與田畚買賣에 果如筆執 而以柴場一處 永永放賣로 措辭成券이다 的確納告호니 失券追繕은 雖非穩當이나 有此確證호니 不必深究요 且原告與洪性文으로 果有訟卜호야 八十五步之地掘移호 公蹟이 分明호니 此爲今日之可據라 被告가 若曰 山主면 買

賣三十餘年之間에 胡無一言다가 今忽暗葬호고 無一可證之端 而信稱我山이라호미 實係非理이거 暗葬塚을 使卽掘移가 可호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四月 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전답 소송[田畚訟]에 관한 건

1907년 5월 9일 수원-한성

역문

{광11민213호}

제134호

판결서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유진국兪鎭國

서서西署 만리현萬里峴 거주 미상米商

피고 한치선韓致先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供)은, “1883년경에 피고가 제 아버지에게 전답(田畚)과 가옥(家舍)을 권매(權買)하고 갔으며, 작인(作人)은 그대로 맡겨서 ‘몇 백 년 뒤라도 소작인을 바꾸면 원금(本錢)대로 물어주겠다.’는 뜻으로 피고가 증서(票)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후 1894년에 작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에 여러

차례 해당 증서를 가져가 따졌으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공정하게 판결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말하는 수표(手票)는 따질만한 증거가 없으며, 증서로써 보더라도 해당 땅은 영매(永買)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권매(權買)라 하는 것도 과장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며, ‘몇 백 년이 지나도 작인을 바꾸지 않고 만약 작인을 바꾸면 해당 논을 원가(本價)대로 물어주기로 했다.’는 것도 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으로써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어찌 작인의 굴레를 메는 이치가 있겠는가. 원고가 태어나기 전에 일로 지금 조부와 아버지가 죽은 틈을 엿보고 역지를 부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변론(辯論)은 이유가 있다.

1907년 5월 9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태명식太明軾

판사 윤방현尹邦鉉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윤교흥尹教興

원문

{光十一民二一三號}

第一百三十四號

判決書

京畿 水原郡 居 農民

原告 兪鎭國

西署 萬里峴 居 米商

被告 韓致先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 所供은 癸未年分
에 被告가 渠父에게 田畝家舍를 權買以去하고 作人을 仍任하야 幾百年後
라도 作人을 移差하면 以本錢還退之意로 被告가 書票以給이어늘 其後甲
午年에 作人을 移他하얏고 屢以該票往質이되 稱以不知하니 惟願公決이
라하나 被告의 手票云云은 無證可下이오 以票見之라도 該堡가 永賣어늘
原告가 權賣라함도 不過虛張이오 幾百年이라도 作人을 不移하고 作人을
若移면 該畝을 本價還退라함도 尤不近理뿐더러 以渠之物로 不能自由하고
豈有羈絆於作人之理리오 原告未生時事를 今瞰祖與父之身故하고 生抑施
頑愾은 正當이라고함이 不可하니 因하야 被告 下答은 其理由가 有흔 事

光武十一年 五月 九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太明軾

判事 尹邦鉉

判事 李源國

主事 尹教興



1907년 5월 10일 춘천-수원

역문

{광11민107호}

제139호

판결서

강원도江原道 춘천군春川郡 농민農民

원고 이승기李承基

35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진前 도사都事

피고 이신목李臣穆

46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하여, 송추값[松楸價] 당오전 합계 1,666냥兩
6전錢 5푼[分]을 갚아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평군加平郡 서면西面 하삼곡下三谷 선산[先墓] 내의 송추松楸를 벌
목해 팔았는데, 경계에 맞닿아 있는 원고의 선산 내의 송추 4,000그루[株]

를 자기 것으로 알고 함께 벌목해 팔았다. 해당 군에서 조사한 보고에 근거해 원고의 선산 내에 있던 송추의 값을 산정하니, 약 1,666냥 6전 5푼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마땅히 즉시 갚아야 함에도 지금까지 책임을 미루므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7년 5월 10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태명식太明軾

판사 윤방현尹邦鉉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정섭조鄭燮朝



원문
{光十一民一〇七號}

第一百三十九號

判決書

江原道 春川郡 農民

原告 李承基

年三十五

京畿 水原郡 前都事

被告 李臣穆

年四十六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松楸價 當計 一千六百六十六兩六錢五分을 辦

償還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正直호 줄노 認호 事 此에 對호야 被告는 加平郡內 西面 下三谷 先墓局內의 松楸를 伐賣호는디境界毗連호 原告山局內의 松楸 四千株를 認以已有호고 并爲伐賣호마 該郡查報를 據호야 原告局內 松楸價를 算定호즉 約爲一千六百六十六兩六錢五分이라 被告가 當卽辦償이어늘 尙今推함은 正當치 아닌지라 因호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 事

光武十一年 五月 十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太明軾

判事 尹邦鉉

判事 李源國

主事 鄭燮朝





1907년 5월 17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77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광덕면廣德面 거주 유기원柳基元

피고 수원군水原郡 광덕면廣德面 거주 서치명徐致明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이씨 무덤에 대해 금장禁葬하는 것은 부당하니 굴이掘移한 무덤은 다시 입장入葬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卜]과 조사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조부祖父 무덤이 광덕면廣德面의 신암동新岩洞에 소재하였습니다. 금양禁養한 국내局內에 원고가 외종外從인 이씨를 입장入葬했기 때문에 이씨를 불러다가 독굴督掘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스스로 굴이掘移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所供]은 “저의 밭 변두리에 입장한 것은 수원군水原郡에서 도형圖形하고 적간摘奸^{*}한 것이 분명히 있으니 많이 변론할 필요도 없습니

* 적간(摘奸) : 죄의 여부 혹은 부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캐어 살피는 것이다. 산송(山訟) 발생 시 관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소송대상인 해당 무덤의 위치 등을 살피어 조사하는 행위이다.

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당금지지當禁之地^{**}가 아닌데 미혹한 저들의 독굴을 당한 것이니 즉시 다시 입장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수원군의 도형을 열람하여 살펴보고 조목대로 심문하였더니, 서치명의 산 경계는 길로 정하였으며, 길 아래는 유기원의 밭이다. 이씨 무덤을 밭의 변두리에 입장한 것이고, 밭은 원고의 밭과 관계된 것이며, 이씨 무덤에서 서치명 무덤 간의 보수步數가 46보步가 되고, 서치명의 조부가 일찍이 관직이 없었으니 모두 당금지지當禁之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를 패소시키고 이미 굴이한 이씨의 무덤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입장하게 해야 한다. 이에 판결한다.

1907년 5월 17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묵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판決書 七十八號

原告 水原郡 廣德面 居 柳基元

被告 同郡 同面 居 徐致明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하야 被告는 李塚禁葬이 係是不當인즉 掘移之塚은 還葬함이 可흔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 당금지지(當禁之地) : 당금지(當禁地)라고도 한다. 범리상 다른 사람이 뽕 쓰지 못하게 하는 땅이라는 뜻이다.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調査에 照하여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여 被告의 陳供은 矣祖父塚이 在於本面新岩洞 而禁養局內에 原告外從李塚을 入葬이 기 招致李民督掘則 渠自掘移라하며 原告所供은 矣身田邊入葬은 本郡圖形摘奸이 自在則 不必多辨 而如是不當禁之地에 逢彼督掘이니 俾即還葬이라흔바 考閱該郡圖形하고 逐條審問 則徐之山界는 以路爲定 而路下則柳之田坪인디 李塚을 葬于田邊이요 田是有結原田이며 徐塚之於李塚에 相距步數가 爲四十六步 而徐民祖父가 曾無官職인즉 俱係不當禁之地라 被告는 置之落科하고 已掘之李塚은 依願還葬케하며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五月 十七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10월 23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80호

원고 수원읍水原邑 거주 김의보金義甫

피고 수원읍水原邑 거주 최재현崔在鉉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기한이 지난 전당물[典物]을 환퇴還退하는 것이 형세 상 불가능하지만 그중에 의복 7건件을 환퇴할 때에 추가로 받았던 이자돈 30냥兩과 받아 두었던 돈[受置錢] 500냥에 대한 이자조 90냥은 마련하여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가난했기 때문에 유기鑰器와 의복衣服 등의 물건을 작년 여름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피고의 전당포[典鋪]에 전당잡혔습니다. 정했던 기한이 이미 지났지만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여러 차례 피고를 찾아 갔고, 설령 몇 개월이 더 지나더라도 마땅히 원금과 이자를 갖추어 지불하면 되찾아 가기로 한 굳은 약속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원금과 이자를 갖추어 환퇴하고자 하였더니 갑자기 기한이 지난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모두 방매放賣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원군水原郡에 거소舉訴하

여 피고와 함께 대질하며 조사한 후에 관공에서 되돌려 주라는 엄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당잡은 물건 중에 의복 7건만 겨우 내 주었고, 명주치마 1건은 또한 다른 것으로 바꾸어 지불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필코 모든 물건을 환회받고자 하여 전당을 물리기 위한 돈[退典錢]으로 당오전 합계[當計] 600여 냡을 피고에게 액수대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전당물을 아직도 내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전당포규칙[典當舖規則]에 기한이 지난 것을 방매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처음 기한이 지났을 때에 물러서 가지 않았고, 재차 기한이 지났는데도 역시 환회하지 않았기에 정황상 어쩔 수 없이 방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고가 뒤늦게 찾아가고자 하여 이렇게 거소[擧訴]한 것은 실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고, 전당포의 모든 치부책자[置簿冊子]를 살펴보니, 추후 물려 준 의복 7건은 (피고가 다른 매득인에게) 124냥의 값을 받고 팔았는데, 원고에게 원금과 이자로 154냥을 받아 (그 가운데 124냥을 돌려주고) 매득인에게 되돌려 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것을 방매했던 값과 비교하면 추가로 받은 돈이 30냥이 된다. 또한 2월에 600냥을 받아 두고, 전당잡은 물건을 아직도 되돌려 주지 않은 것은 피고의 행위가 한결같이 이익 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긴 것이고 사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받아 두었던 돈 중에 의복으로 환회한 조목을 계제[計除]하고 실제 남은 돈 500냥에 3개월간의 이자 90냥을 더하여 계산하고, 아울러 (의복 7건 방매 시에) 추가로 받은 돈 30냥을 합해서 계산된 620냥을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 주어야 한다. 이에 판결한다.

1907년 5월 23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判事] 김한묵[金漢默]

주사[主事] 이재홍[李在弘]

* 1895년 5월 공포된 「전당포규칙(典當舖規則)」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즉 “退典期限이 已過하거나 該當舖主는 該過限典主의 姓名及日子를 當舖門前面에 揭示하고 五個日이 過호되 典主가 不待호는 時는 該典物을 自行斥賣호는 事. 但 如此境遇에는 該價에 有餘不足을 勿論호는 事.”

원문

判決書 八十號

原告 水原邑 居 金義甫

被告 同郡 居 崔在鉉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過限典物은 勢不可還退이되 其中衣服七件還退에 加捧호는 邊錢三十兩과 受置錢五百兩 邊條九十兩은 備給호미 可호는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貧寒所致로 鑰器衣服等物을 昨年夏間에 四次典當於被告 典舖이온바 定限已過에 錢未辦得호야 屢次往見被告호고 設有幾朔又過라도 當有具邊還推로 已有牢約이옵더니 今年二월에 具本利之錢호야 欲爲還退 則忽稱過限已久 故로 并爲放賣라호옵기 舉訴本郡호야 兩隻質查之後 官有退給之嚴飭이온디 典物諸件中 衣服七件은 纔有出給 而袖裳一件이 亦有換本이옵기 期欲還推諸件호야 退典錢秤當計六百餘兩을 準給於被告 이옵더니 該典物 則尙不出給이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典舖規則에 過限放賣는 人所共知 而初次過限에 不爲退去호고 再次過限에 亦無還退이옵기 勢不得已放賣어는 原告가 從後欲推호야 致此舉訴가 實爲無理라호마 參互兩供호고 考諸典舖置簿冊子 則追後退給之衣服七件을 捧價一百二十四兩而放賣라가 原告處에 準捧本利錢一百五十四兩호고 買得人處에 還推以給호얏으니 比於放賣價錢호면 加捧錢이 爲三十兩이며 且於二월에 捧置六百兩호고 典物則尙不退給호야 今즉 被告所爲가 一咨於見利요 一非於事理라 捧置錢中 衣服還退條를 計除호고 實錢五百兩에 添算三朔邊九十兩호야 并與加捧錢三十兩으로 合計六百二十兩을 被告가 報價

於原告히미 可히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五月 廿三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5월 24일 한성-수원

역문

{광11민114호}

제170호

판결서

북서北署 재동齋洞 거주 전 주사主事

원고 김정기金正基

나이 48세

경기京畿 수원水原 거주 상민商民

피고 홍건섭洪健燮

나이 40세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고, 김용서金龍瑞가 전당잡혀 준 축동인허문적築洞認許文蹟을 김용서가 와서 추심하기 전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材]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詞은 “진동익陳東翊과 김용서 두 사람이 작년 음력 12월간

에 제 사촌형 김세기金世基에게 와서, 장단長湍 논문서[審券]와 농포農圃 가권家券 및 남양南陽 독정포禿汀浦 축동築洞의 인허문적認許文蹟을 전당잡히고 빚을 얻기를 요청하며, '축동築洞의 문적文蹟은 홍건섭洪健燮에게 이미 전당잡혀 있으니 홍건섭과 같이 가거든 3,000환圓을 내주고 해당 인허문적을 되찾아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피고 홍건섭이 문적을 가지고 올라왔으나 돈을 마련해 주지 못하여 인허문적을 되찾지 못하였고, 진동익과 김용서가 급히 쓸 일이 있다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금 1,800환 어음과 1,610환 어음을 주었더니 진동익과 김용서가 해당 어음을 다른 곳에 교부하여 돌려쓰고 그대로 도망쳐 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음력 2월간에 금 3,000환을 마련하고 피고 홍건섭에게 사람을 보내어 '올라와서 돈을 찾고 축동문적을 내주라.'고 말하니, 피고가 말하기를, '애당초 와서 전당한 김용서가 오지 않았으니 주고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를 제기하여 본 재판소 검사와 정리가 엄격히 조사하는 마당에 관부의 지시를 따라서 제가 3,000환을 주고 피고는 인허문적을 내주는 것으로 서로 계약하였으니, 3,000환 납부한 후 해당 인허문적을 찾아 줄 것을 청구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진술陳供에 "저는 김용서에게서 축동인허문적 9장을 전당잡았는데, 1차로 김용서와 같이 원고의 사촌형을 찾아갔더니 즉시 돈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뒷날 김용서가 돈을 가지고 내려오면 인허문적을 내주겠다고 하였더니, 원고의 사촌형이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마련해 보내 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또 김용서가 오지 않고 원고의 사촌형이 사람을 보내어 '올라와서 돈을 찾은 후 문적을 내주라.'고 하니, '당초 김용서가 와서 전당 잡힌 전당 물건을 원고의 사촌형과 직접 수수授受할 경위經緯가 어찌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법정에서 피고를 강권強勸하여 제3자인 원고와 전당물典當物을 직접 주고받게 하는 것이 이치상 불가하고 원고가 이를 핑계로 찾으려고 하는 것 또한 정당하지 못하다. 피고의 답변[答付]은 이유가 있다.

1907년 5월 24일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

수반판사 이병화李秉和

판사 태명식太明軾

판사 윤방현尹邦鉉

판사 이원국李源國

주사 정섭조鄭燮朝

원문

{光十一民一一四號}

第一百七十號

判決書

北署 齋洞 居 前主事

原告 金正基

年四十八

京畿 水原 居 商民

被告 洪健燮

年四十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할 理由가 無호고 金龍瑞典與호 築洞認許文蹟을 金龍瑞來推前仍舊持有호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 主張은 質下에 照호야 正直호 줄노 認호 事 此에 對호야 原告 陳供은 陳東翊 金龍瑞 兩人이 昨年 陰曆 臘月間에 矣身從兄世基에게 來호야 長

湍沓券과 農圃家券과 南陽禿汀浦築垆認許文蹟을 典當得債하기를 要하여 築垆文蹟은 洪健燮處에 曾已典在하였스니 與洪同來어든 三千圓을 出給하고 該認許文蹟을 還覓持有하라더니 被告 洪健燮이 持文蹟上來이나 錢未辦給하여 認許文籍을 未得推覓이고 陳東翊 金龍瑞의 急用이 有하다는 懇請을 因하여 金一千八百圓魚驗과 一千六百十圓魚驗을 給하였더니 陳金이 該魚驗을 他處에 交付環用하고 仍爲逃躲온바 今年 陰曆 二月間에 金三千圓을 辦立하고 被告 洪健燮處에 送人言上來推錢하고 出給築垆文蹟하라한즉 被告가 言하되 當初來典한 金龍瑞가 不來하였스니 不可與受라하옵기 矣身이 告訴를 提起하여 本所檢廷查覈之場에 官飭을 承하여 矣身이 給三千圓하고 被告는 出給認許文蹟을 줄로 相爲契約하였호니 三千圓納上後 該認許文蹟을 推給하기를 請求한다하니 被告 陳供에 矣身은 金龍瑞의 게서 築垆認許文蹟九張을 典執한온바 一次 金龍瑞와 同히 原告從兄을 來訪하였더니 不卽出錢이기 日後 金龍瑞가 持錢下來하면 出給認許文蹟하겠다하였더니 原告從兄이 過限토록 辦錢送來치 아니하고 其後에도 金龍瑞가 不來하고 原告從兄이 送人하여 上來推錢後 出給文蹟하라호니 當初 金龍瑞가 來典한 典物을 原告從兄과 直接授受할 經緯가 豈有하릿가온바 法庭에서 被告를 強勸하여 第三者되는 原告와 典當物을 直接與受케함이 於理不可하고 原告가 藉此欲推함이 亦不正當한지라 被告 答下은 其理由가 有호는 事

光武十一年 五月 二十四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太明軾
 判事 尹邦鉉
 判事 李源國
 主事 鄭燮朝



1907년 5월 25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81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남곡면南谷面 거주 유흥찬柳興燾

피고 수원군水原郡 현암면玄岩面 거주 김명선金明先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김낙여金洛汝에게 산을 매득買得하여 입장入葬한 그 부모의 무덤을 굴이掘移할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선산이 수원군水原郡 남면南面 요곡腰谷에 있어 누대에 걸쳐 수호해 왔습니다. 제 조부가 산지기인 김낙여의 아비에게 후한 정의를 베풀어서 밋자리 하나를 빌려줘서 김낙여 조부모의 무덤을 입장하였습니 다. 그런데 김낙여가 지금 갑자기 자신의 두 무덤을 굴이掘移하고서 그 땅을 방매放賣하여 피고가 그 부친의 무덤을 입장하였습니다. 저의 조부 무덤에서 피고 부친의 무덤까지의 거리가 24보步 5촌寸이 됩니다. 그러니 자식 된 자로써 어찌 금지하지 않겠습니까? 수원군水原郡의 판결에 각자 서로 수호하라고 한 것은 지극히 원통하고 억울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김낙여에게 2,750냥兩의 값을 주고서

산을 매득하여 입장하였고, 증필證筆*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낙여가 조부모의 두 무덤을 굴이한 땅인데 원고가 갑자기 자신의 땅이라고 하고서 강제로 금장禁葬하고자 하여 수원군에 거소舉訴하였습니다. 수원군에서는 도형圖形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후에 김낙여와 저와 원고 3명을 대질시키고 조사하여 각자 서로 수호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조사해 보니, 원고의 조부가 후한 정의를 베풀어서 김낙여의 아버에게 빌려줘서 두 무덤을 입장한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니 해당 땅에 대한 기득권은 김낙여에게 있다. 김낙여가 조부모의 두 무덤을 굴이하고 값을 받고서 매도한 것인데, 피고가 입장하는 것을 (원고가) 지금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형세상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원군의 판결에 따라 각자 서로 수호하되, 피고가 다시는 원고 무덤 근처의 땅에 함부로 입장할 수 없다. 이에 판결한다.

1907년 5월 25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목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八十一號

原告 水原郡 南谷面 居 柳興燦

被告 同郡 玄岩面 居 金明先

判決要旨

* 증필(證筆) : 무언에 대한 소유권이나 매매·권리 등을 증명하는 문서에서 증인과 그 문서를 쓴 사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金洛汝處에 買山入葬호 其父塚을 掘移호 理由가 無호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先山이 在於本郡南面腰谷 而屢世守護인디 山直金洛汝父處에 矣祖父가 施厚誼而借一壙호야 入葬金洛汝之祖父母塚이온디니 金洛汝今忽掘移其兩塚호고 放賣其地호야 被告가 入葬其父塚이온바 自矣祖塚으로 至被告父塚이 爲二十四步五寸이온즉 爲人子者 豈不禁止乎잇가 本郡處辦에 各相守護호라호미 極爲冤抑이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金洛汝處에 給價二千七百五十兩호고 買山入葬而證筆이 自在쑤더러 金洛汝祖父母兩塚掘移之地이온디 原告가 忽稱渠山호고 欲爲勒禁호야 舉訴本郡而圖形摘奸後 與金洛汝로 三造質查호야 有各相守護之處辦이라호바 查此原告之祖父가 施其厚誼호야 借與於金洛汝之父 而入葬兩塚者 已爲年久호니 該地既得之權은 在於金洛汝矣라 掘移其祖兩塚호고 捧價賣渡어늘 被告之入葬을 今欲禁之가 勢不可得이니 依郡決各相守護이되 被告가 更不得犯葬於原告塚逼近之地호미 可호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五月 二十五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5월 30일 한성-남양

역문

판결서 제84호

원고 서울[京] 거주 공홍렬孔弘烈

피고 남양군南陽郡 송산면松山面 거주 최창식崔昌植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請求에 응하여, 피고는 가권家券을 빌려 전당 잡힌 당오전[鐵坪] 잔액[零在] 7,400냥兩을 기한을 정하고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피고와 일찍이 거래한 적이 있어 받을 전평鐵坪이 있었습니다. 1904년 12월에 피고가 와서 가권家券을 빌려 전당 잡힐 수 있게 요청하였으므로 요청한 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전기회사에 가권을 전당잡히고 4,000냥을 빌려 썼다가 기한이 지나도 환퇴還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해당 전기회사의 독촉을 당해서 빚을 구해서 갚을 계획으로 다른 곳으로 다시 전당하여 얻어 쓴 돈이 6,000냥이 되었습니다. 저의 형세가 재산을 탕진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어쩔 수 없이 피고에게 가서 (빌려간 돈을) 책임지우고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

가 거주하는 가옥[家畝]을 5,000냥의 값으로 계약하고서 문권文券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최영준崔榮俊에게 방매放賣하였으므로 이렇게 정소呈訴한 것입니다. 해당 가옥[家畝]은 다시 찾아왔으나 가옥의 가격이 전에 비해 헐값이 되어 지금 2,000냥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손해 본 돈은 최영준에게 정해 준 액수대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원고에게 갚아야 돈은 과연 원고가 진술所供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옥을 방매放賣한 것은 먼저 구권舊券으로 최영준에게 매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뒤늦게 와서 가권으로 작성해 달라고 말했으므로 이미 방매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가옥을 고집하고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문서로 작성해 준 것입니다. 최영준은 원고와 처음부터 상관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군정郡庭 재판에서 그 가옥을 원고에게 되돌려 주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쳐 마련해 준 것이 2,250냥입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정산을 상계相計하여 마땅히 갚고 받아야 할 것을 구별해서 제출하라고 하였더니, 피고가 마땅히 낼 돈이 7,409냥 6전이라고 착명着名하여 작성한 건기件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을 작성하게 하여 원고에게 내어 주도록 하였다. 최영준은 처음에 값을 지급하고 가옥을 매득買得했다가 지금 환퇴還退해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소송訟事에 실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되돌려 보낸다. 이에 판결한다.

1907년 5월 30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목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 건기(件記) : 이두식 표현으로 '발기(件記)'라 한다. 어떠한 일에 사용되는 물건의 이름과 수량을 축 벌여 적은 문서를 말한다. 또는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벌여 적은 문서이다. 유의어는 발기(發記·撥記)이다.

원문

判決書 八十四

原告 京居 孔弘烈

被告 南陽郡 松山面 居 崔昌植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家券借典호 錢秤零在七千四百兩零을 定限報債호미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與被告로 曾有去來호야 有所捧錢秤이옵더니 甲辰十二月에 被告가 來請家券借典이옵기 依請施之호야 典券於電氣會社호고 價用四千兩이옵다가 過限未退也 故로 逢彼該社之催促호야 以得債報債之計로 移典於他處호야 得用錢이 爲六千兩 而被告가 勢至蕩敗 故로 不得已 往欲責捧 則被告가 以所居家舍로 結價五千兩호야 成券以給이러니 又爲 放賣於崔榮俊이옵기 至此呈訴 而該家舍는 還爲推尋이오나 家舍價格이 比前至歇호야 到今不過二千兩捧價이오니 落本之錢은 崔榮俊處에 準數 捧給이다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原告處所報錢債는 果如原告之 所供이오나 矣身之家舍放賣는 先以舊券으로 賣渡於崔榮俊이옵더니 原告가 從後來到호야 言以家券成給이옵기 說明已賣之事實이오디 原告가 固執家舍而言請이옵기 不得已任其成券이오나 崔榮俊則與原告로 初無相 關이올뿐더러 已於郡庭裁判에 其家舍를 還給原告이올고 且有三次備給 者 爲二千二百五十兩이라호마 原被兩隻之細音을 萬生相計호야 當報當 捧을 使之區別以納矣러니 被告之當出錢이 爲七千四百九兩六錢이라 着 名成件記以納 故로 被告處에 定限成於音호야 出給原告이고 崔榮俊은 初 有給價買家라가 到今還退以給則 兩隻訟下에 實無關焉이기 旋即退送호 며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五月 三十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6월 10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90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공향면貢鄕面 일동一洞 거주 김순명金順明

피고 수원군水原郡 공향면貢鄕面 고주동古舟洞 거주 김덕민金德民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변론(訴答)에 응하여, 피고 아내의 무덤을 금장禁葬할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여러 세대의 선산이 공향면貢鄕面 고주동古舟洞에 있었는데, 1906년 10월에 피고가 제 아버지의 무덤 뒤쪽 30보步의 땅에 암장暗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수원군에 정소呈訴하여 여러 차례 사실 조사하였는데 (수원군에서) 원고는 금장禁葬하지 말 것이며, 피고는 다시는 입장入葬하지 말라는 뜻으로 판결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제가 여러 세대의 선산에 계속해서 입장하던 것을 (원고가) 그의 산이라고 말하면서 금장하고 새벽에 입장한 것을 암장이라고 말하였으나 해당 산이 본래 이덕천李德川의 산관山坂입니다. 원고의 산과 저의 산이 경계가 분명하게 있으니 어찌하여 금장한다

는 것이며 저의 아내 무덤이 입장하는 곳은 곧 남성범南聖範에게 매득한 문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에서 모두 자기 산이라고 말하니 급히 판결하기가 어렵기에 산을 팔았던 남성범을 불러서 대령시켜 조사하니, “산관의 방매放賣가 명확하고 의심할 것이 없으며, 피고가 장사지낸 무덤이 역시 해당 경계 안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뒤늦게 나타나서 남성범의 진술이 필시 사실에 어긋난다고 말하였다. 이에 다시 대질(質)하고자 하니, 더 할 말이 없다고 하고 대질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그 곡절을 가히 판단할 만하기에 (원고를) 패소시킨다.

1907년 6월 10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목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九十號

原告 水原郡 貢鄕面 一洞 居 金順明

被告 同郡 同面 古舟洞 居 金德民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訴答에 應하야 被告之妻塚을 禁葬할 理由가 無호는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屢代先山이 在於本面古舟洞 而丙午十月에 被告가 有暗葬於矣祖父塚腦後三十步之地이옴기 呈訴本郡하야 屢次查實이온디 原告는

勿爲禁葬하고 被告는 更勿入葬之意로 有所處辦이라하며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矣身屢代先山繼葬을 謂以渠山而禁葬하고 早朝入葬을 謂以暗葬이오나 該山이 本以李德川山坂也라 原告山與矣山이 自有境界하니 何可禁葬이며 矣身妻塚入葬處는 卽買得於南聖範許而文券이 自在라하바 此供彼供에 俱曰予山하야 遽難歸決이기 賣山之南聖範을 使之招待查問 則山坂之放賣가 的確無疑 而被告入葬之塚이 亦在該山界內라 丁寧納供인 디 原告가 從後來待曰 南民所供이 必有爽實이라하야 更欲質卞 則謂以無益하고 不肯其卞하니 其曲을 可辦이기 置之落科事

光武十一年 六月 十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6월 12일 수원-수원

역문

{광11민178호}

판결서 제44호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서봉진徐鳳鎭

대언인代言人 서규진徐奎鎭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피고 김성백金成伯

대언인代言人 김중권金重權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굴이하다가 다시 묻은 지금까지 3기의 무덤을 함께 파 옮겨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所供]은 “양성군陽城郡에 사는 오룻 면천河川 집안에서 백여 년을 지키고 보호하던 산소를 이장하고 팔기를 원해서 제 조부가 해당 산소를 오가룻家에게 매득하여 지난 1859년에 증조曾祖를 입장入葬하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878년에 원고 집에서 제 무덤을 사굴私掘*하여 유배를 당하게 되었고, 제 무덤은 관官에서 도로 묻은 뒤에 연달아 계장繼葬**하였습니다. 원고 집에서 종종 소란을 일으키더니 작년 가을에 원고가 족당族黨과 병정兵丁을 다수 거느리고 제 무덤을 모두 파내므로 제가 분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원고의 선조 무덤을 역시 파내어 갔습니다. 그래서 원고와 제가 모두 굴충죄掘塚罪로 평리원平理院으로 체포되어 넘겨지게 되었다가, 사면을 받들어 석방되어 무덤을 즉시 다시 묻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所供)은 “제15대조 공신참판功臣參判묘가 본군本郡 용연리龍沿里에 있어 300여 년을 지키고 보호하였더니, 지난 1859년에 피고가 제 묘 10보步 이내에 그 조부를 투장偷葬하였으므로 연달아 파낼 것을 독촉하니 파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계장繼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878년에 저의 당숙이 사굴私掘하고 유배를 당하여 피고가 도로 다시 묻고 계장하였습니다. 때문에 작년 가을에 이르러 제가 또 해당 무덤을 파내니 피고가 도리어 제 무덤을 파낸 것입니다. 피고의 이른바 오 면천 집안에서 매득했다는 것은, 일찍이 오가뫼家에서 제 산소에 입장入葬한 적이 있어 제 집에서 파 읍길 것을 간청하니 바로 면례緇禮***하겠다고 하고 50여 년이 되도록 미루다가 끝내 읍겨 갔으니, 오뫼가 피고에게 전매轉賣했다는 것은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가 만약 오뫼에게 매득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게 산 것이 아니다. 이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지금까지 입장入葬한 것이 원고의 15대조 공신참판 묘에서 서로 떨어진 거리가 10여 보步이거나 20여 보步이다. 그러므로 이는 무덤을 쓰지 못하게 금하는 땅인데도 피고가 오뫼에게 매득했다고 칭

* 사굴(私掘) : 남의 무덤을 관의 관결이나 묘주(墓主)의 승낙 없이 사사로이 발굴하는 일을 뜻한다. 「형법대전」(1905.04.29. 법률 제3호) 제458조에는 사굴죄(私掘罪)에 대하여 “人的 塚을 私掘하여 棺槨에 未至한 者는 懲役 一年이며 棺槨이나 本不用棺槨 屍를 露한 者는 懲役 三年이며 棺을 開하여 屍를 露하거나 屍骸를 棄毀 或 藏匿한 者는 懲役 十五年이며 屍骸를 遺失 或 混雜한 者는 懲役終身に 處호되 步限 外에나 自來同山守護한 墳塚을 私掘한 者는 各히 一等을 加하고 該호는 還封홀이다.” 고 하였다.

**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잇대어 후손의 무덤을 쓰다.

*** 면례(緇禮) : 무덤을 읍기고 장사를 지내는 것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한다. 유의어는 면봉(緇奉)이다.

하고, 굴이하다가 다시 묻은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7년 6월 12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훈1등 이운용李允用

판사 김정목金正穆

판사 김택金澤

판사 안치윤安致潤

판사 이용성李容成

판사 이용상李容相

판사 육중면陸鍾冕

주사 이경수李京壽

원문

{光十一民一七八號}

判決書 第四十四號

京畿 水原郡 居 農民

原告 徐鳳鎭

代言人 徐奎鎭

京畿 水原郡 居 農民

被告 金成伯

代言人 金重權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被掘還封한 前後三塚을 并掘移홀 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 所供은 陽城郡居 吳沔川家에서 其百餘年守護之山을 移葬而願賣故로 矣祖가 買得該山於吳 하야 去己未年에 入葬矣曾祖러니 去戊寅年에 原告家에서 私掘矣塚하야 至於定配而矣塚은 自官還封後 連次繼葬이온바 原告家에서 種種起鬧러니 昨年秋에 原告가 多率族黨與兵丁하고 盡掘矣塚故로 矣身이 不勝忿恨하 야 原告의 先祖塚을 亦爲掘去而兩隻이 俱以掘塚罪로 至於押上本院이라 가 奉赦蒙放에 塚即還封이다하야 原告 所供은 矣十五代祖功臣參判墓가 在於本郡龍沿里而三百餘年守護矣러니 去己未年에 被告가 偷葬其祖於矣 墓十步之內故로 連次督掘에 不惟不掘이라 又爲繼葬故로 去戊寅年에 矣 從叔이 私掘定配 而被告가 還封繼葬故로 至昨秋하야 矣身이 又掘該塚則 被告가 反掘矣塚이온바 被告 所謂買得於吳沔川家云者는 曾自吳家로 果 有入葬於矣山 而矣家에서 懇乞掘移즉 云卽緬禮하고 拖至五十餘年에 竟 爲移去하야스즉 吳之轉賣於被告가 必無其理라하야 被告가 若果買得於吳 라도 買非正當뿐더러 被告之前後入葬이 於原告十五代祖功臣參判墓에 相 距가 或爲十餘步 或爲二十餘步즉 此係當禁이거늘 被告가 稱以買得於吳 하고 被掘還封함이 不可謂正當이라 是로 以하야 原告의 訴求는 其理由가 有하야 事

光武十一年 六月 十二日

平理院

裁判長 勳一等 李允用

判事 金正穆

判事 金澤

判事 安致潤

判事 李容成

判事 李容相

判事 陸鍾冕

主事 李京壽



1907년 6월 19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제96호

원고 남양군南陽郡 팔탄면八灘面 거주 오춘근吳春根

피고 남양군南陽郡 팔탄면八灘面 거주 송공우宋公佑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그의 부모 무덤을 굴이掘移할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저의 6대조 이하 선영先塋이 남양군南陽郡 팔탄면八灘面 건 달산乾達山에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수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피 고가 그의 부모를 저의 조모祖母 무덤의 단룡單龍* 60보步의 땅에 투장偷葬 하였습니다. 피고가 장례를 치른 곳은 저의 산과 서씨徐氏 산의 경계쫓인 데, 피고가 제가 사굴私掘했다는 말로 먼저 남양군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남양군에서 대질하여 조사하고, 저를 패소시켰으니 일이 매우 원통하고 억울합니다.”라고 하였다.

* 단룡(單龍) : 풍수지리에서 주산(主山)에서 왼쪽으로 뻗어 나간 여러 산줄기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줄 기로, 내청룡(內靑龍)이라고도 한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줄기는 외청룡(外靑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부모 무덤을 과연 서徐 진사進士가 금양禁養하는 시장柴場에 입장入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의 산이라고 말하고 나무하는 아이에게 사초莎草를 치워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즉시 가서 꾸짖자, 원고의 모든 친족이 함께 나와 저를 구타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양군에 정소한 것이며, 원고가 패소한 것입니다. 해당 산은 본래 사천사沙川寺의 소유지로 폐사廢寺된 이후에 서 진사가 여전히 벌목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신의 산麓山麓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로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가 비록 자신의 산과 경계되는 지점이라고 말하였으나 실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또한 남양군에서 작성한 도형장圖形狀을 살펴보면, 오춘근吳春根의 무덤과 송공우宋公佑의 무덤 사이의 서로 거리가 71보이니 계한界限에서 마땅히 금해야 할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원고를 패소시킨다.

1907년 6월 19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묵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九十六

原告 南陽郡 八灘面 居 吳春根

被告 同郡 同面 居 宋公佑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하야 被告는 其父母塚을 掘移홀 理由가 無호는 事 訴訟費用은 被告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矣六代祖以下先塋이 在於本郡八灘面乾達山而數百年守護矣러니 今年二月에 被告가 偷葬其父母塚於矣祖母塚單龍六十步許而該葬地 則矣山與徐氏山定界之際인디 被告가 以私掘等說之先呈本郡而及其質查에 置矣身於落科호니 事甚冤抑이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矣父母塚을 果爲入葬於徐進士禁養柴場이옴더니 原告謂以渠山호고 使樵童으로 撤去莎草이기 卽往詰責 則原告諸族이 并出毆打也 故로 以至呈訴本郡而原告落科이오나 該山則本以沙川寺所有地로 廢寺之後에 徐進士尙此禁伐인바 原告之稱渠山麓이 實爲無據라호바 原告가 雖曰渠山定界之際地나 實無確據之證이며 且觀本郡圖形狀 則吳塚宋塚에 相距爲七十一步라 界限之所不當禁이기 原告를 置之落科事

光武十一年 六月 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6월 19일 수원-진위

역문

판결서 제97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오산鰲山 거주 박성백朴成伯

피고 진위振威 군내郡內 거주 박건실朴建實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성표전成標錢 4,000냥兩을 기한연장하고 마련해 줘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증거와 대질[質]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은 “원고에게 빌려 쓴 것은 바로 함치도咸致道이며 저는 다만 담보만 썼을 뿐입니다. 함치도가 제때에 마련해 줘지 않았으므로 제가 원고의 독촉을 만나 결국 증서[標]를 작성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가난한 사람인 제가 함치도가 부담해야 할 것을 실로 대신 갚을 방도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비록 자기가 사용한 빚이 아니라고 하나 처음에 담보를 썼다가 나중에 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면, 기한이 지나도 갚지 않은 것은 실로 사리가 아니다. 올해 8월로 해서 다시 기한연장을 요구했으니 그 기한에 맞춰 독촉하여 찾되, 만일 또 기한을 어기고 갚지 않는다면, 다시 정소로訴하여 독촉하

여 받아야 한다. 이에 판결한다.

1907년 6월 19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관사서리 김한목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九十七

原告 水原郡 鰲山 居 朴成伯

被告 振威郡內 居 朴建實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하야 被告는 成標錢四千兩을 展限備報하미 可하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證據와 質下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原告處債用者는 卽咸致道而矣身則 只有擔保矣러니 咸不趁限備報也 故로 逢彼原告之督促하야 果有成標以給이오나 以若貧寒之民으로 咸之所負를 實無替徵之道라하마 雖非自己用債나 初爲擔保라가 後乃成標 則過限不報가 實非事理나 以今年八月로 更要展限하니 趁其限督推이되 如又違限不報하든 更訴督捧이 可하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六月 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6월 24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100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남곡면南谷面 거주 이열래李悅來

피고 수원군水原郡 남곡면南谷面 거주 최대시崔大時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변론(訴答)에 응하여, 이미 방매(放賣)한 산을 지금 또다시 방매하여 매득(買得)한 사람에게 입장(入葬)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저의 선산이 남곡면(南谷面) 발산(鉢山)에 있는데 산 아래 집터를 지난 1867년에 저의 형이 300냥(兩)의 값을 받고 피고에게 방매(放賣)하였습니다. 그러나 집 뒤 산록의 송추(松楸)만을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였고, 산

* 송추(松楸) : 분묘(墳墓) 및 분묘 주변의 산지 즉 분산(墳山)에 심는 나무를 총칭한다. 분묘의 실전(失傳)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산의 수호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지거나 묘지기를 두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등의 양산(養山) 금양(禁養)을 하였다. 양산 금양권은 분산 구역 내의 산림을 잘 기르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에는 금양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나 땔나무 등을 이용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배타적 산림 이용권이 포함되었다(김경숙, 2012, 『조선의 묘지 소송』, 문학동네). 유의어는 구목(丘木/邱木)이다.

판(山坂)은 옛날대로 수호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선조를 입장(入葬)한 무덤이 9개나 되었습니다. 송추만을 방매하고 산록을 방매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빈곤했기에 해당 산록 중 하나를 정씨에게 방매하여 입장하도록 하였는데, 피고가 갑자기 자기의 산이라고 하면서 무리를 지어 금양(禁養)했습니다. 이에 수원군水原郡에 거소(舉訴)하였더니, 대질하여 조사한 후에 피고를 패소시켰습니다. 그러자 뜻하지 않게 그다음 날 피고가 하나의 수표(手票)를 제출하고 변명하기를 ‘집 뒷산은 저에게 영원토록 방매한 것입니다.’라고 하여 도리어 제가 패소하였습니다. 해당 수표의 종이 색깔이 새것이며 변하지 않았으니 오래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위조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은 “원고의 형과 함께 집터와 원림(園林)을 경계를 정하여 매득(買得)했습니다. 그 후에 원고가 집 뒤에 그의 조부 무덤을 면장(緘葬)^{**} 하였으므로 환퇴(還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형이 간곡하게 애결함이 그치지 않아 집 뒷산을 영원토록 방매하는 것으로 수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환퇴할 수 없었습니다. 산의 동서(東西)는 집과는 조금 멀고 또 원고가 선영(先塋)에 계속 입장했으므로 나중에 입장했어도 금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 뒤 산록은 이미 입장한 무덤 이외에 다시 감히 입장하지 못하게 한 것이 지금까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집 뒤끝 가까운 땅을 원고가 3,500냥의 값을 받고 정씨에게 방매하고 그 형의 수표를 위조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근거 없는 일입니다. 군(郡)의 법정에서 대질하여 조사함에 해당 수표를 다음 날 제출한 것은 소송을 당하여 매우 경황이 없었던 가운데 바로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이며, 본래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 찾은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방매자와 증인이 지금 모두 죽었고 양쪽의 진술이 모두 모순되니, 집 뒷산을 영매(永賣)했다는 표적(標蹟)은 참과 거짓을 가려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가 금양한 것이 40년이나 오래되었으니 피고의 집 뒤 주룡(主龍)^{***}을 원고가

** 면장(緘葬) : 무덤을 옮기고 장사를 지내는 것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며, 면례(緘禮)라고도 한다.

*** 주룡(主龍) : 주산(主山)의 봉우리에서 혈(穴)까지 연결되는 산줄기를 의미한다. 즉 많은 산맥이나 능선 중에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묘지 혹은 집터와 관계되는 주 능선이다. 내룡(來龍) 혹은 용맥(龍脈)이라고도 부른다.

방매하는 것은 실로 불가하다. 이에 판결한다.

1907년 6월 24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묵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一百號

原告 水原郡 南谷面 居 李悅來

被告 同郡 同面 居 崔大時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 訴答의 應하야 已賣한 山을 今又許賣하야 使人入葬하미 不可
하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矣先山이 在於本面鉢山 而山下家垵을 去丁卯年에 矣兄이
捧價三百兩하고 放賣於被告 而家後山麓松楸畚 許入於放賣中하고 山坂
則依舊守護하야 其後矣身入葬이 乃至九塚則 賣其松 而不賣山은 推此可
知 而以貧窘所致로 該山一麓을 放賣於鄭民하야 使之入葬이옵더니 被告
가 忽稱渠山하고 作黨禁葬 故로 舉訴本郡 則質查之後에 被告을 置之落科
矣러니 不意翌日에 被告가 納一手標而藉口曰 家後山을 永永放賣라하야
反置原告於落科이오나 該標紙色이 新鮮無渝하니 非年久而今日偽造라하
며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原告兄之家垵與園林을 定界買得矣러니 其
後에 原告가 緬葬其祖塚於家後 故欲爲還退 則原告兄懇乞不已하며 家後
山은 永永放賣로 成手標이옵기로 不得還退이온바 山之東西는 與家稍遠

하고 且原告之先塋繼葬 故로 從後入葬을 雖不禁之이오나 家後山麓은 已
葬塚外에 更不敢入이 今爲四十年이온디 今忽家後稍近之地을 原告가 捧價
三千五百兩하고 放賣於鄭民하며 其兄之手標을 歸之偽造가 事甚無據 而郡
庭質查에 該標之翌日現納은 被訴蒼黃中 不卽持待러니 自有覓納之令하야
送人覓納이 賣者證者가 現今俱沒하고 兩隻所供이 俱爲矛盾하니 家後山永
賣標蹟은 眞贋을 難辦이되 被告之禁葬이 爲四十年之久하니 被告家後主龍
은 原告之放賣가 實爲不可이기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六月 二十四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6월 25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102호

원고 수원군水原郡 중덕면宗德面 당현唐峴 거주 남영희南英熙

피고 수원군水原郡 중덕면宗德面 두릉杜陵 거주 김문교金文交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다른 사람이 장지葬地로 정하고 참파토斬破土* 한 땅에 몰래 먼저 입장入葬한 것은 실로 불가하다. 또한 분묘계한墳墓界限**으로 논할지라도 굴이掘移할 이유가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선산先山은 본리本理에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수호했습니다. 올해 2월에 면장緝葬***할 조부 무덤의 땅을 정하고 참파토斬破土하여 옛 무덤을 파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참파토한 땅에 그의 부친을 몰래 입장入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치에 근거하여 금장禁葬하였으

* 참파토(斬破土) : 무덤을 만들려고 풀을 메고 땅을 고르다.

** 1905년(광무 9) 4월에 공포한 『형법대전(刑法大全)』 제32조 「분묘계한(墳墓界限)의 규정을 의미한다. 이 판결의 경우 원고의 5대조가 5품의 품계인 통덕랑(通德郎)이므로 그 분묘계한은 50보(步)이다.

*** 면장(緝葬) : 무덤을 옮기고 장사를 지내는 것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며, 면례(緝禮)라고도 한다.

나 무리를 지어 강제로 입장하였으므로 본군에 정소로訴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도형圖形하고 적간摘奸한 후에 분묘계한 밖이라고 하며 저를 패소시켰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해당 산판山坂은 바로 한희천韓熙天 집안의 시장柴場인데 해당 주인에게 간청하여 허락을 받아서 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먼저 점찍은 곳이라며 무리를 이루고 와서 소란을 일으키며 입장을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 정소하였고 도형과 적간을 한 후에 보수步數가 멀었으므로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이 제출한 택일기擇日記****를 거두어 살펴보니 원고가 잡고자 한 택일은 명확하여 의심할 바가 없었다. 피고의 구두진술(口供)에 하관下棺·참파토斬破土·파구분묘破舊墳墓의 일시가 택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는 모두 상반되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정한 땅을 엿보고 몰래 먼저 입장한 것이 여지없이 탄로 났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의 5대조가 통덕랑通德郎이 되니 5품 품계로서 분묘계한에 따라 금장해야 하므로 피고를 패소시킨다.

1907년 6월 25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목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一百二號

原告 水原郡 宗德面 唐峴 居 南英熙

被告 同郡 同面 杜陵 居 金文交

**** 택일기(擇日記) : 상례(喪禮)나 혼례(婚禮) 등과 같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운수가 좋은 날을 가려서 그 절차와 일시(日時)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他人占葬斬破土之地에 暗先入葬이 實所不可
요 且論墳墓界限이라도 掘移할 理由가 有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其先山이 在於本里 而數百年守護矣러니 本年二月에 緬葬
祖父塚次 占地斬破土호고 至有破舊墳이옴더니 被告가 偷葬其父於斬破之
地 故로 據理禁葬이오되 作黨勒葬이옴기 呈訴本郡이더니 圖形摘奸後 以
界限外로 置矣身於落科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該山坂은 卽韓
熙川家柴場 而懇請於該主호야 得其諾而入葬矣러니 原告가 謂以渠之先占
處라호고 成群惡鬧禁葬 故로 呈訴本郡이옴더니 圖形摘奸後 以步數闊遠
으로 原告落科라호마 取考兩隻之現納擇日記 則原告之占葬擇日은 明確無
疑이되 被告口供에 下棺與斬破土破舊墳日時가 與擇日記所錄으로 一切
相反인즉 賊人占地호고 暗先入葬이 綻露無餘싯더러 原告之五代祖가 爲
通德郎이니 以五品之階로 依界限禁葬이기 被告을 置之落科事

光武十一年 六月 二十五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1907년 6월 27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제104호

원고 남양군南陽郡 상동上洞 거주 고백순高百淳

피고 남양군南陽郡 화척면禾尺面 거주 박은빈朴殷彬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변론[訴答]에 응하여, 능장勒葬*한 무덤을 굴이掘移해야 한
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남양군南陽郡 며지곶면跡知串面에 있는 산록山麓을 지난
1897년에 저의 조부祖父가 이재동李載東에게 매득買得하였습니다. 맞닿은
경계에 또 하나의 산록이 있어서 매득하였는데, 이것은 홍종화洪宗華가 팔
았던 것입니다. 저의 백부伯父를 먼저 입장入葬한 이후부터 계장繼葬**하여
지금까지 40년 동안 수호하였습니다. 이후에 1905년 11월에 저의 종형從
묘을 여록餘麓***에 입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그의 6대조

* 능장(勒葬) : 권세를 빌어 남의 땅이나 동네 가까이에 억지로 장사를 지내고 묘를 쓰는 일이다.

** 계장(繼葬) : 조상의 무덤 아래에 잇대어 자손의 무덤을 쓰는 것이다.

*** 여록(餘麓) : 산소의 근처에 있는 산 중에서 주산(主山)·청룡(靑龍)·백호(白虎)·안산(案山) 외의 산
이다.

영천공榮川公의 무덤이 있는 산에 제한界限 이내라고 칭하고 금장禁葬하고 자 정소呈訴하였습니다. 남양군에서 대질[質下]하여 저를 패소시켰고, 기한을 정해서 굴이하라는 다짐을 받는데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은[陳供]은 “저의 6대조 영천공의 무덤이 있는 산은 곧 수백 년 동안 수호한 땅입니다. 또한 여러 대代가 계장繼葬하였습니다. 해당 산국山局 내에 피고가 그의 중형 무덤을 무리를 이루어 능장勒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6대조 무덤과 거리가 47보步가 되고, 저의 부모父母 무덤과는 20보步가 되기에 남양군에 거소呈訴하였습니다. 그래서(남양군에서) 도형圖形하고 대질하여 조사한 후에 원고를 패소시켰습니다. 굴이掘移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을 다짐 받은 것이 수차례에 이르렀는데 뜻하지 않게(원고가)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에 상소[伸訴]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남양군의 도형과 산관 문권文券을 열람하여 살펴보았다. 곧 원고가 홍종화에게 샀다고 하는 문권은 내용상 뜻이 모호模糊하여 증거가 될 수 없다. 입장入葬했을 때에 피고를 결박하여 소나무에 피고를 묶은 것은 원고가 이미 자백[自服]한 것이다. 그러니 그가 능장한 것은 논할 것도 없다. 피고의 6대조가 영천군수榮川郡守로써 4품의 품계이고, 해당 무덤에서 피고가 새로 입장한 무덤에 이르기까지 58보이니 제한 이내이다. 마땅히 법전에 의거하여 독굴督掘해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를 패소시킨다.

1907년 6월 27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서리 김한목金漢睦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一百四號

原告 南陽郡 上洞 居 高百淳

被告 同郡 禾尺面 居 朴殷彬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訴答에 應호야 勒葬塚을 掘移호미 可호는 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本郡旌知申面所在山麓을 去丁酉年에 矣祖父가 買得於李載東處이옵고 連境에 又有一麓買得 而此則洪宗華之所賣也라 矣伯父을 先爲入葬호고 後有繼葬호야 于今四十年守護矣라 乙巳十一月에 矣從兄塚을 葬于餘麓矣러니 被告가 稱以渠之六代祖榮川公墳山界限以內라호고 欲爲禁葬而呈訴호야 自郡質下에 置矣身於落科호야 至捧定限掘移之俁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矣六代祖榮川公墳山은 卽數百年守護之地 而亦有繼葬者屢矣어늘 該山局內에 被告가 其從兄塚을 作黨勒葬이온디 矣六代祖塚으로 相距爲四十七步요 矣父母塚으로 爲二十步이옵기 舉訴本郡이옵더니 圖形質查之後에 置原告於落科호야 掘移次 定限納徭가 以至數次矣러니 不意伸訴本所라호는바 該郡圖形與山坂文券을 考閱호는즉 原告所云買洪之券은 辭意模糊호야 不可爲證이요 入葬之時에 結縛被告호야 繫之于松은 渠旣自服호니 其所勒葬이고 無可論이며 被告六代祖以榮川郡守로 爲四品之階而自該塚으로 至被告新葬塚이 爲五十八步則 以界限以內로 當有依法督掘이기 原告를 置之落科事

光武十一年 六月 廿七日

京畿裁判所 判事署理 金漢睦

主事 李在弘



타인 무덤 사성^{莎城} 훼손 입장^{入葬}에 관한 건

1907년 6월 30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제105호

원고 남양군^{南陽郡} 머지곶면^{跡知串面} 거주 김재화^{金在化}

피고 남양군^{南陽郡} 머지곶면^{跡知串面} 거주 조윤문^{趙允文}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타인 무덤의 사성^{莎城}을 훼손하고 입장^{入葬}한 것이 실로 근거가 없다. 그러니 즉시 굴이^{掘移}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제가 한씨^{韓氏} 맥의 묘지기로서 해당 산을 빌려 얻었고, 지난 1900년에 아버지를 입장^{入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그의 6대조 무덤의 사성^{莎城}을 훼손하고 압장^{壓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선조 무덤은 다른 산에 있는데 오래된 무덤을 그의 무덤이라고 지칭하니 실로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사성(莎城) : 무덤 뒤에 반달모양으로 에워싼 두둑을 말한다. 토성(土城)이라고도 한다.

** 압장(壓葬) : 남의 묘역 안에서 몰래 묘를 써서 헐(穴)을 누르다.

원고의 진술^{所供}은 “제가 수십 년 동안 고향을 떠났던 까닭으로 부득이 성묘^{省墓}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저의 6대조 무덤의 사성을 훼손하고 그의 아버지를 입장^{入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무덤 상석^{床石}이 곧 원고 아버지의 무덤 상석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선조^{先祖} 무덤을 오래된 무덤이라고 귀결시킨 것이 지극히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참고하여 들어보니 비록 “한씨의 산으로 산지기들에게 허락이 되어서 서로 서로 입장^{入葬}하였다.”고 하나, 설령 오래된 무덤이라도 사성을 훼손하고 입장^{入葬}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다. 하물며 주인이 있고 거소^{擧訴}하였으니 피고는 아버지 무덤을 즉시 굴이^{掘移}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6월 30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최석민^{崔錫民}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一百五號

原告 南陽郡 跡知串面 居 金在化

被告 同郡 同面 居 趙允文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應하야 被告는 他人塚莎城을 毀破入葬이 實爲無據^{實爲無據}하니 卽爲 掘移가 可^可한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 상석(床石) : 무덤 앞에 제물(祭物)을 차려 놓기 위하여 넓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床)이다.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에 照하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의 陳供은 矣身이 以韓氏宅墓直으로 借得該山하야 去庚子年에 入葬父塚이러니 原告가 稱以渠之六代塚莎城을 毀破壓葬이라하오나 原告의 先塚은 在於他山이온디 指古塚謂渠塚이 實爲無據라하며 原告所供은 矣身이 以數十年離鄉之致로 不得省墓이옵더니 被告가 毀破矣六代祖塚莎城하고 入葬其父하야 矣塚床石이 便爲彼塚床石인디 他人祖塚을 歸之古塚이 尤極無理라하마 參聽兩供하니 雖曰韓山으로 許與於山直等하야 互相入葬云 而設如古塚이라도 毀破莎城入葬이 實所不可여든 況有主而舉訴하니 被告父塚을 卽爲掘移가 可하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六月 三十日
京畿裁判所 判事 崔錫民
主事 李在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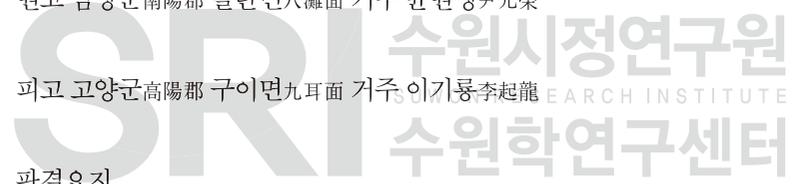
1907년 7월 2일 남양-고양

역문

판결서 제106호

원고 남양군(南陽郡) 팔탄면(八灘面) 거주 윤원영(尹元榮)

피고 고양군(高陽郡) 구이면(九耳面) 거주 이기룡(李起龍)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의 변론(訴答)에 대하여, 금장(禁葬)할 이유가 없으니 서로 상호(守護)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저의 5대조 무덤과 고조부(高祖父)의 무덤이 고양군(高陽郡) 구이면(九耳面)에 있어서 100년 동안 상호(守護)하였습니다. 올해 4월에 피고가 부모(父母)를 저의 고조부 무덤에서 29보(步) 떨어진 땅에 몰래 면장(緋葬)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집문권(買文券)은 그 사이에 화재(火災)로 인하여 불에 탔습니다. 피고가 입장(入葬)한 곳은 이미 예전에 다른 사람의 치표(置標)*가 있었기에 제가 파(挖)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12대조 무덤이 해당 산에 있으니

* 치표(置標) : 미리 밧자리나 이장할 곳을 선택하여 무덤 모양으로 만들 때, 밧자리를 표시하거나 밧구덩이 속에 표적을 묻어 두는 일이나 그 표적을 의미한다.

산은 본래 저의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고조부와 증조부가 모두 어린 나이에 작고作故한 까닭으로 집안에 의견을 내세울 사람이 없어서 피고의 5대조 입장을 금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은 산을 수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를 여록餘麓**에 입장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이제와 금장하니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은 모순되고 모두 자기 산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근거로 삼을 만한 증권證券이 없고 또한 경계로 정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 원고의 고조부가 단지 진사이고 관직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계한界限 밖이어서 금장할 수 없고 서로 수호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7월 2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최석민崔錫民

주사 이재홍李在弘



判決書 一百六號

原告 南陽郡 八灘面 居 尹元榮

被告 高陽郡 九耳面 居 李起龍

判決要旨

原告는 被告訴答에 對하여 禁葬을 理由가 無하니 互相守護함이 可한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 여록(餘麓) : 산소의 근처에 있는 산 중에서 주산(主山) · 청룡(靑龍) · 백호(白虎) · 안산(案山) 외의 산이다.

原告의 主張은 矣五代祖塚與高祖塚이 在於高陽郡九耳面 而百餘年守護矣 러니 本年四月에 被告가 其父母塚을 偷緬於矣高祖塚二十九步之地이온 바 買占文券은 間因火災而被燒이오며 被告入葬處는 已於年前에 有他人 置標이옵기 矣身이 至有掘去라하며 此에 對하여 被告의 陳供은 矣十二代 祖塚이 在於該山 而山本矣身之所有나 矣高祖與曾祖가 俱以年少作故之致로 家無主張하여 被告五代祖之入葬을 不得禁止하여 自爾同山守護인디 矣 父塚을 入葬于餘麓이옵디니 原告가 今來禁葬이 切非穩當이라흔바 兩供 矛盾에 俱曰我山이나 現無可據證券하고 亦無定界分明이며 原告之高祖가 只曰進士而無官職하니 係是界限以外라 不可禁葬인즉 互相守護함이 可한 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七月 二日

京畿裁判所 判事 崔錫民

主事 李在弘





1907년 7월 11일 경성-남양

역문

판결서 제110호

원고 경성京城 죽동竹洞 거주 김조이[金召史]

피고 남양군南陽郡 거주 김옥진金玉振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는 빌려 쓴 돈에서 남아 있는 1,000냥兩을 2배의 수로 계산하고, 흰모시[白苧]값 154냥과 함께 일체 빌린 것을 갚아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지난 1904년 1월에 피고에게 조금씩 나누어서 빌려 준 것이 당오전[當錢] 2,500냥이고, 흰모시[白苧] 33자[尺]와 누비[縷緋]* 16자를 출급[出給]하였다니 결국 마련하여 갚지 않고 도리어 구타[毆打]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1904년 1월에 당오전[當錢] 945냥을 빌려 쓰고, 또 흰 모시값 154냥이 있었는데 그 후에 갚은 것이 992냥 5전[錢]입

* 누비(縷緋) :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넣고 함께 홉질하여 맞붙이는 바느질법이다.

니다. 거래한 돈의 상호 이자를 계산하면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이 756냥입니다. 그러나 가세[家勢]가 넉넉지 못하여 제때 마련하여 갚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였던 치부책置簿冊을 꼼꼼히 살펴보니, 원고가 언문[諺文]으로 기록한 책자冊子에는 빌려주었던 본전이 모두 1,995냥이고, 피고의 발기[件記]에는 거래한 돈의 상호 이자를 계산하였는데 원금과 이자의 계산에 200여 냥을 모록[冒錄]**한 것이 여지없이 탄로 났다. 그런데 피고가 증거인 홍주삼[洪周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기에 공문[公文] 발급하여 대령하게 하였으나 어떤 곡절[曲折]이 있는지 데려올 수 없다고 변명[申明]하였으니 그 이치가 바르지 못한 것이 역시 분명하다. 일체 원고의 치부책자에 의거하여 1,995냥 내에서 995냥 5푼은 이미 갚은 것으로 계제[計除]하고, 남아있는 1,000냥은 2배로 계산하여 즉시 빌린 것을 갚아야 한다. 흰 모시값과 누비값은 원고의 치부책자에 비록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흰 모시값 154냥은 확실히 피고가 진술한 바가 있으니 역시 마련하여 갚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에 판결한다.

1907년 7월 11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최석민崔錫敏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一百十號

原告 京城 竹洞 居 金召史

被告 南陽郡 居 金玉振

** 모록(冒錄)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기록한 것 또는 그 기록이다.

判決要旨

原告訴求에 應호야 被告는 價用錢零在一千兩을 以倍數計算호고 并與白苧價一百五十四兩으로 一體報債이 可호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去甲辰正月에 流伊債給於被告者 當錢二千五百兩이요 白苧三十三尺及縷緋十六尺을 亦爲出給이더니 竟不備報호고 反爲毆打라호며 此에 對호야 被告陳供은 甲辰正月에 當錢九百四十五兩을 價用호고 又有白苧價一百五十四兩인디 其後所報가 爲九百九十二兩五錢인즉 去來錢을 互相計邊이면 當報條가 爲七百五十六兩이나 家勢不贍호야 趁不備報라호며 兩隻의 現納호 置簿을 詳考호 則 原告의 諺錄冊子에는 價給本錢이 合爲一千九百九十五兩이고 被告의 件記則去來錢兩을 互相計邊인디 本邊計算에 二百餘兩冒錄이 綻露無餘어늘 被告가 謂有證據人洪周三이다 故로 成給公文호야 使之來待矣러니 有何層節인지 不得率待下明호니 其理曲이 亦可明矣라 一依原告冊子호야 一千九百九十五兩內九百九十二兩五分은 已報條로 計除호고 零在一千兩은 以倍數計算호야 卽爲報債호며 白苧價與縷緋價는 原告冊子에 雖無懸錄이나 白苧價一百五十四兩은 確有被告所供 則亦爲備報호미 可호기로 茲에 判決事

光武十一年 七月 十一日
京畿裁判所 判事 崔錫敏
主事 李在弘



1907년 7월 19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111호

수원군水原郡 토진면土津面 한산동閑山洞 거주 농민

원고 백남룡白南龍

수원군水原郡 수북면水北面 어동리於洞里 거주 농민

피고 백낙주白樂周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그의 아버지 무덤을 파서 옮겨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과 분묘계한墳墓界限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訴答]은 “저의 아버지 무덤을 입장入葬한 것이 이제 30년이 되었고 택일기擇日記가 분명이 있습니다. 또한 원고와 저의 양쪽 무덤의 거리가 비록 4보步이나 옛날부터 서로 입장한 곳이니 매우 가깝다는 것만으로는 금장禁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택일기로는

* 택일기(擇日記) : 상례(喪禮)나 혼례(婚禮) 등과 같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운수가 좋은 날을 가려서 그 절차와 일시(日時)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미 오래되어서 확신하기 부족하고 4보에 근접하는 것은 법에서 마땅히 금하고 있으니 피고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

1907년 7월 19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최석민崔錫敏
주사 이재홍李在弘

光武十一年 七月 十九日
京畿裁判所
判事 崔錫敏
主事 李在弘

원문

判決書 第一百十一號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N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水原郡 土津面 閑山洞 居 農民
原告 白南龍

水原郡 水北面 於洞里 居 農民
被告 白樂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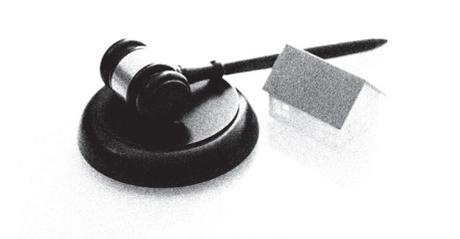
判決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호야 其父塚을 掘移호미 可호는 事
訴訟費用은 各自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墳界定限에 照호야 認其正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訴答은 矣父塚入葬이 今爲三十年호야 擇日記가 自在호며 且原被兩塚의 相距가 雖爲四步나 自來互相入葬之地즉 以逼近으로 不可禁葬이라호나 若擇日記은 既所年久를 不足確信이오 四步逼近은 在法當禁인즉 被告가 正當치 아니호니 因호야 原告訴求는 其理由가 有호는 事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SUN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분묘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7월 29일 수원-수원

역문

{광11민397호}

1907년 제69-1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홍여정洪汝正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전 감역監役

피고 나수경羅秀景

판결요지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의 판결은 폐기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원고 소유의 산국山局은 다시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해당 산의 송추松楸는 베어 갈 수 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卞]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供]은 “저의 증조曾祖 이하 선산先山이 수원군水原郡 문시면文市面 세교細橋에 있었습니다. 지난 1877년경에 저의 6촌 홍공여洪公汝가 해당 산소 아래 소재한 1두락斗落 논과 1식경息耕 밭을 피고에게 방매放賣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산소 소재 땀나무[柴葦]와 송추松楸를 섞어 넣어 3년을 기한으로 베도록 계약하고 28냥兩의 값을 받고 아울러 팔았습니다. 그때 전답문권에 (이에 대한) 글을 지어 설명하였는데, 해당 송추를 진작 베어 가지 않고 미루고 금양禁養하여 지금까지 이른 것입니다. 금년 음력 2월경 저의 부친 무덤을 선산 아래 입장入葬하였더니, 피고가 ‘해당 산국山局과 송추 및 전답을 전부 영매永買하였다.’고 하고 문권을 위조하여 만들어, 저의 부친 무덤을 파내어 관棺을 들어내고 무덤 부근에 나무 말뚝을 박았습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진술[供稱]은 “해당 산국을 원고의 6촌 홍공여에게 매득하여 송추를 금양한 지가 이제 31년이나 오래되었는데, 원고가 지금 갑자기 이미 판산에 투장偷葬하였습니다. 해당 문권을 1905년 12월 20일경에 도적이 빼앗아갔지만, 해당 문권의 등본謄本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등본문권을 자세히 살펴보니, ‘위 사람의 친산親山 아래 1록麓은 길이 200보步, 넓이 100보’라 하였다. 무릇 산록山麓 등의 매매에 있어서는 동서남북 4표票로 정하는 것은 곧 관례慣例이고, 길이와 넓이로 측량尺量하는 것은 그 예례를 듣지 못했으며, 이미 말한 ‘1록’은 산에 접한 일부분 일 뿐만 아니라 단지 땀나무 밭柴場인 것이다. 산국山局을 팔지 않은 것은, 그때 집필筆執 홍경조洪景朝가 해당 경기도재판소에서 진술한 것을 피고가 또한 참여해 들은 것이라 하였으므로, 그 산을 팔았다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송추만 팔았다는 것은 비단 집필의 증인 진술이 확실한 증거일 뿐 아니라, 피고의 이른바 등본문권을 위조하여 말 바꾼 간사한 진상도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빙자하여 산국을 영매永賣한 것이라고 하여, 이렇게 분소奔訴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

1907년 7월 29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조민희趙民熙

판사 김정목金正穆

관사 김택金澤
관사 안치윤安致潤
관사 이용성李容成
관사 이용상李容相
관사 육중면陸鍾冕
주사 정낙헌鄭樂憲

원문

{光十一民三九七號}

光武十一年 第六九之一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居 農民

原告 洪汝正

同道 同郡 居 前監役

被告 羅秀景

判決要旨

京畿裁判所判決은 廢棄事 被告는 原告 訴求에 應호야 原告所有山局은 更勿侵漁호고 該山松楸는 斫伐以去함이 可호는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卜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原告 所供은 渠之曾祖 以下先山이 在於水原郡文市面細橋 而去丁丑年分에 渠之六寸洪公汝가 該山下所在一斗落畝과 一息耕田을 放賣於被告也에 該山所在柴草與松楸를 渾入호야 限三年刈伐爲約호고 捧價二十八兩并賣 而其時田畝文券에 說明措辭이온디 該松楸를 趁不伐去호고 延拖禁養호와 以至於今이온바 今年

陰二月分에 渠之父塚을 入葬於先山下리니 被告가 該山局與松楸并田畝을 沒數永買라호고 僞成文券호야 渠之父塚을 掘塚露棺호고 插抹木於塚傍이라호며 被告供稱 該山局을 買得於原告之六寸洪公汝處 而禁養松楸가 于茲三十一年之久이온디 原告가 今忽偷葬於已賣之山이온바 該文券을 乙巳年十二月二十日頃에 爲盜所奪호고 該券謄本이 自在이다호니 其所謂謄本文券을 考閱則 右人親山下一麓 長二百步 廣百步라호야스니 凡係山麓等 賣買가 定其東西南北四票는 自是慣例오 尺量其長廣은 未聞其例며 既云一麓則 山應有餘畝더러 但賣柴場이오 不賣山局은 其時筆執洪景朝納供於 該道裁判所者를 被告가 亦云參聞이라호는즉 其爲賣山은 無所可證이오 但賣松楸는 非徒筆執之證供確據라 被告所謂謄本文券之僞造變辭가 莫掩奸狀이거늘 藉此而永賣山局이라호야 有此奔訴호는 不可謂之正當이니 原告 訴求는 其理由가 有호는 事

光武十一年 七月 二十九日

平理院

裁判長 趙民熙

判事 金正穆

判事 金澤

判事 安致潤

判事 李容成

判事 李容相

判事 陸鍾冕

主事 鄭樂憲



1907년 7월 30일 수원-수원

역문

[광11민394호]

판결서 제68호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이열래李悅來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피고 최대시崔大時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 안건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변론[訴答]은 경기도재판소京畿道裁判所 판결서와 매득한 문권文券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지난 1867년경에 저의 형이 살던 가옥[家舍] 1좌座와 해당 가옥 뒤 산록山麓의 송추松楸를 피고에게 방매放賣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무슨 생각으로 해당 산소[山]의 송추를 बे지 않다가, 금년 음력 4월경에 피고가 그의 산소라 칭하고 이치가 아닌 것으로 금단禁斷하므로 제가 즉시 군郡과 부府에 소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제 형의 수표手票가 있다고 하였는데,

해당 수표 상에 지어낸 말 안에, ‘제 집에서 입장入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형이 진실로 이와 같이 수표를 주었다면, 1867년 이후로 제 집에서 입장한 것이 어찌 8개 무덤이 잇달아 있겠습니까. 군과 부에서 피고가 위조한 수표를 자세히 조사하지 못하고 저를 패소로 하였으므로 상소[申訴]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변론[訴答]은 “지난 1867년경에 저의 조부가 가옥과 텃밭[埗田] 및 집 뒤의 산록을 엮전 300냥을 주고 모두 매득하였습니다. 원고의 형이 출가出家한 지 얼마 안 되어, 그의 조부 무덤을 제 조부가 새로 매득한 집 뒤 소재 산록에 면장緋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조부가 입장한 것을 분하게 여겨 환퇴還退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의 형이 다시는 입장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수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수없이 간청하였습니다. 같은 이웃에 사는 정의에 물리치기 어려워서 그 수표를 받고, 해당 집과 텃밭 및 해당 산을 영구히 매득하고, 해당 산록의 송추를 지금까지 별탈없이 금양禁養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원고가 갑자기 음흉한 마음이 생겨서 저의 소유 산록 중 4면面 20보步를 경계로 하여 본읍本邑에 사는 정두진鄭斗鎭에게 도매盜賣하여 입장入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치를 들어 꾸짖으니 해당 정두진이 원고의 이유를 알고 즉시 파의罷意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원고가 어찌 무소誣訴하였는지 저희 부자가 모두 체포되어 급기야 대질對質하는 마당에, 저의 소유와 원고가 이중으로 판 것이 저절로 탄로 나서 그가 자연 패소함에 또 상소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진술을 서로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수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원고는 그의 형 수표를 위조라고 하나 해당 수표와 문권을 무료로 돌리는 것은 사안이 매우 터무니없다. 그뿐만 아니라 40여 년에 이르는 동안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어찌 금지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송추를 팔았다면 피고에게 무슨 이유로 말미암아 40여 년 동안 베어 가지 말라고 하였는가.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소송을 일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해당 재판소의 판결이 타당하므로 해당 재판소로 환송[繼還]한다.

1907년 7월 30일

평리원 平理院
 재판장 조민희 趙民熙
 관사 김정목 金正穆
 관사 김택 金澤
 관사 안치윤 安致潤
 관사 이용성 李容成
 관사 이용상 李容相
 관사 육중면 陸鍾冕
 주사 이선중 李善鍾

원문

{光十一民三九四號}
 判決書 第六十八號

京畿道 水原郡 居 農民
 原告 李悅來

京畿道 水原郡 居 農民
 被告 崔大時

判決要旨

原告의 申訴案件을 棄却事 訴訟費用은 原告의 擔當事

理由

被告의 訴答은 該道裁判所判決書와 買得文券에 照하여 認直事 此에 對하여 原告의 主張은 去丁卯年分에 矣兄所居家舍一座와 該家後山麓松楸를 放賣於被告矣러니 被告가 以何主見으로 該山松楸를 不爲斫伐다가 本年 陰四月分에 被告가 稱以渠山하고 非理禁斷이기 矣身이 卽訴郡府즉 被

告가 稱有矣兄手票而該票上措語內에 使矣家로 不得入葬云云하나 矣兄이 誠若如是給票則 丁卯以後로 矣家入葬이 豈有八個塚之累累乎잇가 自郡及 府로 不覈被告之僞票하고 置矣身於落科이옵기 至有申訴라하며 被告 訴 答은 去丁卯年分에 矣祖父가 家舍及 垆田與家後山麓을 給價葉三百兩하고 并爲買得이온바 原告兄이 未及出家에 渠之祖父塚을 緬葬于矣祖父新買家 後所在山麓이옵기 矣祖가 憤其入葬하여 要以還退즉 原告兄이 以更勿入 葬之意로 成票以給에 懇乞無雙故로 同隣之誼에 果難退却이기 受其手票 하고 該家及 垆田與該山을 永永買得하고 該麓松楸를 于今無弊禁養矣러니 不意原告가 忽生不惻之心하여 矣身所有山麓中 四面二十步를 定界盜賣於 本邑居鄭斗鎭處하여 使之入葬이기 矣身이 舉理責之즉 該鄭이 知其原告 之理由하고 卽爲罷意이옵더니 原告가 有何誣訴이던지 矣身父子가 并爲 被捉하여 及其對質之場에 矣身之所有와 原告之重賣가 自然綻露하여 渠 自落科에 又有申訴라하마 參互兩供하고 考閱手票하니 原告는 渠兄手票를 歸之僞造나 該票與券을 歸之無效가 事甚無據뿐더러 到今四十餘年間 他 人之入葬을 何不禁止며 單賣松楸면 使被告로 緣何理由하여 四十餘年間 不爲斫伐以去케 하였는지 推此觀之면 原告之健訟은 不可謂之正當이라 該裁判決이 妥當이기 繳還該裁事

光武十一年 七月 三十日

平理院
 裁判長 趙民熙
 判事 金正穆
 判事 金澤
 判事 安致潤
 判事 李容成
 判事 李容相
 判事 陸鍾冕
 主事 李善鍾



분묘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8월 6일 남양-남양

역문

{광11민389호}

판결서 제4호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오춘근吳春根

경기도京畿道 남양군南陽郡 거주 농민農民

피고 송공우宋公佑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폐기한다. 피고는 원고의 상소(申訴)에 응하여, 원고의 금양(禁養) 구역 내에 투장(偷葬)한 무덤을 파 옮겨야 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해당 군의 조사보고(查報)와 도형(圖形) 및 증사(證詞)인의 증인 진술(證供)에 증거하여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은 “제 부모 무덤을 진사(進士) 서세순(徐世淳)의 시장

柴場*에 입장(入葬)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군의 조사보고와 도형과 해당 산소(山) 부근 마을 인민(人民)들의 증빙서(證憑書)에 의거하니, 원고의 산소(山) 계한(界限) 내에 투장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상소(申訴)는 이유가 있다.

1907년 8월 6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조민희(趙民熙)

판사 김정목(金正穆)

판사 김택(金澤)

판사 이용성(李容成)

판사 이용상(李容相)

주사 이경수(李京壽)

원문

{光十一民三八九號}

判決書 第四號

京畿道 南陽郡 居 農民

原告 吳春根

京畿道 南陽郡 居 農民

被告 宋公佑

判決要旨

* 시장(柴場): 나무나 풀 등의 땀감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가꾸는 땅이나 산이다.

第一審判決은 廢棄事 被告는 原告 申訴에 應호야 原告禁養內 偷葬塚을 掘移호미 可호는 事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該郡查報와 圖形及證詞人證供에 證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渠之父母塚을 徐進士世淳의 柴場에 入葬이라호나 該郡查報와 圖形과 該山附近洞人民等證憑書을 據호는 原告山界限內에 偷葬호미 明白호는 原告 申訴는 其理由가 有호는 事

隆熙元年 八月 六日

平理院

裁判長 趙民熙

判事 金正穆

判事 金澤

判事 李容成

判事 李容相

主事 李京壽



1907년 9월 13일 경성-남양

역문

판결서 제115호

경성京城 죽동竹洞 거주

원고 김조이[金召史]

남양군南陽郡 읍내邑內

피고 황삼보黃三甫

판결요지

원고의 1심 판결은 폐기廢棄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담배[葉草]값 210냥兩만 마련하여 갚아야 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에 비추어 빌려준 돈을 2배로 거두어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담배[葉草]값을 찾아가고자 함은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陳供] “제가 지난 1905년 5월 일수日數의 관례로 당오전[當錢] 200냥을 원고에게 빌려 썼습니다. 작년 2월에 자모지례[子母之例]로써 400냥을 마련하여 갚았고 원고에게 표적標蹟을

* 자모지례(子母之例) : 한 해 동안에 이자를 10분의 2 이내로 정한 이율(利率)이다.

받아 두었습니다. 증인[證據人] 최익진崔翼鎭이 분명하게 있고, 담배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정여백鄭汝伯에게도 17냥을 거두어 받았고, 그 이외에도 혹 찾아간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치부책자를 열람하여 살펴보았다. 빌려준 돈 200냥을 2배로써 찾아 받은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가 소지한 원고의 표적과 증인 최익진의 진술[所供]이 명확하여 다시 논의할 필요도 없다. 피고가 가지고 간 담배값 227냥에서 정여백에게 17냥을 원고가 이미 거두어 받았다. 그러나 남아 있는 210냥을 핑계를 대며 미루고 갚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담배값을 받은 것은 그 이유가 있다.

1907년 9월 13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이재홍李在弘

원문

判決書 一百十五號

京城 竹洞 居

原告 金召史

南陽郡 邑內

被告 黃三甫

判決要旨

第一審判決은 廢棄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호야 葉草價二百十兩만 辦償호미 可호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據에 照호야 債給錢은 倍數收捧함이 的確호나 葉草價는 推尋호스함이 認直事 此에 對호야 被告의 陳供은 矣妾이 去乙巳 五月에 以日數例로 當錢二百兩을 原告에게 債用이온디 上年二月에 以子母例로 四百兩을 備報호고 原告에 標蹟을 受置호얏스오며 證據人崔翼鎭이 自在호옵고 葉草는 是各人處分給者이온디 原告가 鄭汝伯處에도 十七兩을 收捧호얏습고 其外에도 或有推尋이라호나 原告의 置簿冊子을 考閱호즉 債給錢二百兩을 以倍數推捧함이 分明載錄호얏고 被告所持호 原告의 標蹟과 證據人崔翼鎭의 所供이 的確호즉 無容更議요 被告가 持去호 葉草價二百二十七兩은 鄭汝伯處에 十七兩을 原告가 已爲收捧호얏시나 零在二百十兩을 推諉不報호은 正當이라고 謂치못호지라 因호야 原告의 葉草價所捧은 其理由가 有호事

隆熙 元 九月 十三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李在弘



1907년 9월 17일 수원-수원

역문

{용원426호}

융희원년 제16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원고 백낙주白樂周

대인인代言人 백남구白南九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거주 농민農民

피고 백남룡白南龍

판결요지

제1심 판결서는 폐기한다. 피고는 원고가 30년 전에 입장入葬한 원고의 무덤을 파 옮기지 못한다. 제1심 제2심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所供)은, “15년 전에 원고가 그 부친을 저의 조모 무덤 4보步의 땅에 입장入葬하였으므로 누차 파 갈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그런

데 풍수지리설을 들으니 ‘해당 무덤이 저의 무덤에 왕방(旺方)*이 되어 동토(動土)하면 매우 이롭지 않다.’고 하여서 참고 견디며 지냈더니 금년 음력 2월경에 원고가 무덤의 때를 다시 입혔으므로 이렇게 거소(擧訴)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원고의 진술(所供)은, “지난 1876년에 저의 부친이 사망한 후 족산(族山)에 장사지냈다가 1878년에 이 땅에 이장하였습니다. 그때 택일기(擇日記)**가 아직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은 서로 간에 입장入葬하는 땅입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무덤이 혈쟁지(血爭之地)***에 해당한다면, 피고가 어찌 왕방을 피하는 것이 두려워서 15년을 파가라고 독촉하지 않은 것인가. 매우 허망하고 이상하다. 산소의 도형(圖形)****을 살펴보니, 원고와 피고가 예부터 누누이 서로 장사지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1878년 택일기가 명확하다. 그런데도 피고가 지금 파가라고 독촉하고자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로써 원고의 상소(申訴)는 이유가 있다.

1907년 9월 17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홍종익洪鍾楹

판사 홍우석洪祐皙

판사 박제선朴齊璿

판사 송진옥宋振玉

판사 박만서朴晩緒

판사 박용태朴瑢台

* 왕방(旺方) : 풍수지리설에 따라 오행으로 따져 보아 길한 방위, 즉 기(氣)가 유입되는 문의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공간 내에서 가장 왕성한 땅의 기운이 미치는 곳은 건강, 재물, 지위, 재능 발휘에 효과가 있어 방위로는 대길(大吉)인 곳이다. 생왕방(生旺方)이라고 한다.

** 택일기(擇日記) : 장례(葬禮)나 혼례(婚禮) 등과 같이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운수가 좋은 날을 가려서 그 절차와 일시(日時)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 혈쟁지(血爭之地) :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하게 싸우는 땅이다.

**** 도형(圖形) : 분묘 소송이 발생하면 관아에서 실제 현지로 나가서 그 산세와 무덤의 위치 및 묘 사이의 거리 등을 조사·측량하여 그린 것을 말한다. 분묘 소송 재판에서 판결의 중요 근거 자료로 인용된다.

주사 노병수魯丙洙

원문

{隆元四二六號}
隆熙元年 第十六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居 農民
原告 白樂周
代言人 白南九

京畿道 水原郡 居 農民
被告 白南龍

判決要旨

第一審 判決書는 廢棄事 被告는 原告의 三十年前 入葬한 原告塚을 掘移치 못할 事 第一審 第二審 訴訟費用은 被告가 擔當事

理由

原告의 主張은 質下과 證據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被告 所供은 十五年前에 原告가 入葬其父於矣祖母塚四步之地 故로 屢次督掘이옵더니 聞風水之說則 該塚이 於矣墓에 爲旺方하야 若爲動土則 甚是不利라하기 舍忍度了이옵더니 今年 陰二月分에 原告가 改爲莎草 故로 有此舉訴라하 며 原告 所供은 去丙子年에 矣父身故後 葬于族山이라가 戊寅年에 移葬此 地 而其時擇日記가 尙在 쓴더러 此山이 是互相入葬之地라하야 該塚이 如 係血爭之地면 被告가 何可畏避旺方하야 十五年不爲督掘이리오 甚是怪誕 이고 考閱山圖形則 原被告가 自來屢屢相葬 쓴더러 原告之 戊寅年擇日記가 明確이거늘 被告之 今欲督掘은 正當이라고 謂치 못할지라 是로 以하야 原

告의 申訴는 其理由가 有하 事

隆熙元年 九月 十七日

平理院
裁判長 洪鍾櫛
判事 洪祐皙
判事 朴齊璿
判事 宋振玉
判事 朴晚緒
判事 朴塔台
主事 魯丙洙





산송山訟에 관한 건

1907년 10월 15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수원군水原郡 일용면日用面 과장동芭長洞 거주

원고 이병욱李秉旭

47세

수원군水原郡 일용면日用面 정자동亭子洞 거주

피고 조재승趙載勝

30세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에 응하여, 피고가 경계선 넘어 새로이 경계를 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원고 산 경계에 입장入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유씨에게 구입한 문서와 저의 수기手記에 도형圖形안의 옛날에 정한 경계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 경계 안쪽은 바로 저의 소유이니 피고의 무덤을 굴이掘移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진술[訊은] “제가 당초에 유씨에게서 구입할 때에는 도형 안에 새롭게 정한 경계까지로 확실히 정하고 저의 아내를 입장入葬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산은 바로 제가 금양禁養해야 할 땅입니다.”라고 하였다.

해당 동洞에게 조사해서 보고하게 하니 동보洞報에 “피고의 말처럼 새롭게 만든 경계가 비록 조금 경계를 넘었지만 본래 옛 경계에 있으니 이씨 무덤의 동편이 경계입니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경계를 넘었다고 자백[自服]하였는데 이른바 새로운 경계는 확정된 경계가 아니며 옛 경계가 명확하다. 수기가 또한 산의 옛 경계로 증거한 일이니 해당 경계가 이미 판가름 난 격이므로 피고가 범을 어기고 입장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를 패소시킨다.

1907년 10월 15일

수원군水原郡 군수 서병숙徐丙肅

주사 차재형車載衡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기한 안에 상소할 수 있다.

원문

判決書

本郡 日用面 芭長洞 居

原告 李秉旭

年 四十七

本郡 日用面 亭子洞 居

被告 趙載勝

年 三十

判決要旨

原告에 訴求에 應하야 被告가 越境定界가 理屈하고 原告山界에 入葬함이 不當한 事

理由

原告에 主張은 被告가 柳民에게 買得한 文券과 矣身에 手記가 圖形內舊定界以東이니 舊定界以內는 卽民之所有也니 被告에 塚을 掘去라하고 此에 對하야 被告에 供은 曰 民이 當初柳民에게 買收할 時에 圖形內新定界거지의 定하고 矣身妻를 入葬하여스오니 此山은 卽矣身禁養地라하야 該洞으로 使之 調査報來리니 洞報內 被告言內 新作境界가 雖小越境이나 自有舊界 하야 李塚東便이 境界云하니 被告가 以越境自服 則所謂新境界는 非確의 定界요 所謂舊界가 明確이라 手記가 亦山舊界로 證據한 事也니 該界가 已 辦인걸 被告之犯葬은 可下이라 被告를 置之落科事

隆熙元年 十月 十五日

水原郡 郡守 徐丙肅

主事 車載衡

此判決에 對하야 被告는 期限內에 申訴함을 得함



1907년 10월 29일 수원-수원

역문

융희원년 제40호

판결서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농민農民

원고 김문교金文敎

경기도京畿道 수원군水原郡 농민農民

피고 남영희南英熙

판결요지

원고의 청구(申訴)는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의 5대조 무덤 17보步 안에 새로 장사지낸 무덤을 분묘계한墳墓界限*에 따라 굴이掘移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卮)과 그 가승(家乘)**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 분묘계한(墳墓界限) : 대한제국 1905년에 공포한 『형법대전』 제32조 분묘계한(墳墓界限)을 뜻한다. 이에 따르면 신분별 무덤의 넓이를 제한하고 있다.

** 가승(家乘) : 혈통적 근원 내지 내력을 직계조상을 중심으로 하여 밝힌 가계기록이다. 가승은 족보의 한 형태로서, 가첩(家牒)·세계(世系)·가계(家系)·내외보(內外譜) 등의 명칭으로도 쓰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所供)은, “작년 음력 2월경에 제 모친을 같은 마을에 사는 한희천(韓熙川) 집의 시장(柴場) 한 기슭에 장사지냈고, 올해 2월에 또 제 부친을 장사지냈는데, 피고가 자신의 산이라고 하여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피고의 변론(答供)은, “원고가 그 부모를 제 5대조 무덤 17보 안의 땅에 암장(暗葬)하였는데, 제5대조는 품계가 통덕랑(通德郎)***에 이르오니 원고의 무덤을 법전에 따라 굴이해야 하고, 시초(柴草)는 한희천 집에서 거둘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제출한 가승을 살펴보건대, 피고의 5대조가 과연 통덕랑으로 기록되어 있고 통덕랑은 5품이므로, 분묘계한에 따라 원고의 무덤을 굴이해야 한다. 이로써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1907년 10월 29일
평리원(平理院)
재판장 홍종억(洪鍾億)
판사 박제선(朴齊璿)
판사 송진옥(宋振玉)
판사 박만서(朴晩緒)
판사 박용태(朴瑢台)
주사 노병수(魯丙洙)

원문
隆熙元年 第四十號
判決書

京畿道 水原郡 農民

*** 통덕랑(通德郎) : 조선시대 정5품 동반(東班)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이다.

原告 金文教

京畿道 水原郡 農民
被告 南英熙

判決要旨

原告申訴는 棄却事 原告는 被告五代祖塚十七步內에 新入葬한 塚을 依墳墓界限하여 掘移함이 可함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함

理由

被告主張은 質卞과 其家乘에 照하여 認直事 此에 對하여 原告所供은 昨年陰二月分에 矣母를 入葬於 同里居 韓熙川家 柴場一麓하고 今年二月에 又葬矣父러니 被告가 稱以 渠山하고 有此起訴라하며 被告答供은 原告가 暗葬其父母於 矣五代祖塚十七步之地이온바 矣五代祖는 品至 通德郎이오니 原告塚을 依法典掘去이옵고 柴草는 韓熙川家所收라하느니 考其所納家乘則 被告五代祖가 果以 通德郎懸錄而 通德郎은 五品인즉 依墳墓界限하여 原告塚을 掘移함이 可한지라 是로 以하여 原告申訴는 棄却事

隆熙元年 十月 二十九日

平理院
裁判長 洪鍾億
判事 朴齊璿
判事 宋振玉
判事 朴晩緒
判事 朴瑢台
主事 魯丙洙



논 소송[審訟]에 관한 건

1907년 11월 20일 수원-수원

역문

판결서 제118호

수원군水原郡 남면南面 거주
원고 김영희金永喜

수원군水原郡 남면南面 거주
피고 김용구金容龜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棄却]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논문서[審券]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30여 년 전에 저의 논 7두락을 저의 아버지가 종중宗中에 권매權賣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875년경에 7두락 내에 5두락만 환퇴還退하였는바 문권文券이 분명하게 있어서 30여 년을 저의 논으로 알고 경작하며 제사를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서울 사람에게 방매放賣하려고 하니 저의 종중에서 종중의 논을 몰래 판다고 말하고 다시 뺏기를 바라고자 하였습니다. 매우 원통하고 억울합니다.”라

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참고하고 증거와 조사에 준하여 정청해 보니 이른바 환퇴문권에서 각 사람들의 성명 아래에 날인[捺章]과 화압[畫押]이 없다. 또 필집[執筆]인 김영기金永冀가 애초에 작성해 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과연 환퇴하였다면 30년을 원고가 홀로 시향제時享祭를 받들 이유가 어찌하여 있겠는가? 이것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가 종중의 논을 경작하여 제사를 받들 증거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니 원고의 청구[訴求]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수원군水原郡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수원군으로 다시 보낸다.

1907년 11월 20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一百十八號

水原郡 南面 居

原告 金永喜

同郡 同面 居

被告 金容龜

判決要旨

原告 申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事

理由

被告에 主張은 質下과 審券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에 陳供은

三十餘年前에 矣番七斗落을 矣父가 權賣於宗中이라가 乙亥年分에 七斗落內에 五斗落만 還退이온바 文券이 自在하야 三十餘年을 認以矣番하고 耕作奉祀이업다가 昨年臘月에 放賣於京人矣러니 自矣宗中으로 謂以宗番 暗賣라하고 期欲還奪이 極爲冤抑이라하나 參互兩供하고 聽准證查흔즉 所謂還退文券各人等姓名下에 無捺章畫押하고 且執筆之金永冀가 初無書給 이라하며 果若還退면 三十餘年을 原告가 獨奉時享홀理由가 豈有하리오 推此觀之라도 原告가 宗番을 耕作奉祀흔 證據가 明若觀火흔즉 原告에 訴求가 正當이라고 謂치 못홀지라 本郡判決이 妥當키로 繳還該郡하노라

隆熙元年 十一月 二十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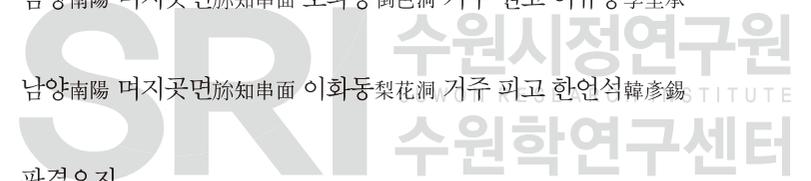


1907년 12월 10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제119호

남양南陽 머지곳면跡知申面 도파동倒芭洞 거주 원고 이규승李圭承



남양南陽 머지곳면跡知申面 이화동梨花洞 거주 피고 한언석韓彦錫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伸訴)는 기각(棄却)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산문서(山券)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 “저의 아버지가 지난 1876년경에 피고의 조부(祖父)에게 산록(山麓)을 사서 저의 증조모(曾祖母)를 입장(入葬)하고, 작년 8월에 제가 어머니 상을 당하여 또 계장(繼葬)하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남양군(南陽郡)에 거소(擧訴)하여 저의 매득문권(買得文券)에다가 한 번 입장한 땅이라고 써서 패소한 것이 매우 억울하고 원망스럽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참고하고 문권을 열람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니 (산록을) 샀던 산주인이 이름자를 기재하지 않았으니 매우 모호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문권에서 다만 한 번 입장할 땅으로 매매(賣買)하였는데 지금

또 계장하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지 않다. 남양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남양군으로 다시 보낸다.

1907년 12월 10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隆熙元年 十二月 十日
京畿道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一百十九號

南陽 旡知串面 倒芭洞 居 原告 李圭承 수원시정연구원
SRI SUWON RESEARCH INSTITUTE
南陽 旡知串面 梨花洞 居 被告 韓彥錫 수원학연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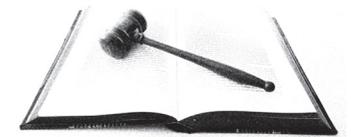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수원학연구센터

判決要旨

原告에 伸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費用은 原告擔當事

理由

被告에 主張은 質卞과 山券에 照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에 陳供은 矣 祖父가 去丙子年分에 買山麓於被告祖父하야 入葬矣曾祖母하고 上年八月에 矣身이 遭母喪하야 又爲繼葬矣러니 被告가 訴於本郡하야 矣身買得 文券에 書以一葬之地라하고 置之落科가 極爲抑鬱이다이나 參互兩供하고 考閱文券하즉 買山主가 不書名字하야스니 極涉模糊싣더러 該文券上에 只以一葬之地만 賣買하야거늘 今又繼葬하은 萬萬無理라 是로 以하야 原告에 訴求가 正當치못하은지라 本郡判決이 妥當하기로 繳還該郡하노라





보深·방죽[堰] 및 수용水舂 소송에 관한 건

1907년 12월 18일 남양-한성

역문

판결서 제120호

남양南陽 팔탄면八灘面 진월리眞月里 거주

원고 김정택金正宅

한성漢城 하교河橋 거주

피고 이제승李濟承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棄却]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사[證查]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저의 조부[祖父]가 보深와 득[堰]을 새롭게 쌓아서 봄과 여름에는 논에 물을 대고, 가을과 겨울에는 김동린[金東麟]의 아버지에게 허여[許與]하여 그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水舂]를 설치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매년 추수[秋收]를 작미[作米]한 것이 수백 석이 됩니다. (그런데 김동린의 아버지가 물레방아에서) 도정[舂糶]할 때에 세미[糶米]를 줄여 주지 않고, 타인의 예에 따라서 준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을 잊은 것이 매우 분하여 1902년 가을에 보의 상류를 터트려서 물레방아를 없애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김동린이 터진 보의 하류에 다시 보를 쌓고 물을 끌어다가 예전과 같이 물레방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쌓은 보의 곁에 일식경[息耕]의 밭을 새로 구매하였는데, 매년 보에서 물이 터져서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를 터트려서 다시 물레방아를 없앴습니다.”라고 하였다.

양쪽의 진술을 서로 참고하고 증사에 준하여 경청해 보니 해당 물레방아의 매매[買賣]에서 이미 3번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원고의 조부가 (물레방아) 설치를 허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진실로 설치를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을과 겨울에 물은 농사짓는 것과 무관하다. 그런데 세미를 준하여 받은 것에 원한이 생겨서 물을 터트려서 물레방아를 없앤 것은 이미 이치에 맞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 쌓은 보에서 샀던 밭이 4년 뒤에 밭에 손해를 입었다고 다시 해당 보를 터트려서 또 물레방아를 없애 버린 것은 더욱 매우 나쁘니 이로써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남양군의 판결이 타당하므로 남양군으로 다시 보낸다.

1907년 12월 18일

경기도재판소京畿道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一百二十號

南陽 八灘面 眞月里 居

原告 金正宅

* 식경(息耕): 논밭의 넓이를 어림으로 헤아리는 말로, 한참을 갈 만한 넓이라는 뜻이다. 논밭의 하루갈이 [日耨]를 여섯으로 나눈 넓이다.

漢城 河橋 居
被告 李濟承

判決要旨

原告에 申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한 理由가 無은 事 訴訟
費用은 原告擔當事

理由

被告에 主張은 質下과 證查에 照호야 認直事 此에 對호야 原告에 陳供은
原告祖父가 新築深堰호야 春夏則灌畝호고 秋冬則許與金東隣父호야 以其
水로 使設水春矣더니 其後原告에 每年秋收租作米가 爲數百石에 春精貫
米를 不爲減小호고 依他人例准捧 故로 憤其忘誼호야 壬寅秋에 決深上流
호야 使之廢春이더니 金東隣이 更爲築深於決深之下流호야 引水如前作春
이온바 原告가 新買一息耕田於新深之傍 而每爲深水潰決호야 損害不少
故로 又決該深호야 更至廢春이다인바 參互兩供호고 聽准證查호은 該水春
賣買가 已易三主호야스니 以此原告祖父에 許設을 可知요 眞若許設이라
도 秋冬之水가 無關於作農이여늘 生憾於貫米之準捧호야 決水廢春이 已
是無理뿐더러 買田於新築深四年之後호야 謂以害田호고 更決該深호야 又
使廢春케호은 尤極豪頑인즉 是로 以호야 原告에 訴求가 正當타고 謂치못
할지라 本郡判決이 妥當호기로 繳還該郡호노라

隆熙元年 十二月 十八日

京畿道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1907년 12월 28일 남양-남양

역문

판결서 제123호

남양군南陽郡 저팔면楮八面 상기동上箕洞 거주

원고 이순일李順日

남양군南陽郡 팔탄면八灘面 독곡獨谷 거주

피고 김철하金哲河

판결요지

원고의 상소[申訴]는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할 만한 이유
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 문권[證券]에 비추어 정직한 것으로 인정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올해 4월경에 상기동上箕洞에 있
는 산판山坂 1푼麓을 당오진[當錢] 400냥兩의 값을 주고 피고의 집안 종손
인 김용화金龍化에게 매득買得하고, 신·구 문기 각 1장을 받았습니다. 뜻
하지 않게 7월경에 피고가 제가 산 산판山坂의 송추松楸를 벌목하였습니
다. 그래서 제가 벌목에 대하여 따져서 물으니 피고의 대답이 ‘나의 산에
서 내가 벌목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하고, 도리어 남양군南陽

郡에 소송을 하여 제가 패소되어 이렇게 상소[申訴]하는데 이르렀습니다.”
라고 하였다.

모든 진술을 서로 참고하고 증거 문권을 열람하여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원고가 매득한 산판의 옛 산주인은 바로 심희생沈熙生인데, 이는 모든 사
람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가 매득한 산판의 전 산주인은 바로 심
동악沈東岳이라서 이 소송의 증거인[證查人]인 심화경沈化慶에게 물었더니,
이는 바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자이고 과연 피고의 조부인 김치익金致益에
게 산을 방매했다고 하였다. 그러니 해당 산판의 소유권[所有權]이 직손[直孫]
인 피고에게 있다. 그런데 김용화가 종손으로서 문권을 위조하여 속여 판
것을 가지고서 원고가 기어이 다툼[爭執]을 일으키고자 한 것은 매우 이치
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남양군의 판결이 타당하기에 남양군으로 다시 보
낸다.

1907년 12월 28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一百二十三號

南陽郡 楮八面 上箕洞 居

原告 李順日

同郡 八灘面 獨谷 居

被告 金哲河

判決要旨

原告에 申訴는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흔 理由가 無흔 事 訴訟

費用은 原告가 擔當事

理由

被告에 主張은 質下과 證券에 照하여 認直事 此에 對하여 原告陳供은 本
年四月分에 上箕洞所在山坂一麓을 給價當錢四百兩하고 買得於被告家宗
孫金龍化하고 受其新舊文記各一張이온바 不意七月分에 被告가 斫伐矣身
所買山坂松楸 故로 矣身이 詰問斫伐하니 被告所答이 吾山吾伐을 汝何相
關고하고 反訴於南陽郡하여 枉置矣身於落科이옵기 至此申訴라하나 參
互衆供하고 考閱證券흔즉 原告所買山坂에 舊山主는 卽沈熙生 而此是衆所
不知姓名之人이요 被告所買山坂에 前山主는 卽沈東岳而問於此訟證查人
沈化慶則 此是渠父에 名字인데 果爲賣山於被告之祖父金致益이라흔즉 該
山坂所有權이 在於直孫被告여늘 金龍化가 以其從孫으로 僞券欺賣흔거설
原告가 期欲爭下코자함은 萬萬無理흔지라 仍하여 本郡判決이 妥當하기로
繳還該郡호노라

隆熙元年 十二月 二十八日

京畿道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1907년 12월 28일 수원-용인

역문

판결서 제124호

수원군水原郡 남부南部 신기新基 거주

원고 전경선全景先

용인군龍仁郡 김량시金良市 거주

피고 변석환邊石煥

판결요지

제1심 판결은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訴求]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주장은 대질[質下]과 증거 및 조사[證查]에 근거하여 정직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陳供]은 “이번 음력 10월 19일 수원군水原郡의 읍시邑市에서 피고에게 소를 샀습니다. 그런데 흥정할 때에 해당 소가 병든 모양으로 견지 못하기에 환퇴[還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의 답변에 ‘이 소가 쌀을 싣고서 먼 곳부터 와서 이와 같이 병든 모양이지만, 다른 병증[病症]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사가라.’고 하였기에 믿고서 값을 넘기고 소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10리정도 이르지 못하고

(소가) 누워서 일어나지 않다가 마침내 죽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병든 소를 속여 판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양쪽의 진술을 서로 참고하고 증거 및 조사에 준하여 경청해 보니 그날에 해당 소가 쌀을 싣고 50리를 걷고, 아침·저녁 2차례의 끼니를 적당하게 먹어서 병증없이 건실[健實]한 것은 여러 가지 증거가 확실하다. 10리도 이르지 못하여 돌연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정령 원고의 불행이라고 할지언정 피고가 속여 팔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로써 피고의 답변[答答]은 그 이유가 있다.

1907년 12월 28일

경기재판소京畿裁判所 판사 이규환李圭桓

주사 나기정羅基貞

원문

判決書 第一百二十四號

水原郡 南部 新基 居

原告 全景先

龍仁郡 金良市 居

被告 邊石煥

判決要旨

第一審判決은 棄却事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할 만 理由가 無은 事 訴訟費用은 原告가 擔當事

理由

被告에 主張은 質下과 證查에 據하야 認直事 此에 對하야 原告에 陳供은

今陰曆十月十九日 水原邑市에서 買牛於被告이온바 興盛之時에 該牛가 圉
圉不能步이읍기 欲爲還退 則被告所答이 此牛가 馱米遠來하야 如是하나 無
他病症하나 釋慮買去云이읍기 信以越價하고 牢牛以去라가 未到十里에 臥
而不起라가 竟至致斃하니 此是病牛之欺賣라하나 參互兩供하고 聽准證查
하즉 伊日에 該牛가 馱米五十里之地하고 午夕兩時에 善爲喂粥하야 無病健
實은 衆證이 的確인즉 未到十里에 猝然致斃함은 寧可曰 原告에 不幸이언
정 不可謂被告에 欺賣라 是로 以하야 被告에 答下이 其理由가 有하 事

隆熙元年 十二月 廿八日

京畿裁判所 判事 李圭桓

主事 羅基貞



번역(가나다순)

이승일(李昇一)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근대 한국의 재판과 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근·현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의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현재, 강릉원주대 사학과 교수 및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협동 과정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명중(李命鍾)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근대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양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병무(田炳武)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근대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와 가천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김백경(金白曠)

경희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한국법제사를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성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현재 식민지기 민사소송법제를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기 획 홍현영(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교 정 이재운(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수원학자료총서 [5]

한말 수원 민사판결문 I 1895~1907

발행처 **SRI**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소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T. 031-220-8058 H. <http://www.suwon.re.kr>

발행일 2020년 12월 15일

발간등록번호 11-B552980-000009-01

ISBN 979-11-90343-94-7 94910

ISBN 979-11-90343-93-0 세트